정 기 간 행 물
2021-16-037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

2021

근로복지공단

발간사

"모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는
노동복지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세계적 사회보장 선도기관으로서 신속·정확한 산재보상을 통하여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노동복지 허브입니다. 산재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급여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단은 불이익한 처분을 자체 시정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제도는 산재노동자 권리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단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 150명의 외부 전문가로 심의위원을 구성하여 공정성을 강화해 왔으며,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스마트 심의 회의장 구축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한 심사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였고, 제출된 심사청구서 중 97.6%(전년 동기 대비 1.3%p 증가)를 법정기한 내 심사결정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1만1천여 건의 심사청구 중 1,600건을 취소 결정함으로써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집은 지난 한 해 심사결정 중 주요 사례를 유형·분야별로 정리, 수록한 것으로, 공단의 원처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산재노동자의 권리구제의 이정표로 삼기 위하여 제작·발간하였습니다. 특별히, 2021년 사례집은 기존에 별도로 발간해오던 「진료비심사 사례집」과 통합하여 보다 편리하게 유형·분야별 주요 사례를 볼 수 있게끔 수록했습니다.

본 사례집을 통해 일하는 사람 곁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단 직원분들에게 공정하고 일관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재해자의 권리구제와 산재보험 제도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도 널리 읽혀져 제도 발전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강 순 희**

Contents

Ⅰ. 최초요양/유족(사고) ····· 1

1. 작업 중 사고 ····· 3
2. 출퇴근 중 사고 ····· 39
3. 출장 중 사고 ····· 69
4. 행사 중 사고 ····· 79
5. 휴게시간 중 사고 ····· 111
6. 재해 경위 불분명 ····· 123
7. 기타 사고 ····· 141

Ⅱ. 최초요양/유족(질병) ····· 165

1. 뇌심혈관계 질환 ····· 167
2. 근골격계 질환 및 기타 질환 ····· 215

Ⅲ. 근로자 및 산재보험 적용관계 ····· 265

1. 근로자 여부 ····· 267
2. 적용관계 ····· 331

Ⅳ. 추가상병 및 재요양 ····· 355

1. 추가상병 ····· 357
2. 재요양 ····· 385
3. 진료계획 ····· 393

Contents

Ⅴ. 간병료 및 요양비 ····· 403

1. 간병료 ····· 405
2. 요양비 ····· 417

Ⅵ.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 429

1. 평균임금 ····· 431
2. 휴업급여 ····· 461

Ⅶ. 장해급여 ····· 475

1. 신경계통기능 ····· 477
2. 얼굴(코) ····· 499
3. 손 ····· 515

Ⅷ. 진폐 ····· 523

1. 진폐 ····· 525

Ⅸ. 기타 ····· 539

1. 합병증 예방관리 ····· 541
2. 만성폐쇄성폐질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소멸시효 ····· 549

Contents

진료비 심사 사례 ····· 561

1. 검사료 ····· 563
2. 영상진단 ····· 581
3. 이학요법 ····· 625
4. 처치료 ····· 639
5. 수술료 ····· 655
6. 재료대 ····· 753
7. 기타 ····· 763

SUMMARY

Ⅰ. 최초요양/유족(사고) / 1

Ⅰ-1. 작업 중 사고 ····· 3

1.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중(도로교통법 위반)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청색 신호에 직진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이륜차의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중과실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한 사례 ····· 5

2. 오토바이 배달업무 후 복귀 도중에 신호위반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전 과중한 업무로 휴무없이 근무하며 피로가 누적되었고 복용하는 약기운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취소" 결정한 사례 ····· 10

3. 근무지에 출근 후 보안키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자택이 아닌 장소로 보안키를 가지러 가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 준비 과정의 부수적인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17

4. 병원에서 청소 업무 수행 중 재활용 자재 매매를 위해 사업장 인근 고물상으로 이동하여 재활용 자재 하차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근무지 외 장소에서 일어난 사적행위 중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한 사례 ····· 21

5. 평소 앓고 있던 기저질환과 업무 중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지주막하 출혈이 양쪽 뇌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 부전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기저질환이 외상성 뇌출혈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 28

Ⅰ-2. 출퇴근 중 사고 ····· 39

1. 주민등록증상 주소지(농사를 짓는 농막)가 아닌 자녀와 거주하는 실제 주거지에서 출근 도중 발생한 재해로 실제 거주지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아 출근중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41

2. 생일을 맞아 부모님 집에서 1박을 한 다음날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통상의 주거지를 벗어난 곳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47

3. 퇴근길에 다음 날 여행에 필요한 물품(콘센트, 우비 등) 구입을 위해 일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물품 구매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일상의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였더라도 일생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준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 57

4. 도로교통법 개정 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를 위반하였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판단될 경우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취소” 결정한 사례 ····· 64

Ⅰ-3. 출장 중 사고 ····· 69

1. 사업장에서 제공한 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제2종 소형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킥보드 운전을 위해 별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2대 중과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71

Ⅰ-4. 행사 중 사고 ····· 79

1. 회식 종료 후 발생한 재해와 관련,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하였고 과거 이루어진 회식의 형태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따른 행사(회식)으로 봄이 타당한 점, 숙소 복귀 중 전화통화는 개인적인 것일 뿐,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 통상의 경로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취소” 결정한 사례 ····· 81

2.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식사 후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와 관련, 업무와 관련된 식사일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비용을 처리한 점, 사고 발생 장소에서 고인의 행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퇴근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할 때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91

3. 생산현장 분임조 상호 간의 화합을 위해 강제성이 없는 친목도모 성격의 워크샵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 비용을 자체적인 회비로 충당하였고 휴무일에 진행된 점에서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행사가 아닌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103

Ⅰ-5. 휴게시간 중 사고 ····· 111

1.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풋살경기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정기적 행사로 보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장소를 대관하고 참여 독려한 점, 대관시간이 업무시간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113

Ⅰ-6. 재해 경위 불분명 ····· 123

1. 의무기록 및 CCTV영상자료(사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8.17., ’21.8.20. 양일) 등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나 특별히 업무상 재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125

2. 청구인은 작업현장에서 천장 소방배관 설치 작업 중 임팩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임팩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있었던 점, 사고 이후 발가락 물집 및 허리통증으로 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부상 이후 1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 병원에 처음 내원한 점, 만성적 퇴행성

변화외 외상성 병변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132

Ⅰ-7. 기타 사고 ····· 141

1. 버스기사인 청구인은 차고지에서 대기하던 중 휴게장소인 건너편 CNG충전소로 무단횡단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인근 1차선 편도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에 고의 또는 자해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 차량의 과실률도 25%로 산정되어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을 고려할때 무단횡단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143

2. 동료 근로자들의 다툼을 말리던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상해를 입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음주 상태였던 점, 청구인과 업무적으로 상호이해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고가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연관이 없는 주취 상태로 인한 행동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154

Ⅱ. 최초요양/유족(질병) / 165

Ⅱ-1. 뇌심혈관계 질환 ····· 167

1. 고인의 뇌지주막혈출혈 발생 당시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기준에도 미달하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169

2. 기존 업무상 질병인 ‘뇌실질내 출혈, 기질성정신장애, 기질성뇌증후군 등’으로 요양한 후 장해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망하였으나, 사망 전 응급실 후송 당시 고인의 구강내 이물(떡)이 발견되었던 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검사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승인 상병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180

3. 청구인은 사업장 내 동창모임 중 갑자기 쓰러져 상병명 ‘중대뇌 경색증’, ‘이완성 편마비(우측)’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뇌경색이 뚜렷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도한 업무강도,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187

4. 고인의 직접 사인인 우측 뇌실내출혈은 2011년 업무상 질병으로 기승인된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중 기존 출혈 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일어나 우측 뇌실 및 시상부까지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195

5. 청구인은 법인 사업장 대표이사의 사위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번역작업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패스트푸드점의 야간근로는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19분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203

Ⅱ-2. 근골격계 질환 및 기타 질환 ····· 215

1. 신청 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실지부의 변성 변화를 동반한 수평파열은 복합파열로 만성적인 소견이고, 작업동영상을 볼 때 업무시간이 일일 30분미만으로 짧고 대부분 서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릎부위 누적 업무 부담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217

2.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뿐만 아니라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고, 어깨부위의 신체부담 정도가 높다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225

3.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 소견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일 연령대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소견으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 234

4. 고인은 광업소 근무 이력으로 진폐증 진단받아 진폐보상수급 중 사망한 건으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와 구술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심장 질환에 대한 기존 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망 당일 영상자료 소견상 폐의 정상 부위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등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242

5. 고인은 사망 1년1개월 전 간과 복강내 림프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시행 중 전신상태의 악화로 인해 사망 2개월전 항암 치료를 중단으로 인한 간수치 및 황달 수치 상승으로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247

6. 청구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경찰수사 및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던 시점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첫 방문한 시점인 점, 임상 심리검사 상 청구인의 정서적 취약성과 불안정감, 내·외적 자원부족, 미성숙한 자기 방어 등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이라기보다는 업무외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반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253

Ⅲ. 근로자 및 산재보험 적용관계 / 265

Ⅲ-1. 근로자 여부 ····· 267

1. 청구인 소유의 굴삭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 269

2.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ㅇㅇ골재는 운반에 대한 운반비만 지급했을 뿐, 취업규칙이나 ㈜ㅇㅇ골재의 사규 등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점, 4대보험 적용받지 않고 트럭 2대를 소유 및 운영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가 청구인 책임하에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277

3. 청구인이 피아노 연주자를 대신하여 참가한 자발적인 봉사단체인 ㅇㅇㅇㅇ 현악4중주팀은 ㅇㅇㅇ교회에서 채용하였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찬양제 참가를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팀원인 ㅇㅇㅇ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며 ㅇㅇㅇ교회 목사가 지급한 비용 30만원이 있으나 이는 저녁식사 비용으로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그 비용 중 청구인 5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임금으로도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290

4. 자활근로 참여 전 적정 사업단 배치를 위한 사전교육 및 견습과정의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298

5. 해외 근무를 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해외파견자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307

6. 청구인의 급여는 2014.1.1.부터 해외법인 법인장으로서 국내에서 일부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 잔액과 주재수당은 현지법인에서 지급되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 317

Ⅲ-2. 적용관계 ····· 331

1. 농장에서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는 녹색펜스 설치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수행한 농업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사업으로 "기각" 결정한 사례 ····· 333

2. 미역채취 사업은 각각이 어민들이 한조를 이루어 공동으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으나 각자의 양식장 구역에서 생산된 미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거래하여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각각 적용할때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343

Ⅳ. 추가상병 및 재요양 / 355

Ⅳ-1. 추가상병 ····· 357

1. 청구인의 신청 상병명 '이차성 파킨스증'은 통상 파킨슨증의 발병이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사고 또는 승인 상병과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에 따라 "기각" 결정한 사례 ····· 359

2. 청구인은 재해 당시 비골의 골절이나 연부조직 손상, 보형물의 이탈 소견이 없어 신청 상병인 "구형구출코, 비중격만곡, 비밸브협착"은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렵고, "비후성 비염"도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비점막의 종창 상태로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 364

3. 우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로 거골하관절에 외상 후 2차성 관절염이 진행된 소견으로, 골절 및 수술로 피부 병변이 악화됨이 확인되어 신청 추가상병명 "후외상성 관절염", "우측다리의 울체성 피부염"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 370

4. "손목의 드퀘르벵 병"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청구인의 경우 우측 요골하단의 경상돌기 골절이 힘줄을 지나가는 근접부위에서 골절이 된 상태로 힘줄에 압력 발생으로 드퀘르 병의 증상을 유발하여 승인상병과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 378

Ⅳ-2. 재요양 ····· 385

1. 제5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을 진단받고 요양후 제5수지 유착에 따른 굴곡 장해에 대한 박리술 시행으로 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 387

Ⅳ-3. 진료계획 ····· 393

1. 2016.4.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고, 정신과적 상병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 2년 8개월 정도 치료받은 시점에서 진료계획서상 상당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의 악화를 인정할 만한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395

Ⅴ. 간병료 및 요양비 / 403

Ⅴ-1. 간병료 ····· 405

1. 청구인 도뇨관 삽입 상태이고 침대차로 이동하는 등 침상 안정이 필요하며 거동이 제한되어 간병료 지급기준 상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병상태로 보아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407

2. 중환자실 퇴원 이후에도 욕창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며 통증에 대한 반응이 없을 정도의 상병상태였고 영상자료상 뇌연화증이 심하게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침상에서 체위 변경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항상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인지기능이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기 기간 뇌의 손상으로 인해 생명유지를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411

Ⅴ-2. 요양비 ····· 417

1. 청구인은 상병명 '요추4-5추간판탈출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2020. 6. 29. ~ 2020. 7. 19. 기간 요양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 요양비(개별요양급여신청 포함)로 청구한 것으로, 해당 부지급 항목은 모두 동일 치료목적의 급여대체 품목이 있는 항목으로 요양급여 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419

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호(약제)」에 따라 포스테오주의 인정기준 외에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17. 11. 1. 재해발생 이후 우측 상완골 골절의 불유합 및 지연유합으로 인해 4차례의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골 생성 촉진을 위해 투여한 골대사제제인 포스테오주는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424

Ⅵ.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 429

Ⅵ-1. 평균임금 ····· 431

1. 청구인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일당은 18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사고 발생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도와주는 조공 업무를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최초 요양 승인 당시에도 일당이 13만원이었다고 인정하는 관련 서류에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년도 및 그 이전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 내역은 확인되나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에서 증명하는 경력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급받기로 한 일당이 18만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 433

2. 진단일(2015. 7. 21.) 이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은 있으나, 2014. 12. 23. ~ 2015. 1. 12. 기간 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2015. 2. 4.부터 다시 휴직한 것으로, 2015. 1. 13. ~ 2015. 2. 3.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15. 2. 4.로 봄이 상당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4. 11. 4. ~ 2015. 2. 3. 기간 청구인의 임금자료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160,039원34전)을 산정하고 이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179,063원49전)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179,063원49전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441

3. 청구인은 ㅇㅇ인력을 통해 ㈜ㅇㅇ산업이 시공한 '20**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 맨홀 정비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ㅇㅇ인력으로부터 사전에 일당 210,000원

으로 안내받은 문자 내용이 확인되고, 협력업체 ㅇㅇㅇㅇ(주)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노임 단가(야간)는 210,000원이며, ㅇㅇ인력 소개수수료 21,000원은 ㅇㅇㅇㅇ(주)측에서 ㅇㅇ인력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개수수료 공제 전 금액인 21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 449

4. 폐암 재발 시점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폐암'의 최초 진단일은 2011. 7. 13.로 확인되는 점, 고인이 2011년 진단 받은 폐암의 치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관련 고인의 사망과 연관된 폐암은 고인의 주치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의학적 소견이 동일하게 기존에 진단된 폐암의 재발로 그 증상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폐암이 확인된 날은 2011. 7. 13.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454

Ⅵ-2. 휴업급여 ····· 461

1. 청구인은 재해 당시 00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대학생 신분으로, 사범일지를 보면 2020. 5. 8.부터 태권도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주 2~3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재해 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주당 4일 이상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 및 제7조제3항(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의 수급권자 또는 자녀, 한부모 가장(본인 가장 포함)으로서 학비 또는 가족의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생계형 학생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학업에 복귀한 휴업급여 청구기간(2020. 9. 29. ~ 2020. 11. 4.)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463

2. 청구인은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ㅇㅇ산업이라는 사업의 사업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해당 사업은 레미콘차량 운행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실제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주 지위로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는 재해 당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보험급여로서 2013년도부터 임금근로자로 지속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임금근로자로서의 소득상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과는 별개로서 청구인이 요양 중 근로자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기 청구기간 전부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470

Ⅶ. 장해급여 / 475

Ⅶ-1. 신경계통기능 ····· 477

1. 뇌 영상에서 우측 기저핵부의 상당한 양의 뇌출혈로 인해 뇌손상이 광범위하게 관찰되며, 좌측 편마비 상태는 상지 및 하지의 근력은 Gr3-4 정도로 보이나 상하지 말단부에 상당한 관절구축이 남은 상태로, 특히 발목의 경우 상당히 심한 떨림과 구축이 있어 보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이 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따른 장해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3급제3호으로 해당되어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479

2. 청구인은 척추 부위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 일반 동통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경근 증상이 남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검사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척추 신경근 장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492

Ⅶ-2. 얼굴(코) ····· 499

1. 청구인은 안면부와 경부 각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아 있고, 각 부위별 면상반흔의 크기는 안면부 면상반흔 64㎠(8㎝×8㎝), 경부 면상반흔 60㎠(10㎝×6㎝)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외모

중 두부·안면부 및 경부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는 바, 이견이 있는 외모의 흉터장해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9급)으로 청구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501

2. 청구인의 안면부 신경장해 및 흉터 장해는 주치의사와 원처분기관 판단이 동일하고,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도 이를 상향할만한 내용은 없으며, 씹는 기능과 후각 장해 등을 주장하나, 씹는 기능 장해는 주치의가 판단한 바 없으며, 후각 장해는 후각기능 검사상 후각기능의 저하만 있을 뿐 무후각증 정도는 아니며, 호흡도 기계적 폐쇄 정도는 아니어서 호흡 장해 기준에 미달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508

Ⅶ-3. 손 ····· 515

1. 좌측 1수지의 상처부위 감염으로 인해 원위지골의 골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골 손실 및 골단축 상태로 좌측 제1수지의 근위지 관절의 운동범위는 20도로 제한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 517

Ⅷ. 진폐 / 523

Ⅷ-1. 진폐 ····· 525

1. 장해급여는 청구사유 발생일인 치유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며,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 즉 진폐 진단일을 장해급여 청구사유발생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진폐 진단일자인 1996. 2. 26.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이미 해당 장해급여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기관의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527

2. “청구인은 2020. 10. 6. 시행한 심폐기능 검사상 노력성폐활량(FVC) 50%, 일초량(FEV1) 43%, 일초율(FEV1/FVC) 56%로 확인되고, 일초량의 경우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인 경우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45%미만(일초율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이라는 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제9호로 상향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532

Ⅸ. 기타 / 539

Ⅸ-1. 합병증 예방관리 ····· 541

1.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눈 부위 장해등급 제8급을 결정 받은 자로 요양 종결 후부터 이 사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전까지는 예방관리 증상에 대한 진료를 인정받은 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기존에 인정받은 합병증 예방관리 기간 동안 오큐메토론 점안액 등의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이는 결막염과 관련되어 처방되는 약물인 점, 청구인이 의안 착용상태이나 의안 착용 시 결막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누선장해가 남은 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결막염 증상의 관리가 필요하는 소견에 따라 “취소” 결정한 사례 ····· 543

Ⅸ-2. 만성폐쇄성폐질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소멸시효 ····· 549

1.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통상 검사 시기, 급성 악화 등 여부로 인해 측정치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4년 실시한 검사결과는 미국 방식으로 정상 예측치를 환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치의는 이를 한국인의 정상 예측치로 환산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단순 계산식에 따라 한국인의 정상 예측치로 환산하여도 2014년 폐기능검사 당시 청구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인정기준 상 제3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로 확정된 장해등급 제3급의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되어 2017.

5. 11. 요양급여 신청 당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소” 결정한 사례 ····· 551

• 진료비 심사 사례 / 561 •

1. 검사료 ····· 563

1. (합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골스캔검사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565

2. 요추후방고정술 시 산정한 ‘FY682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동시에 2종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569

3. 수술전 심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573

4. 기저질환(심부전)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 전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577

2. 영상진단 ····· 581

1. 폐렴의 호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흉부 3D CT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583

2. 체내금속제거 후 척골 충돌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상지 CT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588

3. 동시에 시행한 완관절 및 수부 3D CT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592

4. 하지 다발성 골절로 동시에 시행한 하지 및 발 CT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597

5. 신경학적증세가 악화되어 추가 시행한 요추MRI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602

6. 상지 압궤손상에 시행한 주관절 MRI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608

7. 전완부 폐쇄성 골절 등에 시행한 상지 MRI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612

8. 수지 인대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수부 MRI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616

9. 가관절수술 후 이상 소견에 근전도검사와 같이 시행한 하지 MRI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621

3. 이학요법 …… 625

1. 골절에 대하여 수술 후 시행한 단순 운동치료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627

2. 폐기능검사 결과, 정상소견에 시행한 폐질환운동재활치료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635

4. 처치료 …… 639

1. 수술부위 단순처치와 같은 날 실시한 M0134 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 배액감시 및 처치료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641

2. 객담배출이 어려운 환자에게 시행한 M0045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1일 2회 산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646

3. 족지절단술 후 시행한 M0583 고압산소요법(2시간 초과)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651

5. 수술료 …… 655

1. 동일 마취하에 진료과를 달리하여 골수염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식피술을 N0175 부분층피부이식술-기타(25㎠)×100% 산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657

2. 욕창 조직 제거 및 근피부피판술 후 산정한 S0166 근피부피판술 및 N0234004 연부조직종양적출술(제2수술)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662

3. T12 골절에 시행한 N0468 척추후방고정술(T11-T12-L1)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667

4. 요추후방고정술(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 시 시행한 N1493004 추간판제거술(요추, 제2수술)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672

5. 수지 절단에 혈관성형술, 신경봉합술,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후 산정한 N0588 사지접합술(수지)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677

6. 제2,3,4 족지 다발골절에 시행한 N0605 사지골절정복술(수족지)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681

7. 기왕병력(당뇨)이 있는 환자에게 요골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후 산정한 N1611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요골-복잡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685

8. 경골 가관절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N0977004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690

9. 경골 가관절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N0977004 비골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694

10. 산재보험 요양승인전 원위요골골절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한 재해자에게 산재보험 요양승인 후 시행한 체외금속기기제거술(N0983*50%)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698

11. 양측 요골골절에 각각 시행한 N2073 인공관절전환술(주관절)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702

12. 손목 수근관이완술 및 활액막절제술 후 산정한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 및 N0708 사지관절절제술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707

13. 원위 대퇴골골절에 관절경하 brisment, screw removal 수술 후 산정한 N0710 사지관절절제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711

14. 종골골절에 대하여 족근동 접근법에 의한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후 산정한 N0931001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제2의 수술)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716

15. 변형브로스트롬술 시행한 후 산정한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720

16. 전방십자인대재건술과 동시에 시행한 전외측인대재건술(N0932004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725

17. 회전근개봉합술과 동시에 시행한 이두근 고정술에 대한 수술료 N0941004 건박리술(제2수술)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731

18. 지동맥 혈관성형술 다음날 시행한 혈전제거 및 혈관문합술에 대한 O2056 혈전제거술(동맥-기타)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737

19. 수지 접합수술 후 발생한 신경종에 대한 절제술 후 산정한 S4615 신경종양절제술(양성)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741

20. 고막성형술과 동시에 산정한 S5635004 고실개방술(제2수술)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745

6. 재료대 ····· 749

1. 화상전문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처방한 압박옷 2개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751

2. iliac bone graft, donor site의 통증 예방을 위해 삽입한 ANTIBIOTIC BONE CEMENT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754

7. 기타 ····· 759

1. 임플란트 시술 전 완전 무치악상태에서 장착한 임시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761

2. 하악의 보철 재제작에 따른 상악 완전틀니 재제작 비용 및 산재 승인상병이 아닌 부위에 시술한 임플란트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766

3. 진료비 부당이득 결정(위탁업체 소속의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언어치료 비용)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770

4. 청구 시효가 도과된 진료비가 일부 포함되어 반려된 진료비에 대하여 재청구 시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777

I

최초요양/유족(사고)

1. 작업 중 사고
2. 출퇴근 중 사고
3. 출장 중 사고
4. 행사 중 사고
5. 휴게시간 중 사고
6. 재해 경위 불분명
7. 기타 사고

1

작업 중 사고

1 »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하던 중(도로교통법 위반)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여 청색 신호에 직진주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이륜차의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중과실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9777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모터스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6. 26. 16:40경 강북구 ○○동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의 재해경위 및 사고원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법령위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대방에게도 본인과 비슷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임.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 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

4)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6)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장) 사본

7) 질의회시(보상계획부-5448, 2020. 10. 8.) 사본

8) 온라인법률자문 사본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0)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20. 6. 26. ○○로 ○○정류장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타고 20km로 운행하다 신호무시한 오토바이랑 부딪힘'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장 제2020-001333호, 2020. 9. 2.)

- 발생일시: 2020. 6. 26. 16:40
- 발생장소: 서울특별시 ○○구 ○○로 ***
- 사고유형: 차대차

- 사고원인: 유턴, 횡단, 후진 등 금지위반

- 사고내용: #1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2오토바이와 충돌한 교통사고임.

- 사고현장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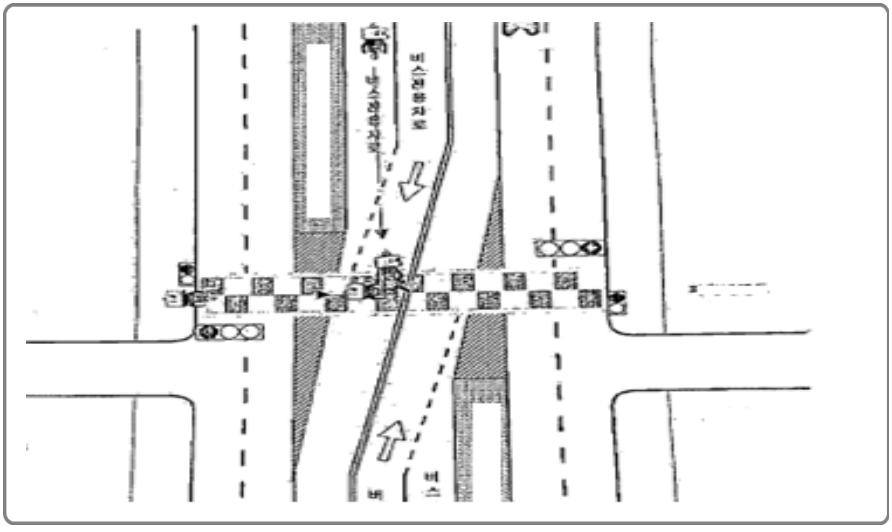

3) 교통사고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경찰서장 교통과-6259, 2020. 8. 31.)

- 사건종결 여부: 상호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함.

4) 공단본부 질의회시(보상계획부-5448, 2020 10. 8.)

- 재해자는 횡단보도로 차마가 횡단할 수 없음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적색신호에 횡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8조를 위반하였고, 상대방 오토바이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은 위반한 사실은 있으나 청색 신호에 정상 진행하던 중으로 재해자의 오토바이가 무단으로 횡단하는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따라서 재해자의 법령위반 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5) 법률자문

- 횡단보도를 적신호에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것은 비록 12대 중과실는 해당하지 않지만,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판단됨. 상대방 오토바이도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한 잘못은 있지만 요양신청자의 범죄행위가 주된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움.

6) 원처분기관 판단

-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의 재해경위 및 사고원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법령위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은 2020. 6. 26.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청구인 관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20. 6. 26.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구 ○○동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청색 신호에 정상 진행 중인 상대방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횡단보도 무단 횡단이라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임. 따라서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청구인은 2020. 6. 26.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구 ○○동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청색 신호에 정상 진행 중인 상대방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의 주된 원인이 청구인의 횡단보도 무단 횡단이라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임. 따라서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오토바이 배달업무 후 복귀 도중에 신호위반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전 과중한 업무로 휴무없이 근무하며 피로가 누적되었고 복용하는 약기운으로 졸음운전을 한 것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0090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10. 2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8. 23. 20:17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 후 복귀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 좌측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골반 골절, 좌측 천골 골절, 요추 5번째 횡돌기 골절, 좌측 발목 열린상처, 양측 손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머리, 좌측 다리, 양쪽 팔)'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재해는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위법행위(중과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5년 전 중국집을 운영하다 경영악화로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양육까지 책임지는 상황이 되어 하루도 쉬지 않고 낡은 100cc 오토바이로 하루

12시간을 쉼 없이 일하다 보니 육십이 넘은 노구의 몸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평소 당뇨와 고혈압, 스트레스성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음. 사고 당시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폭주하여 배달이 지연되면서 몇 주간을 식사 시간도 거르고 휴식도 제대로 못 취하는 상태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감기몸살이 겹쳐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하여 복용 후 일을 하였음. 경찰 조사결과 신호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사고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피로 누적과 감기약 복용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경찰 조사에서도 의도적으로 신호를 위반하려는 생각이 있었다면 통상 빠른 속도로 교차로 구간을 통과하려고 하였을 것인데 너무 어이없게 오토바이가 천천히 교차로 앞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 졸음운전으로 판단된다는 조사관의 의견이 있었으며 상대 차량의 속도위반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임. 따라서 과중한 업무로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서 사고에 고의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 차량의 속도위반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 원인이 오로지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4) 원처분기관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6)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제2020-3861호) 사본

7)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 자료

8) 건강보험 수진내역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0)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적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재해경위

- 재해일시: 2020. 8. 23. 20:30
- 재해경위: ○○파출소에서 ○○광장 방향으로 가다가 □□사거리에서 SUV스포티지 차량과 사고가 발생됨

나)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관계 및 청구인 근로관계

- 사업장명(관리번호): ○○(***-**-*****-*)
- 성립일자: 2019. 7. 1.
- 사업종류: 퀵서비스업
- 청구인 입사일: 2020. 3. 12.
- 청구인 직종: (특수직종)퀵서비스기사
- 근무시간: 14:00~익일 02:00

다) 업무수행 중의 사고

- 사고시간: 업무시간 중
- 사고장소: 사업장 밖
- 사고원인: 신호위반

- 청구인 유선통화 내용: 2020. 10. 18.(일)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관이 보여주는 블랙박스에서 청구인이 졸음운전으로 사거리에서 신호위반하여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확인함. 경찰서 조사관으로부터 청구인이 가해자고 과실률은 가해자 100%라고 들었음

라) 조사자 의견

- 사고의 원인이 재해자의 주된 행위(신호위반)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의한 중과실 사고로 확인되는 바, 재해자의 요양급여신청서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의 법령에 근거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불승인 결정함이 타당

2)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제2020-3861호)」상 이 건 관련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발생일시: 2020. 8. 23. 20:17
- 발생장소: 경기 안산시 ○○구 ○○로 62
- 사고유형: 차대차
- 사고원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사고내용: #1이륜차량이 ○○지구대 방향에서 □□광장 방향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상 신호위반(졸음운전)하여 직진 주행 중 진행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속도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는 #2차량의 전면으로 #1이륜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2차량 규정 속도(30km/h)를 약 29~31km/h를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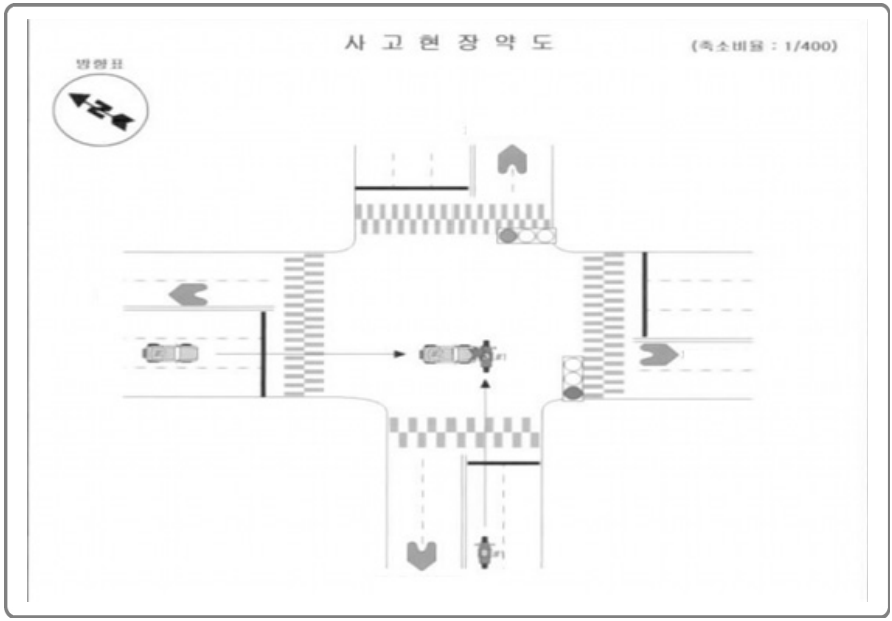

3) 청구인은 이 건 심사 청구 시 원처분기관에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사업장 '○○'의 기사근무현황[1)]
- 처방전(○○내과, 2020. 8. 19.)[2)]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제2020-3861호) 사본

4)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청구인은 2016. 11. 24. ~ 2020. 8. 19. ○○내과의원에서 상병명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확정된 당뇨병성 신장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등으로 44차례 진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기사근무현황 검토 결과 청구인의 근무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0. 5. 1. ~ 5. 31.(31일 근무), 2020. 6. 1. ~ 6. 30.(30일 근무), 2020. 7. 1. ~ 7. 31.(31일 근무), 2020. 8. 1. ~ 8. 23.(23일 근무)

2) 처방전 검토 결과, 처방 의약품은 칸타벨정 15.5mg(1정, 투약일수: 30일), 네시나정 25mg(1정, 투약일수: 30일), 졸피드정(1정, 투약일수: 28일)으로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최초요양급여신청 소견서, 2020. 8. 31.)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20. 8. 23.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과 충돌
-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좌측 둔부 통증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천골 골절, 요축 5번째 횡돌기 골절, 골반 골절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상병 인정. 요양기간 타당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20. 8. 23. 20:17경 배달 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다 진행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하는 상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호를 위반하긴 하였으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기재

되어 있고, 청구인은 평소 당뇨와 고혈압, 스트레스성 불면증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으며, 2020. 5. 1. ~ 2020. 8. 23. 근무현황을 보면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신호 위반 사고로 봄이 상당하며,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재해의 경우 오로지 청구인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에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여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근무지에 출근 후 보안키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자택이 아닌 장소로 보안키를 가지러 가다가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업무 준비 과정의 부수적인 행위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3431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3. 19.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1. 26. 07:00경 남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출발하여 도보로 ○○초등학교에 도착하였으나, 학교 세콤키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중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로 상병명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을 진단받았다며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재해 당일 출발 장소가 자택이 아닌 남편이 운영하는 이발소이고, 이발소가 자택에서 근무지까지의 경로상에도 있지 않으며, 이발소에서 식사 해결을 위해 30분 이상 머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출퇴근 중의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남편의 이발소에서 05:00~20:00 모든 일(아침, 점심, 저녁 끼니까지)을 해결하는데, 05:00에 이발소에 도착하여 아침 식사와 영업 및 출근 준비를 한 후 학교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도 이발소로 와서 남편의 영업을 도와주고 자택으로 돌아와서는 잠만 자는

생활 형태이며, 재해일에도 일상대로 이발소에서 출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자택에서의 출근이 아니라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6) 근로계약서 사본

7)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

8) 확인서(청구인, 사업장) 사본

9) 의무기록지 사본

10) 이발소 사진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9. 3. 1. ○○초등학교에 채용되어 문단속 및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7:30~08:40(문단속), 08:40~11:40(청소), 16:40~17:30(문단속)이다.

2) 청구인은 2019. 11. 26. 07:00경, 남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출발하여 도보로 ○○초등학교에 도착하였으나, 학교 세콤키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중 미끄러져 넘어진 재해로 상병명 '우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골절'을 진단받았다.

3) 청구인은 통상적으로 자택(○○ ○○군 ○○면 ○○로 ***-**)에서 05:00경 출발, 남편의 차량(3분 소요)을 이용하여 남편이 운영 중인 이발소(○○ ○○군 ○○면 □□로 **)에 도착한 후 아침식사를 하고, 영업 및 출근 준비를 한 후 07:00경 출발, 도보(10분 소요)로 근무지인 학교(○○ ○○군 ○○면 □□로 **-*)로 출근한다. 청구인은 퇴근 후에도 이발소로 와서 남편의 영업을 도와주고 20:00경 자택으로 돌아온다. 이에 청구인은 "남편의 이발소에서 05:00~20:00 모든 일(아침, 점심, 저녁 끼니까지)을 해결한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일에도 이발소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였으나, 학교 세콤키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다시 이발소로 되돌아가는 중 재해를 당하였다.

4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초등학교 소속 근로자로서, 2019. 11. 26. 07:00경 남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출발하여 도보로 근무지인 ○○초등학교에 도착하였으나, 학교 세콤키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다시 되돌아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것으로, 청구인은 ○○초등학교에서 문단속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근무지에 도착한 이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교 세콤키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가지러 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도 포함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통상의 방법으로 출근하였는데, 자택에서의 출근이 아니라는 사유로 요양 불승인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초등학교에서 문단속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사고 당일 근무지에 도착한 이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교 세콤키를 두고 온 것을 확인하고 이를 가지러 가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이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또는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병원에서 청소 업무 수행 중 재활용 자재 매매를 위해 사업장 인근 고물상으로 이동하여 재활용 자재 하차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무시간 중 근무지 외 장소에서 일어난 사적행위 중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7630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병원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2020. 7. 3. 11:30경 폐기물을 싣고 고물상으로 가서 하차 정리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상병명 "우 슬관절 염좌 및 슬내장증, 우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 탈출증"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지정된 근무장소가 아니며,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사적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입사 첫날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모든 작업지시를 반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동료들과 같이 분담된 일을 하였다. 회사의 다른 직원이 작업지시나 작업범위를 지정해 준 일이 일체 없다.

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반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 동료들과 같이 때로는 반장과 함께 입사 첫날부터 계속하던 일이었다. 분리수거 처리 하는 일은 다른 동료들이 과거 수년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해왔던 일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한 번도 회사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회사의 그 어떤 사람도 다르게 지시 한 일이 없다.

다.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회사 일을 하였던 것임으로 사업주가 지시한 일이 아니고, 지정한 장소가 아니고, 임의로 했다는 이유 때문에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

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5)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6) 재해사실 확인서(사업장) 사본

7) 이의제출서(청구인) 사본

8) 신청인 의견서 사본

9) 증거조사 조서(출장복명서)

10) 청구인 내원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사본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20. 7. 3. 11:30경 폐기물을 싣고 고물상으로 가서 하차 처리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위 재해와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다.

가) 보험가입자 재해사실 확인서(2020. 7. 22.)

- 입사일자: 2019. 3. 5.
- 담당업무: 병원 청소
- 재해경위: 2020. 7. 3. 11:50경 병원 옆 고물상에서 폐기물 박스 하차 처리 중 넘어짐
- 재해 이후 보고내용: 2020. 7. 3. 12:10경 반장에게 보고
- 재해 당시 목격자: 동료근로자 주○○
- 폐기물 처리관련: 사업주는 폐기물을 고물상에 처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병원 앞 도로가에 배출해도 되는 사항임에도 근로자들이 여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동 배출한 것으로 사료됨.

나) 이의 제출서, 신청인 의견서(청구인, 2020. 7. 28.)

- 청구인이 입사 이전부터 현재까지 통상적으로 재활용은 고물상에 배출해 왔으며, 재활용을 인도에 폐기할 경우 그 분량이 많아서(1일 평균 리어커 2~3대 분량) 보행인의 통행 장애를 줄 뿐 아니라, 1층 상가에도 피해를 초래 함.
- 원래 폐기물 전문 담당 직원이 있었으나, 우렁각시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청소 직원들에게 맡김으로 업무량이 많아지고 힘에 부쳐 사고가 발생한 것임.
- 사고당일에는 걸을 수가 없어서 승용차로 ○○정형외과에서 응급진료

다) 원처분기관 판단

- ○○고물상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다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가 지시한 청구인의 지정된 근무장소가 아니며,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임의적으로 사적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불승인.

3)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대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면담 내용

- 재활용 수거 및 처리: 병원내 각층에서 배출된 재활용을 수거해서 동료직원들과 같이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1일 평균 약 2~3천원을 지급 받았음. 입사 이후 몇 일이 지난 후 재활용을 왜 가져다 파는지 알게 되었음.

나) 미화반장 및 미화원 박○○ 면담 내용

(1) 재활용 수거 및 처리

- 당초에는 재활용 및 쓰레기는 병원 1층 지정된 장소에 배출시 부천시에서 정해진 요일에 수거 하였으나, 이때 재활용의 경우 인근 고물상에서 무료로 가져가면서 커피 한잔씩을 사줬다고 함. 그러던 중 퇴사한 직원이 제안을 하였고,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다주면 돈을 주는데 왜 버리냐고 하여, 그때부터 미화원들이 동의하여 직접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금원을 지급 받았다고 함.

(2) 재활용을 ○○고물상에 매매한 사유

- 재활용 매매에 대해 병원 및 용역 업체에서 지시한 적도 없고, 전혀 알지 못하며, 미화원들이 돈이 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했던 일이라고 함.

(3) 재활용 비용 사용처 및 정산

- 해당 비용으로 미화원들이 공용으로 간식, 커피 등을 구매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는 매월 말에 미화원들과 똑같이 정산을 하여 분배하였고, 해당 금액은 각 약 2~3만원 정도임.

(4) 재활용 매매 이동시간

- 오전에 정리한 재활용을 수거해서 11:30경 ○○고물상으로 이동

(5) 사고 이후 회사측 재활용 매매관련 제재 여부

- 사고 이후 용역 업체에서 ○○고물상 재활용 매매를 제재하였으나, 돈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하자고 하여 현재도 하고 있다고 함.

다) 병원과 ○○고물상 이동거리 및 이동시간(네이버 발췌)

- 이동거리는 도보로 약 170m, 도보 약 2분

라) 보험가입자측 김○○ 유선확인(2020. 9. 21. 17:05)

(1) 청구인 사고 이전 재활용 매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별도로 제재를 한 적은 없음.

- 위험한 일도 아니고, 미화원들이 간식비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2) 사고 이후 재활용 매매 제재 여부

- 미화원들이 재활용 매매로 인해 문제가 발생시 미화원들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제재를 하였음.

(3) 재활용 수거 업체

- 시에서 정해진 요일에 수거하기 때문에 수거업체를 별도로 계약한 회사는 없음.

4) 의무기록지 확인(□□정형외과, 2020 7. 6.)

- 근무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침

- L-spine MRI / Rt Knee MRI

- Rt knee pain, Low back pain, Rt ankle pain

5)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 12. 2. ~ 2011. 12. 17.(10회 진료)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2. 2. 13. ~ 2012. 4. 5.(25회 진료) 기타관절의 원발성관절증, 발목 및 발, 중족골통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주식회사○○케어 소속근로자로 □□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사고는 2020. 7. 3. 11:30경 ○○고물상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고 당일 근무장소를 벗어나 고물상에 가게 된 경위를 보면 소속사업장이나 병원에서 재활용 매매를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병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및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가 있으나, 미화원들이 재활용 매매에 따른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임의로 재활용 폐기물을 싣고 고물상까지 이동하여 가져다주고 금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간식, 커피 등을 구매한 후 매월 말에 정산을 하여 나머지 잔액은 미화원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무장소를 벗어나 사적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청소 업무를 수행한 던 중 사고이므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주식회사○○케어 소속근로자로 □□병원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사고는 2020. 7. 3. 11:30경 ○○고물상에서 재활용 폐기물을 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고 당일 근무장소를 벗어나 고물상에 가게 된 경위를 보면 소속사업장이나 병원에서 재활용 매매를 지시한 사실은 없으며, 병원에서 배출되는 재활용 및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별도의 지정된 장소가 있으나, 미화원들이 재활용 매매에 따른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임의로 재활용 폐기물을 싣고 고물상까지 이동하여 가져다주고 금원을 지급받아 왔으며,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공용으로 간식, 커피 등을 구매한 후 매월 말에 정산을 하여 나머지 잔액은 미화원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사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근무장소를 벗어나 사적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5 » 평소 앓고 있던 기저질환과 업무 중 머리에 가해진 충격으로 발생한 뇌출혈로, 지주막하 출혈이 양쪽 뇌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여 다발성 장기 부전 등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기저질환이 외상성 뇌출혈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209호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0. 15.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9. 5. 14. 지하 5층 기계실에서 동료근로자와 모터 펌프에 물을 채우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동료가 2~3분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28. 사망하였고,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2019. 6. 19.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① 고인의 최초 목격자인 동료근로자 진술상 잠시 2~3분 자리를 비운 사이 고인이 얼굴을 천장에 향하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119구급증명서에서 사고 및 질환이 '질병'으로 확인되는 점, ③ 자문의 소견상 영상자료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다고 한 점, ④ 경찰 검안의 소견상 관상동맥경화증과 관련하여 의식저하 또는 의식소실이 있어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위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여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합병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점 ⑤ 수사용 시체검안서상 선행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에 의한 것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판단한 점" 등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9. 10. 25. 청구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인은 10분 이상 쪼그려 앉아 수도꼭지를 조작하다가 작업이 잘 되지 않자 동료가 배전반 쪽으로 자리를 옮긴 사이 일어나서 몇 걸음으로 이동을 하다가 바닥에 물기가 있던 탓에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시선은 천장을 향해 있으며 방향은 배전반 쪽을 향해 누워 있던 점을 고려할 때 고인은 동료가 있던 쪽을 바라보며 뒷걸음질을 하다 미끄러진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장 시설관리업무 총괄 소장은 수도꼭지 작업 중 바닥에 물이 많이 생겨 미끄러운 바닥에서 동료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치다 미끄러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119 구급대원 활동일지에 따르면 고인은 이름을 간단히 말하고, 이름을 부르면 눈을 뜨는 등 어느 정도의 의식이 있는 것으로서 협심증으로 인해 의식 소실이 있었다면 상당한 흉통을 수반하였을 것임에도 별다른 증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고인은 2016년 협심증으로 인해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진행하였으나 수술 이후 일상생활 및 업무 수행에 있어 건강상의 지장은 전혀 없었다. 수술 후 2018. 3. 26. 심장혈관 조영술을 통해 상태가 양호하여 추가 스텐트 삽입 수술을 시행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하였고 사망하기 20일 전 마지막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 주치의로부터 별도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을 만큼 지병으로 건강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정도가 아니었다. 약간의 고혈압 증상(2019. 4. 22. 검진 기준 수축기 124, 이완기 84mmHg)이 있어(고혈압 전단계)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하여 왔고 콜레스테롤이 높아 최근 10년간 건강검진 기록 중 일부는 고지혈증 의심 소견을 받았으나 식이요법(저염식 등)과 운동으로 충분히 건강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음주는 거의 하지 않았고 흡연은 1일 반 갑 이내로 하였다. 평소 건강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간 두부와 관련된 수진내역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재해경위, 현장 상황, 동료근로자의 진술, 주치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인의 업무상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원처분기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중대재해조사서 사본

6) 사망진단서 사본

7) 재해이유서 사본

8) 목격자 진술서 사본

9) 119 구급증명서 사본

10) 시체검안서(수사용) 사본

11) 경찰 내사결과보고서 사본

12)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13) 의무기록 사본

14)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사본

15) 일반 건강검진 결과표 사본

16) 의학영상자료

1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8)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2019. 5. 28. ○○의원에서 발행한 고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수사용) 및 □□병원 사망진단서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사망일시: 2019. 5. 28. 21:44

나) 사망의 원인

(1) 직접사인: 다발성 장기부전

(2) (1)의 원인: 뇌경막하 출혈

(3) (2)의 원인: 지구력 상실 및 전도

(4) (3)의 원인: 허혈성 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

다) 사망의 종류: 병사

라) 검시 주요 소견: 허혈성심장질환(관상동맥경화증) 관련하여 의식저하(의식소실) 있어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위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 발생. 병원이송.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 합병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

2) 원처분기관의 중대재해조사서 상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 형태 및 업무 내용

(1) 고인은 2005. 8. 1.부터 시설관리업체 소속으로 ○○경찰청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8. 9. 1.자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 ○○경찰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

(2) 고인은 4조3교대제로 '오전조-오후조-야간조-비번'의 4일을 1사이클로 반복하여 근무함

(3) 주요 업무내용은 냉·난방시설 점검 및 보수, 수도관 등 이상 점검·보수, 야간 순찰 등임

나) 재해경위

(1) 목격자 이○○ 진술(2019. 5. 29.) 고인과 함께 모터 펌프에 물을 채우는 작업을 계속 하였음에도 물탱크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작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고인에게 수도꼭지를 잠그라고 지시하고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8m 떨어진 전기 판넬로 가서 전기스위치를 변환시키고 현장에 돌아와 보니 고인이 아무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천장을 바라보며 쓰러진 채 누워 있었음.

(2) 내사결과 보고(○○경찰서, 2019. 6. 26, 일부발췌)

- 현장 입장 시 상황: '외인사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형사4팀장 외 1명은 2019. 5. 28. 22:16경 ○○구 ○○로 □□병원 5층 중환자실에 도착하여 변사자 확인.

- 주치의사 진술: 처음 변사자의 상태는 의식과 반응이 전혀 없는 기면상태였으며, CT촬영 결과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급히 뇌압을 낮추는 개두수술을 진행하였으나 점점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나빠지면서 2019. 5. 28. 21:44경 최종 사망.

- 유가족 진술: 담당 주치의로부터 변사자의 뒤통수 쪽에 혹이 발견되었고, CT촬영 결과 뇌에 출혈양이 많아 뇌 전체에 피가 찼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음. 변사자는 3년 전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였으며, 수술 이후 혈압이 높아 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이 외에는 건강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술은 10년 전부터 끊어 거의 마시지 않은 채 흡연만 약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함.

- 의견: 당시 변사자는 작업근무 중 예전부터 앓고 있던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해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져 바닥에 뒤통수 부위를 충격 후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며, 병원에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고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3) 담당자 조사

- 현장 출장 조사: 2019. 9. 6. 사업장 출장하여 최초 목격자인 동료근로자 확인 결과, 고인은 호스가 연결된 수도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수도꼭지(바닥에서 약 50cm 높이)를 여닫는 작업을, 동료근로자는 호스 끝을 모터펌프에 연결하여 물을

주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물탱크에 물이 차지 않자 동료근로자가 작업을 중단시키고 잠시 전기배전반에 확인하러 갔다 온 사이(2~3분)에 고인이 쓰러진 채로 바닥에 있었음. 당시 고인은 운동화를 착용한 상태였고, 쓰러진 장소는 평지로 수도가 있어 물기는 있었을 수 있으나 추락 등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는 아닌 것으로 확인됨.

- 담당 경찰 확인: 2019. 10. 14. 사건 조사 경찰 유선 확인한바, 사고 당시 정황, 현장 사진, 검안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고사'가 아닌 '병사'로 판단하였다고 함.

3) □□병원의 응급기록지(2019. 5. 14.) 상 확인되는 고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가) (C/C) 1. syncope

나) (질병여부) 질병

다) (현병력) 상기 환자는 2019. 5. 14. 10:32부터 발생된 상기 주증상으로 내원함. M/59 상기 HTN(○○의료원), angina(+, 5YA, stent+, ○○의료원) 기왕력 있는 자로 2019. 5. 14. 오전 10시 30분경 직장 기계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119 통해 본원 응급실 내원함. SAH, sylvian fissure, Lt, aSDH on F-T-O, both 소견 보임.

라) (추정진단) subdural hemorrhage

4) ○○대학교의 의무기록지(2017. 1. 19.) 상 확인되는 고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가) 시술명: CAG and PCI

나) Finding & Procedure: 시술부위를 소독한 후 2% lidocaine으로 피부마취하였음. right femoral artery의 pulse를 확인하여 micropuncture needle하였음. Hair wire, 6Fr sheath를 insertion 하고, guidewire를 이용해 catheter를 insertion 하였음.

다) 2017.1.19. CAS: 50% RCos&moRC, 65% mLA. 50% dLA

라) 90% OM ⇒ *.PCI OM(os full) 3.0x28 UM(3.2 NC)

5) 고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상 확인되는 진료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최근 10년간 '척추협착, 좌골신경통, 천공이 있는 급성위궤양, 기타명시된 관절염, 상세불명의 협심증, 급성심내막하 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신경증성장애, 상세불명의 고질혈증' 등의 진료내역이 확인됨.

나) 2017년 이후 '협심증'에 대한 진료 이력

- 2017. 1. 16. 상세불명의 협심증(□□의원)
- 2017. 1. 17. 급성심내막하심근경색증(△△병원)
- 2017. 1. 17. 상세불명의 협심증(◇◇병원)
- 2017. 1. 18. ~ 2019. 3. 6.(16회) 불안정협심증, 상세불명의 협심증(○○병원)
- 2017. 1. 18. 상세불명의협심증(△△의원)

6) 고인에 대한 사망 전 2년간의 건강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일반건강검진 결과(2018. 7. 9.)

- 신장 164.6cm, 체중 64kg, 혈압 124/77mmHg, 공복혈당 95g/dl
- 정상B

나) 일반건강검진 결과(2019. 4. 22.)

- 신장 164.7cm, 체중 64.6kg, 혈압 124/84mmHg, 공복혈당 133g/dl, 총콜레스테롤 205mg/dl, HDL-콜레스테롤 41mg/dl, 중성지방 116mg/dl, LDL-콜레스테롤 140mg/dl
- 일반 질환의심(의심 질환: 당뇨병 의심, 유질환: 고혈압)

7) 119구급일지 상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환자 증상: 의식장애

나) 환자발생유형: 질병(미상)

다) 환자 평가

(1) 의식상태(V), 동공반응【좌(정상, 반응), 우(정상, 반응)】

(2) 활력징후(시각:10:46): 혈압 166/98mmHg, 맥박 61회/min, 호흡 12회/min, 체온 36℃, SpO2 98%, 혈당체크 180mg/dl.

(3) 구급대원 평가 소견: 건물 지하5층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며, 현장 도착 시 누워있고 호흡, 맥박 있는 상태. 부르면 눈을 뜨나 이름만 간단히 말하는 등 명확한 의사소통 되지 않음. 뚜렷한 외상흔적 보이지 않음. 움직이지 못하고 의사소통 힘들어 뇌졸증 평가 시행하지 못함. 의료지도 하 현장에서 IV 실시하고 N/S 500ml 투여함. AED 적용하고 EKG 시행한 바 특이사항 보이지 않음. 산소 10L투여하며 이송함.

4 전문가 의견

가. 소견서(□□병원, 2019. 5. 17.)

1) 병명: Traumatic subdural haemorrhage, without open intracranial wound

2) 소견: m/59 상기 남자 환자 HTN. Angina s/p PCI 기왕력 있는 환자로 2019. 5. 14. 10:30경 직장 기계실에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 상 상증 확인되어 응급 수술(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 후 중환자실 집중치료 중인 환자로 지속 치료 경과관찰 요함. 상기 환자 의식수준 stupor로 직접관련서류 찾으러 갈 수 없는 상태임.

나. ○○병원(진단서, 2020. 1. 15.)

1) 병명: 상세불명의 협심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2) 소견: 2017. 1. 19. 심장혈관스텐트삽일술을 시행한 자로 이후 흉통으로 응급실로 내원하여 2018. 3. 26. 심장혈관조영술에서 재협착 소견 보이지 않았으며 좌선하행지 65% 협착 소견 보이나 관상동맥 분획혈류예비력 검사 결과 0.82로 상태 양호하여 추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지 않았음. 이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하시다가 2019. 5 .8. 외래 마지막으로 2개월치 약 처방 후 본원에 방문하지 않았음.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2019. 5. 14. 10:30경 수도꼭지 앞에 앉아 조절하고 있다 잠시 후 반드시 누워 의식이 떨어진 채 호흡만 한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경막하출혈 진단 하에 수술 받고 치료 중 2019. 5. 28. 사망하였음. 경찰의 과학수사결과 고도의 관상동맥협착으로 허혈성 심장마비로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쳐 뇌경막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이 발생되어 이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추정하였음. 이와 함께 영상소견 또한 지주막하출혈, 뇌경막하출혈의 양이 몇 분 사이에 의식이 저하되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고 재해 장소가 재해 직전 추락 등 심한 외상을 초래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판단하기 어려움

2) 자문의 2: 고인 사망 후 검안 소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의식 저하되어 넘어지면서 뒤통수 부위 충격으로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됨. 따라서 외상성 뇌출혈은 작업 중 미끄러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심장질환으로 쓰러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상성 뇌출혈이 아닌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 또한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양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는 점도 이러한 출혈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기 어려움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2호

다.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라.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2019. 5. 14. 업무 수행 중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함. 고인은 2017. 1. 19. CAG and PCI 시술을 한 후 지속적인 심장약 복용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개인적 기저질환인 심장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며, 재해발생 당시 쓰러진 사유는 명확하지 않고 두개골 골절도 확인되지 않으나 지주막하 출혈이 과다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전두부에 출혈성 뇌 좌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외상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머리에 발생한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 청구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더 빠르게 진행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양쪽 뇌에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 합병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별표에 따라,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업무상의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또는 요양 중의 사망일 경우에는 승인상병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사망과 관련된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일반인 수준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고인의 협심증은 사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므로 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인은 2017. 1. 19. CAG and PCI 시술을 한 후 지속적인 심장약 복용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개인적 기저질환인 심장 상태는 양호했던 것으로 보이며, 재해발생 당시 쓰러진 사유는 명확하지 않고 두개골 골절도 확인되지 않으나 지주막하 출혈이 과다하고, 뒤로 넘어지면서 전두부에 출혈성 뇌 좌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외상이 먼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머리에 발생한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 청구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더 빠르게 진행되어 지주막하 출혈이 양쪽 뇌에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다발성 장기 부전 등 합병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출퇴근 중 사고

1 » 주민등록증상 주소지(농사를 짓는 농막)가 아닌 자녀와 거주하는 실제 주거지에서 출근 도중 발생한 재해로 실제 거주지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아 출근중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0176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10. 2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9. 7.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미끄러져 넘어짐. 차량이 발목을 밟고 지나감'이라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4번 늑골골절, 좌측 발목의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연고지 주거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사고 당일은 아들 집에서 출근 중 ○○동 ○○ 옆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바, 아들의 집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취업을 위한 근거지인 주거로 볼 수 없고, 그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창원시 마산 ○○구 ○○동에서 살고 있다. 주소는 경남 ○○군 ○○면 ○○리에 있는 청구인 소유 과수원에 두고, 가끔씩 일을 하다 늦으면 농막에서 자고 직장에 출근할

때도 있으나, 농막은 샤워시설과 냉난방이 되지 않아 겨울 한파가 올 때는 영하 15도까지 내려가고 여름에는 38~39도까지 오르며, 화장실도 이동식 간이 화장실이라 불편하다. 청구인은 □□로(○○동) ***번지 3층 본인 집에서 거의 출근한다. 아들 내외는 2층에서 산다. 사고 전일 9월 6일은 태풍이 온다고 해서 과수원 일을 멈추고, 아들 내외와 손주도 볼 겸 ○○동 집으로 왔다. 사고 당일 9월 7일에 ○○동에서 출근하기 위해(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 17km, 30분 소요) 본인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걷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그때 지나가던 차량이 멈추지 않고 발목 위를 밟고 지나간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후 산업재해 신청을 하였으나 주소지인 ○○군 ○○면 ○○리에서 출근하지 않고 마산 ○○구 ○○동에서 출근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처분 받았다. 청구인의 주소가 비록 ○○군으로 되어있지만 아들 내외는 ○○동 건물 2층에서 살고, 청구인 내외는 3층에서 살고 있다. 평소 청구인 자택 인근인 ○○성당 및 인근 지인들의 확인내용, 농막의 상황을 촬영한 사진 등을 참고하여 신청 상병을 업무상재해로 승인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를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6)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20. 9. 7.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미끄러져 넘어짐. 차량이 발목을 밟고 지나감'으로 확인된다.

2)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근로계약 관계

- 소속사업장: ○○(○○군 ○○읍 ○○로 *** □□)
- 채용일자: 2020. 2. 10.
- 담당업무: 공공산림가꾸기
- 근로시간: 09:00~18:00

나) 사고경위

- 사고일시: 2020. 9. 7.(월) 07:40
- 사고경위: 횡단보도 지나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짐. 차량이 발목을 밟고 지나감

다) 사업주 확인서 내용

- 사고 후 사고 차량으로 ○○병원 이송

라) 청구인 확인서 내용

- 평소 ○○리 **-**번지에서 차량으로 출퇴근
- 거주지 주소 "○○군 ○○면 ○○리 **-**"로 기재됨
- 출근 전날 자녀 집에서 숙박한 이유는 "2020. 9. 6. 일요일이라 손녀 세 명과 이번에 출생한 손자가 보고 싶어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 가게 됨"으로 기재됨
- ○○동 자녀의 정확한 주소는 "○○동 □□로 ***번지 2층"

마) 거주지 확인 자료

- 청구인 주민등록표 초본
  - 경남 창원시 마산○○구 □□로 ***, 2011. 11. 29. 전입
  - 경남 ○○군 ○○면 ○○1길 **-**, 2013. 8. 8. 전입

- 4대보험 가입자 정보 상 주소지

  • 경남 ○○군 ○○면 ○○1길 **-**

3)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자료 내용

가) 창원시 마산○○구 □□로 *** 3층 사진(평소 마산○○구 □□로 *** 3층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농막은 가끔 사용함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

- 농막 안, 농막 간이 화장실 사진

- ○○동 □□로 ***번지 3층 청구인 신발이 있는 신발장, 거실, 주방, 안방에 있는 청구인 옷, 안방, 화장대, 작업복 사진

나) ○○성당 미사 참석자 인명록 제출

- 2020. 10. 17.(토), 10. 25.(일), 10. 27.(화), 10. 29.(목), 11. 4.(수), 11. 5.(목), 11. 7.(토)

다) 청구인의 ○○동 성당의 등록내용

- 1972. 5. 20. 세례성사

- 주임사제의 “청구인은 ○○동 □□로 ***번지에 거주하면 주일미사, 평일미사에 참석하는 ○○성당 신자임”을 확인하는 내용 자필 기재

라) 마산○○구(○○동) □□로 ***번지 3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지 인근 ○○가구 김○○, 통장 류□□, □□마트 선△△ 이 제출

4)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의무기록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병원 간호정보 조사지 상 “9. 7. ○○동 ***-85번지 골목 횡단보도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자동차 바퀴가 발위로 지나감”으로 기재

5)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담당 심사장이 추가 확인을 위한 청구인과의 통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3. 8. 8. ○○군 ○○면 ○○1길 **-**로 전입신고한 이유는 청구인 벌꿀, 아로니아 등 농사를 짓고 있음. ○○군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비료 등 구매에서 ○○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군은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어 주소지를 이전한 것임
- 평소 주중 거주지는 마산○○구(○○동) □□로 ***번지 3층임. 농막은 가끔 일이 늦게 끝나거나,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곳임
- 2020. 9. 7. 교통사고 전 성당 미사기록은 파기되어 제출이 어려움. 코로나 때문에 기록한 것이며, 한 달이 지나면 파기됨. 대신 주임 사제의 자필 확인서를 제출한 것임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주소가 경남 ○○군 ○○면 ○○1길 **-**가 주소로 되어있으나 이는 본인 소유 과수원이 있는 곳으로 가끔씩 일을 하다가 늦으면 농막에서 자고 직장에 출근을 할 뿐, 실제 거주지는 경남 창원시 마산○○구 □□로 *** 3층에 거주하였고, 이곳에서 직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본인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 중 넘어진 본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함.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는 경남 ○○군 ○○면 ○○1길 **-**로 확인되나, 이는 ○○군으로부터 비료 등 구입용 지원과 고령자 취업지원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소를 2013년에 이전한 것으로 판단될 뿐, 벌꿀, 아로니아 등 농사를 짓고 있는 농막으로서 주거할 수 있는 곳으로는 볼 수 없고, 사고 지역의 주소지(경남 창원시 마산○○구 □□로 ***)는 청구인의 신발, 거실,

주방, 안방에 있는 옷, 작업복 등이 있으며, 지인들을 통해 평일 성당미사에 참석하는 신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사실 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취업을 위한 근거지인 주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재해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평소 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에서 출근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마땅히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는 경남 ○○군 ○○면 ○○1길 **-**로 확인되나, 사고 지역의 주소지(경남 창원시 마산○○구 □□로 ***)는 청구인의 신발, 거실, 주방, 안방에 있는 옷, 작업복 등이 있으며, 지인들을 통해 평일 성당미사에 참석하는 신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사실 상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로서 취업을 위한 근거지인 주거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생일을 맞아 부모님 집에서 1박을 한 다음날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통상의 주거지를 벗어난 곳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6306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4. 6. 안양시 집에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공항신도시 JC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흉추 12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를 진단받고 2020. 3. 2.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① 청구인은 평소 거주지(서울 ○○구 소재)에서 회사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사고 당일이 청구인의 생일이어서 전날(2017. 4. 5.) 가족식사를 위해 부모님 집(경기도 안양시 ○○구 소재)을 방문하여 하룻밤을 머무른 뒤 다음 날 부모님 집에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재해를 입었고, ② 재해 당일 출근의 출발지인 부모님 집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지로 볼 수 없어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부모님 집에서 자차로 출근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주거'의 의미를 주민등록상 등록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주민등록은 한 곳에만 등록할 수 있고 부모님 집과 다른 거주지(전세)의 두 곳을 주거로 이용할 경우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집에 주민등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은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주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의 출근길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근지 중간에 위치한 거주지에서의 출근만 인정된다고 설명하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부모님 집에서의 출근 거리와 소요 시간이 거의 유사하여 필요에 따라 양쪽을 모두 주거로 이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상황이다.

또한 원처분기관은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시행문에서 '부모님 집은 고객님이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인 주거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일주일에 부모님 집에서 2~3일, 주민등록상 집에서 4~5일씩 수년째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모님 집도 주거로 인정하여 산재로 승인하라고 주장한다.(카드사용 내역 등 증빙 가능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원처분기관의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문서 사본

4) 최초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5)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청구인) 사본

6) 의무기록지(○○대학교 ○○성모병원) 사본

7) 의학 영상자료

8)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사본

9) 자동차보험 사고확인서[2020. 3. 9. 발행 ○○손해보험(주)] 사본

10) 교통사고 사건기록 제공요청 회신(2020. 3. 13. ○○경찰서 교통정비과-3094) 사본

1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12)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13) 청구인의 추가 제출자료[카드 매출(하이패스 청구 포함) 기록]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5)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경위 및 치료경과

가)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청구인은 2017. 4 .6. 08:20경, 안양집에서 출근을 위해 자가용으로 운전하던 중 공항신도시 JC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 발생함.'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자동차보험사[○○손해보험(주)]가 2020. 3. 9.자로 발행한 자동차보험 사고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량번호: 27모****
- 피보험자: 강○○
- 운전자: 강□□
- 관계: 자녀
- 사고일시: 2017. 4. 6. 08:30

- 사고장소: 인천 중구 ○○동 인천대교 공항방향 신도시분기점 램프 부근
- 사고유형: 차량단독
- 사고내용: 자차 출근길 인천대교에서 신도시분기점 램프 구간 진행 중 빗길에 차량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 충돌
- 치료병원: ○○학원 ○○대학교병원
- 주 진단명: 흉골 골절
- 보험금 지급내역: 지급치료비 1,384,780원

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건기록 제공요청 회신(2020. 3. 13. 교통정비과-3094)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요청대상자: 강□□
- 사고일시 및 장소: 2017. 4. 6. 08:25경 인천 중구 ○○동 공항JC에서 공항방면 빠지는 도로

라) 이 사건 재해 후 청구인이 2017. 4. 6. 내원한 ○○대학교 ○○성모병원의 응급의료센터기록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원일시: 2017. 4. 6. 09:23
- 발병일시: 2017. 4. 6. 08:24
- 퇴실일시: 2017. 4. 6. 19:55
- 손상기전: 교통사고-차량
- C.C) low back Pain
- P.I: 환자 금일 오전 08:24 인천공항 톨게이트 지나 커브길에서 자차 미끄러져 도로 바깥쪽 가드레일에 부딪혀 119통해 본원 내원함.

2) 출퇴근 재해에 대한 조사 내용

가) 청구인이 2020. 2. 22.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고유형 등: 출근 중 교통사고
- 출발장소: 경기 안양시 ○○구 □□로 ***번길 ** □□아파트
- 사고장소: 인천 중구 ○○동 공항신도시 JC
- 도착(목적)장소: 인천 △△로 ***번길 ** ○○공사

나)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자료상 확인되는 청구인의 소속 사업장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명: ○○공사
- 소재지: 인천 △△로 ***번길 **
- 산재보험 사업종류: 항공운수지원서비스업
- 산재보험 성립일: 1994. 9. 1.

다)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자료(취업 및 영업이력)상 청구인은 2014. 12. 15. 부터 소속 사업장(○○공사)에서 고용보험 자격 취득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요 주소 이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5. 2. 8.까지: 경기 안양시 ○○구 □□로***번길 ** □□아파트 ***동 ***호 (부모님 집)
- 2015. 2. 9. (전입) 인천 중구 △△로 *** 소재
- 2016. 8. 3. (전입) 서울 ○○구 ◇◇로 ***, ***호(재해 당시 거주지)
- 2018. 11. 1. (전입) 서울 △△구 ☆☆대로 **번길 **-**, ***호

마) 청구인의 재해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7년에 '서울특별시 ○○구 ◇◇로 ***, ***호(◇◇동)'에서 혼자 거주하며 인천 중구 ○○동에 위치한 ○○공사(회사)로 출퇴근을 하였고, 2017. 4. 6. 출퇴근 사고 당시 출발지는 경기 안양시 ○○구 □□로***번길 **(□□동) □□아파트 ***동 ***호로 부모님 댁임.

- 사고 당일(2017. 4. 6.)이 청구인의 생일이라 전날(2017. 4. 5.) 경기 안양의 부모님 집으로 가서 가족식사를 하고 하룻밤 잔 뒤에 2017. 4. 6.에 회사로 출근하다가 사고남.

-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2017년에는 주말에는 안양 부모님 댁에 가있을 정도로 자주 갔다고 함.

-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2017년 재해 당시 서울 특별시 ○○구 소재 주소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음.

바) 인터넷(다음 카카오) 지도 확인상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영종도 공항신도시JC 지점은 청구인의 거주지(서울 ○○구)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경로와 부모님 집(안양 ○○구)에서 회사로 출근하는 경로가 합류되는 지점으로 파악된다.

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담당 심사장이 2020. 9. 9. 청구인과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7년에 1주일에 2~3일(주로 주말이나 평일도 포함) 정도는 안양 부모님 집에 갔었고, 서울 거주지나 안양 부모님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비슷하여 부모님 집에서 자고 다음날 출근하거나 서울 거주지로 와서 직장으로 출근하였음.

- 안양 부모님 집에서 출근한 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도로공사에 2017년도 하이패스 기록을 확인 요청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여 기록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음.

- 2017년에 개인 신용카드 내역상 안양 부모님 집에서 사용한 기록은 있을 것이므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수일 내로 제출하겠음.

아) 청구인은 2020. 9. 18.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추가 자료로 다음과 같은 개인 카드 매출(하이패스 청구 포함) 자료를 제출하였다.

- 삼성카드 매출기록: 2016. 12. 18. ~ 2017. 3. 10. 안양 부모님 집 근처(안양, 석수, 광명, 평촌)에서 총 43건의 사용 내역

- 국민카드 매출기록: 2016. 10. 30. ~ 2017. 4. 12. 안양 부모님 집 근처(안양, 석수, 광명, 평촌)에서 총 17건의 사용 내역(하이패스 청구 포함)

- 하나카드 매출기록: 2016. 11. 12. ~ 2017. 3. 18. 안양 부모님 집 근처(안양, 석수, 광명, 평촌)에서 총 22건의 사용 내역

자) 청구인의 신청 상병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영상 자료 확인하였으며 흉추 12번 압박골절, 경추 요추염좌 소견 확인되고 재해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8호(출퇴근)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의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3호(출퇴근 재해) [신설]의 나호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다. 산재보험 부칙 개정(제17434호, 2020. 6. 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출퇴근 재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6. 9. 29. 이후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

라. 산재보험법 부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시달(통상의 출퇴근재해 소급적용):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3172(2020. 6. 10.)

마.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근로복지공단 지침 제2017-48호)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

(주거의 개념)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住所) 또는 거소(居所)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함.

따라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모두 주거로 인정

① **(연고지 주거)** 노동자 홀로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 등과 함께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거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② **(비연고지 주거)** 연고지 주거와 취업장소간의 거리, 시간,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

- 근무지 근처에 숙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상당기간 출퇴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소

③ **(일시적 주거)** 근무 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 그 장소

-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연장근로 및 조기출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숙박하는 그 장소
- 신규부임, 전근 등의 근무사정이나 교통기관의 파업 및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두절로 연고지 주거에서 출퇴근이 곤란하여 숙박하는 그 장소
-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는 단기 취업노동자가 취업장소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의 그 장소
- 사업주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 휴가장소 등 주거가 아닌 장소에서 취업장소로 출근하는 경우 그 장소
- 가족의 간호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숙박하고 출근하는 경우 그 장소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추가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7. 4. 6. 출근도중 발생한 사고로 상병명 '흉추 12 압박골절,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를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 당일 청구인의 출근 시작 경로는 청구인 부모의 자택으로 확인되는데 사고 발생 당시의 주민등록표 상 주거지는 서울 ○○구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청구인의 통상적인 주거지도 같은 곳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청구인이 안양 소재 청구인 부모의 자택에 방문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카드사용 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정기적·통상적으로 부모의 자택에서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부모의 자택을 청구인의 통상 주거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에 따르면 출퇴근 재해라 함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의 다른 취업 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일주일에 2~3일 머무르는 부모님 집도 주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사고를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함이 마땅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사고 발생 당시의 주민등록표 상 주거지는 서울 ○○구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청구인의 통상적인 주거지도 같은 곳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청구인이 안양 소재 청구인 부모의 자택에 방문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카드사용 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정기적·통상적으로 부모의 자택에서 출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부모의 자택을 청구인의 통상 주거지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3 » 퇴근길에 다음 날 여행에 필요한 물품(콘센트, 우비 등) 구입을 위해 일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물품 구매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일상의 경로를 일탈 또는 중단하였더라도 일생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 준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362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1. 25.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10. 25. 13:20경 ○○세무서 사거리에서 도보로 퇴근 중 다리를 삐끗한 사고"라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하퇴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경우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사고가 난 점, 일탈이나 중단의 목적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일상용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1. 25.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평소 하루에 서비스 이용 가정을 두 차례 방문(오전 8시~12시, 오후 17시~22시)하여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해 당일은 마침 청구인 남편의 환갑

생일로 친정 식구들이 여행경비를 지원해주어 휴무인 주말을 이용하여 일본여행을 다녀오기로 하였는데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일본에서는 110v 콘센트가 필수라고 알려주는 지인들의 말을 듣고 오전 업무 종료 후 귀가하는 길에 ○○역에 있는 ○○에 들러 멀티어댑터와 우비 등을 구입하여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일탈 목적이 필수품 구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하였으나 필수품이란 현재의 생활에 있어 필요한 물품으로 해석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청구인의 일탈 목적은 다음날 일본여행 중 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있었다.

다. 여행을 위해 다음날 아침 일찍 자택에서 출발해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오후에 다시 출근하면 밤 10시가 되어야 퇴근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시간뿐이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최초요양을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쟁점사항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4) 원처분기관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출퇴근 재해) 사본

6)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

7) 청구인 근로계약서 사본

8) 청구인 돌보미 활동내역 사본

9) 의무기록 사본

10) 의학 영상자료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재해경위는 "2019. 10. 25. 13:20경 ○○세무서 사거리에서 도보로 퇴근 중 다리를 삐끗한 사고"로 확인된다.

2) 청구인 소속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사업장명: ○○구건강지원센터-아이돌봄지원사업-아이돌보미
- 소재지: ○○ ○○구 ○○로***번길 5
- 근무장소: 서비스 이용자 가정(○○ ○○구 △△로 232 ○○아파트 ***동 ****호)
- 근무시간: 오전 08:00~12:00, 오후 17:00~22:00
- 업무내용: 아이돌보미

3)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요 내용 발췌)

가) 재해발생 상황

- 출발장소: ○○광역시 ○○구 △△로 232 ○○아파트 ***동 ****호(시간: 13:00)
- 사고장소: ○○세무서 사거리(시간: 13:20)
- 도착(목적)장소: ○○광역시 ○○구 □□로 88 □□아파트 ***동 ***호
- 일탈/중단: 출퇴근 과정에서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출퇴근을 멈춘(중단) 사실이 있습니까? ■ 있음(사유: 물품 구입 차) □ 없음

나) 사고 상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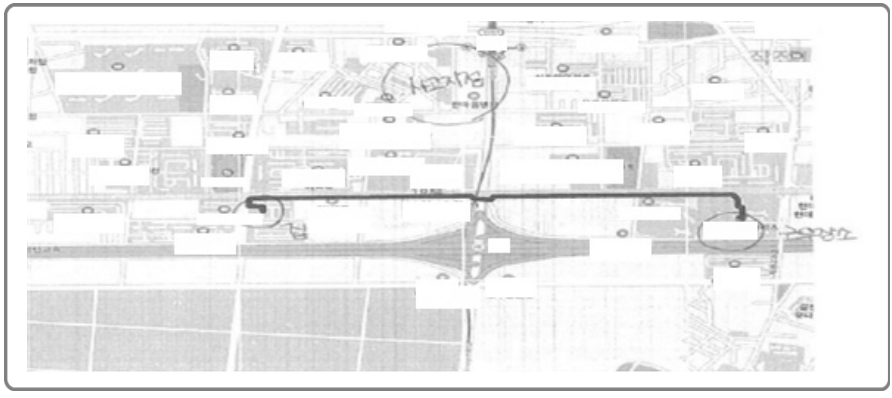

4)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요 내용 발췌)

가) 재해경위

- 재해일시: 2019. 10. 25. 13:20

- 재해경위: 2019.10.25.(금) 13:20경 ○○ 세무서 사거리에서 도보로 퇴근 중 다리를 삐끗하여 개방성 골절을 판명 받았음.

나) 통상적인 경로 인정 여부: 일탈/중단 □없음 ■ 있음, 예외 □ 인정 ■ 불인정 사유: 일본여행에 필요한 물품(우비, 멀티어댑터) 구매

다) 재해자 유선통화 내용: 본인은 ○○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로 채용되어 돌봄가정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8시~12시), 오후(17시~22시)로 나누어 총 9시간 근무함. 다만, 재해 당일 돌봄가정 학부모의 요청으로 13시까지 근무 후 퇴근했다고 진술함.(사업장에서 제출한 돌보미 활동내역 상 확인됨). 다음 날 휴무라서 일본으로 여행가기로 해 ○○역 ○○에 들러 여행에 필요한 물품(우비, 멀티어댑터)을 구매하였음. 구매 후 인도를 올라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꺾여 주저앉았는데, 근처에 있던 ○○병원 간호사들이 붕대와 부목을 가지고 와서 응급 처치해 준 후 휠체어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가 X-ray를 찍었는데 큰 병원 가보라고 하여 □□병원으로 내원함.

라) 이동 경로[3)]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9. 11. 4., 최초요양 신청 소견서)

- 신청 상병명: 우측 하퇴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보행 중 발목 접질리며 수상
-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우측 발목 통증
- 현재 증상(환자의 표현대로): 우측 하지 통증, 부종
- 치료 예상기간: 입원 예상기간(2019. 10. 25. ~ 2019. 11. 14.), 통원 예상 기간 (2019. 11. 15. ~ 2020. 2. 6.)
- 종합 소견: 우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 경골도 개방성 골절
- 수술 여부: 2019. 10. 29. 우측 하퇴부 골유합술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19. 11. 20.)

영상학적 검사 상 신청 상병 확인함. 요양기간 타당함

3)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 2020. 2. 25. 16:00 청구인과 유선 통화하여 재해 당일 이동 경로를 청취하고 카카오맵(http://map.kakao.com)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바, 청구인 근무지로부터 자택까지 이동거리는 '△△로' 직선거리 약 1.1km 로 도보 이동 시 15분 내외 소요되며(신호대기 시간 제외, 최단거리로 계산), 재해 당일 방문한 ○○ ○○역점(○○광역시 ○○대로 73 ○○역 지하 1층)까지는 근무지에서 ○○사거리(청구인 자택과 근무지 중간 지점)까지 약 580m(도보 8분) 이동 후 ○○사거리에서 ○○역 방향으로 '△△로'를 횡단보도로 횡단한 후 약 560m(도보 8분) 이동하여 도착하였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1층 ○○에 도착함. ○○에서 어댑터 등을 구매한 후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나와 ○○사거리 방향으로 약 300m 이동(통상의 출퇴근 경로로 복귀 전) 중 ○○도너츠 부근 인도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8호(출퇴근)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제3호(출퇴근 재해)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제2항

라. 산재보험법 제***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항에 따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같은 법 제37조 제3항은 출퇴근 중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하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재해는 퇴근하던 중 물품의 구입을 위해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비록 청구인이 다음날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물품을 구매한 장소 및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퇴근 중 경로에서 일탈한 목적이 다음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었고 오후 근무로 인하여 구매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 건 재해를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재해는 퇴근하던 중 물품의 구입을 위해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로 비록 청구인이 다음날 여행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고는 하나, 청구인이 물품을 구매한 장소 및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건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 도로교통법 개정 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자전거도로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를 위반하였더라도 경미한 과실로 판단될 경우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5844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5. 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3. 18. 09:00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파주시 ○○면 ○○로 111 부근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다 브레이크 작동 이상으로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선에 있는 안전봉 부근에서 뛰어내린 후(봉에 부딪친 것으로 판단됨) 기절함'이라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두피 열상'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출근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도로교통법 제13조를 위반하였고, 청구인의 법률 위반행위가 전적인 원인이 되어 이 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보도를 이용한 적이 없고(○○지방경찰서, 소방서 등 어떤 자료에서도 보도로 주행하였다는 내용이 없음) 자전거도로를 주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 및 제13조의2는 '자전거 등'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고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거나 처벌(벌금, 구류, 과태료 등)한 바 없음에도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사고원인을 범죄행위로 판단한 것은 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2020. 6. 9.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여 '자전거 등'에 포함하고 있는데,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청구인의 이익이 증진되고 불이익이나 고통이 제거된다는 점, 원처분은 기본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법령의 소급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설사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이 주된 원인이지 도로교통법 위반이 전적인 원인이 아니므로 이 건 사고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6) △△소방서 ○○119안전센터 구급활동일지 사본

7)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사본

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9)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신청서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20. 3. 18. 09:00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파주시 ○○면 ○○로 111 부근 자전거도로를 주행하다 브레이크 작동 이상으로 횡단보도와 인도의 경계선에 있는 안전봉 부근에서 뛰어내린 후(봉에 부딪친 것으로 판단됨) 기절함' 이다.

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퇴근 구분: 출근 중 사고
- 출발 시간 및 장소: 2020. 3. 18. 08:50, 경기도 파주시 ○○면 □□길 ***-22
- 사고 시간 및 장소: 2020. 3. 18. 09:00, □□마을 교차로, 파주시 ○○면 ○○로 111
- 목적지: 경기도 파주시 ○○면 □□로***번길 60(사업장)

※ 사고 장소는 출근 경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은 차도가 아닌 보도 위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 중 이 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교차로 횡단보도와 인도와의 경계선에 있는 봉에 부딪쳤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3) △△소방서 ○○119안전센터의 구급활동일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급출동 신고일시: 2020. 3. 18. 08:57
- 현장 도착 및 환자 접촉 시간: 2020. 3. 18. 09:03
- 환자 발생 위치: 경기도 파주시 ○○면 ○○리 ***-4 □□사거리
- 구급대원의 환자 평가 소견: 환자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 넘어지면서 횡단보도 앞 가드레일에 머리를 부딪쳤으며 목격자 말에 의하면 약 3분가량 의식 소실 있었다고 함. 현장 도착 시 의식 명료한 상태로 두피 열상 약 5cm 있으며 어지러움 및 우측 허벅지 통증 호소함. 지혈 및 드레싱, 경추 척추고정 후 병원 이송함(환자 전동킥

보드 분실 위험 있다고 말했으나 분실해도 좋으니 병원 입구에만 세워 달라 함. 킥보드 열쇠는 본인 소지함). 헬멧 착용함.

4) ○○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발급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상 사건 개요 및 종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 내용: 영어마을사거리, 성당 앞 전동킥보드, 정신을 못 차린다, 소방접수경로(이동전화)

- 종결 내용: 대상자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혼자 넘어져 다친 것으로 119구급대 통하여 ○○병원 후송하였으며 어머니에게 사고 내용 설명 후 현장 종결함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20. 3. 18. 09:00경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청구인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당시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보면 자전거도로를 주행해 오다가 □□사거리 도로 및 횡단보도와 인도(자전거도로)의 경계선이 있는 지점에서 안전봉에 부딪쳐 혼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법령 위반 정도나 사고 경위 등으로 보아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과실에 의한 사고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나, 같은 법 제37조는 제2항에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사고로 경찰 조사 및 처벌 등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처분기관이 범죄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주행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나, 법령 위반 정도나 사고 경위 등으로 볼 때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과실에 의한 사고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2020. 3. 18. 발생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출장 중 사고

1 » 사업장에서 제공한 킥보드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제2종 소형면허 없이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킥보드 운전을 위해 별도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12대 중과실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7801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4. 14. 협력업체 방문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병명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출혈, 열린 두 개네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견갑골 몸통의 골절(Lt), 견갑골 몸통의 골절(Lt), 장골의 골절(Lt), 뇌부종, 늑골의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Lt7,8,10,11),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타박상(Lt7,8,10,11), L2횡돌기 골절(Lt), L3횡돌기 골절(Lt),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 골절'을 진단받아 2020. 4. 23.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 중 사고가 발생한 점,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비록 무면허 운전 중 재해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으므로 무면허 운전이라 하여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이상 무면허 운전 자체를 불승인 사유라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 기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5)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6)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

7) 119 구급활동일지 사본

8) 교통사고사실 확인원(○○경찰서) 사본

9) 의학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 사본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1)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외부 협력업체 방문 관리 후 회사로 복귀하던 중 협력업체 앞에서 버스와 추돌사고가 발생함.”으로 확인된다.

2) 원처분 기관의 조사복명서 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대표 윤○○) 확인

- 청구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하며,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시로 하청업체 방문 후 귀사 중이었음.
- 사고 당시 재해자가 타고 있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형 이륜차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함.

나)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제2020-1033호에서 발췌)

- 발생일시: 2020. 4. 14. 11:33
- 발생장소: ○○ 중랑구 ○○로 405
- 운전면허: 무면허
- 차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사고 유형: 차대차
- 사고 원인: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우회전)
- 사고 내용: 사고 일시경 #1 차량은 중랑구 ○○로 405 ○○도로에서 진행하다 사고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던 중, ○○삼거리에서 ○○역 방면 2차로로 주행하던 #2 차량 우측 측면부분(뒷문)을 #1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임.

다) 원처분기관 처분 사유 및 결과

청구인은 업무수행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나,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제2종 소형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이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3) 심사청구 이후 청구인의 대리인이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로 제출한 청구취지상 관련 사실 및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 확인서(○○대표 윤○○, 심사청구시 제출)

- 회사와 거래처와의 거리는 3km 정도이며, 대중교통 이용시 1km 정도 걸어야 해서 평소 택시를 이용했으나, 가까운 거리는 킥보드 이용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난 2월 킥보드를 구매함.

- 사고 당일 택시비와 택시를 잡는 시간을 감안할 때 킥보드 이용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 본인이 지시하여 재해자가 출장을 다녀오게 된 것임.

- 재해자와 대표 모두 킥보드 이용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만약 알았더라면 대표가 출장을 지시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재해자도 타지 않았을 것임.

나) 청구인의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주장

〈발췌(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 사고현장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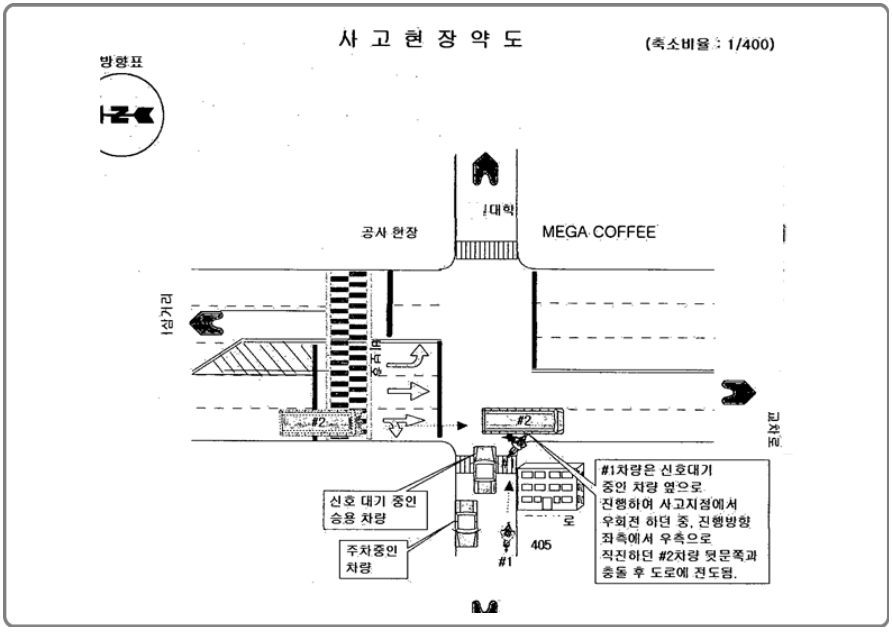

- 사고현장 약도를 보면 청구인 좌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은 정차선 및 횡단보도를 완전히 침범하여 차량의 앞부분이 교차로에 걸쳐있는 상황으로 좌측 신호대기 차량의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횡당보도 침범)에 따른 시야확보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원인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따라서 청구인의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도 볼만한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볼 수 있음.

다) 중과실 교통사고 해당 여부에 대한 주장

- 청구인의 교통사고는 사망자 없이 부상자 1명만 있으며 부상자는 청구인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는 벌칙만 해당됨. 청구인인 이 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음.

라) 유사 사례에 대한 판례 제출

- ○○행정법원 2004구단10381사건(2008.8.23.) 판결요지: 티켓 다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 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혀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종업원이 면허가 없음을 알고 고용한 사업주가 비록 종업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 배달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상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 지시에 따른 차 배달은 종업원의 본래의 업무로서 차 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이러한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배달업무의 성격상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묵시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지시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부상이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행정법원 2008구단3978사건(2008. 9. 26. 선고) 판결요지: 본연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주인의 부탁으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회 배달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급여신청서, ○○병원, 2020. 4. 21.)

- 재해경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버스에 부딪혀 119통해 내원
-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외상으로 내원 의식 혼미로 내원 검사상에서 다발골절 다발출혈 소견 있었고, 지속 출혈 있어(다발) 수혈하면서 경과 관찰하였음.

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자문의 소견(2020. 5. 12.)

신청 상병 인정 타당하며, 요양기간 인정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업무수행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청구인이 사고 발생 당시 사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사업장에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는 청구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정상 진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청구인의 사고 발생 당시 청구인이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제2종 소형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기관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재해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인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시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무면허 운전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청구인이 사고 발생 당시 사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사업장에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는 청구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던 중 정상 진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데 청구인의 사고 발생 당시 청구인이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제2종 소형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 위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4

행사 중 사고

1 » 회식 종료 후 발생한 재해와 관련,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하였고 과거 이루어진 회식의 형태 및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따른 행사(회식)으로 봄이 타당한 점, 숙소 복귀 중 전화통화는 개인적인 것일 뿐,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 통상의 경로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2819호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3. 17.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故 진○○(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9. 9. 16. 교통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인 청구인이 2019. 12. 23.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회식이기 보다는 부서원들의 즉흥적인 저녁식사 자리였고, 업무와 관련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고 발생 장소가 통상의 순로를 현저히 벗어난 점으로 볼 때 퇴근의 순로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고인이 참석한 회식이 업무상 행사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련하여 소속 사업장 최고책임자 및 부서 책임자가 주관하는 행사이고 행사의 비용 전부는 소속 사업장에서 부담하였으며 사용자가 시공 중인 다른 현장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회식 당일 고인이 근무하는 현장에 근무하지 않아 부득이 참석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었던 1명을 제외하고 부서 직원 전원이 참석한 행사였다. 이러한 행사는 매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월간 공정회의 후 이루어진 행사로서 부서원들의 사기진작 등 노무관리 필요상 인정되는 행사였으며 해당 행사 참석이 사전에 사용자로부터 지시되었거나 또는 행사 참가를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는바, 이 사건 행사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업무 외 행사로 해석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법리오해라고 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대법원 판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량이 본인의 음주량을 초과하였고 그러한 음주량의 초과가 사업주 또는 주위 동료 근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고의적으로 초과한 것인지 여부가 첫째 쟁점이 될 것이고 둘째, 행사 중 또는 행사 종료 후 사고가 음주 또는 음주로 인한 심실상실이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 고인의 사고의 경우 비록 숙소 반대 방향으로 약 300미터 정도를 걸어 내려오다가 차도로 넘어졌다고는 하나 경로 이탈에 다른 경로로 이동하기 위한 고의성이 전혀 추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과의 유선통화에서는 “숙소로 이동 중인데 숙소를 못 찾겠다”라는 진술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은 경로를 이탈하였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으며, 이러한 만취의 원인은 업무상 회식 이외 개인적인 음주는 개입되지 않았으며 아울러 살핀 바와 같이 음주행위에 근로자의 고의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및 심사청구 이유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원처분기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및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원처분기관의 조사보고서 및 재해조사서 사본

5) 원처분기관의 출장복명서 사본

6) 사업주(○○건설) 사실조회서 및 사실관계 확인서 사본

7) 카드매출전표(○○카드) 사본

8) 청구인 진술 문답서 및 진술조서 사본

9) 고인 통화내역(□□) 사본

10) 의견서(□□경찰서) 사본

11) 목격자(신○○) 진술조서 사본

12) 피의자(전□□) 신문조서 사본

13)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본

14) 구급증명서(□□ 소방서) 사본

15)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사본

16)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사본

17) 소견서(○○대학교병원) 및 의무기록지 사본

18)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9. 9. 16. 소속 부서인 사업지원팀 팀원들과 회식 후 창원시 ○○구 ○○동 **** 소재 회사 숙소로 복귀 중 알 수 없는 사유로 회사 숙소 근처인 창원시 ○○구 ○○동 **** 인근의 지하횡단보도 입구 옆의 도로에 누워 있다가 지나가는 차량바퀴에 역과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의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2) 고인의 고용관계

가) 직종: 공무보(건설현장 지원팀)

나) 채용일: 2018. 3. 2.

다) 업무내용: 근무지는 창원시 ○○구 □□로 **에 위치한 ○○건설(주) △△항 신항 확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공무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소속팀은 사업지원팀으로 평상 시 근무일 기준 출근시간은 07:00, 퇴근시간은 18:00로 확인된다.

3) 2020. 1. 3.자 사업주(○○건설 △△항 신항 서컨(2-5) 확장공사 현장)가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차 회식 종료 후 동료 직원 장△△ 부장 및 조◇◇ 차장 이상 2인과 함께 도보로 숙소로 이동하는 것을 시야 밖으로 벗어날 때까지 동료직원인 김☆☆ 사원이 목격하고 퇴근함.

나) 동료 직원인 장△△ 부장에 의하면, 숙소 앞 4차선 도로에 본인과 조◇◇ 차장은 도로를 횡단하여 숙소 단지 내로 이동한 반면, 고인은 전화기를 들고 있어 전화 통화 후 회사 숙소로 복귀할 것으로 생각하고 각자 본인의 회사 숙소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됨.

다) 사고 당일 회식의 성격은 사업지원팀 격려하는 차원의 회식이며 참석 대상은 소장, 지원팀장, 지원팀원 5명 등 사업지원팀원 7인이었으며, 불참 인원에 대하여 불이익은 없었음.

라) 1차 회식장소는 창원시 ○○구 ○○로 **번길 *-* 소재 ○○양곱창으로 소요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였으며, 2차 회식장소는 상기 ○○양곱창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호프이었으며 소요경비는 회사가 부담함.

마) 전체 회식이 끝난 시점은 21시 22분경임.

4) 원처분기관의 '출장복명서(2020. 1. 9.)'상 주요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9. 9. 16. 지원팀(7명)의 격려 차원의 저녁식사 자리의 목적은 2019년 9월 공정회의 후 사업지원팀만 참석하는 저녁식사였음.

나) 1차는 18:30경부터 20:25경까지, 2차는 20:30경부터 21:22경까지로 확인되며, 1차는 현장소장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2차는 지원팀장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함.

다) 사고 현장 확인사항

(1) 김☆☆ 자재과장 진술

- 숙소까지 걸어가는 거리로 3명이 걸어감. 골목길을 벗어날 때까지 지켜보았으나 흔들리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은 이상이 없었음.

- 평소 비가 오거나 하면 술을 마신 날에는 숙소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는 했으나 당일 많이 취해보이지는 않았음.

(2) 장△△ 부장의 진술

- 숙소 3명, 평소 걸어 다니는 거리이며 회식 종료 후 3명이서 걸어감. 걸어갈 때 흔들리거나 만취 상태는 아니었음.

- 도로 건너편에 숙소가 있으며(왕복 4차로) 후문 아파트 단지 앞, 도로를 건널 때 차량의 소통을 보고 건너면서 따라서 오리라 생각하고 건너가서 돌아보니 통화를 하고 있기에 통화 끝난 후 숙소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숙소로 이동하였음. 만취 상태였으면 당연히 챙겨서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지 그냥 두고 가지는 못함을 언급함.

- 고인의 사고 장소는 평소 걸어서 이용하는 길이 아니었음. 차량을 이용할 때만 가끔 사용하는 길이며, 혼술 습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사고 당일은 추석명절을 지나고 온 첫날이고 직원 대부분이 숙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 차원 저녁식사였음. 회식장소에서 숙소까지의 거리는 약 6분 정도 소요됨.

(사고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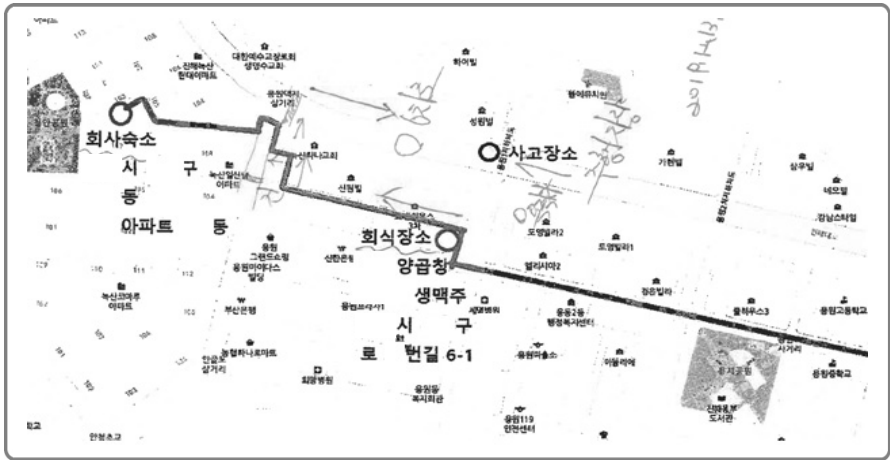

5)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경찰서의 '의견서(2020. 1. 9.)'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료들은 피해자가 회식을 하면서 소주 약 2병을 마셨다고 하고, 배우자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약 1병이라고 함.

나) 피해자는 2차 회식 후 21:26경 같은 회사 숙소에 거주하는 동료 직원 장△△ 부장, 조◇◇ 차장과 함께 숙소를 향해 걸어가던 중 숙소 입구에서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료들은 먼저 숙소로 들어감.

다) 21:34경 ☆☆삼거리 CCTV에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행자 신호 적색등에 걸음을 비틀거리며 ○○택지교차로 왕복 6차로 도로를 ○○ 북로 원룸촌 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장면이 확인됨.

라) 21:41경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는 △△방면으로 약 300m를 걸어가던 중 불상의 이유로 도로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푸조 차량에 의해 역과됨.

마) 피해자는 21:37경부터 약 2분 55초간 배우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남편이 술에 취해 숙소를 간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중 갑자기 "악"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전화가 끊어졌고, 다시 전화를 해보았지만 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6) 청구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2019. 12. 12.)'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혈액에서 에틸알코올 농도는 0.264%이고, 노르말프로필알코올 농도 및 노르말부틸알코올 농도는 0.0005% 미만임.

나) 검출되는 에틸알코올 농도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고려될 정도는 아니며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운동실조가 뚜렷하여 보행이 곤란해지는 정도의 음주상태임.

7)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2019. 10. 11.)'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접수번호: ○○경찰서 제2019-******호

나) 성명: 진○○(피해자)

다) 발생일시: 2019. 9. 16. 21:40

라) 발생장소: 창원시 ○○구 ○○북로*번길 * ○○ 제1지하차도 앞 2번 국도상(△△에서 ○○방면)

마) 사고유형: 차대사람

바)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 사고내용: #1 차량은 ○○ 제1지하차도 앞 2번 국도를 ☆☆삼거리 쪽에서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진행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진행 방향 전방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하체 및 상체 부위 등을 #1 차량 우측 앞·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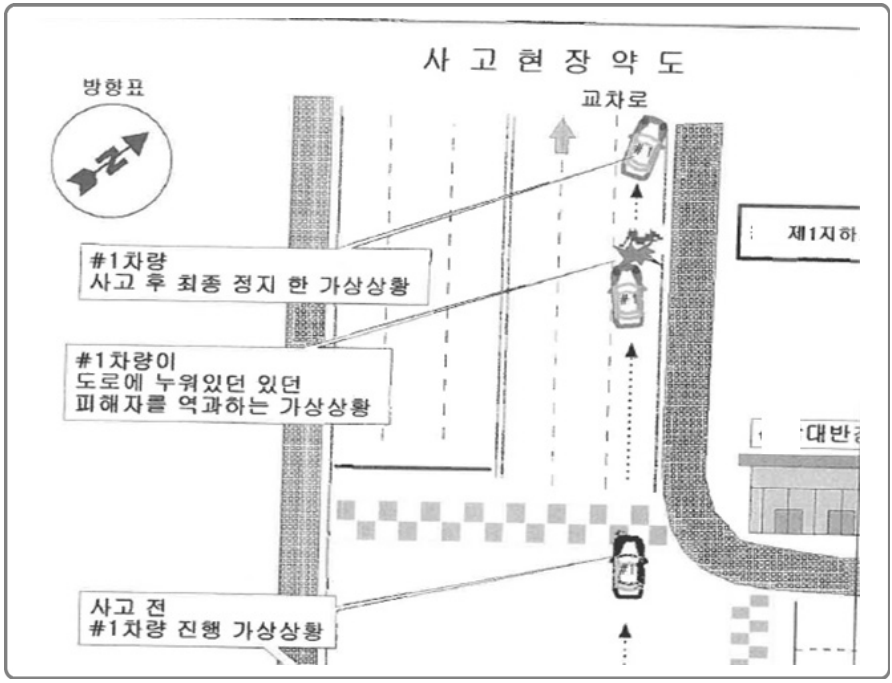

8) 고인에 대한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2019. 9. 16.)'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성명: 진○○

나) 사망일시: 2019. 9. 16. 22:28

다) 사망장소: 의료기관

라) 사망원인

(1) 직접사인: 외상성 혈기흉

(2) (1)의 원인: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골절

(3) (2)의 원인: 교통사고

마) 사고발생장소: 도로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바.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업무처리지침 제2017-48호(2018. 1. 1. 시행)

사.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2019. 9. 16. 회식 후 동료들과 함께 회사 숙소로 돌아가던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로 사망하였고, 고인이 참석한 회식은 다른 현장의 업무를 수행하던 직원 1명을 제외하고 부서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며, 회식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점, 그 동안 회식이 이루어진 형태 및 회식의 빈도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행사로 봄이 타당하며, 고인의 재해발생 장소 및 통화내용 등을 볼 때, 고인이 회식 참석 후 숙소로 가던 경로에서 개인적인 전화를 받기 위해 바로 숙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 통상의 순로를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고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에서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행사로 봄이 타당하며, 고인의 재해발생 장소 및 통화내용 등을 볼 때, 고인이 회식 참석 후 숙소로 가던 경로에서 개인적인 전화를 받기 위해 바로 숙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뿐 통상의 순로를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위해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고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식사 후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와 관련, 업무와 관련된 식사일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함에도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개인카드를 이용하여 비용을 처리한 점, 사고 발생 장소에서 고인의 행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퇴근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종합할 때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311호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故 송○○(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2019. 3. 25. 21:15경 거래업체 ○○ 대표 김○○(이하 '거래처 대표'라 한다)과 저녁식사 후 전남 ○○시 ○○로 ** ○○ 앞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음주운전 차량과 충격한 교통사고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었으나 2019. 3. 26. 직접사인 '다량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배우자)인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재해는 퇴근시간 전 거래업체와 업무와 관련된 계약이 있었으나 계약이 체결되기 전 서면 보고가 없었던 점, 거래업체와 업무상 식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사전 승인 없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지급하지 않고 지급한 사례 역시 없는 점, 이 건 재해 이전에도 고인이 식사비용을 계산한 점, 사무실을 나와 두 번의 이동을 거쳐 식사 장소를 선택한 점, 관리자로서 급여 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회사 대표의 허락 또는 승인을 득한 관행적이고 묵시적·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회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행사(회식) 참여 후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주요 내용 발췌)

가.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행위)에 대한 서면보고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 고인은 경력직 직원으로서의 채용되었고, 회사 내 서면보고의 규범체계나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고인의 업무수행 경력 및 전문성 등을 사업주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보건대 망인이 반드시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하여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음

- 고인이 사고 당일 사업주에게 직접 2차례 통화를 했던 발신기록을 보건대 당일 거래업체(○○)와 계약체결 행위가 예정되었음을 보고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며, 가사 이러한 보고행위 사실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인은 이미 사전에 거래업체의 선정을 포함한 계약체결행위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나. 거래업체와 업무상 식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이 필요하며 사전 승인 없이 개인카드로 결제한 비용은 지급불가를 원칙으로 하고 사후에 지급한 선례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 외부 거래업체 관계자들과의 회식 횟수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직원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해당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결정기관이 판단한대로 회사가 사전 승인하지 않은 비용 일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고인은 급여 이외 금원을 수차례 받은 사실이 있음. 사업주는 이 같은 금원은 출장비(1일 20만원)로서 지급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고인을 포함하여 회사의 직원이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업무관계자들과 식사 등을 하는 데 지출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사고 당일 회식비용이 총 54,000원 나왔고, 이에 대한 비용을 고인이 지불하였으나 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회사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고, 비교적 소액

으로 볼 수 있는 당일 회식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꺼이 지불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에 영수증 등을 정리하여 이에 대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보전받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고 당일 행해진 회식비용이 개인 카드로 지출되었다고 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움

다. 사고일 이전 2019. 3. 19.에도 고인이 식사비용을 계산한 점에 대하여

- 여러 기록상 고인이 거래처와 식사를 한 날짜는 3. 19이 아닌 3. 21임이 확인되고 고인은 담당자로서 빈틈없이 업무진행을 위해 개인시간을 소비한 업무의 연장이었고 더구나 소액이지만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업무에 임한 것으로 사업주의 주관으로 행사가 개최되었거나, 사업주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도록 강제되었거나 또는 회식의 경비가 사업주의 부담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배제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제한해석임

- 전술한 바와 같이 2019. 3. 21. 회식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식사를 하였다고 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2019. 3. 21. 회식이 개인적인 친분을 도모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본 사고의 성격과 연관시켜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음

라. 사무실을 나와 두 번의 이동을 거쳐 식사장소를 선택한 점

- 원처분기관은 고인이 식사장소 도착 이전에 택시로 교통수단을 변경하여 이동한 행위를 가리켜 '두 번의 이동'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로상 이동 행위를 가리켜 '두 번의 이동'을 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나아가 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초 계획한 식사장소를 사후에 변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존재하지 않음

마. 출장업무 종료 후 퇴근 중 재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

- 고인은 퇴근시간에 임박하여 거래업체 대표와 회사 내에서 약 10여분 만에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못 다한 업무상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인근의 식당을 찾았고 이어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귀가하기 위해 도로를 건너다가 만취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출장 업무를 종료한 후 귀가하는 경로 상에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따라서 가사 고인과 거래처 대표와의 식사행위(회식)가 '회사가 주관한 행사'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하여도, 중요한 업무내용 중 하나인 계약관련 사항을 상호 협의·점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행위는 고인의 본래 업무를 사무실 밖에서 수행한 '취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사업주는 이러한 사무실 밖 장소에서의 업무협의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다고 하나, 이러한 출장업무에 있어 사업주의 업무지시는 반드시 개별적·구체적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고인을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업무의 상당부분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사전적·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해당 업무에는 계약 관련사항 뿐 아니라 이에 부수하는 업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 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

4) 원처분기관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및 관련 조사자료 사본

6)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경찰서 접수번호 2019-416호) 사본

7) 사망진단서 사본

8) 확인서(거래처 대표) 사본

9) 녹취록(바른말녹취사무소, 2019. 9. 20)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1) 청구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이유서 등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적시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속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관계 및 고인의 근로관계

- 사업장명: ○○(○○○○○기술개발사업)
-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 9**-**-*****-*
- 성립일자: 2018. 10. 1.
- 사업종류: 연구 및 개발사업
- 고인 입사일: 2018. 10. 1.
- 고인 직종(지위): 정보통신 관련 관리자(상용)

나) 재해경위 및 쟁점사항

- 재해경위: 고인은 2019.03.25. 소속 사업장을 방문한 거래처 대표와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퇴근시간이 되자 사업장을 나와 ○○시 소재 ○○ 안 ○○회센타에서 저녁식사 후 숙소로 퇴근하기 위해 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함
- 쟁점사항: 고인이 계약체결 후 업체 대표와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한 것이 ①행사(회식)에 해당하는지, ②저녁식사 행위가 행사에 해당된다면 행사 종료 후 퇴근 중의 사고인지, ③퇴근 중 사고에 해당한다면 무단횡단 중 상대방의 음주운전 행위와 경합되었을 경우 동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사실관계 확인

(1) 계약서 작성 여부

- 2019. 3. 25. 고인과 공사계약서에 날인한 거래처 대표는 당일 '몸이 안 좋아 내일 가면 안되냐'고 하였는데 고인이 '공사기일이 촉박하다'며 최대한 빨리 와줬으면 해서 본인 업무를 보고 15:56 부산에서 승용차로 출발하여 늦은 시간(17:58 방문자 카드 발급, 18:10 반납) 사무실에 도착하여서는 ○○에서 준비한 계약서에 날인을 하고 공사계약서 1부를 챙김

- 거래처 대표는 위 계약 관련으로 2019. 3. 11.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었고, 2019. 3. 19.에 직원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당초 제출한 견적서와 변동사항이 없이 견적서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부산 출발 전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계약서 건으로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됨

(2) 행사 장소 이동 및 식사 비용 부담

- 퇴근시간이 되자 사무실을 나와 거래처 대표 차량으로 고인 숙소 근처에 주차를 하였음. 숙소 근처에는 식사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인 회사 직원들이 회식에도 이용하는 ○○ 안 ○○회센타로 택시를 타고 이동 함(사무실에서 숙소 인근까지 거리: 17km, 소요시간 :20분, 숙소 인근 ○○ 내 ○○회센타까지 거리: 1.3km, 소요시간: 5분)

- 식사 장소에서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한 달 이내의 공사였으므로 공사일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횟집에서 2시간 정도 머무르며 2명이 식사에 사용된 금액은 회, 소주 3병, 매운탕에 식사를 하고 비용은 54,000원으로 20:58 고인이 개인카드로 결제함

(3) 기타

- 고인과 거래처 대표와의 친분은 과거 고인이 다른 사업장에 근무할 때 거래처 대표가 도급을 받아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알게 된 사이임

라) 보험가입자(○○(주)) 의견

- 하동 현장의 총 책임자는 이OO 부장으로 고인의 업무상 상급자는 대표이사와 연구과제는 김OO 부장과 협의하며,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전 서면 품의서를 김OO 부장의 검토 후 대표이사 승인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지만 계약 체결 전 서면 보고는 없었음

- 하동 현장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3개 업체와 거래하며, 3개의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업무상 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품의를 내어 담당 부장의 검토 및 대표이사 승인 후 사용가능하며, 사전 승인 없이 개인카드로 사용한 비용을 지급한 선례는 없으며 사전 품의가 없는 지출은 지급 불가를 원칙으로 함

- 근로계약서 이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 보전을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수당은 없으며, 유족이 주장하는 급여 외에 지급액은 출장비 명목임

마) 조사자 의견

(1) 거래처 대표와 함께한 저녁식사가 행사(회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일 저녁식사는 계약서를 작성 후 퇴근시간이 되어 고인의 제안으로 이루어졌고, 고인이 근무한 사무실은 시골 동네로 근처에 식당이 없어 2번의 이동을 거쳐 고인이 직원들 회식장소로 사용한 적이 있는 횟집으로 식사 장소를 선택하였음. 식사 장소에서 업무적인 이야기나 협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계약 후 회식 사실에 대하여 관리자나 상급자가 보고를 받거나 승인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고인이 사업주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 대표의 허락 또는 승인이 묵시적.관행적으로 이루었다고 볼만한 위치에 있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함. 사고 이전(2020. 3. 19.) 방문하였을 때에도 고인이 식사비용을 계산한 사실이 있고 급여 이외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한 사실이 없음. 위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인이 거래업체와 가진 저녁식사는 행사(회식)에 참여하였다고 보기 곤란함

(2) 퇴근 중의 사고 여부

- 이 건 재해는 고인이 행사(회식) 참석 후 퇴근하다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2) 이 건 관련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경찰서 접수번호 2019-***호)」상 사고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발생일시: 2019. 3. 25. 21:15
- 발생장소: 전남 ○○시 ○○로 81 ○○ 앞 도로
- 사고종별: 차:사람 횡단 중
- 사고원인: 안전운전 불이행, 음주(0.098%)
- 사고내용: 사고 차량이 음주상태에서 ○○병원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2명을 앞면으로 충격한 교통사고임
- 현장 상황: 기상상태(맑음), 노면상태(건조), 신호기 운영(신호기 없음), 도로형태(기타), 교통장애(장애 없음), 음주운전(음주운전)
- 사고와 직결된 당사자 행동유형: 운전자(직진 중), 보행자(횡단보도 외)
- 사고 유발원인: 인적 유발원인(운전자: 알코올 등 약물영향, 보행자: 기타), 차량적 유발원인(없음), 도로환경적 유발원인(없음)

3) 이 건 심사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고인 사망 당시 ○○의 공동 대표로 재직한 김OO(이하 "대표"라고 한다)과 유선 통화하여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4].

(가) 고인 사망 당일 거래처 대표와 체결된 계약 관련

4) 고인 사망 당시 공동대표였던 김OO 대표는 2020. 5. 퇴사하였고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OO, 이OO 부장도 모두 퇴사한 상태임

- 계약 체결이 고인의 전결 사항인지 여부: 당시 계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공식 계약이라면 계약부서에서 했을 것임. 고인은 전기파트 담당 부장이고 당시 정부 프로젝트는 이OO부장이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어 계약도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이OO 부장과 협의하고 진행했을 것인데 통상적이지는 않았다고 보여짐. 사고 당일 고인이 본인에게 발신한 기록이 있다는데 지금도 계약과 관련하여 통화한 기억은 없음. 다만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당일 김포 본사에 이OO 부장과 같이 있었는데 이OO 부장이 국화꽃을 띄운 차를 가져다 주기에 너무 예쁘게 보여 사진을 찍어 차 한 잔 나누자는 의미에서 회사 직원들과 공유하는 SNS에 올렸는데 아무도 답을 안했는데 고인만 '저도 한 잔 주시죠' 하고 문자를 보내왔고 그것이 고인과의 마지막 소통이었고 왜 하필 국화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도 그것만은 잊혀지지 않음

- 프로젝트 일정표상 긴급한 계약이었는지 여부: 본인으로서는 계약의 시급성 여부를 알 수 없음. 다만 복수 견적을 받았다거나 거래처 업체가 응찰한 기록 등을 찾을 수 없었음

- 사고 이후(2019. 4. 1.) 회사 김OO 부장을 통해 당시 계약서를 회수한 이유: 계약서 회수를 지시한 사실은 없음. 다만 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시 거래처 대표도 같이 사고를 당해 진행이 안 되니까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음

(나) 사망 당일 회식 개최 관련

-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회식을 하고 비용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작성을 하는 등 회사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으며 당시 고인과 거래처 대표와 식사를 공식적인 회식이라 인정하기 어려움. 공식 회식이면 회사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개인이 지급하도록 하지 않음. 유족 측에서 말하는 것은 출장비로 업무상 장거리로 가는 경우가 많아 1회 20만원으로 정해놓고 지급하는 것임

(다) 기타

- 본인도 평소 고인을 아끼고 있어 고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음. 회사 차원에서나 개인적으로 고인의 유족이 산재로 처리하는 데 있어 회피할 이유가 없었음. 본인이 말 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계약도 그렇고 공식적인 회식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다만 고인의 죽음이 안타까울 뿐임

4) 청구인(대리인)은 이 건 심사 청구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심사청구이유서(2)

5) 이 건 심리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대리인)에게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여 제출받았다.

- 녹취록(바른말녹취사무소, 2019. 9. 20)

6) 청구인은 대리인과 함께 2020. 11. 26.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020-305차 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심사 청구 사건 구술 요약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원처분기관에서는 재해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았고, 사업주가 망인에 대해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고, 식사 행위 자체가 업무와 관련한 자리로 판단되어야 하고 이후 이동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야 함. 거래업체인 ○○ 대표가 병상에 누워 있었고,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하기 위해 사업주가 계약서를 회수하여 그 사실 자체를 숨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계약에 대해서는 망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이상 대리인 주요 진술) 및 회사 대표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가해자와의 합의 등에 자꾸 참견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함(이상 청구인 주요 진술)"이라는 요지로 진술하였다.

4 전문가 의견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2019. 3. 26.)

- 사망일시: 2019. 3. 26. 02:37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원인: 직접사인(다량출혈)
- 사망종류: 외인사
- 외인사항: 사고종류(운수/교통)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라.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고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전기분야 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하였고, 재해 당일 퇴근시간 전 거래업체와 업무와 관련된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 사실 및 고인이 사업주의 업무 지시를 받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식사 등이 필요할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나 사전 승인 없이 거래처 사장과 단둘이 식사한 자리에서 고인이 개인카드로 식사비용을 결제한 점, 사고 발생 장소를 고려할 때 고인의 행선지가 명확하지 않아 재해 당시 고인이 퇴근 중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허락 또는 승인을 득한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 아닌 사적인 자리 이후 이동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재해 또는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고인과 거래처 대표와의 식사행위가 업무내용 중 하나인 계약관련 사항을 상호 협의·점검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식사를 마치고 귀가 중 발생한 이 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허락 또는 승인을 득한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회식이 아닌 사적인 자리 이후 이동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3 생산현장 분임조 상호 간의 화합을 위해 강제성이 없는 친목도모 성격의 워크샵 중 발생한 재해와 관련, 비용을 자체적인 회비로 충당하였고 휴무일에 진행된 점에서 사업주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행사가 아닌 사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1 제450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10. 29. 분임조 워크샵 참석 중 계단에서 떨어져 상병명 '제2요추, 제4요추 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제3, 8, 11번)'이 발병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참석한 분임조 활동은 분임조 단합을 위한 자리일 뿐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분임조원들의 회비로 진행된 워크숍으로, 행사 참여에 강제성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사실관계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분임조 활동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활동 일환으로서, 사업주가 승인 및 인정하는 행사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1) 분임조 행사는 사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사고과평가로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혁신활동(분임조 활동)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직원들은 매년 혁신활동(분임조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2) 분임조 활동 비용은 회사에서 시행 중인 일정과제 수행에 따라 회사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각 분임조에 지급되고 있음

3) 일정과제 수행을 하지 않거나, 분임조를 탈퇴하여 혁신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이를 조직기여부분의 평가 항목으로 지정하고 인사고과평가에 반영하여 평가함

4) 분임조 활동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사항이므로 휴무 반납하고 다녀왔으나 출근 인정은 안됨. 일정 과제 수행에 따른 회사에서 지급한 활동비 60만원 이상을 워크숍 비용 일부 충당함

5) 분임조 활동으로 개최한 이번 워크샵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고 이와 같이 회의록은 매월 3회씩 회의 및 행사를 진행하여 제출하고 소속부서(조장, 팀장)와 주관부서(담당, TF장)의 결재를 받고 있으며 회사에서 지급한 활동비로 운영되고 있음

6) 이에 분임조 활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활동 일환으로서, 사업주가 승인 및 인정하는 행사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주장한다.

나. 사실관계

1) 요양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20. 10. 29. 05:10경 □□ ○○항 ○○유람선 선착장 앞에 집결하여 짐 정리 후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먹다 남은 물을 버리러 이동 중 높은 계단(1.5m)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이 건 재해와 관련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근로관계

- 사업장명: ○○○테크놀로지(주) □□공장
- 입사일: 2008. 9. 1.
- 직종: 생산직(성형공정 재료교체원)

나) 사고 당일 분임조 워크숍 현황

- 분임조 워크숍: 바다낚시(문어)
- 행사일시 및 장소: 2020. 10. 29. 전라북도 □□ ○○항
- 주최자: 반장 및 분임조장
- 분임조 워크숍 행사목적: 분임조 단합
- 경비지급: 분임조 회비
- 참가인원: 분임조 10명 중 6명
- 행사 일정 계획 수립: 분임조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10명 중(회비 내는 인원은 8명) 7명이 찬성한 배낚시 진행

다) 분임조 운영 요령(회사 제출 자료)

- 적용 범위: 생산기능직 재직사원 대상
- 분임조: 회사 내에서 생산현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소집단
- 분임조 편성: 재직사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구성, 8명 내외, 자주적으로 조장과 서기 1명 선출
- 분임조 활동 절차: 주제선정 → 활동계획 → 현상파악 → 원인분석 → 목표설정 →

대책수립 및 실시 → 효과 파악 → 번성 및 향후계획 → 표준화 및 확산실시 → 사후관리 → 활동내용 평가

- 회합은 최소한 월 2회 이상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분임조 발표 대회: 공장 발표대회(연1회이상), 혁신 Festival(년1회), Global 발표대회(년1회), Proactive Award(년1회)
- 분임조 지원: 분임조 수준에 따라 월 회합비 지급
- 공식적인 분임조 워크숍 행사는 1년에 2회 진행됨. 그 외 회사의 공식행사와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분임조장 주최와 분임원 다수결에 의해서 야유회 겸 워크샵 진행함

3) 사업주는 보험가입자 의견서 등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 회사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워크샵 행사 중 발생한 사고 아님

나) 사고 당일 진행된 분임조 워크샵의 내용

- 주최자: 반장 및 분임조장
- 분임조 워크숍 행사목적: 분임조 단합
- 경비지급 주체: 분임조 회비
- 근무시간 여부: 근무시간 미인정
- 사업주 사전 승인 여부: 참여지시 및 사전보고 없이 분임조장 주최(사업주 사전 승인 무)
- 사업주 참가 여부: 비공식 행사로 사업주 미참석
- 참가의 강제성: 자율적 참여(분임조 10명 중 6명 참석)
- 경비 부담: 분임조 자체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월 2만원 회비 내고 있으며, 워크숍 행사에 소요된 비용(총 1,393,200원)은 분임조 회비로 충당

4) 청구인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에 따르면,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 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나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를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사고 경위 및 근로자 의견서, 사업주 확인서, 의무기록 및 행사 관련 자료, 분임조 운영 규정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참석한 분임조 활동은 분임조 단합을 위한 자리일 뿐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에 의해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보기 어렵고, 분임조원들의 회비로 진행된 워크숍으로, 행사 참여에 강제성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어 요양불승인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심사청구 이후 산재심사실에서 확인한 내용(사업주 추가 확인서, 생산기능직 평가관리 규정) 다음과 같다.

가)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분임조 활동 기준 및 활동예시 요청: 4. 각종 혁신활동 참여도 (20%, 분임조 활동, 제안 등)

- 인사고과에 반영 중 항목은 제안참여도, 분임조활동 적극성, 5J(정리정돈), 자주보전 활동 기여도 등을 평가(외부 활동에 대한 평가는 없음)

나) 활동지원비 지급 기준

- 내부활동(분임조회합실적/테마해결/제안 등)에 대해서만 활동지원비 지급

다) 분임조 회합비 사용에 대하여 정한 기준이 있는지 여부

- 회합비 사용에 대하여 정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각 분임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라) 본 행사는 회사의 지원 및 승인하에 진행된 행사가 아니며, 분임조에서 조원들의 의견수렴 후 희망자에 한해 외부활동을 진행, 비용 또한 회사의 지원이 아닌 분임조원들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진행한 행사로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음

3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요양신청서, ○○병원, 2020. 11. 5.)

- 신청상병: 제2, 4요추의 압박골절, 제3, 8, 11번 흉추의 압박골절
- 1m 넘는 곳에서 떨어지면서 엉덩이부터 닿았다. 허리 근육이 아프다. 다리 저린 증상은 없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외상과 상병과의 인과관계 인정 타당함

4 관계법령 등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37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분임조 활동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활동 일환으로, 사업주가 승인 및 인정하는 행사로서 업무상 재해로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분임조는 생산기능직 재직 사원을 대상으로 회사 내에서 생산 현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집단으로서 구성인원은 8명 내외로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활동하며 분임조 수준에 따라 회합비를 지급하나 청구인이 참가한 이 사건 사고의 분임조 워크샵은 공식적인 워크샵이 아닌 분임조 상호간 화합을 위해 분임조장의 주재하에 이루어진 행사로 보이는 점, 참가의 강제성이 없고(분임조 10명 중 6명 참가) 소요경비는 분임조 자체적 회비로도 충당한 점, 휴무일에 이루어져 출근 인정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로서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볼 수 없고, 분임조 회원간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행사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5

휴게시간 중 사고

1 »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풋살경기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정기적 행사로 보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장소를 대관하고 참여 독려한 점, 대관시간이 업무시간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로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968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1. 30.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11. 27. 12:40경 점심시간 이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풋살을 하려고 몸을 푸는 도중에 '뚝' 소리와 함께 주저 앉았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건의 파열, 우측 발목의 염좌'를 진단받고 2019. 12. 6.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① 청구인이 재해 당일 수행한 풋살경기는 사업주가 체육대회 등의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 아니라 중식시간 중 동료 및 지인들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경기를 한 것으로, ② 사업장 내에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공원 풋살장에서 진행하였고, ③ 청구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풋살경기 참석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으며, ④ 풋살경기와 관련된 비용도 참석자들이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회통념상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문답질의서를 작성하는 시기에 수술 후 병원에 있어서 문답질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질문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지 않고 예, 아니오의 형식으로 답변을 적은 것 같다. 사업주의 풋살 참가 여부에 대한 질문은 없었고, 대관비용과 풋살 관련 일정액, 독려하는 문구와 지원하는 내용 등의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을 한 것 같다.

2019년 11월 27일(사고 당일)의 상세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보면, 06:05에 사업주의 단톡방(카톡)에서 1시~3시에 풋살장에 '전원참석'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저희들은 영업 특성(거래처 납품 및 진열)상 거래처 배송지가 각각 다르므로 함께 모여서 이동하지는 못한다. 그리하여 청구인도 점심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사업주가 지시한 풋살장으로 혼자 이동하게 되었다. 풋살장에 도착하여 사업주가 먼저 와 있었고, 서로 인사를 하고 사업주께서 인원점검 후 풋살경기 인원이 부족하여 직장동료 ○○○○ 3번 몇 명과 사업주가 팀을 나누어 각자 몸풀기 도중에 청구인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원처분기관의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문서 사본

4) 최초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5) 의무기록지(○○정형외과병원) 사본

6) 영상의학 자료

7)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사본

8) 청구인의 근로계약서 사본

9) 보험가입자(○○ 대표자 성○○)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2019. 12. 17.) 사본

10)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20. 1. 13.) 사본

11) 심사청구 시 청구인의 제출 자료(사업주 확인서 등) 사본

12) 청구인의 추가 의견서(2020. 3. 18.) 및 제출 자료

13)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5)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 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9년 11월 27일, 12시 40분경 점심시간 이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풋살을 하려고 몸을 푸는 도중 "뚝" 소리와 함께 주저 앉았음. 이를 본 직장 동료가 빨리 병원으로 이송시켜줬음.'으로 확인된다.

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가입자 내역

- 사업장명: ○○○○ ***호(대표자: 성○○)
- 소재지: 대전광역시 ○○구 ○○로 ** (○○)
- 사업장관리번호: 2**-**-*****-*
- 성립일: 2018. 6. 1.
- 사업의 종류: 도, 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나) 재해경위: 요양급여신청서 상 재해경위와 동일함(동료들과 점심식사 후 풋살경기를 하려고 몸을 푸는 도중 갑자기 쓰러진 사고)

다) 휴게시간 중 재해 관련

(1) 재해자의 업무 내용 및 근무장소: 재해자는 거래처에 납품을 하거나 진열 관리하는 직원으로 확인됨.

(2) 점심식사 관련: 재해 당일 점심식사는 사무실에서 12시부터 진행하였음.

(3) 점심시간 이용실태: 점심시간은 12시 30분부터 14시까지이며, 평소 점심시간에 월요일 혹은 수요일에 풋살을 하고 있음.

(4) 행사 중의 재해 여부: 사업주 및 재해자 확인한 바, 직장동료들과 진행한 풋살은 체육대회 목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며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의 명목으로 진행하였다고 하는 바, 행사 중의 재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임.

(5) 풋살경기 관련

- 사업주 및 동료직원이 재해자에게 점심시간에 풋살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점심시간에 풋살을 하자고 강요한 사실은 없고, 재해자가 참석 유무를 결정할 수 있었음.

- 풋살경기는 사업장 내에서 진행하지 않았고, 풋살경기는 포탈사이트 길찾기 상 재해자의 근무지에서 약 19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 ○○○○공원 풋살장에서 진행하였으며, 풋살 경기장까지 이동은 자가승용차로 재해자가 단독으로 이동했다고 함.

- 재해자는 풋살경기가 12시부터 14시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풋살경기 후 업무재개는 14시에 예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업무재개 시간이 촉박할 것임.

- 풋살경기장 대관비용은 사업주가 일단 지불한 이후 풋살과 관련하여 매달 2만원 가량 재해자가 부담한다고 하며, 풋살경기 운영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함.

3) 청구인의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업무내용: 과일 경매 후 마트 납품 및 진열
- 취업시간: 오전 7시~오후 5시
- 휴게시간: 12:00~14:00

4)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제출한 2020. 1. 13.자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해경위: 2019. 11. 27. 12시 30분경 풋살장에서 점심식사 후 직장동료들과 풋살 경기를 하려고 몸을 풀다가 왼쪽 아킬레스건에서 파열음과 함께 쓰러짐.
- 점심시간: 12:30~14:00
- 평소 풋살을 하는 날: 2019년 9월 정도부터 월요일이나 수요일(보통 1시에 진행함.)
- 풋살의 목적: 친목도모로 진행
- 풋살장의 위치: ○○○○공원이 가까워 예약 후 이동. 차로 15분 정도 걸림.
- 사업주가 점심시간에 풋살을 하지 말라고 한 적 여부: 없음
- 풋살경기의 참석에 대해 재해자가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있음
- 풋살경기의 예정시간: 12시~14시
- 풋살경기 후 업무재개 시간: 14시 이후
- 재해 당일 오전에 수행하던 업무: 각자 거래처 납품
- 재해 이후 오후에 수행 예정이던 업무: 다음 날 작업 및 재고 정리
- 풋살장 대관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대표자가 일단 부담함.
- 풋살과 관련하여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부담하는 지 여부: 매월 2만원 가량 부담함.
- 풋살경기를 한 직원 중 소속 사업장(○○ ***호) 직원이 아닌 타 사업장 직원의 소속은: ○○○○ 3번
- 풋살경기에 ○○ ***호 직원 중 풋살경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 없음

5)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 시 제출한 추가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그룹채팅 내용(2019. 11. 27. 수요일)

나) 사업주(○○○○ ***호 대표자 성○○)의 사실확인서(소명 자료)

- 사고 당일(11월 27일)에도 풋살장을 사용하기 위해 11월 26일 예약과 결제 완료 후 11월 27일 06:05경 직원들과 함께하는 단톡방에 27일에 장소, 시간, 전원참석이라는 메세지를 보냄. 그날은 11월의 마감 주라서 12월에 지시하는 준비사항이 있어서 '전원참석'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사업주의 지시사항을 증거하는 사진을 첨부함)

- 당일 사업주 본인도 점심식사를 하고 12시 30분경 풋살장에 도착하여 도착하는 직원을 기다렸고 시간이 지나서 직원들이 다 도착 후 인원 점검과 팀 나누기를 하려고 하니 인원이 부족하여 ○○○○ 3번들과 팀구성을 하고 각자 개인 몸풀기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함. 사고 후 사업주 본인이 직원들과 함께 재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직장에 복귀함.

- 사업장 밖에서 행한 행위가 사적인 행위가 아닌 점의 증거 자료로 풋살장 예약과 결제한 입금내역 영수증을 첨부함.(2019. 11. 26. 거래기록사항 "○○광역시유"로 44,000원을 찾음.)

6) 청구인이 2020. 3. 18.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제출한 추가의견서 와 첨부 자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추가 의견서의 요지

(1)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가 체육대회 혹은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연습하는 행위 등의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사 중의 사고'로는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 당일 풋살경기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카톡방을 통하여 장소와 시간, 지시사항 등 '전원 참석'이라는 지시를 메시지를 통하여 받았다.(첨부한 카톡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 바랍니다. 사업주의 카톡 내용, 사실확인서, 사업주의 의견서 내용을 첨부함)

(2) 중식시간 중 동료 및 지인들과 친목도모의 목적인 경기라는 점에 대하여

→ 중식시간 중 동료 및 지인들과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적인 풋살이 아니다. 풋살이 있는 날이면 사업주가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카톡방에 지시문자를 넣는다. 사고 당일에도 예약, 장소, 시간, 전원참석이라는 지시 내용에 따랐다.

(3)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풋살경기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음에 대하여

→ 사적인 경우라면 참석 여부를 자율판단에 따라 하겠지만 사업주의 지시내용은 '전원참석'으로 소속 직원으로서 자율의사를 불문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야 해서 참석하였다.

(4) 사업주 및 재해자 문답서에서 풋살경기는 12:00에서 14:00까지 예정되어 있고, 평소 점심시간은 12:30부터 14:00까지라고 기재하였으며, 재해발생 이후 작성하여 제출한 근로계약서상에서도 휴게시간은 12:00부터 14:0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음. 하지만 재해자가 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동료 근로자들과의 메시지에서는 13:00에서 15:00까지 풋살장을 예약했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휴게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확인된다는 점에 대하여

→ 점심시간에 풋살장 예약시간은 다르게 나왔지만 13:00부터 15:00까지 풋살장 예약은 사업주가 하였기에 청구인은 시간에 관여하지 않고 '전원참석'이라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풋살장에 참석하였다. 또한 메시지의 내용은 풋살장에 있던 사업주가 청구인에게 도착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도착 사항을 확인하라고 하여 확인한 사항이다.

(5) 풋살경기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 인정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할지언정 청구인과 직원들은 사업주가 당일 전원이 참석하라는 지시하여 풋살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 문답서상 기재된 시간은 사고 후 수술 직후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나) 청구인 추가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

(1) 사업주(○○○○ ****호 대표자 성○○)의 추가 의견(요지)

- 직원들과 다함께 할수 있는 풋살경기를 주 1회로 정하여 직원들의 체력증진과 상호협력, 단합하는 목적으로 사업주가 지시하고 주관하는 행사를 하였고, 청구인의 재해 당일 경기는 친목도모가 아니라 직원들이 전원이 출석하여 11월 마감하고 12월을 준비하는 단합이 목적이었음.

- 제출한 메시지 내용에 풋살장을 13시~15시에 예약했다고 하였는데 사업주 본인이 보낸 지시 내용이고 도착을 못한 직원들의 도착사항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문답서에서 풋살경기와 휴게시간이 맞지 않았던 부분은 착오로 인한 것임.

- 풋살경기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 및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는, 모든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다가 직원들과 상의하여 풋살경기를 한 것으로 저의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들과 단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행위를 한 것임.

(2) 사업주(○○○○ ****호 대표자 성○○)의 의견서의 요지: 청구인의 사고 당일의 풋살경기는 사업주가 주도한 의도적인 풋살 모임으로 직원들 간의 개인 사적인 휴게시간을 이용한 풋살경기가 아니고 사업주의 주최 관리하에 이루어진 풋살경기임.

(3) 그룹채팅 내용(2019. 11. 27. 사고 당일): 오늘 ○○박물관에 1시부터 3시까지 풋살 예약했으니 전원 참석하라는 내용임.

7)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에 대한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상병 확인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요양기간 타당.' 이다.

8) 청구인은 2020. 6. 3. 개최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부친과 함께 출석하여 청구인은 '현재 일하는 사장 밑에서 3년 정도 납품일을 하였고 다쳐서 일을 하지 못했으니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부친은 '사장이 근로자들 전원 참석하라고 해서 아들이 참여한 것임. 근로자들이 업무 특성상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워 이때 모여서 사고가 난 것이니 인정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각각 진술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제1호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9. 11. 27. 오후 12시 경 동료근로자 등과 풋살 경기를 하기 위해 준비 도중 상병명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건의 파열, 우측 발목의 염좌'를 진단 받았는데, 이 사건 청구인의 사고와 관련된 풋살경기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장소를 사업주가 대관하고 참여 독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업무 특성상 소속 근로자들이 대면 모임등을 가지기 어려워 사업주가 해당 운동경기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풋살경기는 점심시간 무렵 시작하였으나 대관 시간 등을 감안하면 업무시간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사업주 주관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는 업무 또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업무 또는 재해가 그 질환 또는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인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사업주의 지시로 행한 풋살경기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마땅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사고와 관련된 풋살경기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장소를 사업주가 대관하고 참여 독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소속 사업장의 업무 특성상 소속 근로자들이 대면 모임등을 가지기 어려워 사업주가 해당 운동경기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풋살경기는 점심시간 무렵 시작하였으나 대관 시간 등을 감안하면 업무시간까지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사고는 사업주 주관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6

재해 경위 불분명

1 » 의무기록 및 CCTV영상자료(사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8.17., '21.8.20. 양일) 등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뒷받침할만한 근거나 특별히 업무상 재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1058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8. 17. 23:30경 청소 작업 중 넘어져 상병명 '양측 5중수골 기저부, 좌측 4중수골 기저부 골절, 양측 수근부 갈고리뼈 골절'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2020. 9. 3.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 9. 10.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약)

청구인은 2020. 8. 17. 23:22경 매장 바닥 청소 중 넘어져 바닥에 손목을 짚는 1차 재해가 있었고, 2020. 8. 19. 근무 중 선반에 손목을 부딪치는 2차 재해가 있었으나 원처분기관은 의료기관의 착오로 재해일자를 착오 기재한 의무기록과 2020. 8. 17. 11:15까지의 CCTV 영상녹화 자료만으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불승인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재해일자를 정정한 의무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소명하며, 2020.

8. 17. 23:15 이후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청구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행동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쟁점사항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 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4) 원처분기관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6) 청구인 근무지(○○) 내부 CCTV 영상자료 사본

7)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

8)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의학 자료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0)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는 "2020. 8. 17. 23:00경 주방 바닥 청소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을 짚음"으로 확인된다.

2)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 정보 확인 결과 이 건 관련 청구인 소속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명: ○○○○○○3동점
- 관리번호: ***-**-******-*
- 소재지: 서울 ○○구 ○○대로**길 **-5
- 성립일자: 2020. 8. 12.
- 채용일자: 2020. 8. 12.
- 종사자 지위(직종): 일용(조리사)

3)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주장

- 2020. 8. 17. 11:00경 주방근무 중 마감을 위해 세제를 사용하여 바닥청소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양 손목이 꺾임

나) 보험가입자(○○○○○○3동점) 유선확인

- 2020. 8. 17. 청소를 하던 중 넘어져 팔을 다쳤다고 하나 2020. 8. 18. 하루 쉬었고 2020. 8. 19.은 14:00~20:00 정상적으로 근무함. 재해일로 주장하는 2020. 8. 17. CCTV 영상녹화 자료 확인한바 사고 사실 확인되지 않음

다) 사실관계 조사 결과 및 조사자 의견

- CCTV 영상에서 재해자의 사고 장면이나 징후를 알 수 있는 사항이 없음
- ○○○병원의 진료기록(2020. 8. 20.)상 '오늘 손목 다침, 일하다 현장에서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 8. 20.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수행하지 않은 날임
- 재해자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불승인 결정함

4) 이 건 재해 이후 청구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료기록지(○○○병원, 2020. 8. 20.)

  오늘 손목 다침. 일하다 현장에서 넘어짐. 2년 전에 한 번 부러져 그동안 계속 아팠다.

- 진료기록지(○○○병원, 2020. 9. 15.)[5]

  8. 20. 진료기록상 '오늘 손목 다침. 일하다 현장에서 넘어짐' --〉 '8. 17. 손목 다침 일하다 현장에서 넘어짐(환자 진술)'로 확인되었음. 환자분 당시 본원에 산재 신청 서류상 재해경위에 8. 17. 23시경 재해발생사실 기재하셨으며, 그러한 사실 말씀하셨으나 진료실 상담과정에서 8. 20. 다친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이에 정정함. 환자는 8. 28. 본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타 병원에 내원하여 산재 신청하셨으나 본원 진료의뢰서 내용상 '8. 20. 현장에서 넘어져' 내용으로 타 병원에 제출한 후 타 병원에서도 8. 20. 수상한 것으로 잘못 의무기록이 되어 결과적으로 산재 신청 건이 불승인 되어 9. 15. 본원에 이의제기 및 정정 요청하였으며 이에 정형외과 주치의 승인 하에 정정됨

5) 청구인은 이 건 심사 청구 시 원처분기관에 다음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진료기록지(○○○병원, 2020. 8. 20. ~ 2020. 9. 15.)
- 개인(사업자) 과거거래 현황(2020. 8. 17. ~ 2020. 8 19.)
- 지인과의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6) 이 건 심리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6]하였으나 이 건 심의회의 개최일(2021. 2. 16.)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0. 8. 17. 23:15 이후 CCTV 영상자료
- 교통카드 사용내역(2020. 8. 18. ~ 2020. 8. 20.)

7) 이 건 심리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담당 심사장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 발생 현장에 출장(2021. 1. 21.)하여 사업주를 면담하고 추가로 확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출장지에서 CCTV 영상녹화 자료[7]를 추가로 징구함)

---

5) 이 건 심사 청구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추가로 제출한 진료기록지임

6) 근로복지공단 심사2부-116(심사 청구 사건 심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2021. 1. 13.)

7) 영상 1(2020. 8. 17. 23:16~24:00), 영상 2(2020. 8. 19. 20:00 이후)

- 사업주 본인은 배달을 하고 청구인은 주방에서 근무함. 업무마감은 청구인인 23:30경 퇴근하면서 사업주가 마감을 함

- 청구인이 재해일로 주장하는 2020. 8. 17. CCTV 영상녹화 자료(2020. 8. 17. 23:16~24:00)에서 재해 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2020. 8. 19. 근무 당시 영상녹화 자료(2020. 8. 19. 20:00 이후)에서도 청구인이 양쪽 손을 아무 이상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음. 재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2020. 8. 17. ~ 2020. 8. 19.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재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도 없었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최초요양 소견서 2020. 9. 1.)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타 의료기관(○○○병원)

- 본원 도착일시: 2020. 8. 29.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8. 20. 넘어짐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넘어진 뒤 양쪽 손, 손목으로 압통

- 종합소견: 양측 중수골 4-5번 기저부 압통

- 통원 예상기간: 2020. 8. 29. ~ 2020. 11. 20.(12주)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2020. 9. 8.)

양측 완관절 CT 판독 소견상, 우측 완관절 갈고리뼈 골절 소견 및 우측 제5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의심 소견, 좌측 제4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소견 확인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의 관련 자료와 청구인이 사고일이라고 주장하는 2020. 8. 17. 및 2020. 8. 19.자 CCTV 영상자료를 검토한 바, CCTV에 녹화된 사업장 내부와 청구인의 근무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특별히 업무상 재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원처분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8. 17.과 8. 19. 2회에 걸쳐 업무수행 중 다쳤으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CCTV 영상자료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업무상 재해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작업현장에서 천장 소방배관 설치 작업 중 임팩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임팩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이 있었던 점, 사고 이후 발가락 물집 및 허리통증으로 휴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 부상 이후 1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에 병원에 처음 내원한 점, 만성적 퇴행성 변화외 외상성 병변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0578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8. 19. 14:20경 M16 PH-1 Project 현장에서 티엘을 타고 천장 소방배관 설치 작업 중 위에서 임팩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가격하고 왼쪽 어깨, 등으로 떨어져서 충격을 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무릎의 염좌, 아래다리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간판장애'를 진단받아 2020. 9. 23.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CCTV, 목격자 진술 등)가 없고, 사고 직후 사고 사실에 대해 보고된 내역이 없으며, 사고 발생 후 약 26일간 신청 상병에 대한 진료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사고일로 주장하는 2020. 8. 19. 이후 2020. 8. 27.[8]까지 해당 현장에서 정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 청구인이 제출한 2020. 8. 27. 06:11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발가락물집 및 허리가 아파서 개인사정으로 휴무한다'고 보낸 사실 확인되며(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07:00~17:00), 보험가입자가 제출한 2020년 8월 근로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20. 8. 26.까지 정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8. 19. 14:20경 위에서 임팩이 떨어져 안전모를 착용한 머리를 가격한 후 왼쪽 어깨, 등으로 해서 떨어졌으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을 뿐, 사고 당시 충격으로 5분가량 계속 머리와 어깨, 등이 욱신욱신 아팠고, 같이 작업하던 김○○ 반장에게 아프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반장이 바쁜지 일만 계속하였으며, 계속 통증이 느껴져서 2020. 8. 27. 전□□ 팀장에게 하루 아파서 쉬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담당 팀장과 반장이 회피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점만으로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4) 청구인 확인서 사본

5) 동료근로자 진술서 사본

6) 보험가입자(사업주) 의견서 사본

7)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8)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의학자료

9) 건강보험 수진자료 사본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1)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0. 8. 19. 천장 소방배관 설치 작업 중 위에서 임팩이 떨어져 머리를 가격당한 후 어깨, 등으로 해서 떨어짐”이라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무릎의 염좌, 아래다리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를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근로관계

- 소속 사업장명: ○○건설(주)
- 직종: 배관공
- 근무시간: 07:00~17:00
- 근무일: 2020. 8. 18. ~ 8. 22., 8. 24. ~ 8. 26.(총 8일)

나) 청구인 진술 내용(2020. 10. 7. 확인서)

- 2020. 8. 19. 15:00~16:00경 티엘 장비 탑승 후 천장 소방배관 설치 작업 중 위에서 임팩이 떨어져 안전모를 착용한 머리를 가격한 후 왼쪽 어깨, 등으로 해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5분가량 계속 머리와 어깨, 등이 욱신욱신 아팠음
- 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사고 당시 같이 작업하던 김○○ 반장에게 아프다고 이야기 하였고 반장은 일이 바쁜지 계속 일만 하였음
- 통증이 계속 느껴져서 2020. 8. 27. 06:11 전□□ 팀장에게 ‘발가락 물집 및 허리 아파서 개인사정으로 휴무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을 보냈는데, 팀장이 사원증 반납 후 숙소 짐을 빼라고 하여 퇴직 서류도 작성 못하고 무시당하고 나왔음

-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줄 알았고 다른 일자리도 찾아보다가, 새끼손가락부터 팔목 부분까지 계속 저리고 목과 허리도 아프고 어지러워서 2020. 9. 14.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느라 산재 신청이 늦어졌음

- 아프다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이야기 했음에도 담당 팀장과 반장이 회피하고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는 등 청구인을 사적으로 회유하려 하였음

- 순수한 열정으로 사심 없이 일에만 집중했는데, 말로만 보고하고 업무일지에 기재 못했다고 해서 불승인된 것은 억울함

다) 사업주 의견

- 사고원인이 불명확하고, 목격자가 없는 상태이며,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김○○ 반장이 철로 된 선반을 떨어트렸다고 하다가 말을 바꿔, 티엘이 흔들려 선반에 올려놓은 임팩이 떨어졌다고 하는 등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음

- 청구인의 바뀐 주장대로 선반에 임팩을 올려놓고 티엘을 움직여봤지만 임팩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음

- 사고에 대한 입증은 없이 청구인과 그 모친은 청구인의 지병을 산재로 위장하려 하였고, 청구인의 삼촌은 공상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해고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라) 동료근로자 진술 내용(취지)

- 김○○ 반장: 임팩이 떨어져 머리에 맞았다는 주장은 모두 거짓이며, 작업 중에 임팩을 떨어트린 적도 없었고 보조 발판에 올려둔 임팩이 떨어진 적도 없었음. 청구인과 근무한 기간 동안 그 어떤 사고도 없었고, 사고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음.

- 전□□ 팀장: 2020. 9. 15.부터 9. 24. 사이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친 및 삼촌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음. 이 3명은 발생하지도 않은 사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고, 산재 처리와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면서 공갈·협박을 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 핸드폰에 자동 저장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함

- 숙소 생활자 1: 평소에 다쳤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음

- 숙소 생활자 2, 3, 4: 다친 이야기는 들은 적도 없으며 거실에서 주로 핸드폰을 보며 지냈음

3) 2020. 9. 14. 이후 청구인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20. 8. 19. 이후 2020. 9. 13.까지 청구인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없다.

나) ○○한방병원 진료기록

- 2020. 9. 14. 입원. 소방배관 설치하다가(큰 배관을 옮기다가) 물체가 머리 위로 떨어짐(안전모를 쓰고 있어도 아프다). 우측 네 번째 발가락 타박상. 목이 불편하면서 양손이 저리다. 우측 무릎 굴신 시 불편하다. 배관을 들면서 허리를 삐끗하였음

- 입원기간: 2020. 9. 14. ~ 10. 5.(22일)

-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NOS,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4)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청구인이 재해일(2020. 8. 19.)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3. 11. 18. ~ 2014. 2. 20.(4회) 요추의 염좌 및 긴장(□□정형외과)

- 2014. 2. 21. ~ 5. 15.(3회)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정형외과)

- 2014. 7. 31. 경추의 염좌 및 긴장(△△외과의원)

- 2014. 8. 11. ~ 2015. 2. 9.(7회) 기타경추간판전위(□□정형외과)

- 2016. 9. 26. 경추의 염좌 및 긴장(◇◇마취통증의학과의원)

- 2017. 2. 23. ~ 2. 25.(2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병원)

- 2017. 4. 7.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병원)
- 2019. 1. 2. ~ 1. 15.(2회) 근육긴장, 어깨부분(◎◎한의원)
- 2019. 12. 20. ~ 12. 26.(3회)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한의원)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1) 최초요양신청서(○○한방병원, 2020. 9. 23.)

가) 본원 최초 도착일시: 2020. 9. 14.

나) 상병명: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무릎의 염좌, 아래다리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

다) 종합소견: 수상 후 집에서 가료하다 증상 호전 없이 계속 아파 내원하여 실시한 CT, MRI 검사 상 타박과 염좌, 신경뿌리손상 소견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소견서(☆☆병원, 2020. 9. 16.)

가) 상병명: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 진탕

나) 소견: 경추부 MR상 Cervical Foraminal disc heriniation C 5/6, both. 요추부 MR상 L4/5 disc heriniation with Annular tear(섬유륜 파열). No significant abnormality on brain CT. 사고 후 증상 생겼다 함. 사고로 발생되었다 호소하는 경·요추부 신경뿌리병증 증상에 대하여 통원하여 1주 더 보존적인 치료에도 지속적인 통증 호소 시 급여 신경주사 치료 시행 고려할 수 있음

3) 진단서(☆☆병원, 2020. 11. 25.)

가) 상병명: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 외상성 척추병증(경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나)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본원 통원 치료 중인 분으로 경추 신경근 증상(신경학적 이상 증상)으로 방사통 호소 있어 수상일로부터 4주 이상 안정가료 및 지속적인 경과 관찰 요함

나. 원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재해경위 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무릎의 염좌, 아래다리 타박상' 타당함. MRI 상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는 이번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20. 8. 19. 14:20경 M16 PH-1 Project 현장에서 티엘을 타고 천장 소방배관 설치 작업 중 위에서 임팩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가격하고 왼쪽 어깨 등으로 떨어져서 충격을 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무릎의 염좌, 아래다리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아 최초요양 신청하였으나, 배관팀 동료근로자 김○○의 진술서를 보면 작업 중에 임팩을 떨어뜨린 적이 없고, 보조 발판에 올려진 임팩이 떨어진 적도 없다는 진술이며, 수상 직후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수상 이후에도 2020. 8. 26.까지 정상 근무하였으며, 2020. 8. 27. 전□□ 팀장과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발가락 물집 및 허리 아파서 개인사정으로 휴무합니다'라고 말한 것 외에 주장하는 사고에 대한 언급은 없고, 주장하는 수상일로부터 1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인 2020. 9. 14.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MRI 소견에서도 경추 및 요추부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될 뿐, 뚜렷한 외상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상의 재해 때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20. 8. 19. 사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초요양을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2020. 8. 19. 14:20경 M16 PH-1 Project 현장에서 티엘을 타고 천장 소방 배관 설치 작업 중 위에서 임팩이 떨어지면서 머리를 가격하고 왼쪽 어깨 등으로 떨어져서 충격을 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무릎의 염좌, 아래다리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간판장애'를 진단받아 최초요양 신청하였으나, 배관팀 동료근로자 김○○의 진술서를 보면 작업 중에 임팩을 떨어뜨린 적이 없고, 보조 발판에 올려진 임팩이 떨어진 적도 없다는 진술이며, 수상 직후 바로 병원에 내원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수상 이후에도 2020. 8. 26.까지 정상 근무하였으며, 2020. 8. 27. 전□□ 팀장과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발가락 물집 및 허리 아파서 개인사정으로 휴무합니다'라고 말한 것 외에 주장하는 사고에 대한 언급은 없고, 주장하는 수상일로부터 1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인 2020. 9. 14. 처음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MRI 소견에서도 경추 및 요추부에 연령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퇴행성 변화만이 관찰될 뿐, 뚜렷한 외상성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재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7

기타 사고

1 » 버스기사인 청구인은 차고지에서 대기하던 중 휴게장소인 건너편 CNG충전소로 무단횡단으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인근 1차선 편도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 무단횡단을 한 것에 고의 또는 자해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 차량의 과실률도 25%로 산정되어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을 고려할때 무단횡단이 사고의 전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625호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고 홍○○(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버스 운전자로 2019. 7. 10. 종점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하차하여 맞은편 휴게소로 이동하려고 무단횡단 하던 중 달리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2019. 7. 21. 23:24에 사망하자,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이 사건 재해는 근처 횡단보도를 이용하였다면 충분히 피했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나 고인의 법령위반(무단횡단)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고인이 종점에서 대기 중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시내버스 사이를 지나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도로를 주행 중이던 본 건 승용차에 부딪쳐 사망한 사고로서, 고인이 무단횡단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한 법규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 범칙금 부과사유에 불과한 사고이고, 이처럼 경미한 법규위반에 대하여 까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할 목적으로 법 제37조제2항(고의 및 자해행위)을 규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무단횡단의 경우 실제 사고 발생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전체 무단횡단 사례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본 건 사고는 무단횡단 자체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고인이 무단횡단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된 것으로 보험사에서도 승용차의 과실비율을 70%로 산정한 점, 고인의 무단횡단 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 혹은 '오로지' 또는 '주로'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원처분기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중대재해 조사 복명서 사본

6) 구급증명서 사본

7) 사망진단서 사본

8)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사본

9) 재해 당일 버스운행이력 조회출력물 사본

10) 버스 배차표 사본

11) ○○지방검찰청 공소장(2019년 형제59431호) 사본

12)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

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4)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재해경위

- 고인은 ***번 버스 운전자로 종점인 ○○에너지충전소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하차하여 2019. 7. 10. 18:27경 ○○에너지충전소 내 휴게소로 이동하려고 무단횡단 하던 중 쏘나타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 중 2019. 7. 21. 23:24에 사망함.

2)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제2019-1159호)

- 발생일시: 2019. 7. 10. 18:27
- 발생장소: 인천광역시 ○○구 ○○로
- 사고유형: 차대사람
- 사고원인: 안전운전의무위반
- 사고내용: #1 차량이 #2 보행자 충격하여 사망

(사고현장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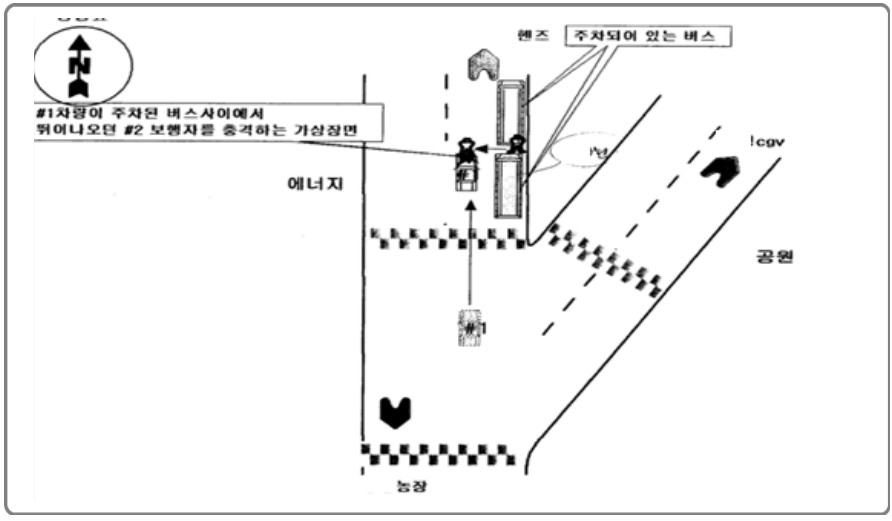

3) 가해차량 공소 내용(○○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59***호, 2019. 8. 20.)

- 운전자 및 소유자: 이○○
-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 의견: 벌금 10,000,000원
- 공소 내용: 피고인은 2019. 7. 10. 18:2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연가스충전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였음.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상황을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홍○○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23:24경 치료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음.

4) 사고차량 등 보험금 지급내역

- 보험사: ○○화재

- 내용: 사망 위자료, 장례비, 상실 수익액 등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합의금(126,600,000원)을 민법상 상속권자인 자녀 홍○○[9]에게 지급

- 합의금(손해배상금) 산출명세표 상 피해자 과실은 25%로 명기되었음.

5) 원처분기관 판단

가) 보험급여 수급권 관련

- 유족급여 청구권자는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1987. ○. ○. 혼인신고 후 자녀 2인(1988년생, 1989년생)을 두고 고인과 부부관계를 유지하다 자녀의 교육비 및 급식비 등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법률상 이혼하였던 상태로서, 이혼 이후에도 생계를 같이 해왔으므로 유족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함.

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판단

-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 고인이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버스 사이로 무단횡단 중 직진하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사고가 발생함.

- 그러므로 이 재해의 경우 고인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였다면 충분히 피했을 수 있었다고 판단되나 법령위반(무단횡단)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9) 원처분기관의 온라인법률 자문한 회신 내용 상, 민법상 유족인 아들이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하여 가해자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

6) 관련 업무처리 기준(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5804, 2019. 10. 8)

▢ **업무처리 사례**

-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중과실” 여부 판단은 무단횡단 장소, 경위, 도로상황, 사고 상대방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차도를 횡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므로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행자의 과실과 운전자의 과실(안전운전불이행)이 경합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등 통념상 예상할 수 없는 경우는 “중과실”로, 왕복 4차선 이하 도로에서 횡단보도가 없거나 통행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는 우선 경과실로 보고 재해조사를 하되, 재해노동자의 무단횡단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지 검토 후 최종판단

▢ **관련 판례**

-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2000도2671 대법원 판결 2000. 9. 5.)

- 업무 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무단횡단 중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의 무단횡단을 「산재보험법」상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2018구합86191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9. 8. 30.)

7) 산재심사실 심사장 추가 확인 사항

▢ 유선통화 확인(사업장 박○○ 담당자 유선확인, 2020. 4. 20.)

가) 근로시간 및 재해당일 운행 상황

- 고인은 ***번 버스 운전기사로서 재해당시 2교대 근무[10] 중 오후반(근무시간: pm 2~3시 출근, 23:30~24:30퇴근) 근무자였고, 종점까지 운행을 마치고 다음 회차 운행 대기 중 이었음.

나) 휴게 장소 등 주변 환경

- 종점 대기 장소에서 ○○에너지충전소 내 휴게소는 편도 1차로만 건너면 되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휴게장소로서 평소 기사들이 휴게실 및 화장실로 이용하던 곳임.(그 외 종점 대기소 근처 화장실 및 휴게실은 사고 장소에서 400m 정도 떨어져 있는 차고지 내에 있음)

- 고인은 당시 동료근로자와 빵을 나누어 먹은 후, 잠깐 휴식하기 위해 ○○에너지충전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 무단 횡단 관련

- ○○에너지충전소 내 휴게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편도1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며, 근처 횡단보도가 5m 정도 거리에 있기는 하지만, "ㄷ자"로 이동하여야 하므로 이를 이용하지 않고 보통 차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 후 맞은편으로 건너는 경우가 많다는 진술임.

▢ 현지 출장 조사 확인(2020. 4. 24. 버스종점, ○○에너지충전소)

가) 도로 상황

- 고인이 무단횡단을 한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3~4미터 거리인근에 횡단보도가 있으나 신호등은 설치되어있지 않았음.

10) 교대근무는 2주 한번씩 변경

〈사진 1〉 무단횡단 장소(화살표 방향)	〈사진 2〉 진행차량 방향

- 현지 출장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인 ○○여객의 소속 버스기사(***번)와 면담하여 확인 한 바, 사고 당시 무단횡단이 이루어진 장소인 〈사진 1〉의 노면에는 버스를 주차하는 장소였고, 바닥에 '버스 구획선'이 표기 되어 있었음. 그러나, 〈사진 2〉와 같이 진행 차량들이 직진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여 ○○시에서 종점버스 대기 장소를 다른 쪽으로 이동시켰고 기존 구획선은 삭제 하였다는 진술임.

- 고인은 〈사진 1〉의 화살표 지점에서 맞은편 ○○에너지충전소로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해당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라는 특성상 평소에도 무단횡단이 많이 이루어 졌던 곳으로 확인됨.

나) 무단횡단 경위

- 고인은 18:27경 종점인 ○○에너지충전소까지 버스를 운행하고 하차하여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 중 ○○에너지충전소로 이동하려고 무단횡단 하던 중 사고를 당함.

- ○○에너지충전소는 ***, ***, ***, **-* 버스종점으로서 버스 원료인 천연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이며, 차량 자동세차 및 운행 대기 중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휴게실을 갖추고 있어 평소에도 버스 기사들이 물을 마시거나 용변을 볼 때 이용하거나 휴게실에서 다음 운행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장소임.

- 가스충전, 세차 목적이 아니라면 화장실 사용과 휴게실(음수대, 소파)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해당 장소를 이용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버스운행 이력, 운행일지 및 배차표상 고인은 당시 오후 시간대에 편성되어 총 7회의 운행일정 중, 3차례의 운행을 마치고 4차례 운행을 시작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음.

- 현장에서 운행대기 중이던 이 사건 사업장 소속 버스 운전기사 면담진술 및 버스 운행 이력을 확인한 결과, 대기 중 휴식시간은 보통 20분 정도이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10분 내외로 짧게 휴식 후 다음 운행을 시작한다는 답변임.

다) 조사자 의견

- 고인은 2019. 7. 10. 버스 운행 후 버스를 주차한 곳과 매우 근거리인 ○○에너지 충전소로 이동하기 위해 편도1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함.

- ○○에너지충전소는 버스가 주차된 위치 도로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종점 대기 장소로 통상 버스기사들이 다음 운행 준비를 위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음수, 휴식을 위한 휴게장소로 사용하는 장소임.

- 고인이 무단 횡단을 할 당시 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신호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직진 차량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지나는 곳으로 사료됨. 이 사건 이후에는 사고 장소에 버스 대기 구획선을 삭제한 상태로서, 위험성을 우려하여 관할 시에서 종점 대기 장소를 이동시킨 것으로 확인됨.

4 의학적 소견

▢ **사망진단서:** (가)직접사인: 외상성 뇌출혈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제1항

라. 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5804, 2019. 10. 8)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2019. 7. 10. 버스 운행 후 버스를 주차한 곳과 매우 근거리인 ○○에너지 충전소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운행 중이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며, 고인이 사고 당일 근무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차고지 근처로 운행 복귀 후 휴식 등 다음 운행 준비를 위해 버스가 주차된 위치 도로 건너편의 통상 소속사업장 근로자들이 용변이나 음수 등을 해소하는 휴게 장소인 ○○에너지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고인이 생리적 필요행위나 휴식을 위하여 건너갔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이 무단 횡단을 할 당시 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지 고인이 조금 더 빨리 이동하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한 것으로 보여 고인에게 사고 발생을 위한 고의 또는 자해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의 사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고인의 유족과 합의 당시 고인의 사고 과실률을 25%로 산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무단 횡단이 전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따른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함. 또한 이 사건 청구인은 고인과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산재보험법 제71조에 따른 장의비는 청구인이 장제를 지낸 유족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 후 지급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에서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인은 2019. 7. 10.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고인이 사고 당일 근무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음 운행 준비를 위해 버스가 주차된 위치 도로 건너편의 휴게 장소인 ○○에너지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고인이 생리적 필요행위나 휴식을 위하여 건너갔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고인이 무단 횡단을 할 당시 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신호등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단지 고인이 조금 더 빨리 이동하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한 것으로 보여 고인에게 사고 발생을 위한 고의 또는 자해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의 사고 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고인의 유족과 합의 당시 고인의 사고 과실률을 25%로 산정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고인의 무단 횡단이 전적인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따른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며, 사망 당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산재보험법 제71조에 따른 장의비는 청구인이 장제를 지낸 유족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 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동료 근로자들의 다툼을 말리던 도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 상해를 입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고 발생 직전까지 음주 상태였던 점, 청구인과 업무적으로 상호 이해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고가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와 연관이 없는 주취 상태로 인한 행동이 주요 원인이었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7837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3. 1. 동료 근로자들의 다툼을 말리다가 폭행당하는 사고로 상병명 'contussion of tooth (#12.13.14.15.16), 안와벽 골절(왼쪽), 안검의 좌상'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2020. 3.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자 진술, ○○경찰서 고소 사실 확인, 참고인 진술 상, 사고 사실은 확인되며, 재해자는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동료근로자간 다툼이 있어 재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나, 싸움의 발생원인과 과정이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이에 따른 필요적 부수행위와 무관하게 숙소에서 사적인 음주 후 지극히 사적인 감정에 의하여 시작된 점, 동료근로자와 다툼이 재해자의 업무의 내용과 성격과 무관하며 또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현실화로 보기에도 어렵다는 판단 등 여러 정황과 자료를 종합하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보다는 동료 간의 개인감정이 폭발하면서 발생한 사고로 요양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회사에서 숙소를 제공받은 것을 사실이나 매일 컴퓨터 공부를 하기 위해 원주시 소재에 있는 본인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었고, 사건이 있던 2020. 3. 1. 원주시 소재에 있는 자택에서 출발하여 일터인 ○○~○○간 철도 건설사업인 ○○건설(주)로 출근하여 아침 6시 20분경 아침 식사를 마치고 회사가 제공해준 숙소에서 6시 40분경 일을 하기 위해 작업복을 갈아입고 체조장으로 나가다가 싸움현장을 목격하여 보게 되었다. 그 순간 외국인 근로자가 술에 취한 채 마시고 있던 술병을 집어 들어 내국인 근로자 강△△에게 달려드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고 있던 병을 빼앗는 과정에서 3명이 달려들어 2명이 본인을 양쪽에서 제압하고 다른 한명이 주먹으로 안면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는 일을 하기 위해 출·퇴근하는 상태였으므로, 근무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한다. 일을 하기 위한 연장선에서 일방적으로 외국인 3명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과 근로복지공단은 전날부터 같이 있으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치부하고, 사적인 감정이 이입되어 일어난 사건이라며 이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인을 폭행한 외국인들은 회사 측이 보호하며 일을 시키고 본인은 사건 다음날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일용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게 할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저지당하였다.

이 사건 재해는 회사 측이 독립된 공간이 아닌 여러 명이 사용하는 공간(내국인만 사용하였던 좁은 숙소 공간)에 외국인 근로자도 함께 사용하도록 하면서 국가 간 사회풍습이 다른 사람을 교육도 없이 한 공간에서 생활하게 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사건 전날부터 해당 외국인들이 술 마시고 고성방가를 일삼았음에도 회사 측의 관리 감독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이 사건 재해가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

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6) 고소장 및 형사 합의서(○○경찰서) 사본

7) 참고인(목격자) 확인서 사본

8) 재해자 사실확인서 사본

9)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

10) 의무기록 사본

1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청구인 제출)

12) 유선통화복명서(청구인, 사업장 담당자, 동료근로자)

13)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5)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경위

가) 최초요양급여청구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

- 2020. 3. 1. 06:30경 아침식사 후 공사현장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수○○)가 기거하는 숙소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 수○○ 외 2명이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지르고 있었고, 철근 반장인 강○○씨가 이들에게 찾아가서 나오라고 하자 수○○가 빈 술병을 들어 강○○씨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재해자가 수○○의 머리를 누르면서 제압하였다. 이에 격분한 수○○가 주먹으로 재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5-6회 강타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음.

나) 주장 일시에 사고를 당하여 처음으로 내원하였던 의료기관인 ○○대학교 ○○병원 의무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내원일시: 2020. 3. 1.

- 내원경위: 2020. 3. 1. 06:30 ○○ 작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온몸 여러 곳을 주먹으로 맞음.

2) 원처분기관 재해조사 내용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건설(주)

- 공사명칭: ○○~○○ 철도건설사업 제6공구 건설공사

- 현장주소: 충북 ○○시 ○○면 ○○길 90

나) ○○경찰서 형사과 확인사항

- 담당형사 유선확인 결과 고소장에 따라 신고는 되었지만, 조사 전 가해자측과 합의되어 고소 철회되었음.

- 합의서 상 가해자는 수○○ 외 3인이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합의금 1천만원에 합의 및 고소 철회됨.

다) 참고인(목격자) 확인사항

- 성 명: 강○○
- 소속사업장 및 직위: ○○건설 철근 반장
- 확인내용: 2020. 3. 1. 새벽 3시경부터 현장 숙소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서 조용히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았고, 이 후 6:30경 여전히 시끄러워서 다시 조용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상대방 외국인 근로자들이 술병을 들고 본인을 위협하였고 이 과정에서 재해자(이○○)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방적으로 재해자를 폭행하였음.

라) 사고 장소: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로 확인됨.

마) 재해자 확인사항

- 채용일자: 2020. 1. 3.(일용근로계약 2020. 1. 3. ~ 2020. 3. 31.)
- 소속 및 부서: ○○건설(철근공)
- 급여: 일 20만원

바) 보험가입자 의견

- 해당 사건은 일과시간 외에 발생한 음주로 인한 소음에 기인한 개인들 간의 형사 폭행 사건으로서 사고 발생경위가 업무와의 상당성에 기인하기 어렵다는 점, 재해자가 의도치 않게 태국인 근로자를 도발(머리를 만지면 안 되는 태국 풍습을 모르고 청구인이 태국인 근로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머리부위에 위해를 가함)함으로써 폭행사건이 유발되었고 범죄행위가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당한 점, 사건 발생 후 상호간에 원만히 형사 합의한 점 등의 의견들에 비추어 보아 해당사건에 대한 산업재해를 인정하기 어려움.

사) 근로자 반박 의견

- 회사의 주장과는 달리 재해자는 2020. 2. 29.일 개인적 사유로 일과를 마치고 원주에 갔었고 가해자와 저녁 음주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았음.

- 회사는 감독자 책임을 져야하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재해자에게 배상금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함이 마땅함.

3)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장이 청구인 및 동료근로자, 사업장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 10. 28. 통화, 청구인 이○○)

- 폭행의 원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자 의견 상 청구인을 포함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3회에 걸쳐서 주의 및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바, 직접적인 다툼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침에 출근해서 숙소에서 옷을 갈아입고 체조장으로 가던 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철근반장 강○○을 술병으로 치려고 해서 이를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날 태국인들의 음주 및 그 이후 소음으로 인한 다툼에 휘말린 것은 아님. 청구인은 재해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지 않았고, 전날 컴퓨터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출근한 상태였음.”이라고 답변하였다.

(2020. 11. 3.통화, 철근반장 강○○)

- 청구인이 가해자인 외국인 근로자들과 평소 업무적 또는 사적인 교류가 있었는지 또는 개인적 감정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철근팀 소속이고, 외국인들은 터널 팀에 속해있어서 업무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개인적인 교류의 개연성은 없었음. 단 이○○와 외국인들은 같은 숙소, 같은 동의 1층을 사용하였음. 평소 개인적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됨.”이라고 답변하였다.

(2020. 11. 3. 통화, 회사 안전관리담당자 조○○)

-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폭행사건 이후 외국인 근로자들은 계속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고, 청구인은 일을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묻자, “청구인이 폭행으로 다쳐서 치료받으면서 일을 나오지 않게 된 것으로서 자발적 퇴사이지 해고한 적은 없다.”는 답변이다.

- 이전에도 청구인이 해당 외국인 근로자들과 사적인 감정으로 다투거나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전에는 특이사항은 없었다.”는 답변이다.

4)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285차 심의회의(2020. 11. 6.)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 본인은 현장에서 숙소 배정은 받았으나 실제 출퇴근하였음. 사고 당일에도 숙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동료 반장님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기에 이를 보고 말리다 사고가 난 것임.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최초요양 소견서, ○○대학교 ○○병원, 2020. 3. 18.)

-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2020. 3. 1.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20. 3. 1.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2020. 3. 1. 6:30 ○○소재 공사현장, 외국인에게 맞았다고 함(환자진술)
-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오른쪽 앞니 및 오른쪽 어금니 건드리면 아프다.
- 종합소견: 증상소실 시까지 경과관찰 필요(치과), 외래 경과관찰 필요 수술여부 없음(안과)/ 취업치료 가능소견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치아진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요양기간 타당(치과)
- 의무기록 검토 시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 있음. 요양기간 타당함(안과)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

라. 대법원 판례 참고(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발췌)

[판결요지]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20. 3. 1. 동료근로자들의 다툼을 말리던 도중 발생한 사고로 상병명 'contussion of tooth (#12.13.14.15.16), 안와벽 골절(왼쪽), 안검의 좌상'을 진단 받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힌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음주 상태였고 청구인이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해당 가해자들과 업무적으로 상호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사고가 청구인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고 발생 전날 소속 사업장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있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고는 업무와 연관 없는 가해자들의 주취 상태로 인한 행동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원처분 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동료 근로자가 외국인 근로자로부터 위해를 당하려는 상황을 말리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상병부위를 다치게 되었으므로 최초요양을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이 사건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힌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 음주 상태였고 청구인이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해당 가해자들과 업무적으로 상호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사고가 청구인의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사고 발생 전날 소속 사업장에서 제공한 기숙사에 있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고는 업무와 연관 없는 가해자들의 주취 상태로 인한 행동이 주요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Ⅱ

최초요양/유족(질병)

1. 뇌심혈관계 질환
2. 근골격계 질환 및 기타 질환

1

뇌심혈관계 질환

1 » 고인의 뇌지주막혈출혈 발생 당시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 또는 작업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고,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에도 미달하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3362호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진○○(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8. 3. 9. 14:00경 ○○ 워크숍에 참석하여 마케팅 사례 관련 질의응답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재해경위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3. 11. 사망(사인 '지주막하출혈')하였다. 이에 고인의 가족인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그룹 총수의 구속에 따른 대책 마련,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부서장으로서 통상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단기·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정해진 휴일 보장과 연차휴가 사용으로 적정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 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지주막하출혈'을 발병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취지의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2018. 3. 4.(일) 고객사와 골프라운딩을 위해 집에서 05:00경 출발하여 18:00 이후에 도착하였는바, 당일 휴일근로로 13시간을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동 시간을 추가하면 고인의 업무시간은 재해발생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일상근로 대비 36.6% 증가한 점, 고인의 주 고객사인 □□그룹 총수의 법정 구속은 고인의 업무와 관련된 급격하고도 예측 못한 상황변경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가 극도로 작용한 점, ○○편의점 등과 체결한 MOU의 원활한 성공을 위해 일상업무 외 업무가 가중된 점 등은 고인의 재해발생에 영향을 미친 일상 업무외 과로(부담)로 작용하였는바, 원처분기관이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원처분기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고 진○○) 사본

4)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유족급여청구 이유서 포함) 사본

5)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사본

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질병) 및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사본

7)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사본

8)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사본

9) 사업장 사실 조회서((주)○○) 사본

10) 사실 확인서(유족) 사본

11) 업무상질병판정서(○○-2019-****호) 사본

12)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송부(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재활보상1부-2429, 2020. 4. 17.)

1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14)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고인의 재해경위는 "2018. 3. 9. 14:00경 ○○ □□구 소재 ○○금융타워 **층 강당에서 열린 「○○Workshop」에 참석하여 마케팅 사례 관련 질의응답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대학교○○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2018. 3. 11. 사망함."으로 확인된다.

2) 고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2019-2242호) 등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입사일자: 1992. 1. 6.
- 근무장소: ○○ [11](○○시 △구 △△길 **)
- 담당업무: 기업 고객에 대한 관계 구축 및 상품판매 등 업무총괄
- 직위: ○○ 영업부 부장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근로계약서)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11) 위 사업장에는 총 3개(○○, ◇◇, ☆☆)의 ○○가 있고, 고인이 소속된 ○○는 3개의 부서가 있음(영업*, *, *부)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 고인은 ○○ 영업부의 부장으로서, 고인이 소속된 부서는 주 채무계열 대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제외)을 주된 고객으로 영업하는 조직임. 고인은 ○○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업고객과의 관계 구축과 상품판매 등 점포운영을 총괄함(2017. 1. 11. 동 부서로 발령받음).

다) 발병 전 업무내용 및 업무상 부담 요인

(1) 증상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

- 2018. 3. 8.(목) 발병 전일 08:53~18:19 근무함.

- 2018. 3. 9.(금) 발병 일에는 08:48 출근하여 오전근무 및 점심식사 후 14:00경 ○○ □□□구 ○○길 **, 소재한 ○○금융타워에서 개최된 「○○Workshop」에 참석하여 마케팅 사례 관련 질의응답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응급 후송함.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여부

① 고인은 ○○의 부장으로 경영목표와 영업점 수익성 목표를 고려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영업점 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심적인 부담이 있었음.

② 2018. 2. 13. □□그룹 총수가 구속되어 총수 부재에 따른 동 그룹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에 대한 거래 축소 가능성과 이에 따른 실적 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동 사건 관련 동향 주시, 타계 전략 수립, 주요 인사 면담을 통한 마케팅 강화, 실적 변동 상황의 주기적 점검 등 대책 마련과 실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

※ □□그룹과는 2016년 이후 여신 지원확대 등을 통해 관계가 향상되어 왔고, 이러한 관계 향상은 고인이 속한 부서의 실적에 매우 높은 기여를 하게 되었으며, 2017년에는 총 9개의 부서에서 고인이 속한 부서가 2위를 달성하게 되었음.

③ 생활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고 금융서비스의 저변 확대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전국의 △△ 편의점에 설치된 □□ ATM기를 통하여 ○○ ATM기와 동일한 조건의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 12. 15. □□그룹 계열사와 MOU를 체결하였는데,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편의점에서 ATM기 이용 실태 파악 및 이용 금융 규모, 매출 증가 예상, 관련 리스크 회피 대책 수립, 관련 전산개발 및 관리, 관련 마케팅 공동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더욱 높아 짐.

④ 2017년 말 퇴직연금 추가 납입시기에 ◇◇그룹의 계열사를 주 타깃으로 설정하고, 퇴직연금 추가 납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미거래 계열사(○○건설 등)를 대상으로 신규거래 개시 및 지속적인 신규 마케팅을 추진함.

- 매년 연말의 퇴직연금 추가 납입확대가 실적향상에 중요한 바, 위 회사들과의 신규거래 성공이 ◇◇그룹에 대한 주 채권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금융거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나, 신규거래를 둘러싼 은행 간 치열한 경쟁을 극복하는 최선의 요건이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미거래 계열사에 대한 경영분석과 금융거래 동향 파악, 금융거래 규모예측,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한 신규 마케팅 전략 수립, 관련 인사 면담 및 거래 조건 협의 등을 추진하면서 업무밀도가 증가하였음.

라) 고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① 유족 주장: 고인은 2018. 3. 4.(일) 고객사 접대골프에 참석하였는바, 이를 업무시간에 추가하면 고인의 업무시간은 재해발생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일상 근로 대비 36.6% 증가* 함.

* 기존 1주일 업무시간 41시간 39분에서 13시간을 추가할 경우 54시간 39분임.

② 원처분기관 의견

- 2018. 3. 4. 고인과 함께 골프에 참석한 직원의 진술서와 점심식대를 결제한 법인카드 결제내역, 고인의 문자메시지상 고인이 2018. 3. 4.(일) 골프 모임에 참석했음은 확인됨.

- 소속 사업장 확인 결과, 총무부에 사전 요청할 경우 회사 법인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 예약을 할 수 있으나, 2018. 3. 4. 회사에서 골프 예약을 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로 골프 비용을 결제한 내역도 없으며, 법인카드의 사용이 휴일에도 제한적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법인카드로 점심식대를 결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018. 3. 4. 휴일에 있었던 골프를 고인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유 업무로 보거나 사업주가 주관 내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마)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고인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12)]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41시간 39분
-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25시간 52분
-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53분

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 4. 10. ~ 2018. 3. 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2. 22. / 2016. 4. 29.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2) 일반건강검진 결과

① 2016. 10. 13. 검진

- 신장 173cm, 체중 83kg, 허리둘레 91cm, 혈압 150/90, 공복혈당 93, 총콜레스테롤 192, HDL-콜레스테롤 52, 중성지방 98, LDL-콜레스테롤 120.4
- 소견: 복부초음파상 경도의 지방간 소견임. 심장초음파 검사상 경증 좌심실 이완기능 부전(E/A=0.78), 미세 승모판 폐쇄부전증 소견임. 동맥경화 검사상 정상

12)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Pc on/off 기록상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업무 종료 이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있는 날은 법인카드 사용 시각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인정하였음.

소견이 보이지만 사지혈압이 모두 높아 위험성의 가능성 있음. 현재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복용 중인 약물의 조절이 필요하니 다니시는 병원에서 다시 상담 요망

② 2017. 10. 27. 검진

- 신장 172.9cm, 체중 83.4kg, 허리둘레 95.9cm, 혈압 140/90, 공복혈당 98, 총콜레스테롤 206, HDL-콜레스테롤 54, 중성지방 103, LDL-콜레스테롤 131.4

- 소견: 복부초음파상 경도의 지방간임. 우측 갑상선에 작은 낭종이 관찰됨. 현재 혈압이 조절되고 있은 것으로 보임. LDL-콜레스테롤이 높음.

3)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여부[13)]

주요 내용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13) 청구인은 심사청구시 2018. 3. 4.(일) 고인이 휴일골프에 참석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새롭게 주장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 심사장이 검토한 결과, 회사 총무부에 사전 요청할 경우 법인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 예약을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골프 예약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법인카드로 점심식대 만을 결제하고 골프 비용을 결제하지 않은 점 등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사전 승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를 고인의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가) 급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특이사항 없음

나) 단기과로 기준 충족 여부

-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41시간 39분)이 발병 전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의 1주 평균 업무시간(37시간 32분)보다 30% 증가 여부[14]: 미증가

다) 만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52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함

-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53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함

라)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여부: 해당 없음

4 전문가 의견

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2018. 3. 11.)

1) 사망일시: 2018. 3. 11. 11:17

2)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지주막하 출혈

(나) (가)의 원인: -

3) 사망의 종류: 병사

14)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4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화량과 비교함

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2019-2242호, 일부 발췌)

- 의학영상 및 사망진단서상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발병하여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 고인은 1992년 1월 위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2017년 1월부터 ○○의 영업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주로 담당한 업무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을 주된 고객으로 영업)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기업고객과의 관계 구축과 상품판매 등 점포운영을 총괄하였으며, 퇴근 후 고객접대 등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기 전일인 2018. 3. 8.(목)은 08:53~18:19 근무하였고, 발병일인 2018. 3. 9.(금) 08:48 출근하여 오전 업무 후 14:00경 ○○□□□구 소재 '○○금융타워'에서 개최된 '○○ 워크숍'에 참석하여 마케팅 사례 관련 질의응답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이 확인되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 전 1주일간에는 총 5일을 근무하여 업무시간은 41시간 39분으로 일상 업무시간(40시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25시간 52분 및 37시간 53분으로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하는 기준(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에 미달된다.

- 고인은 상병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기 전 주된 고객사(□□그룹) 총수의 구속 등 업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발병 당일 워크숍에서 경영진으로부터 □□그룹과의 거래 확대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던 과정에서 쓰러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은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고인의 '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기 전 □□그룹 총수의 구속에 따른 대책 마련,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일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업무와 관련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과 신규 사업 추진을 총괄하였던 것으로 부서장으로 통상 수행해야만 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이 변화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과 발병 전

정해진 휴일 보장과 연차휴가 사용으로 적정한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업무상 스트레스 등 부담의 정도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지주막하출혈'을 발병시킬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고인의 상병 '지주막하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사 1: 관련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한 바, 2018. 3. 9. 뇌지주막하출혈이 심하였고 치료하였으나 사망하였음. 전형적인 자발성 출혈이며, 뇌압이 높아서 동맥촬영이 되지 않아서 동맥류 확인은 되지 않음. 직업환경조사에서 장기과로나 단기간 스트레스의 급증은 보이지 않았음. 환자의 뇌지주막하출혈은 자발성 출혈로 직업과 연관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2) 자문의사 2: 고인은 은행 영업부장으로 2018. 3. 9. 14:00경 워크숍에서 질의응답 중 쓰러져 동년 3. 11. 사망한 경우임. 주간근무자로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1시간 39분으로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의 업무에 비해 30% 이상의 업무량 증가에 미달하고, 발병 4주 전 및 12주 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각각 25시간 52분, 37시간 53분으로 과로 기준에 미달함. 청구인은 모그룹과 거래관계 변동성, 신규 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부서장으로서 통상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업무 가중 요인으로 보기는 미흡함. 그 외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의학 소견상 자발성 출혈로 판단되며, 업무상 요인이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8. 1. 1. 시행)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제1항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마땅히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고인의 경우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업무부담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함. 청구인은 모그룹과 거래관계 변동성, 신규 사업추진 등과 관련한 스트레스 등을 주장하나 이는 부서장으로서 통상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업무가중 요인으로 보기는 미흡함. 따라서 업무상 요인이 뇌지주막하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기존 업무상 질병인 '뇌실질내 출혈, 기질성정신장애, 기질성뇌증후군 등'으로 요양한 후 장해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망하였으나, 사망 전 응급실 후송 당시 고인의 구강내 이물(떡)이 발견되었던 점,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볼만한 검사나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승인 상병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7738호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1998.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뇌실질내 출혈, 신경인성 방광, 외상후신경증, 기질성정신장애, 기질성뇌증후군'을 승인받고 2000. 11. 28.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2급제5호의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20. 2. 13. 고인이 사망하자 유족인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의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 상병간 인과관계 없음」이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20. 2. 11. 점심 무렵 베지밀 먹고 떡 드신 다음 입에 물고 있으면서 화장실 가서 앞으로 있다가 넘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2020. 2. 13. 13:00 직접사인 '뇌 내출혈'로 사망한 경위입니다. 원처분기관 의견서 내용에 삼킴 장애에 관한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은 근거 내용인 다양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사료됨. 질식사의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사망하는 확률이 높음. 하지만 고인은 즉시 사망한 것이 아니며, 사망 당시 직접사인이 '뇌 내출혈'이라고 판정받았으므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및 심사청구 이유서

2) 청구인 보충서면(2020. 8. 31. 추가 제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원처분기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및 처리결과 알림 사본

5) 원처분기관 조사보고서 사본

6) 사망진단서(○○병원) 및 의무기록지 사본

7) 청구인 내원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지 사본

8)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9)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사본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1)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고인은 「2020. 2. 11. 점심 무렵 베지밀 먹고 떡 드신 다음 입에 물고 있으면서 화장실 가서 앉아 있다가 앞으로 넘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였으나 2020. 2. 13. 13:00 사망함」의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2) 고인에 대한 주요 요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승인 상병명: 뇌실질내 출혈, 신경인성 방광, 외상후신경증, 기질성정신장애, 기질성 뇌증후군

나) 요양 승인기간: 1998. 4. 29. ~ 2000. 11. 28. 총 945일(입원 291일, 통원 654일)

다) 장해등급: 제2급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 고인을 진료한 □□병원의 '간호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9. 9. 30. 17:40) 보호자(아내) 간호사실로 나와 환자가 평소에 식사 반 정도는 먹었었는데 지금 재첩국에 밥 말아서 먹여보니 입 안에 머금고 있기만 하고 통 삼키질 못한다고 함. 두 숟가락 정도 먹여봤는데 도저히 먹질 못한다 함. 환자에게 가 보니 입 안 가득 음식물 머금고 있기만 하고 못 삼키는 모습 보임

나) (2019. 9. 30. 18:30) 음식을 삼키는 것 안 된다고 하니, 오늘 하루 금식하도록 하고, 내일 NM consult 보도록 하자 함

다) (2019. 10. 1. 07:20) 못 삼키고 하는데 억지로 삼키다가 기도로 넘어가면 기존에 있는 폐렴 더 심해질 수 있으며 금일 오전 주치의 회진 시 식이 여부 확인 후 식이 가능하다 할 시 신청해드리겠다 설명함

4) 고인에 대한 ○○병원의 '진료기록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응급센터기록지(2020. 2. 11.)

- C/C)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 P/I) 1998 뇌출혈(좌천 □□ 수술) 이후 회복. 2019. 10월경 폐렴으로 동래 □□ 입원-보름간 치료. 이후 회복. 금일 점심 무렵 베지밀 먹고 떡 드신 다음 입에 물고 있으면서 화장실 가서 앉아 있다 앞으로 고꾸라져 119 신고했다고 함. 15:26 119 신고됨. 29분 도착. 당시 PEA리듬. 입에 이물이 많이 있었다고 함. LAM 삽입 후 CPR하면서 응급실 내원함.

- P/H) 기타
- ROS) 특이 소견 없음
- P/E) 입안에서 떡 덩어리 발견됨. 제거 후 intubation. CPR 지속: PEA 소견 -〉 16:02 pulse(+). POSC(+)/no ROSV(-). chest: both UL hazziness(+)
- impression R060 (주) 호흡곤란, J690B (부) 흡인폐렴 NOS

나) 간호정보조사지(2020. 2. 11.)

- 입원 동기) 10년 전부터 뇌수막이 있어 평소에 거동 불편하던 분으로 집에서만 생활했었고 4일 전부터 자주 넘어졌고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고 함. 금일 점심 떡과 베지밀 식사로 드셨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보던 중 넘어져 의식소실 있어 119 타고 내원함
- 과거병력
  - 25년 전 △△병원 뇌출혈 OP X. PO Tx
  - 25년 전 △△병원 고혈압 PO Tx
  - 10년 전 ◇◇병원 뇌수막 진단
  - 6년 전 ◇◇병원 위에 돌이 있다고 함? PO Tx
  - 2019년 11월 보건소 치매 진단
  - 2019년 10월 ◇◇병원 폐렴 진단 PO X

다) 퇴원요약지(입원일 2020. 2. 11., 퇴원일 2020. 2. 13.)

상기 환자 brain hemorrhage. 기질성 뇌증후군, 정신 장애, 신경성 방광 등으로 갑작스런 의식 저하 발생했고 119에서 CPCR 시행하며 본원 ER 내원. 이후 intubation, vent. care 했으나 AKI, hepatic failure 진행하면서 사망하였습니다.

4 전문가 의견

가. 사망진단서(○○병원 2020. 2. 13.)

1) 성명: 이○○

2) 사망일시: 2020. 2. 13. 13:00

3) 사망장소: 의료기관

4) 사망원인(직접사인): 뇌 내출혈

5) 사망의 종류: 병사

나. 진료소견서(○○병원 2020. 4. 9.)

1) 병명: 상세불명의 뇌 내출혈

2) 소견: 상기 환자 과거 뇌출혈 병력 있는 분으로 당시 급격한 의식저하로 119 통해 응급실 내원했고 무맥성 전기활동 리듬으로 심폐소생술 시행 후 자발 순환 회복되어 중환자실로 입원했습니다. 발견 당시 기도 분비물 흡인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의해 폐렴이 동반되었으나 급격한 의식 저하는 뇌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어 뇌 내출혈로 사인 지정하였습니다.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응급실 내원 당시 '입안에서 떡 덩어리 발견' 기록이 있는 바, 뇌 내출혈보다는 질식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봄(자문의사회의 상정)

라.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20. 6. 4.)

1) (자문의사 1) 주치의 진단서상 사망원인으로 뇌출혈 가능성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검사 없었으며 종결 후 20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요양 중인 상태로, 뇌출혈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 또는 이전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의 소견과 환자의 연령 등을 고려한다면 망자의 사망이 기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사 2) 발견 당시 구강 내 떡 등 이물이 발견되고, 요양 이후 특별히 삼킴 장애 등 이상이 없었고, 사망 후 뇌출혈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고, 요양 종결 후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불승인 타당함

3) (자문의사 3) 요양 종결 후 20년 동안 구음, 삼킴 장애로 치료받은 적 없음. 응급실 내원 당시 '입안 떡 덩어리 발견' 기록 있음. 뇌출혈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는 상태. 요양 종결 후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음. 따라서 뇌 내출혈 보다는 질식사의 가능성이 높다고 봄

4) (자문의사 4) 응급실 내원 당시 입안에서 떡 덩어리가 발견되고 금번 사고 이전 명확한 삼킴 장애가 확인되지 않음. 뇌출혈의 근거가 되는 검사나 기록 없음. 20년 이상 업무 종사 이력 없는 점 등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 상병간 인과관계 없음

5) (자문의사 5) 응급실 내원 당시 입안에서 떡 덩어리가 발견됨. 금번 사고 이전 명확한 삼킴 장애가 확인되지 않음. 뇌출혈의 증거 없음. 망인의 사망과 기승인 상병간 인과관계 없음

5 관계법령 등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은 1998.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뇌실질내 출혈, 기질성정신장애, 기질성뇌증후군 등'을 승인받고 요양 후 장해등급 제2급제5호로 결정 받고 보험급여를 지급받던 중 2020. 2. 13. 사망하였으나, 고인이 사망 이틀 전인 2020. 2. 11. 화장실에 가던 도중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고인의 구강 내 떡 등 이물이 발견되었던

점, 고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검사나 기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은 떡을 먹던 중 기도 등이 막혀 흡인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고인의 사망과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는 장해등급의 기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직접사인이 '뇌 내출혈'인 점에서 사망과 기승인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응급실 후송 당시 고인의 구강 내 떡 등 이물이 발견되었던 점, 고인이 응급실 내원 당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검사나 기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은 떡을 먹던 중 기도 등이 막혀 흡인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고인의 사망과 기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사업장 내 동창모임 중 갑자기 쓰러져 상병명 '중대뇌 경색증', '이완성 편마비(우측)'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 뇌경색이 뚜렷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도한 업무강도, 업무상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686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1998. 10. 1.부터 소속 사업장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19. 2. 22. 23:05경 동창 모임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된 후 상병명 '중대뇌 경색증, 이완성 편마비(우측)'를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발병 전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점, 휴일 부족, 교대 업무 수행, 예측 곤란한 업무 등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개인적 위험 요인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일(2019. 2. 22.)과 인사발령일(2019. 1. 10.) 간의 간격이 1개월 12일에 불과한 점, 인사발령으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에 노출된 점, 기초질환이 전혀 없는 점, 퇴근 이후 업무규정 및 지침 등을 학습한 시간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최초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최초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6) 경력증명서(○○은행) 사본

7) 청구인 PC on/off 기록 사본

8) 청구인 시간외 근무기록 사본

9) 의무기록지 사본

10) 업무상질병판정서(○○-2020-****호) 사본

11)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12)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기록(2019. 2. 23.)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9. 2. 22. 23시경 술 마시고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쓰러져 LMC 들러 촬영한 MRI에서 Lt. MCA territory infarction 소견 보여 f/e 위해 본원 er 내원'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회식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료 근로자 진술 내용(2020. 4. 24. 유선 확인)

- 청구인은 2019. 2. 22. 21:00경 은행 내 고등학교 동창모임 1차 회식장소(약 30명 참석)에 다른 동창들보다 늦게 도착하였음

- 21:30경 1차 회식이 끝난 이후 일부 인원(약 8~9명)이 택시를 타고 22:30경 노래방에 도착하였고, 23:00경 청구인이 구토 증세를 보여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음

- 청구인은 1차 회식에서 1~2잔, 2차 회식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음

나) 조사 결과

- 청구인이 참석한 2019. 2. 22. 회식(1, 2차 회식)은 사업장 내 고등학교 동창모임의 회식으로 참석의 강제성 여부, 사업주(대리인) 참석 여부, 참석 범위, 비용부담 주체 등의 사항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행사로 볼 수 없음

3) 청구인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근로관계 등

(1) 청구인(만 43세, 남자)은 1998. 10. 1. ○○은행에 입사하여 약 20년 5개월간 행원으로 근무하였음

(2)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정규직, 주 5일 근무(09:00~18:00)이고 담당업무는 대출 업무(신규 상담, 대출기일 관리, 만기대출 갱신, 대출 관련 서류 징구 및 정리, 전산 등록 등)임

(3) 청구인의 직무이력을 보면 2000. 1. 21. 이후 여신사후관리담당, 가계여신, 소호여신, 기업여신, 주택도시기금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사무분담이력 참조)

(4) 청구인은 2018. 1. 22. 현 근무지(○○종합금융센터)로 인사 이동되었음

(5) 청구인의 업무가 2019. 2. 1.부터 기존 기업고객업무(소호여신 등)에서 기업여신 업무로 변경되고, 근무장소는 2층에서 1층으로 이동됨

나) 당사자 주장 내용

(1) 청구인 측

- 청구인은 기업 대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영업 목표로 인한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내 기업금융업무로 인사 이동되어 심적 부담이 컸음

- KPI는 핵심성과지표를 의미하며 주로 승진,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데 개별 직원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목표를 부여하고 그 달성률을 바탕으로 KPI를 작성합니다. 청구인이 근무한 ○○종금센터는 인근 6개 지점으로 구성된 그룹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각 지점의 KPI를 취합, 정리, 가공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음

(2) 사업장 측

- 청구인은 이번 인사이동 이전에도 기업금융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고, 과거 2008년부터 소호여신 등 기업고객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 KPI(핵심성과지표) 관리업무는 지점의 전체적인 목표와 달성률을 관리하는 업무이고 직원 각자가 사무분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해가는 방식이므로 청구인이 지점 전체의 목표달성을 책임지는 것은 아님

다) 기타 사항

(1)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2) 일반건강검진결과

- 2015. 10. 24. 검진결과: 정상B, 혈압관리, 신장 175㎝, 체중 64㎏, 혈압 110/64㎜Hg, 공복혈당 87

- 2017. 11. 11. 검진결과: 정상A, 신장 175㎝, 체중 63㎏, 혈압 115/66㎜Hg, 공복혈당 81, 위험음주

(3) 사회력(응급의료센터기록 참조)

- 흡연력(무), 음주력(주 1회 1병)

4) 고용노동부 고시(제2017-117호, 2018. 1. 1. 시행)에 따른 업무부담 여부

주요 내용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발생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가) 급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청구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아니함

나) 단기과로 기준 충족 여부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7시간 13분, 발병 전 12주간(발병 전 1주간 제외) 업무시간 35시간 58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다) 만성과로 기준 충족 여부

-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39시간 35분, 36시간 54분으로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됨

라) 업무부담 가중요인 해당 여부: 해당 없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2019. 10. 18. ○○대학교병원)

상기 환자 우측 상하지 마비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 및 보행 불가능하며 인지저하 소견 관찰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Brain MRI와 의무기록 검토 상 신청 상병 모두 인지됩니다. 업무력 조사 후 질병판정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요합니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발췌)

청구인은 은행 행원으로 근무한 자로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이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 13분, 39시간 35분, 36시간 54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휴일부족, 교대 업무 수행여부, 예측 곤란한 업무 등 추가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병 발병의 원인은 개인적 위험 요인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사 1: 상기자는 ○○은행에 근무하는 분으로 2019. 2. 23. 중대뇌동맥 영역의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고 치료받았음. 직업환경 조사에서 장기간 과로 및 단기간 스트

레스의 급증이나 급격한 환경변화가 보이지 않음. 당시 중대뇌동맥의 완전 폐색이 보이는데 이 폐색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음. 뇌경색 발병과 직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

2) 자문의사 2: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7시간 13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9시간 35분, 36시간 54분으로 이는 단기 및 만성적인 과중 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2019년 1월 인사발령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무장소가 2층에서 1층으로 이동된 점, 근무경력이 20년 5개월로 제반 업무에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기업금융업무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에 따른 통상적인 스트레스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2항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상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발병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해당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뇌실질내출혈 등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근경색증 등의 심장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로 인해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 발병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나,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인사이동에 따른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MRI 상 중대뇌동맥의 완전 폐색이 보이는데 이 폐색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음.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47시간 13분으로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30% 이상 증가하지 않음.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각각 39시간 35분, 36시간 54분으로 이는 단기 및 만성적인 과중 부담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은 2019년 1월 인사발령으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무장소가 2층에서 1층으로 이동된 점, 근무경력이 20년 5개월로 제반 업무에 적응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기업금융업무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무에 따른 통상적인 스트레스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4 » 고인의 직접 사인인 우측 뇌실내출혈은 2011년 업무상 질병으로 기승인된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 중 기존 출혈 부위에서 다시 출혈이 일어나 우측 뇌실 및 시상부까지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388호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7. 8.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故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1. 5.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출혈, 신경인성 방광, 좌안 실모양 각막염, 요로감염, 신장 및 요관결석성 폐색을 동반한 수신증, 기관절개상태'를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 21. 직접사인 '뇌실내출혈'로 사망하였다. 이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및 주치의 소견 조회서(○○대 ○○병원), 2020. 1. 13. 두부 CT 확인 결과, 2011. 5. 12. 좌측 시상 및 뇌실 출혈로 치료 사실이 있으며, 2011. 5. 12. 좌측 시상부 및 뇌실 출혈로 인한 뇌손상이 고인의 사인에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직접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에 반대측 시상부 출혈 및 뇌실 파급이 직접 사인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인과 기승인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인은 2011. 5. 12. 최초 발병으로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출혈, 신경인성 방광, 좌안 실모양 각막염, 요로감염, 신장 및 요관결석성 폐색을 동반한 수신증, 기관절개상태'를 진단 받고 사망에 이른 날까지 약 9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상병 상태는 호전되지 않아 중증요양상태 제1급 3호를 결정 받았고, 주 상병인 뇌실내 출혈로 인해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으며 의료기관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할 정도의 전신불구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항상 누군가의 간병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며, 고인의 사망원인이 최초 승인된 상병인 뇌실내출혈에 의한 것으로 주치의가 진단한 점, 뇌출혈 외에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점 등 고인은 최초 승인 상병에 기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하는데 있어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 이 청구 건에 있어 고인은 최초 발병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로 편마비 증상으로 재활치료에 전념하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①의학적으로 고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은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이며, 직접적인 사인도 뇌실질내출혈에 있다는 점, ②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고, 갑작스럽게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뇌실질내 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는 점, ③재해발생 이후 장기간 재활치료로 인해 신체기능의 저하 또는 전신상태의 악화가 생존가능성을 낮추거나 단축시켰다는 점, ④업무상 재해 이전 특별한 신체적 문제가 없었던 점, ⑤고인의 사망원인이 개인질환으로 인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 고인의 사망 시기가 일반 사람들에 비해 빨리 진행된 것은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으며 승인 상병인 뇌실질내출혈 외에 다른 사망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최초 업무상 재해로 얻은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수명이 단축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바,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및 심사청구 이유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사본

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5)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6) 사망진단서(○○대학교 부속 ○○병원) 사본

7) 원처분기관 추가상병신청서(2020. 1. 17.) 사본

8) 영상의학자료

9) 의무기록지 사본

10)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 사본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신청서상 고인의 재해경위는 "2011. 5. 12. 저녁식사를 마치고 업무 복귀 후 18시 20분경 회사 인근 ○○주차장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갑자기 쓰러져(뇌실내출혈) 18시 40분경 동료에게 발견되어 119로 ○○병원으로 후송됨"으로 확인된다.

2) 고인에 대한 주요 요양승인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승인상병명

- 최초요양: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출혈

- 추가상병: 신경인성 방광, 좌안 실모양 각막염, 요로감염, 신장 및 요관결석성 폐색을 동반한 수신증, 기관절개상태

나) 불승인상병명: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우측시상부)

다) 요양 승인기간: 2011. 5. 12. ~ 2020. 1. 21.(입원 3,031일, 통원 146일)

3) 고인은 2013. 6. 10. 중증요양상태등급(제1급제3호) 결정되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았으며, 사망진단서상 2020. 1. 13. 발병하여 2020. 1. 21.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직접 사인 '뇌실내출혈'로 사망하였다.

4) 고인이 사망 이전 요양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병원(2020. 1. 13.)

- S: seizure like movement, reddish face skin discoloration/ abdominal distension?

- 현재 및 과거병력

  • 2011. 5. 12. ICH, ○○병원 수술

  • 2011. 7. 뇌수종, VPS op

  • 2016. 10. 21. ureteral stone

  • 2017. 3. 9. tracheal fenestration 시행. □□병원

- 경과요약: 안정된 상태에 갑자기 발작 증상 발생

나) ○○대학교 ○○병원(2020. 1. 13.)

- (주호소) post seizure /Onset: 2020-01-13 16:40

- (현병력) 상기 환자 요양병원에서 bed ridden으로 지내는 분으로 금일 오후 4시 40분경 숨쉬기 힘들어 하고 팔다리가 굳는 모습이 있어 응급실 내원함. 이전 ○○

병원 OP/ VP shunt 시행.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보호자 지쳤다고 함.

- (과거력, 사회력, 가족력) HTN, DM/ hydrocephalus s/p VP shunt/ ICH
- (경과 및 치료요약) 상환 내원 후 수술적 치료 거부 및 DNR작성하였으며 이후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2020. 1. 21. 11:50am 호흡(-), 맥박(-), eye reflex(-), EKG flat하여 사망 선언함.

5) 고인은 2020. 1. 13. 뇌CT검사 결과,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우측시상부)'를 진단받아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자문의의 "뇌CT상 우측 시상출혈 및 뇌실내출혈이 확인되며 이는 고혈압성 출혈로 사료되고 2011년 발생한 좌측 기저핵출혈과 동일한 고혈압이 원인이나 재해 당시 출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합병증이 아니므로 2011년도 출혈과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등 고인에 대한 최근 10년(2010. 8~) 동안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확인되는 요양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0. 8. 3./ 8. 18.(2회): 이진우내과의원/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 2014. 12. 2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20. 1. 13.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4 전문가 의견

가. 사망진단서(○○대학교 부속 ○○병원, 2020. 1. 21.)

1) 발병일시: 2020. 1. 13. 16:30

2) 사망일시: 2020. 1. 21. 11:50

3) 사망장소: 의료기관

4) 사망의 원인: (가)직접사인 - 뇌실내출혈

5) 사망의 종류: 병사

나. 주치의 소견 조회서(○○대학교 부속 ○○병원, 2020. 7. 2.)

1) 환자의 사망원인인 '뇌실내출혈'의 상세부위

- 좌뇌 시상, 뇌간, 뇌실(측외실, 제3뇌실, 제4뇌실)(2011년 5월 12일 CT소견)

- 우뇌 시상, 뇌간부, 뇌실내출혈(2020년 1월 13일 CT)

2) 환자의 산재 승인상병과 사인(직접사인: 뇌실내출혈) 간 의학적 인과관계 여부: 우측 시상, 뇌실내출혈, 뇌간부 출혈은 2020년도, 좌측 뇌시상, 뇌간, 뇌실 출혈은 2011년도이며, 별개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

진료기록지, 사망진단서 및 주치의 소견 조회서(○○대 ○○병원), 2020. 1. 13. 두부 CT 확인 결과, 2011. 5. 12. 좌측 시상 및 뇌실 출혈로 치료 사실이 있으며, 2011. 5. 12. 좌측 시상부 및 뇌실 출혈로 인한 뇌손상이 고인의 사인에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직접 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에 반대측 시상부 출혈 및 뇌실 파급이 직접 사인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되어 고인의 사인과 기승인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및 제71조(장의비)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2011. 5. 12. 발병한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 21. 직접사인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2020. 1. 13. 시행한 두부 CT 영상자료를 보면 기존 출혈 부위인 좌측 뇌실에서 다시 출혈이 일어나서 우측 뇌실 및 시상부까지 광범위하게 출혈이 발생한 소견으로, 이는 기승인상병과 관련된 재출혈 소견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별표에 따라,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업무상의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또는 요양 중의 사망일 경우에는 승인상병과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사망의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사망과 관련된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 진행과정을 급격히 초과하여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최초 발병 상병인 뇌실질내출혈로 인한 편마비 증상으로 재활치료에 전념하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인은 2011. 5. 12. 발병한 '좌측 기저핵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 21. 직접사인 '뇌실내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2020. 1. 13. 시행한 두부 CT 영상자료를 보면 기존 출혈 부위인 좌측 뇌실에서 다시 출혈이 일어나서 우측 뇌실 및 시상부까지 광범위하게 출혈이 발생한 소견으로, 이는 기승인상병과 관련된 재출혈 소견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고인의 사망과

승인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은 법인 사업장 대표이사의 사위 및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점,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번역작업에 대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패스트푸드점의 야간근로는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19분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4625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회사의 자금난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2019. 12. 2. 아침에 급체를 한 것 같아 병원으로 가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주차된 차와 충돌한 후 병원으로 후송된 결과, 상병명 '무산소성 뇌손상, 급성 심근경색증,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를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단기 내지 만성적 업무부담 요인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정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현 사업장 외 ○○점 및 □□시 소재 □□(주)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현 사업장과 ○○의 근무시간을 합산시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31분이며, 번역 사업장의 경우 번역의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우나 126P 분량의 번역을 하였고 1시간당 3P 분량을 번역한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하면 총 42시간이 소요되며, 이를 포함하여 총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4시간 01분에 해당한다.

나. 또한, 2018. 10. 26. ~ 2019. 11. 8.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22:00~익일 07:00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므로 쉬는 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4시간으로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며, 현 소속사업장 외 ○○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 번역 아르바이트 등으로 휴게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고, 주간 및 야간 근무를 반복하는 등 근무형태가 특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주장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원처분기관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문서 사본

4) 요양급여 신청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질병) 사본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2020-***호) 사본

7) 보험가입자(○○(주)) 확인서 및 문답서 사본

8) 근로연봉계약서(○○(주)) 사본

9) 일반건강검진 결과 사본

10)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입수현황 사본

11)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12) 원처분기관 추가 조사 자료 사본

13) 의무기록 사본

14)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사실 확인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회사의 자금난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2019. 12. 2. 아침에 급체를 한 것 같아 병원(○○대병원) 예약을 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심정지로 인해 의식을 잃고, 주차된 차와 충돌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게 됨”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2020-***호) 등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입사일자: 1999. 11. 1. (4대보험 취득이력)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60분

나) 업무내용

(1) 청구인 주장(정신적 부담 여부 등)

- 용역계약 사전조사 업무와 세금과 관리비 등 재정적인 문제로 관과 타협하여 일부분만 우선 납입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음

- 회사의 재정이 어려워 폐업을 해야 하지만, 부채가 너무 많아 새로운 용역계약을 보고 유지하고 있는 중이며 2018년 가을부터 계약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 부채는 쌓여가고, 세금이나 관리비 금융권의 독촉 등으로 인해 심적 부담이 컸으며 회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함

- 기타 고려사항: 용역계약 건으로 상대방의 스케줄에 맞춰서 회의도 하고, 지방으로 사전 조사도 실시하여 사무실 업무 외에 외부근무도 잦아 근무 일정 불규칙함

(2) 보험가입자(○○(주)) 진술

- 회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고 2014년 3월 이후 대표이사와 청구인 2명만 근무하였음

-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연체되어 근무 중 전기난로로 난방을 하였음. 용역계약이 계속 연기되면서 자금압박을 받음

- 많은 빚으로 회사를 접을 수도 없고 계속 늘어나는 빚으로 청구인 개인 소유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대출 상환과 임대료, 4대보험, 각 종 세금 독촉으로 스트레스가 있었음

- 현재 화장품 원료인 미네럴 농축액 판매업을 하고 있으나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용역계약(묘지와 관련된 사업) 건에 관한 사전 조사 진행 중에 있었음

- 사업주 본인이 청구인에 대한 근무 지시 및 감독을 구두나 유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근거 자료는 없음

- 급여는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함

다) 일반건강검진 내역

년도	신장/체중 (cm/kg)	혈압 (mmHg)	공복혈당 (㎎/㎗)	총콜레스테롤 (㎎/㎗)	HDL (㎎/㎗)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	검진결과
2014	172/64	121/74	102	176	42	86	117	정상B, 일반질환 의심
2015	172/65	102/68	-	-	-	-	-	정상B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12. 17. ~ 2011. 10. 4. 심한스트레스에대한상세불명의반응 [○○한의원]
- 2019. 5. 3. ~ 2019. 5. 6. 기타명시된두통증후군 [○○신경외과의원]

마) 기타사항(2015년 일반건강검진 문진내역 발췌)

- 음주: 1주 평균 1회, 1잔
- 흡연: 비해당

3)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재해발생 이전 12주간에 재직한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재산정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실관계 확인

(1) ○○(주)(사업주 확인서 등)

-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사위로 1999. 5. 1.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근무중에 있음
-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으며 업무내용, 근로시간 및 임금 등의 근로제반 조건이 명시됨
-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직책은 전무임

- 업무내용은 대표이사에 의해 정해지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청구인은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5,000,000원)을 현금 또는 계좌로 수령하였음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업주가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 청구인은 ○○(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2017. 12. 14.자로 이사로 등재되었고, 주주 명부상 소유 주식 수가 청구인 15,000주(10%), 김○○ 15,000주(10%), 김○○ 82,500주(55%), 김○○ 15,000주(10%), 사업주 7,500주(5%), 정○○ 15,000주(10%)로 각각 별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청구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 운영 자금에 대한 대출금 만기 연장 및 한도 감액의 건 등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으며, 2019. 4. 26.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110,000,000원을 대출받고 이에 대해 ○○(주)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연대보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도 확인됨(이사회의사록 등)

□ **정관(○○(주))**

❍ 제32조(대표이사) ①당회사는 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에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둔다. ②사장,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사장은 당 회사를 대표한다.

❍ 제33조(업무집행) ①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사장이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

- 2018. 10. 26 채용되어 ○○점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함

- 근무일: 금요일, 일요일

- 근무시간: 22시~익일 7시(휴게시간 1시간)

- 출·퇴근기록은 프로그램 카드리딩으로 관리함

- ○○점은 24시 매장으로 무인경비시스템 on/off 내역이 없음

(3) □□(주)

- 청구인은 2019. 11. 6 ○○도시철도 차량기지에서 만나 번역작업을 의뢰받음

- 근무 장소의 지정은 없으며, 상근 업무가 아니므로 출·퇴근 대장을 작성하지 않음

- 근로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무서에 기타 자영업으로 사업소득세를 신고함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나) 원처분기관 의견

(1) ○○-근로자성 불인정

- 청구인은 사업주의 비동거 친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수령하였으며, 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일부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① 정관에 의해 전무로 선임되고,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 ② 주주명부상 소유 주식수가 총150,000주 중 15,000주로, 동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업무집행권 또는 업무대표권 행사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점 등이 확인되어,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근로자성 인정

- 청구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3) □□(주)-근로자성 불인정

- 청구인은 근로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업무내용이 용역계약과 유사하고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을 보았을 때,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불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청구인의 급여지급 관련(○○(주))

가) 사업주 문답서: 월 급여는 500만원으로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함

나)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

(단위: 원)

구 분	2019. 1.	2019. 2.	2019. 3.	2019. 4.	2019. 5.	2019. 6.
급여 명세서	5,155,760	5,000,000	5,141,090	5,141,090	2,711,010	2,711,010
계좌내역 (입금일)	5,150,480 (2019.1.26)	-	-	5,150,480 (2019.4.23.)	-	-
구 분	2019. 7.	2019. 8.	2019. 9.	2019. 10.	2019. 11.	2019. 12.
급여 명세서	2,711,010	2,846,010	4,534,750	4,534,750	4,534,750	4,534,750
계좌내역 (입금일)	-	2,000,000 (2019.8.28.)	-	5,000,000 (2019.10.31.)	98,120 7,050 1,359,182 (2019.11.30.)	-

5) 원처분기관에서 산정한 고인의 근무시간(○○(주))

-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 40시간 00분
-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0시간 00분
-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37시간 20분
- 산정 근거: 사업주 진술

6)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는 소속 사업장인 ○○(주)과 원처분기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에서의 근무시간을 합산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야간 근로에 따른 30% 가산 포함)

-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 00시간 00분
-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2시간 33분
-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15시간 19분

나) ○○ 및 ㈜□□의 근무시간 합산 결과

-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 40시간 00분
-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33분
-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 52시간 39분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9. 12. 28.)

-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로 심폐소생술 후 회복되어 관상동맥조영술 시행하였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의 폐색 확인되어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술 시행하였음. 발생한 심부전에 대한 치료 유지하고 경과관찰 하였으며 환자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의식장애로 입원 치료 중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영업 종사자로 재해일 12:05경 정차된 차량 충돌을 일으킨 차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됨. 심폐소생술 후 회복되어 관상동맥 조영술 후 관상동맥 성형술 및 스텐트 삽입 시행함. 현재 의식없는 상태며, 기관지 절개 시행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서(○○-2020-*호, 주요 내용만 발췌)**

- 먼저 신청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등 의학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심의위원 중 소수의 의견은 청구인의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병 발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상병과 업무와 상당 인관관계가 있는 건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나,

- 심의위원 다수는 청구인은 회사총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로 과중 요인이 있으나, 신청의 경우 고정 주간근무자로 근무형태의 특이점은 보이지 아니하며 근무시간을 살펴본 바, 발병 전 1주 동안 40시간 00분, 발병 전 4주 동안에는 1주 평균 40시간 00분, 발병 전 12주 동안에는 1주 평균 37시간 20분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인 52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단기 내지 만성적 업무부담 요인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발병 당시 청구인은 ○○(주)를 포함하여 3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 사업주의 사위로서 청구인이 정관에 따라 ○○(주)의 전무로 선임 및 등기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시 소재 □□(주)에서 의뢰받은 번역작업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및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번역작업에 대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에 채용되어 행한 주방업무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만 근무시간 및 업무부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청구인이 ㈜□□에서 수행한 야간근로에 따른 30% 가산하여 포함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2시간 33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15시간 19분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여러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마땅히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주) 사업주의 사위로서 청구인이 정관에 따라 ○○(주)의 전무로 선임 및 등기 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시 소재 □□

(주)에서 의뢰받은 번역작업 역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출퇴근 및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번역작업에 대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에 채용되어 행한 주방업무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서만 근무시간 및 업무부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청구인이 ㈜□□에서 수행한 야간근로에 따른 30% 가산하여 포함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2시간 33분, 발병 전 12주간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은 15시간 19분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

근골격계 질환 및 기타 질환

1 » 신청 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실지부의 변성 변화를 동반한 수평 파열은 복합파열로 만성적인 소견이고, 작업동영상을 볼 때 업무시간이 일일 30분미만으로 짧고 대부분 서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릎부위 누적 업무부담이 상병을 초래할 정도로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39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밀링작업을 수행한 자로서, 무릎 부담이 누적되어 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부 골연골염(Grade Ⅰ)'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강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약 10년 이상 밀링작업을 하면서 40~50kg의 프레스 금형 부품을 1일 수십 회에 걸쳐 직접 손으로 들어서 옮기는 업무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당시 직원들의 진술을 원처분기관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 현재 사업장은 호이스트로 금형 부품을 이동하는 기계가 완비되어 과거 근무형태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현재 사업장의 회사는 이미 다른 업체로 넘어간 상태로 조사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임을 알려두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직원 박○○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 박○○ 확인서(사실 확인서):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처럼 호이스트가 밀링 기계까지 안착되지 않은 소재 무게는 크게 50~70kg 부터 적게는 10~30kg 정도의 프레스 금형 부품을 하루 평균 10~20회 정도 손으로 직접 들어 옮기는 것을 항상 봐 왔으며, 그로 인해 왼쪽 무릎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말을 종종 들어왔다.

나. 또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수시로 야근 등 시간외 근로를 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1일 8시간 근무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조사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마땅히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증거조사 신청서[15] 포함)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원처분기관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요양급여 신청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질병) 사본

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15)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의 업무강도(소재 무게 등) 및 근무시간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증거조사신청서를 제출하였음.

7)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 현황 사본

8)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사본

9)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서(○○-2019-****호) 사본

10) 의무기록 사본

11) 영상 의학자료

12) 작업 동영상 자료

1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14)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장시간 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골이 상하게 되었음."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평가 결과 및 업무상질병판정서(○○-2019-****호) 등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업종: 정밀금형제조업

(2)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4. 6. 16.[16]

- 고용형태: 상용직

16)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2014. 6. 25. 로 확인됨.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약 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이력직력

- 2006. 1. 9. ~ 2011. 4. 20.(약 5년 4개월) (주)○○, 밀링작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02. ~ 2006.(약 4년) ○○, 기계 운전원(본인 진술)
- 1996. ~ 1998. / 2001. ~ 2002.(약 3년) □□, 기계 운전원(본인 진술)

※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시 밀링가공 이전에는 기계 운전원으로 약 7년간 근무하였고, 단순 기계 조작으로 무릎 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밀링작업(100%)

(2) 신체부담 작업 내용

❍ 밀링작업

- 작업대 위에 있는 철판을 옮겨 도면에 맞게 철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으로 출근 후 하루 작업할 자재들을 옮긴다.
- 요추와 슬관절을 굴곡한 후 양 손을 뻗어 철판을 들고 약 5m 정도 이동하여 밀링 선반 위로 철판을 가져다 놓는다.
- 선반위에 놓여 진 철판을 밀링 기계위에 고정시킨 후 도면을 보고 밀링을 시작한다.
- 철판을 밀링 기계 위에 고정 시킨 후 요추를 굴곡하거나 슬관절을 굴곡해가며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핸들을 돌려서 밀링을 한다. 1개 작업시 약 40~60분 정도 소요되고, 서서 작업하며, 손잡이의 방향에 따라 슬관절을 굴곡하기도 하지만 1분 이상 서있는 정적자세가 발생한다.

- 밀링 기계와 선반의 거리는 약 1m 미만이며 선반에서 밀링 기계까지 양손으로 철판을 잡은 후 허리를 회전하여 밀링 기계에 고정시킨다.

- 작업량: 10~30개/일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2. 17.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병원
- 2015. 2. 27.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한의원
- 2017. 10. 23. / 2017. 10. 26.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기타근통, 아래다리, ○○한의원
- 2017. 11. 11. 관절통, 아래다리, □□병원
- 2019. 1. 2. / 2019. 1. 3.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한의원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병원, 2019. 6. 15.)

- 상병명: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부 골연골염 (Grade Ⅰ)
- 종합 소견: MRI 관절경상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진구성 소견 보임.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일부 발췌)

1) 종합 소견

- 다학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건강보험 자료를 통하여 2006. 1. ~ 2019. 5. 21. (약 10년 3개월) 제조(밀링가공) 업무를 수행한 직업력 확인되고, 상기 직무 이전에 무릎 부담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밀링작업은 대부분 서서하는 작업으로 철판을 들어 이동할 때 일부 무릎 꿇는 동작이 발생하지만 일일 30분 미만으로 짧았으며, 하루 2km 미만을 걷고, 10~15.5kg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무릎 비틀림은 발생하지 않는 등 좌측 무릎 신체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5년부터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받은 기록 확인되며, 체중은 비만이고 좌측 무릎 사고이력 없으며, 만 **세의 나이 고려하였을 때,

- 청구인 만 **세의 나이로 특별한 운동 및 취미생활 없으며, 무릎 사고 이력 확인되지 않고 영상 및 관절경 소견상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퇴행성 병변에 좀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밀링가공 업무를 10년 3개월간 수행한 기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좌측 무릎 신체부담은 높지 않은 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합니다.

2) 평가 결과: 낮음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2019-**호, 주요 내용만 발췌)**

- 의무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료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 2014. 6. 25. 입사하여 진단일 기준 약 4년 11개월 정도 밀링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소속 사업장 입사 이전에 2006. 1. 9. ~ 2011. 4. 20. 밀링작업과 1996 ~ 1998년 / 2001 ~ 2002년 / 2002 ~ 2006년의 기간 중 약 7년 동안 기계 운전원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결과 밀링가공 업무를 10년 3개월간 수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좌측 무릎 신체부담은 높지 않아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소견인 점 등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업무 내용 및 강도, 작업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지속적으로 취하거나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신청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신체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미흡하여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 파열 슬관절, 좌측 골연골염(Grade Ⅰ) 슬관절 내측부'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사 1: 청구인의 관련 자료 및 MRI 사진을 검토한 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실질부의 변성 변화를 동반한 수평파열이 주인 복합파열 소견으로 만성적인 소견임. 슬관절에 하중이 가해지거나 뒤틀림이 가해지는 운동이나 작업 자세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골연골염에 대해서는 grade I 으로 영상학적으로 뚜렷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불인정함이 타당함.

2) 자문의사 2: 밀링작업을 10년 3개월간 수행한 자로, 좌측 슬관절 부위에 상병이 발생하였음. 업무내용 및 작업동영상을 볼 때 밀링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일부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 수반되나, 일일 30분 미만으로 짧고, 대부분 서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릎 부위 누적 업무 부담이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제1항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 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또는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안 판단에 앞서, 업무강도 및 근무시간 관련 청구인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미 제출한 작업 동영상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등으로 업무강도 등에 대하여 충분히 판단 가능함에 따라 이 건 증거조사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약 10년 이상 밀링작업을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라.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①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실질부의 변성 변화를 동반한 수평파열이 주인 복합파열 소견으로 만성적인 소견임. 슬관절에 하중이 가해지거나 뒤틀림이 가해지는 운동이나 작업 자세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골연골염에 대해서는 grade Ⅰ으로 영상학적으로 뚜렷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아 불인정함이 타당함. ② 업무내용 및 작업동영상을 볼 때 밀링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일부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이 수반되나, 일일 30분 미만으로 짧고, 대부분 서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무릎 부위 누적 업무 부담이 상병을 초래할 정도라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음』이라는 것이다.

마.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뿐만 아니라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 관찰되고, 어깨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높다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7371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5. 13.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상병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미싱, 재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상병명 '양측 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어깨 부위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상병 확인되는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되나, '회전근개 파열, 좌측'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초음파 자료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 진단이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 상병 중 '회전근개 파열, 우측'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였으나, '회전근개 파열, 좌측'에 대하여는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골격계질병 심의관련 업무지침 시달』(근로복지공단 요양부-2925, 2015. 5. 20.)에 따르면 근골격계 질병 확인 유무에 ○○ 의학적 소견상 주치의사와 자문의사의 소견이 동일함에도 판정위원이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한 경우, 표결 전 '합의'로

자료보완 후 재심의를 위해 “보류” 결정하고, 자료 보완 후 재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진 또는 판독 요구 등 자료보완 후 좌측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주장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원처분기관 요양급여 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

4) 요양급여 신청서 사본

5) 청구인 확인서 사본

6) 보험가입자(○○(주)) 의견서 사본

7)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사본

8)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질병) 사본

9) 업무상질병판정서(○○-2020-***호) 사본

10)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11)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12) 의무기록 사본

13) 의학영상(2020. 10. 15.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MRI 등 포함) 자료

14) 작업동영상 자료

1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6)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항공의 용역업체로서 ○○항공 OC빌딩 2층에서 엔진커버 물 받이 슈트를 만들기 위해 재봉틀을 이용하여 길고 큰 원단(검정색의 고무원단)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에서 탁 소리가 났으며 반사적으로 '아'라고 소리 났음. 비행기 엔진 카바를 반복적으로 8년 5개월 동안 만듦." 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2020-***호) 등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생산제품: 비행기 엔진커버 제작, 스트랩, 데모백, 파우치 인터폰 백 등

(2) 근로관계

- 입사일자: 2016. 7. 25.
- 담당업무: 객실용품 수선 및 제작(미싱 및 재단작업)
- 근로형태: 고정 주간 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그 외 1일 2회 1회당 15분간

(3) 과거 근무이력(고용보험)

- 2002. 3. 1. ~ 2003. 10. 16. ○○어패럴 / 티셔츠 봉제
- 2003. 12. 1. ~ 2005. 3. 1. ㈜□□ / 티셔츠 등 봉제
- 2005. 3. 1. ~ 2007. 11. 1. ㈜○○비젼(본사) / 미싱, 오버로크
- 2007. 11. 1. ~ 2009. 5. 1. ㈜○○서비스/시트교체 / 미싱, 오버로크
- 2009. 7. 24. ~ 2009. 11. 11. ○○건업(주)본사 / 청소
- 2010. 6. 7. ~ 2015. 9. 11. ㈜○○ / 비행기엔진커버 제작(미싱작업)

나) 업무내용

- 미싱, 재단, 제도작업
- ○○항공 측으로부터 주문서가 오면 이를 제작하는 업무를 하는 형태(비행기 엔진 커버, WATER WACH슈트, WATER WACH REPAIR 등 부피가 큰 것임)
- 2016. 7월 재 입사 이전에는 미싱작업에 대한 주문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 지원을 나가서 비행기에 들어가는 커피기계, 오븐을 닦기도 하였으며, 2016. 7월 재 입사 이후에는 미싱, 재단, 제도 작업만을 수행하였음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미싱 작업

- 작업내용 및 방법: 원단을 두겹으로 미싱기계에 가져다가 노루발을 밝고 끼워서 발로 밝으면 앞으로 나가면서 박음질을 함. 박음질을 하는 과정에서 원단이 길면 어깨를 써서 앞으로 밀게 되는 자세를 취함
- 밀거나 당기기(20kg, 1일 3회)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큰 것(10KG, 넓이: 958cm x 490cm): 일주일 1회

• 작은 것(200g, 넓이: 160cm x 75cm): 하루에 50개 이상

• 작업시간: 5시간

(2) 제도작업

- 작업내용: 발주한 물건을 초자고로 그리는 작업

- 작업방법: 패턴을 사용하고 초자고를 사용하여 원하는 사이즈를 큰 자로 그림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운반작업: 큰 것 10kg, 작은 것 하루에 50개 이상 운반

• 제도작업: 큰 것 일주일에 1개, 작은 것 하루에 50개 이상

(3) 재단 작업

- 작업내용: 제도작업을 마치면 원단을 가위로 자르는 작업

- 작업방법: 원단위에 패턴을 올려놓고 초자고로 그리고 자를 대고 그린 것을 가위로 자름. 선 자세 및 구부린 자세

- 작업량, 중량 및 작업시간

• 재단작업: 큰 것 일주일에 1개, 작은 것 하루에 50개 이상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 3. 15. ~ 2010. 3. 17.(2회) ○○한의원 /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 2013. 11. 22. ~ 2013. 11. 24.(3회) ○○한의원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5. 6. 13. ~ 2019. 9. 16.(7회) ○○한의원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9. 3. 4. ~ 2019. 3. 15. (9회) ○○한의원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9. 9. 16. ~ 2019. 9. 21.(5회) ○○정형외과의원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마) 기타사항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헬스(자전거, 런닝머신)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정형외과, 2019. 11. 7.)

- 우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어깨 통증 호소, 2019. 10. 22. 우측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등을 시행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사 1

- 양 어깨의 초음파 및 우측 어깨의 관절경 수술 소견상 회전근개의 파열의 소견이 확인되었음

2) 자문의사 2

가)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됨

나) 작업내용 및 부담작업

- 청구인은 비행기 엔진커버 및 파우치 등을 제작하는 업체에 근무하며 제도, 재단, 재봉 업무에 종사하였음. 청구인은 200g 정도 하는 작업 봉제품부터 10kg 정도에 달하는 비행기 엔진 커버까지 제작하였으며, 대형 엔진커버는 주 1회 정도 제작하였다고 함. 재봉 외 업무로는 한 롤에 10kg 정도하는 원단지를 두 명의 작업자가 나눠들고 운반한 뒤, 바닥에 펼쳐 한 쪽 손으로 체중을 지탱하고 다른 손을 이용하여 제도하는 작업도 있었음. 작업 중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진동 등의 근골격계 부담요인이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근무시간은 일 8시간, 주 5일로 1주 평균 40시간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다) 근무력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9년간 현 사업장에 근무하였으며, 이전에도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약 8년간 타 사업장에서 봉제업무에 종사하였음. 청구인의 건강보험 수진이력에서 어깨 관련 진료는 2010년 3월경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처음으로 확인됨

라) 종합소견

- 청구인은 약 17년 동안 상기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작업내용상 어깨의 근골격계 부담작업 노출 수준은 높은 것으로 확인됨. 질병 발생에 개인적 차이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인의 질병 발생에 업무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생각됨. 따라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2020-*호, 주요 내용 발췌)**

1) 청구인은 현 사업장 입사 이전에도 미싱 업무를 7~8년간 수행하였고, 현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발병일까지 8년 6개월간 미싱, 재단, 제도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신청 상병 중 '회전근개 파열, 우측'은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엔진커버 등 큰 천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깨부위의 반복적인 동작과 무리한 힘의 작용으로 인해 어깨부위 업무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3) 다음으로, '회전근개 파열, 좌측'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초음파 자료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하기 어려워 신청 상병 진단이 합당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좌측 견관절 초음파상 회전근개(극상근) 파열, 관절낭 및 견봉하 점액 낭염 소견 확인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뿐만 아니라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고,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은 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불승인 상병과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또는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마땅히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제출된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뿐만 아니라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고,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가 높은 업무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불승인 상병과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회전근개 파열, 좌측'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 소견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동일 연령대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소견으로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4764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0. 3. 9.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중 상병명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한 결과 2019. 4. 11. 상병명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을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청구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수준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서도 자주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1983년부터 2019년 4월까지 지속적으로 철근공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을 포함하면 약 43년간이며 그 업무 내용은 신체부담업무에 해당함.

청구인은 철근을 절단, 가공, 성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각 작업 내용별로 허리부분에 긴장, 부담이 많이 됨. 철근은 규격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가닥에(D29mm)에 40kg 정도임. 철근 2-3개를 2인 1조로 메고 옮기며 하루 800kg~2톤까지 할당량이 있었음. 이외에도 성형 및 가공된 철근을 배근하는 곳에 운반하며 결속할 때 허리를 굽히고 힘을 주어야 하므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함. 조형틀 작업은 하루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허리를 숙여야 함

청구인은 과거 2014. 2. 13. ~ 3. 19. 요통으로 치료받았고 2017년, 2018년에 요추4-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음.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진술, 의학적 소견, 업무 내용에 따른 허리의 부담 정도 그리고 기존 결정기관의 태도 등에 비추어 위법 부당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최초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

4) 최초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5)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사본

6) 보험가입자(○○(주)) 의견서 사본

7) 의무기록지 사본

8) 업무상질병판정서(○○-2019-****호) 사본

9)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1)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1977년부터 2019년 5월 18일까지 총 43년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물리치료, 약물 치료 등을 수행하다가 2019. 4. 11 ○○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허리 통증 및 다리 저림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요추 5번 및 천추 1번 추간판 탈출 및 추간공협착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2019. 5. 31. 해당 병원에서 척추 고정술 및 후방 고정술을 받았습니다.'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 등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현 근로관계 등

- 사업장명: ○○(주) [현장명: ○○재건축아파트공사]
- 근무기간: 2019. 4. 3. ~ 2019. 5. 18.
- 직종: 철근공
- 근무시간: 07:00~17:00(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오전오후 각 15분)

나) 청구인의 연도별 건설현장 근무일수(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기준)

- 2004년(28일), 2005년(83일), 2006년(249일), 2007년(260일), 2008년(272일), 2009년(293일), 2010년(166일), 2011년(263일), 2012년(183일), 2013년(225일), 2014년(230일), 2015년(255일), 2016년(226일), 2017년(172일), 2018년(131일), 2019년(77일) 총 근무일수 3,113일

다) 구체적인 신체부담업무 내용

(1) 철근 운반 작업

- 작업에 필요한 철근을 손으로 파지하여 허리, 팔, 어깨를 이용하여 어깨 위에 올리거나 손을 이용하여 쥐거나 잡은 상태로 작업 장소까지 운반하여 내려놓는 형태의 작업임

- 철근 운반작업 과정에서 허리 전방 굴곡자세, 좌우회전(비틀림) 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2) 철근 배근, 결속 작업

- 철근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허리, 어깨, 팔을 이용하여 들어 올려 해당위치에 일정한 간격(10~20cm)으로 배근하고 배근된 철근을 갈고리(200g)와 결속선을 이용하여 고정 및 결속 작업을 실시함

- 철근의 배근과 결속작업 시 허리 전방 굴곡 자세, 좌우 회전(비틀림)자세, 좌우꺾임(측방굴곡)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쪼그린 자세가 발생되며, 허리를 사용하는 작업을 분당 2회 이상 반복함

라) 당사자 의견

(1) 청구인 주장

- 철근 절단을 현재는 철근을 산소 절단기로 절단하거나, 공장에서 철근을 절단시킨 후, 공사현장으로 가져오지만, 1970년대~1985년 사이에는 우함마(망치)를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함

- 철근 성형 및 가공은 건설현장에 맞게 철근을 구부려 형틀(스크럭)을 만드는 작업을 1977년도~2000년대 초반까지는 철근 성형 기계가 없어서 철근을 고정시키고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온몸의 무게를 실어 구부리는 작업을 하였다고 함

- 기초 바닥 철근 작업 시 아파트의 경우 13mm철근을 주로 쓰고, 기둥부위는 19~25mm를 주로 사용하고 앉아서 작업을 장시간 해야 하기에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함

(2) 사업주측 주장

- 현 사업장은 아파트 현장 재건축 현장으로 주 사용 철근으로 기둥철근 22~25mm, 벽체 10~16mm, 기초 바닥 철근 13mm(기둥부위: 19~25mm), 본 건물 경우 25~29mm를 사용함
- 철근공 1인 일평균 취급 중량은 700~800kg 된다고 함
- 그 외 청구인의 주장과 현 사업장 ○○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기준으로 동일하며, 운반 시 길이에 따라 2인 1조로 작업함

마)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 2009. 6. 24. S33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2014. 2. 13. ~ 2014. 2. 19. M4786 기타 척추증, 요추부
- 2014. 3. 5. ~ 2014. 3. 19.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추간판장애
- 2014. 8. 1. ~ 2017. 1. 6. M5457 요통, 요천부
- 2017. 2. 22. ~ 2017. 11. 23.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추간판장애
- 2018. 8. 8. ~ 2019. 3. 9.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9. 3. 14. ~ 2019. 5. 24.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 2019. 4. 11. M9973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협착, 요추부위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신청서, 2019. 7. 2. □□병원)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2019. 5. 31. 척추 유합술(요추5-천추1)을 시행하였음

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1) 요추부 MRI 검사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의 추간공 협착 소견 보이나 수핵탈출증 소견은 없음

2)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4월부터 재해일까지 총 3,113일의 철근공 직력이 확인됨. 청구인은 1977년부터 약 43년의 철근공 직력을 주장함

3) 건설현장 철근공 업무 대부분의 과정에서, 과도한 허리의 굴곡, 신전, 비틀림, 꺾임 자세와 중량물 취급(들기 및 운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기간, 상병의 상태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청구인의 업무 내용, 양, 기간 등을 종합하면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런 자세 등으로 인해 허리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보이나, 제출된 의학 영상 등에서 요추5-천추1번간에 청구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것 외에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요추5-천추1번간에 추간공 협착의 소견이 보이나, 청구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수준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은 업무상 부담 요인(신체부담작업) 외에도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서도 자주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보다는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자기공명 영상검사 상 제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추간공 협착증이 확인됨. 업무력이 길고 요추부 부담작업이 확인되며 근로기간 동안 수진내역이 확인되는 상태이며 동일 연령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심한 소견으로 보임. 따라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요추 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제출된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반면,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 소견은 확인되고, 청구인의 나이 감안하더라도 동일 연령대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됨. 따라서 신청 상병 중 상병명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에 한해서는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골격계에 발생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또는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결과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이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영상자료 소견상 요추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반면,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 소견은 확인되고, 청구인의 나이 감안하더라도 동일 연령대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됨. 따라서 신청 상병 중 상병명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에 한해서는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 상병 중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상병명 '요추5-천추1번간 추간공 협착'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

고인은 광업소 근무 이력으로 진폐증 진단받아 진폐보상수급 중 사망한 건으로,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와 구술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할 때 심장 질환에 대한 기존 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망 당일 영상자료 소견상 폐의 정상 부위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등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0161호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2003. 6. 30. 상병명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은 후, 2015. 2. 26.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1형(1/1), 합병증 tba, 음영 크기 q/t, 심폐기능 F0(정상)'의 판정을 받아 요양 중 2020. 6. 14. 13:19,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진폐증의 악화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사망일 이후인 2020. 9. 17. 장해등급 제3급제6호(병형 1형(1/1), 음영 크기 t/t, 심폐기능 F2(중증도 장해)의 판정을 받음). 이에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은 2020. 8. 19.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 2인의 "1) 진폐증으로 장해 13급을 받았으며, 진료기록으로 보아 집에서 갑자기 흉통 등이 발생하여 심정지된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 결과 종합해 볼 때 진폐증보다는 심근경색 등에 의한 심정지 가능성이 높아 사망과 진폐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됨, 2) 관련 의무기록 검토 결과, 진폐증 악화보다는 심정지(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사실관계

가. 청구인 주장

고인은 2003년 진폐증 제13급 판정을 받았고, 2015년 요양 판정을 받았으며, 요양 중 점차적으로 심폐기능의 악화를 확인할 수 있고 최종 2020년 진폐증 제3급으로 등급 상향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진폐의 합병증인 폐결핵, 기관지염, 폐기종, NTM과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었고 심폐기능이 F2(중등도 장해) 상태인 것로 미루어 보아 폐의 실질적 파괴가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진폐증으로 인한 폐의 손상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고인이 사망 직전 실시한 ABGA 검사 결과 값에서도 고인이 호흡성 산증 증세를 보이는데 이를 통해 고인이 사망 작전 호소한 호흡 부전과 진폐증과의 인과관계 또한 추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의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사실 관계

1) 고인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2003. 6. 30. 상병명 '진폐증'을 최초 진단받은 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병형 1형(1/0), 심폐기능 F0(정상))의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고인은 2010. 11. 21.자 개정 시행된 산재보험법(법률 제10305호)에 따라 2010. 12. 1.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15. 2. 26. 진폐 정밀진단 결과 '병형 1형(1/1), 합병증 tba, 음영 크기 q/t, 심폐기능 F0(정상)'의 판정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20. 6. 14. 13:19,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진폐증의 악화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2) 고인은 2020. 1. 3.자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 결과 2020. 6. 26. "병형 1형(1/1), 음영 크기 t/t, 심폐기능검사 신뢰도 부족에 따른 심폐기능검사 재검 요망"의 판정을 받았으나, 재검 실시 전인 2020. 6. 14. 사망하였다. 이후 고인은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후인 2020. 9. 17.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제6호(병형 1형(1/1), 음영 크기 t/t, 심폐기능 F2(중증도 장해))의 판정을 받았다.

3)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고인의 분진 직력 및 진폐정밀진단 이력은 다음과 같다.

가) 분진 직력: ○○산업(주)○○광업소 등에서 근무한 분진이력 확인됨

나) 진폐정밀진단 이력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진단의료기관	심사 결과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장해등급
2003. 6.30.	2003. 8.18. ~ 8.23.	근로복지공단 ○○병원	1/0		F0(정상)	13급
2006. 9. 4.	2006.10.16. ~ 10.21.	근로복지공단 ○○병원	1/1	tbi	F0(정상)	13급
2007.10.22.	2007.11.26. ~ 11.30.	근로복지공단 ○○병원	1/1	tbi	F0(정상)	13급
2009. 1. 5.	2009. 3. 2. ~ 3. 6.	근로복지공단 ○○병원	1/1	tbi	F0(정상)	13급
2015. 2.26.	2015. 5.11. ~ 5.13.	근로복지공단 ○○병원	1/1	tba	F0(정상)	13급
2020. 1. 3.	2020. 5.27. ~ 5.29.	근로복지공단 ○○병원	1/1		F2(중증도)	3급

4) 고인에 대한 2020. 6. 14.자 □□대학교병원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발췌).

가) 사망일시: 2020. 6. 14. 13:19

나) 사망 장소: 강원 ○○시 ○○로 *** □□대학교병원

다)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진폐증의 악화 의증

5)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 이후인 2020. 12. 16. 보충 서면 및 업무관련성 평가서(2020. 12. 9.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사본을 각각 추가 제출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라.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마.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경우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인은 광업소 근무 이력으로 2003. 6. 30. '진폐증'을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로 결정받고 개정된 산재보험법에 따라 2010. 12. 1.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중 2015. 2. 26. 진폐 정밀진단 결과로 요양하다가 2020. 6. 14. 사망하였음. 고인은 2020. 1. 3. 마지막 진폐 정밀진단 결과에 의하여 사망한 후 2020. 9. 17. 장해등급 제3급제6호 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음. 고인의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와 구술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은 심장 질환에 대한 기존 병력이 확인되지 않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며, 5년 전부터 폐섬유증이 생기면서 폐기능이 감소하였고 사망 당일 영상자료 소견상 폐의 정상 부위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 등 진폐로 인한 폐기능 저하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고인의 사망과 기승인 상병과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은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5 » 고인은 사망 1년1개월 전 간과 복강내 림프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췌장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시행 중 전신상태의 악화로 인해 사망 2개월전 항암 치료를 중단으로 인한 간수치 및 황달 수치 상승으로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4644호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자로서, 1998. 11. 실시한 진폐정밀 검사 결과에서, 4형(4A) 진폐에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진단되어 산재보험 요양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9. 7. 29. 사망하였다. 이에 고인의 자녀인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췌장암의 진행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라는 자문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망인은 소모성 비가역성 질환인 진폐증을 20년 이상 앓아 오면서 약화된 면역력과 신체 조건으로 보통 평균인의 신체 조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췌장암이 발생하였고,

췌장암과 진폐증이 복합적 요인에 의한 건강 악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췌장암이 진폐증에 의한 합병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인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한 원처분이 부당하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문서 사본

4) 유족연금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6) 사망진단서 사본

7) 의학 영상 자료 및 의무기록 사본

8)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자문 회신서 사본

9)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10)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사본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상 확인되는 고인의 분진 직력 및 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분진사업장 직력

- 1973 3. 1. ~ 미확인, ○○광업소, 탄광부 진폐증

나) 진폐 정밀진단 판정 내역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		심폐기능	장해등급
		병형	합병증		
1984. 12. 10. - 12. 15.	8-301999	4A	미상	F0	11급
1997. 2. 24. - 3. 1.	○○병원	4A	pt	F0	11급
1998. 11. 16. - 11. 21.	○○병원	4A	tba,cv,pt	-	요양

2) 고인은 상병명 '진폐증'을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7급15호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1998. 11.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4형(4A) 진폐에 동반된 활동성폐결핵(tba)의 진단을 받고 산재보험 요양 판정을 받았다. 이후 1998. 12. 17. ~ 2001. 6. 16.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요양을 하다 2009. 6. 12.부터 사망일인 2019. 7. 29.까지 □□병원, ○○대학교○○병원, △△병원, ◇◇병원,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 요양을 하였다.

3) 고인의 사망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고인은 사망하기 1년 1개월 전 간과 복강내 림프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췌장 미부의 악성 종양을 진단받고, 고식적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하였다. 점진적인 전신 상태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기 2개월 전 항암 화학요법을 중단한 뒤 진폐로 입원 요양 중인 □□병원에서 전신상태 악화에 따른 섬망 등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투약을 조절하는 등 말기 췌장암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던 중 점차로 간 수치와 황달 수치가 상승하면서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혈압이 저하되다 사망하였는데, 이러한 사망 경과를 종합하면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 한편, 고인이 사망하기 1년 11개월 전인 2017. 8. 28. □□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3.32 L(88%)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_1)이 1.08 L(44%)이어서 일초율(FEV_1/FVC)이 33%로 고도(F3) 심폐기능 장해에 해당하는

중증의 폐쇄성 환기장애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폐기능검사와 무관하게 이미 고인은 췌장암이 진단 당시부터 다발성 종괴가 동반되어 있어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로, 간 전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황달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망하여 중증의 환기장애 역시 고인의 사망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4 전문가 소견

가. 사망진단서(□□병원, 2019. 7. 29.)

- 사망일시: 2019. 7. 29. 08:15
- 사망장소: 의료기관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미기재, (나) (가)의 원인 - 췌장암

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자문의사 소견

진폐와 사망간의 의학적 개연성 여부 확인 위해 전문조사 의뢰 요망

다.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자문 회신(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2020. 4. 14.)

1) 사망하기 1년 1개월 전 간과 복강내 림프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췌장 미부의 악성 종양을 진단받은 뒤 사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섬망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등 점차로 전신 상태가 악화되다 사망 사흘 전 혈액검사 결과 간기능의 지속적인 상승 및 총 빌리루빈이 상승함이 확인되고, 보존적인 치료만을 유지하던 중 혈압과 의식 수준이 서서히 저하되며 사망하여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2) 사망하기 20년 8개월 전에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활동성 폐결핵(tba)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지만 사망하기 10년 11개월 전부터 진폐 입원요양을 지속한 □□병원의 사망하기 8개월 전부터의 항산균 도말 및 배양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사망과 무관하여,

3)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라. 산재보험법 제71조(장의비)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1998년 진폐정밀단 결과 진폐 및 합병증으로 인해 요양결정을 받고 요양 중 2019. 7. 29. 사망하였는데, 고인은 사망하기 1년 1개월 전 간과 복강내 림프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췌장암을 진단받았고 이에 항암 치료를 시행하였지만 전신 상태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기 2개월 전에는 항암요법을 중단하였고 이후 간수치와 황달 수치가 상승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사망 1년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중증도의 심폐기능 장해는 확인되나 췌장암이 진단 당시부터 다발성 종괴가 동반되어 있었고 사망 당시의 연령을 감안하면 심폐기능 저하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주된 사인은 기저질환인 췌장암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봄이 상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따른 면역력의 악화로 췌장암이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마땅히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인은 사망하기 1년 1개월 전 간과 복강내 림프절에 다발성 전이를 동반한 췌장암을 진단받았고 이에 항암 치료를 시행하였지만 전신 상태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기 2개월 전에는 항암요법을 중단하였고 이후 간 수치와 황달 수치가 상승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사망 1년 전 시행한 폐기능 검사에서 중증도의 심폐기능 장해는 확인되나 췌장암이 진단 당시부터 다발성 종괴가 동반되어 있었고 사망 당시의 연령을 감안하면 심폐기능 저하가 진폐증 또는 합병증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주된 사인은 기저질환인 췌장암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봄이 상당하여 원처분기관의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6 청구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경찰수사 및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던 시점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첫 방문한 시점인 점, 임상 심리검사 상 청구인의 정서적 취약성과 불안정감, 내·외적 자원부족, 미성숙한 자기 방어 등이 확인되어 업무상 질병이라기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반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1596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변전실 설비관리 업무 등을 하던 자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형태 감시, 폭언, 부당한 중징계 등의 과중한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결과, 상병명 '적응장애'를 진단받았다는 재해경위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청상병은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경찰 수사나 처벌 등에 대한 불안감 등 업무 외 사유에 의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정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사실관계

가. 청구인 주장

1)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불안 증상은 2017년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다. 이후 회사와 법적 다툼

등 갈등을 겪으며 증상이 더욱 심해졌으며, 특히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날은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지경이었다. 상병 진단일이 압수수색 당일인 이유는 그 시점에 병원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정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있어 오히려 참작되어야 할 사항이다. 경찰 수사와 자택 압수수색은 청구인에게 극도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신청 상병이 발현하게 된 주요 요인은 아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이 현재 처한 상태 역시 수 년간의 노사분쟁을 이어오면서 감시, 폭언 및 부당한 중징계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과중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서적 불안정이 지속되어 신청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나. 사실 관계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수 년간의 노사분쟁을 이어온 사업장에서 근무형태 감시, 폭언, 부당한 중징계 등 과중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정서적 불안정이 지속되어, 불면, 불안, 초조, 무기력 등의 증상이 발생됨”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업무내용 등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서(○○-2020-****호) 등에 적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관계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케미칼(주)

- 사업종류: 유기화학제품제조업

(2) 근로관계

- 근무기간: 2006. 5. 8. ~ 2017. 12. 20.(재해일)

• 2010. 2. ~ 2017. 12. 생산팀/공무팀 변전실 Operator

• 2010. 1. ~ 2010. 1. 품질보증팀 분석 Operator

• 2006. 5 ~ 2009. 12. 생산팀 생산 Operator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4조 3교대)

- 근무시간: 일 평균 8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12:00~13:00)

나) 이전 직업력(고용보험)

- 2000. 11. 27. ~ 2001. 2. 28. □□테크

- 1999. 8. 27. ~ 2000. 2. 16. △△염공

- 1999. 3. 4. ~ 1999. 7. 27. ◇◇산업

다)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등

(1) 업무 내용

- 청구인의 소속 부서는 공무 이사를 포함하여 1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청구인이 2017. 12. 22. 주간근무조로 발령 전에는 총 4명이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를 실시함

- 청구인의 각종 설비의 운전 및 관리 업무는 제품의 생산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회사의 각종 설비(수전, 발전, C/W, P/W, Air, 냉동, 공업용수)의 운전, 관리 업무와 질소 및 스팀 사용량을 기록하는 것임

(2) 주요 스트레스 요인 등

(가) 청구인 주장

- (일상적 업무 스트레스) 대기발령 전의 변전실 및 유틸리티 근무는 직무요구도를 요하는 중요한 업무임. 업무 시 긴장을 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대기 발령 후 직무상 요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포함하여 청구인에 대한 왜곡 및 비난하는 동료들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하였음

- (직장 내 갈등 및 폭언 등 심리적 외상사건) 2017. 7. 11. 03시경 근무 중 졸고 있는 청구인의 모습을 책임과장이 몰래 촬영하여 도촬한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올려 놓음. 이후 동료직원 등으로부터 비난과 욕설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2017. 7. 12. 06시경 1컨트롤 룸 내 다른 직원 7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의 욕설과 폭언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책임과장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하여 책임과장은 벌금 2백만원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

- (부서이동 및 근무형태 등의 변화) 2017. 12. 22.이후 4조 3교대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변경됨. 이후 2019. 2. 23. ~ 2019. 8. 22. 대기발령, 2019. 8. 23.부터는 자택 대기발령을 받았으며,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직무상 요구사항 없어 스트레스가 심했음

- (괴롭힘 차별 등) 2017년 초반부터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였고 사소한 잘못에도 크게 질책을 당하는 일이 많았음. 2017. 7. 책임과장으로부터의 도촬 및 폭언 등으로 인해 동료 직원의 80% 이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따돌림 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생활하였음. 2017. 12.경 회사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하여 고발되고 경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전환배치 및 대기발령 등의 차별을 받았음

- (금전적 불이익) 주간근무로 교대되면서 야간수당이 없어져 급여가 감소되었으며, 대기발령 이후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통하여 사업장으로부터 상여금을 받게 되는 등 대기발령으로 인한 금전적 불이익을 받았음

- (직장동료의 사망) 평소 노동조합에서 동고동락한 선배인 친한 동료의 사망사건이 2018. 12. 발생함

(나) 보험가입자(○○케미칼) 주장

-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응장애는 그 원인이 청구인 본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 형사재판으로 인한 대기발령 이후에도 경제적(급/상여 정상 지급) 부분도 손실이 없음을 주장함

- 현재 청구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2019. 2. 7.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이며, 현재 1심 선고 완료된 상태임(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청구인은 현재 배우자와 이혼소송(소제기 일자: 2019. 9. 3.)이 진행 중인 상태로 알고 있음. 2019. 12.에는 ○○구 체육인상을 수상할 정도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형사 재판으로 인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그 조차도 질병수준인지 의심스러움이 있음

- 청구인은 자료유출 사건 등이 있었고, 회사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으로 업무 중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 하에 청구인을 주간 사무실 근무자로 전환배치 하였음. 주간근무에 따른 금전적 급여는 모두 지급된 상태이며, 대기발령으로 인한 상여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음

- 회사는 현재 복수노조 사업장으로 2015년 쟁의행위 당시 영구 제명된 조합원들의 주도로 2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취업규칙 변경 등 단체협약은 각 노조별로 별도 교섭을 진행하였음. 2노조는 타결이 되었으며 비조합원 및 1노조 조합원도 취업규칙에 따라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였으므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음

(다) 원처분기관의 조사 내용

- (책임과장의 촬영사건) 책임과장 구00은 동료근로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청구인이 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있음. 책임과장은 책임과장과 생산팀장이 회원으로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이 사진을 게시하여, 청구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청구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하여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됨

- (징계 관련)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책임과장이 징계를 받은 사실은 없었음. 청구인은 동 건 관련으로 최초에는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제소하여 감봉(4월) 처분 이후 최종적으로 경고 처분으로 감경됨(사업장 진술)

- (자료유출 사건) 청구인과 노동조합 위원장은 ○○그룹웨어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회사 대표, 이사, 부장)의 ○○운영 관련 이메일 파일 등을 무단으로 다운받아 기자회견문을 배포함. 무단으로 취득한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으로 유죄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됨

- (금전적 불이익) 청구인이 주간근무자로 전환되면서는 야간근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간근무에 따른 금전적 불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대기발령으로 인한 상여금은 처음에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이의제기를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지급 결정을 받고 추후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동료근로자 사망) 사망한 동료근로자는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파업에 참여 후 회사 징계 등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한 후 회복되었음. 회복 이후 노조 탄압 및 지속된 노-노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어 자살한 사건으로, 청구인과는 평소 친분이 있는 동료근로자임

- (조합원이라는 이유에 따른 불이익) 청구인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소외감, 따돌림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은 필수인력으로 쟁의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쟁의행위로 인하여 회사측으로부터 징계 및 전환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라) 청구인 관련 진료기록 등(○○병원)

(1) 진료기록

❍ (2017. 12. 20.) 최초 내원 시 불면, 불안, 초조, 무기력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외래 방문하여 약물치료 및 상담 중에 있으며, 향후 부정기간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치료 및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증상에 대한 재평가 필요함

- 직장의 외곽 지역에서 4조 3교대 근무자로 악몽을 많이 꾸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증상이 3개월 정도 이어지니 피곤함을 진술함

- 책임과장이 조는 걸 사진으로 찍어 올렸으며, 7일 정직 징계를 받았고 정직 2회면 면직도 가능하다고 하니 부담이 많이 되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건 아니지 않나 했는데 본인 잘못이라고 하고 교육 시에도 본인 이름이 자꾸 거론되고 있음

❍ (2017. 12. 29.) 사진 찍은 분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회사에서는 충돌 우려가 있다고 사무실 주간근무로 대기발령 낸 상태임. 정직처분에 대해 지방노동청에 부당하다고 신고를 하여 정직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결이 난 상태이며, 이런 여러 고민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듬

❍ (2018. 1. 25.) 산재 신청 관련 소견서가 필요하다. 회사에서는 빈 책상에 앉아서 업무 없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며, 얼마 전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노조위원장과 함께 조사를 받았음. 나온 게 없는데도 회사에서 복귀를 안 해주고 있으며, 회사에서는 회사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중대 설비에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쓸 수 없다고 함

❍ (2018. 4. 19.) 일상적인 변화 없이 지내고 있으며, 대기발령이 4개월째 접어드니 많이 지친다.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서류가 나왔는데 회사에서는 위원장과 내가 서류를 빼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건 관련해서 12월에 조사를 받았음

❍ (2018. 11. 16.) 근무 중 사진을 찍었던 건 관련 고소 결과를 법원에서 받았는데, 기분이 묘하며 조합 측에서는 민사를 또 하라고 하던데 일단 두려움이 앞선다.

❍ (2019. 1. 3.) 안 좋은 일이 많았다. 2018. 12. 21. 직장동료 중 1명이 □□교에서 목을 매 자살했고, 같이 파업한 동료였는데 직무 전환배치 때문에 부당한 게 있었다고 하였다

❍ (2019. 3. 14.) 집에서 계속 자택대기를 하니까 불안하다. 자택 대기 중 움직일 때마다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3. 19. 책임과장 고소 건에 대한 정식 재판이 있는데 출석해야 된다.

(2)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병원, 2018. 2. 5.)

- 환자는 전체지능 98점으로 평균 범위에 해당하고 있어 생활 적응에 있어 지적 능력을 우선시한 어려움은 없겠으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자극 처리에 대한

효율성의 저하로 익숙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을 자주 내릴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정서를 유발하는 장면에서 쉽게 정서적으로 압도되는 등 판단력의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임. 환자는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고 정서적 상황에 대한 불편감을 쉽게 느끼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 내에서 조차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됨. 더욱이 내적 및 외적 자원의 부족으로 환자는 평소 내면의 불편감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억압 억제와 같은 방식의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점차 자신 및 타인의 정서 상태에 관심을 두지 않고 거리를 두는 등 고립된 태도를 취해온 것으로 여겨짐

- 이에 대인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함에 제한적인 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는, 기본적 욕구의 반복적 좌절로 인해 자기부적절감, 불만족감과 같은 부적 정서도 경험해 왔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최근 직장 내 스트레스 사건은 내적 불편감을 한계치 이상으로 상승시킨 주된 요인으로 여겨지며 강화된 고통감은 적응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유지되어 외적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도 불안, 긴장과 같은 부적 정서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이는 에너지 저하 및 수면 저하와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간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반추 사고에도 영향을 미쳐 내적 불편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 및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음

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신청 상병 관련으로 진료받은 내역 없음

3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20. 3. 16.)

우울, 짜증, 불안, 불면, 식욕 저하 및 대인 기피 증상 보여 적응장애 진단 하에 현재 치료 중이나, 증상 지속되어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직장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우울, 불면, 무기력, 불안, 초조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적응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2020-**호, 주요 내용 발췌)**

- 직장 내 따돌림 및 상사와의 지속적인 대립 등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후 회사 고발사건 등이 신청 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소수 의견이 있으나,

- 상병 진단일 이전에는 정신과적인 증상 발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정신적으로 감내할 정도로 보이는 점, 위 상병진단일이 경찰에서 청구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당일인 점, 이 건 압수수색의 원인이 청구인의 회사 정보통신망 무단침입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인 점, 동 불법행위는 업무관련성이 없고 재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1심 결과 청구인의 유죄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신청 상병은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경찰 수사나 처벌 등에 대한 불안감 등 업무 외 사유에 의거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임

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

1) 자문의 1

- 각종 진료기록과 심리검사를 검토한 바, 청구인의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은 '적응장애' 상병이 인정됨

- 하지만, 이러한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첫 방문한 시기가 청구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경찰수사 및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던 시점인 점, 임상 심리검사 상 청구인의 정서적 취약성과 불안정감, 내·외적 자원 부족, 미성숙한 방어 기제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질병이라기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청구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스트레스 및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반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2) 자문의 2

- 청구인은 약 11년 8개월간 변전실의 설비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음
- 청구인은 직장 내의 따돌림 등을 주장하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시기와 청구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시기가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업무관련성이 낮음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제1항

5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부당징계, 회사와의 법적 분쟁 등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은, 「청구인은 정신건강의학과를 첫 방문한 시기가 청구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경찰수사 및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던 시점인 점, 임상 심리검사 상 청구인의 정서적 취약성과 불안정감, 내·외적 자원 부족, 미성숙한 방어 기제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질병이라기보다는 업무 외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청구인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스트레스 및 개인적 취약성)에 의한 반응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Ⅲ

근로자 및 산재보험 적용관계

1. 근로자 여부
2. 적용관계

1

근로자 여부

1 » 청구인 소유의 굴삭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4081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2. 14. 15:00경 ○○건설(주)가 시공하는 서울 ○○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굴삭기로 폐골재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장비에서 내려오다 발목이 꺾이면서 접질린 재해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전거비인대 완전파열'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건설기계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굴삭기를 직접 운전하였으나 노무를 제공하는 날 재해 건설현장에서 타인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0. 2. 14.에 일어난 재해에 대해서 타인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불승인 결정되었으나, 이는 ○○건설(주)의 의견일 뿐이고, ○○ 3단지 아파트 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 지시에 따라 작업 및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본인뿐이다.

다만, 이전부터 아는 동생인 신○○이 장비를 배우고자 동행하여 장비가 운행하지 않는 대기시간(골재가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장비를 탄 것이고, 그 조차 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장비를 타면 안 된다는 현장 측의 제지에 바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신○○의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이다.

신○○이 보조 운전자 등으로 일하였다면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했어야 맞고, 회사에서 신○○의 날인이 있는 안전 교육일지나 보호구 지급대장 등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는 청구인이 타인을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이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고 당시 지위가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6)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문답서(○○건설 관계자) 사본

8) 통화복명서(청구인) 사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0)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1) 진료기록 사본

12) 회사 의견서 사본

13) 녹취파일

14) 동영상(신○○ 운전 관련)

1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6)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는 "2020. 2. 14. 15:00 서울 ○○구에 위치한 ○○역 8번 출구에서 굴삭기로 폐골재 평탄화 작업을 하고 다시 폐골재 운반을 대기하던 중 장비에서 내려오다 돌이 부직포에 가려져 있어 보지 못하고 내려와 발목이 꺾이면서 인대가 파열되었음."으로 확인된다. 또한 해당 신청서상 "목격자: 신○○, 관계: 동료"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처분기관 재활보상부는 가입지원부에 청구인이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한 가입지원부의 조사 및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 10. 19. 건설기계(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고, 2008. 8. 12. 상호 '○○건설중기'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9. 4. 25. 굴착기에 대한 건설기계 등록을 하였다.

나) 사고 공사현장은 ○○건설(주)가 시공하는 서울 ○○구 ○○로 91 소재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설치공사"이고, 공사기간은 2016. 10. 15 ~ 2020. 10. 31.이다. ㈜□□건설은 ○○건설(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인 "지하철 출입구 이·신설 및 환기구 이설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건설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 현장에 투입되었고, 해당 계약서에 "사용기간: 2020. 2. 14. ~ 2020. 2. 14.(일일 작업), 사용금액: 500,000원, 작업내용: 나라시 작업"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라) 원처분기관 담당자는 청구인과 전화 통화 후, “공사에 사용된 건설기계는 청구인 소유이고, 청구인이 직접 운전하였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목격자로 기재한 신○○ 또한 청구인의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타인을 사용하였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는 취지로 통화복명서를 작성하였다.

마) ㈜□□건설 공사차장에 대한 문답서상 “중기 사무실을 통해 청구인을 소개받았다. 청구인은 현장내 골재 포설 및 정리작업을 수행하였고, 당시 운전보조 1명을 동행하였다. 청구인의 재해를 목격한 사람은 없으며, 작업이 끝나고 몇일 지나서 전화상으로 전달받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바) 원처분기관 가입지원부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이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 제125조 및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3) 원처분기관 재활보상부는 ○○병원 진료기록(2020. 2. 15. 좌측 발목을 접질림, 어제, 일하다가 다침.) 내용 및 관련인 진술 내용 등으로 재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나, 건설기계사업주로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 사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4) 청구인의 심사 청구와 관련하여,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건설에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에 청구인 및 신○○에 대한 안전교육일지와 현장출입기록 등의 송부를 공문으로 요청하였나, 위 회사 관계자는 “청구인이나 신○○이 일용근로자가 아니라서 별도의 교육일지나 출입기록은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2) 위 회사 관계자는 2020. 7. 10. 전자메일로 작업 당시 경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07:00 청구인, 신○○ 두 명이 들어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신○○은 부기사로 왔다고 하였다.

- 09:14 이○○ 반장이 신□ 차장한테 '포크레인이 일을 너무 못해서 돌려보내야 할 거 같다'고 전화 하였고, 신□ 차장은 작업 동영상 촬영(신○○이 작업)을 하였다.

- 09:30 신□ 차장이 작업동영상을 중기사무실에 보내면서 항의하였다. 중기사무실에서는 지금 작업한 사람은 원 기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 이○○ 반장이 포크레인 작업자(신○○)에게 원 기사(청구인) 어디 있냐고 물어 차에 가서 자고 있는 청구인을 깨워 일을 시켰다. 이○○ 반장에 의하면 1시간 이상 부기사가 작업한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장에서는 청구인이 사고 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일 현장관리자(직원)에게 한마디 말이 없다가 1주일 후 장비 배차사무실에서 청구인이 현장에서 다쳤다고 연락 왔다.

(3) ㈜□□건설은 신○○이 장비를 운전하는 동영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취지의 대화 내용이 담긴 음성파일을 제출하였다.

- 회사측: 장비 운전 완전 초보자가 왔다고 현장에서 난리가 났다. 장비를 뺀다고 난리다.

- 청구인: 오해가 있는데, 어떤 분이 골재가 안 왔으니 대기하라고 해서, 배우는 친구한테 "나라시" 연습하라고 했다.

나) 청구인은 산재심사실 담당자와 전화 통화(2020. 7. 14.)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신○○은 장비 관련 인터넷카페에서 만난 동생으로, 장비를 배우겠다고 하여 1~2달 정도 같이 다녔다.

- 재해 당시에도 신○○이 장비를 배우겠다고 하여 데리고 왔을 뿐, 임금을 주기로 하거나 준 사실도 없다.

-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본인만 안전교육일지 등에 서명 날인하였고, 신○○은 하지 않았다.

- 당시 작업시간은 07:00~16:00이고, 작업시간 내내 신○○이 같이 있었고, 장비 작업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 재해 당일 골재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작업을 대기하라고 하였고, 그래서 신○○에게 장비 연습을 하라고 한 후 본인은 차량(굴삭기 운반 차량)에 있었다.

- 현장 관계자의 제지를 받아 신○○이 장비 연습하는 것도 중단하였다.

- 이후 건설 폐기물을 바닥에 깔자고 하여 작업을 하였고, 작업 후 장비에서 내려오다 부직포에 가려진 폐기물을 잘못 밟아 발목을 접질렸다. 통증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후의 골재 평탄화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다음날에도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내원하였다.

- 현장 작업반장의 지시로 작업을 하였으므로 반장도 재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에 재해 사실을 직접 보고한 것은 아니고, 장비 중개업체에 재해 사실을 알렸으나, 해결해주지 않았다.

다) 신○○은 산재심사위원회 담당자와 전화 통화(2020. 7. 14.)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청구인은 알고 지내는 형이다.

- 본인은 2019. 10월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였고, 당시 관련 회사에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현장 경험이 필요하여 청구인을 따라 1~2달 정도 공사현장을 다니며 장비 운전 방식을 관찰하였다. 현재는 회사에 취직하여 장비 운전도 직접 하고 있다.

- 재해 현장에 일찍 도착하였지만, 골재가 도착하지 않아 작업대기 중에 청구인의 배려로 중기 연습을 혼자 하였고, 그동안 청구인은 차량(중기 운반차량)에서 잠깐 쉬고 있었다.

-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사유도 없고, 받지도 않았다.

- 당시 청구인은 발목을 접질린 후 발목을 움켜쥐며 주저앉았고, 많이 아파하였지만 그날 일은 마무리하였다.

4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다. 산재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특례)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특수형태근로자의 범위 등)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건설(주)가 시공하는 서울 ○○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골재 평탄화 작업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굴삭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재해당일 현장에 동행한 신○○은 사업장에서 촬영한 굴삭기 운전관련 동영상에서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굴삭기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공사현장에서 청구인이 굴삭기 작업을 수행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산재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125조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①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②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특수형태근로자의 범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혼자 굴삭기 작업을 하였고, 다만 장비를 배우고자 동행했던 자가 작업 대기시간에 잠시 장비 연습을 하였을 뿐인데, 이를 이유로 요양불승인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건설(주)가 시공하는 서울 ○○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골재 평탄화 작업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굴삭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재해당일 현장에 동행한 신○○은 사업장에서 촬영한 굴삭기 운전관련 동영상에서도 청구인의 주장대로 굴삭기 운전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일 뿐 계약에 따른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청구인이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거나 작업을 지시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공사현장에서 청구인이 굴삭기 작업을 수행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산재보험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ㅇㅇ골재는 운반에 대한 운반비만 지급했을 뿐, 취업규칙이나 ㈜ㅇㅇ골재의 사규 등을 적용받지 않았던 점,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던 점, 4대보험 적용받지 않고 트럭 2대를 소유 및 운영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가 청구인 책임하에 있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8274호
- **사 건 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신○○(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서, 2018. 7. 7. ○○월드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싣기 위해 대기하던 중 의식을 잃으면서 덤프트럭이 움직이면서 대기 중이던 다른 덤프트럭과 충돌한 후 의료기관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심장동맥 죽상경화증 및 죽종의 급성변화(부검감정서))로' 사망하였다. 이에 고인의 모친인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비록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고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에 1주 평균 약 7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장시간 운전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 부담 요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발병 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고인은 덤프트럭 2대의 소유자이면서 운전기사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골재 등과 자기 영업활동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반한 점, 실제 ㈜○○골제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운반 업무에 있어 대표권을 행사한 점,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사업(덤프트럭 운반)의 주체로 직접 업무집행권을 행사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고인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여 영업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타 업체와 영업 관계에 있었거나 주문을 받는 등의 거래를 하지 않고, 오로지 (주)○○골재로부터만 거래하여 운반비를 받고 있는 점에서 사업자의 근로종속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출된 업무지시사항에 관한 문자내역과 구체적인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나. 사업자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영향과 적용을 받지 않고, 영업활동에 있어 자기 주관 하에 모든 결정을 자의적·자율적으로 내린다는 것은 실제 상황과 매우 다르며, 결정기관이 (주)○○골재 측의 말만 믿고 사실 관계에 대하여 미진하게 판단하였다. 고인은 자율적인 영업상 의사 결정(생사여탈권-영업의 자유 및 운반비 등)을 (주)○○골재에 전적으로 의지 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사실상 회사 종업원과 다름없이 근로관계가 종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골재가 골재제조사, 주문처, 원석발생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연계를 시켜 고인이 운반한 점, 이에 대한 운반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고인이 물적·인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 4대 사회보험의 신고대상이 되지 않아 미가입 상태에 있다는 점 등의 외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근 판례 및 질의회시, 고용노동부 화물운송(지입) 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2018. 8. 13.) 등에 의할 때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라. 고인은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매일 정하여진 시간에 출퇴근을 한 점, 제3자의 대체 근무가 사실상 허용되지 않은 점, 회사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점, 거래처를 스스로 개척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운행업무를 하여온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의 사망으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원처분기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공문 사본

4)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 사본

5) 시체검안서 사본

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질병) 사본

7)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사본

8)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9) 보험가입자 의견서((주)□□중기) 사본

10)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매출 합계장, 소득금액증명서(고인) 사본

11) 문답서(신◇◇, ㈜○○골재 관리이사, ㈜□□중기 대표이사) 사본

12) 건설기계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3) 우리은행이체결과조회서 및 세금계산서((주)○○골재) 사본

14)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고인) 사본

15)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및 구급증명서 사본

16) 의무기록 사본

1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서(○○-2019-***호) 사본

1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9)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상 고인의 재해경위는 "2018. 7. 7. 15:33경 수원시 □□구 □□로 *번길 113, ○○월드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싣기 위해 대기하던 덤프트럭 운전자인 고인이 의식을 잃으면서 덤프트럭이 진행되어 앞에서 정차 중인 다른 덤프트럭을 충돌한 사고로, 119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함"으로 확인된다.

2) 고인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골재 사업자등록 현황

- 소재지: 경기 화성시 ○○면 ○○리 ***-91번지
- 사업종류: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
- 관리번호: 1**-**-*****-*(대표이사: 최□□)

나) ㈜□□중기 사업자등록 현황

- 소재지: 경기 안산시 □□구 □□길 7, □□빌딩 503호
- 사업종류: 임대업
- 관리번호: 1**-**-*****-*(대표이사: 최△△)

다) 고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 사업장명: □□중기
- 사업자등록번호: 1**-**-*****
-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구 □□길 7, 503호
- 종목: 건설기계대여
- 개업일 및 폐업일: 2013. 9. 1. / 2018. 12. 27.
- 산재보험 가입 여부: 미가입

라) 고인 소유의 차량등록 현황(건설기계등록원부)

연번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규격	등록일	사용본거지(상호 및 사용본거지)
1	덤프트럭	경기06조****	25.5ton	2018. 3. 8.	㈜△△중기, 경기 안산 □□구 □□길 7, ***호
2	덤프트럭	경기06보****	25.5ton	2015.11.30.	주식회사△△중기, 경기 안산 □□구 □□길 7, ***호

마) 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 현황

연번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계약자(피보험자)	의무보험기간	보험사
1	덤프트럭	경기06조****	신○○(신○○)	2018. 2.28. 14:24~ 2018. 7.27. 24:00	○○손해보험
2	덤프트럭	경기06보****	신○○(신○○)	2017.11.27. 24:00~ 2018. 7.27. 24:00	○○손해보험

바) 고인의 근로자성 여부(문답서 일부 발췌)

(1) 신◇◇(고인의 형)

- 고인은 10년 동안 ㈜○○골재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2018. 3월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을 하게 되었고, 지입을 하고 나서도 직원으로 일을 할 때와 같이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였다.

- 월급제로 결근시 일당에서 제외하였고, 정해진 휴가는 없으나 8월 달에 기사들이 돌아가면서 휴가를 썼다.

-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하루에 500km~2,000km 이상을 주행하였고, ㈜○○골재 거래처에서 발주 받은 물품을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안전하게 운송·인도하였으며,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거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 운전 중 사고나 물품 파손시 고인의 보험으로 처리하였고, 필요 경비는(자동차 수리비, 타이어 교환, 모든 일체) 고인이 부담하였다.

- 고인은 ㈜○○골재의 거래처에서 발주 받은 물품만을 운송, 인도하였고,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하였으며, 급여도 매월 수령하였다.

- 고인이 기사 생활을 할 때에는 업무량이 다섯 군데였으나, 지입으로 일을 할 때에는 그보다 많은 열군데 정도로 업무량이 두 배로 많아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2) ㈜○○골재 관리이사

- ㈜○○골재는 건설기재 자재인 골재를 생산 납품하는 회사로 사업장은 화성시 ○○면 ○○에 소재하고 있으며 골재 선별 파쇄 제조업체이다.

- 고인은 덤프트럭 차주 겸 운전기사로서, ㈜○○골재에서 공사현장이나 건설현장의 원석을 운반하여 골재로 생산하면, 주문처(건설기초자재, 레미콘회사, 건설현장, 도로포장 등등)에 납품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를 지급하는 관계로, 필요한 운반 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덤프트럭 차주에게 연락하여 운반케 하고 이에 따른 운송비를 지급(세금계산서 발행)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인 또한 위와 같은 형태로 운반하는 덤프트럭 차주 겸 운전자이다.

- 고인은 자기 영업하에 운반 작업을 하므로 출·퇴근시간 등 관리를 할 수 없고, 급여가 아닌 운반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주이며, 임금도 없다.

- 고인은 ㈜○○골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적용받지 않고, 결근, 작업거부, 지각에 대한 관리도 하지 않으며, 고인의 주관하에 모든 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고인의 휴가, 휴일 등에 대한 관리도 고인의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당사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나 감독은 전혀 받지 않고, 고인이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운반하고 운반비를 받았다.

- 고인의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도 고인의 영업활동에 따라 달리하고 골재 제조회사로 한 현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현장을 통해 운반하였다. 다만, 당사에서는 골재 제조회사, 주문처, 원석발생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연계를 시켜 이에 대한 운반비를 지출(세금계산서 발행)한다.

- 고인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본인의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고, 기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운전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고인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 중 물적, 인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고인의 차량보험 등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골재에서 책임지는 것은 없다.

- ㈜○○골재는 고인에게 운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뿐, 덤프트럭 운반에 따른 각종 비품, 작업도구 등은 고인의 소유로 이를 활용하여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소유관계, 사업자등록 여부, 차량보험 가입 여부 등 기본적으로 법 저촉에 따른 문제를 대비하기 위하여 확인은 하고 있다.

- ㈜○○골재에서는 고인에게 운반에 따른 운반비만 지급하고 그 외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지급하는 임금 등의 금품이 발생할 수 없다.

- ㈜○○골재에서 고인에게 운반비를 지출할 때(한 달에 한번 매월 25일) 고인의 계좌로 입금 처리하였다. 이는 운반비 일뿐 다른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 매월 25일에 지출되는 이유는 거래하는 덤프트럭 차주 겸 운전자가 매월 100대 이상 되므로 당일 지급은 비효율적(회사 사정상 당일 지급할 수 없어)이라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고 있다. 원래 운반비는 고인의 청구를 통해 지출하여야 하나 덤프트럭 운반의 특성상 고인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차량 운행일보를 제출하면 당사 직원이 정리하여 운반비로 지급) 관례상 ○○골재 등에서 유사한 실태로 운영하고 있다.

- ㈜○○골재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운반비를 지출(매입) 신고하고 별도로 제품(골재) 납품에 따른 매출 신고만하면 되므로 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근로소득세 신고는 없었다.

- ㈜○○골재와 고인과의 관계는 사업자와 사업자간 거래로 전속되지 않고 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이므로 고인은 근로자가 될 수 없다.

- 고인은 ㈜○○골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사회보험의 신고대상이 아니다.

(3) (주)□□중기 대표이사

- ㈜□□중기는 건설기계 대여 및 관리를 하는 사업장으로 주로 주기장(차고지)을 대여하고 이에 따른 대여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장은 안산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다.

- 고인은 주기장 대여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덤프트럭 차주 겸 운전자로서 자율에 따라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급여가 아닌 운반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가진 사업주이며, 총 매출액이 존재할 뿐 임금은 없다.

- 고인은 덤프트럭 차주 겸 운전자로 (주)○○골재 등의 거래처인 공사 현장이나 건설현장에서 현장이 원하는 건축자재를 상차하여 하차하기까지 운반하여 주는 것이 고인의 주된 업무이고, 이에 따른 운송비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그 대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기별로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

- 덤프트럭의 소유자는 고인이고, 차량관리 및 운영, 보험가입도 고인이 하는 등 덤프트럭에 대한 모든 것을 고인의 명으로 고인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있다. 다만 ㈜□□중기에서는 고인에게 주기장 대여에 따른 관리비로 월 5만원을 받고 있으며, 고인의 매입, 매출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만 대행하고 있다.

- 고인의 덤프트럭 운송 업무는 자기 영업하에 자기 주관에 따라 운영하고, 차량 사고 등 전적인 관리 또한 고인의 주관하에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중기와 사업주 종속 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중기의 취업규칙 및 사규에도 전혀 영향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

- 결근, 작업거부, 지각, 조치에 대한 책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전혀 없고, 고인의 주관 하에 모든 결정을 자의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 고인의 휴가, 휴일 등에 대한 관리도 고인의 주관하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당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 고인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본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고인이 기사(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운전하게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고인이 지급할 수 있다. 고인은 2대의 덤프트럭을 소유하고 있고, 한 대는 고인이 직접 운전하며 다른 한 대는 다른 분이 운전하고 있다. 그래서 매입·매출도 2대분의 운반비가 발생하였다.

- 고인이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반 중 물적, 인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고인의 차량보험 등에 따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중기에서 책임지는 것은 없다.

- 고인과 당사는 주기장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로 등록 대행을 할 뿐 영업활동 중 ㈜□□중기를 방문한 적이 없고, 고인의 영업활동에 따른 비품 등을 제공 한 적도 없다.

- 고인의 소득에 대한 국세청 신고는 임금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개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신고 관리는 ㈜□□중기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받지 않고 서비스 차원에서 대행하고 있다.

- 고인과는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관계로 주기장(차고지) 대여에 따른 건설기계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를 받고 있으며, 고인과 전속된 관계는 아니다.

사)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현황

[출금계좌: 1006-○○○-○○○○○○, 예금주: ㈜○○골재]

연번	이체일시	임금금액	보내는분	받는분	비 고
1	2018.07.24.	1,582,965	㈜○○골재	신○○	
2	2018.07.24.	675,650	㈜○○골재	신○○	
3	2018.06.25.	850,000	㈜○○골재	신○○	
4	2018.05.25.	804,000	㈜○○골재	신○○	
5	2018.04.25.	600,390	㈜○○골재	신○○	
6	2018.04.25.	1,385,000	㈜○○골재	신○○	
7	2018.03.23.	975,000	㈜○○골재	신○○	
8	2018.03.09.	15,000,000	㈜○○골재	신○○	
9	2018.01.25.	2,509,600	㈜○○골재	신○○	
10	2018.01.24.	431,150	㈜○○골재	신○○	

아) 세금계산서 발급 현황

연번	공급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품목	합계금액
1	2018.01.31.	□□중기	신○○	㈜○○골재	최□□	원석(운), 골재(운)	2,358,290
2	2018.02.28.	□□중기	신○○	㈜○○골재	최□□	골재(운)	1,072,500
3	2018.03.31.	□□중기	신○○	㈜○○골재	최□□	원석(운), 골재(운)	3,173,500
4	2018.04.30.	□□중기	신○○	㈜○○골재	최□□	원석(운), 골재(운)	9,739,400
5	2018.05.31.	□□중기	신○○	㈜○○골재	최□□	원석(운), 골재(운)	5,390,000
6	2018.06.30.	□□중기	신○○	㈜○○골재	최□□	원석(운), 골재(운)	2,283,215

자) 고인의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현황

신고기간	상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금액	비 고
2018.4.1. ~ 2018.6.30.	□□중기	신○○	134-32-*****	106,493,500	
2018.7.1. ~ 2018.12.27.	□□중기	신○○	134-32-*****	245,014,250	

차) 고인의 사업자등록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상 2018년 1기(2018. 4. 1. ~ 2018. 6. 30.) 매출처는 주식회사◇◇과 ㈜○○골재로 확인되고, 2018년 2기(2018. 7. 1. ~ 2018. 12. 27.) 매출처는 주식회사◇◇으로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서

1) 시체검안서(○○대학교병원, 2018. 7. 7.)

가) 사망일시: 2018. 7. 7. 16:06경

나) 사망 장소: 경기 수원시 △△구 △△로 ***(△△동 산5)

다) 사망의 원인

(1) 직접 사인: 상세불명의 심정지

(2) (1)의 원인: 해당사항 없음

2)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조사과, 2018. 7. 24.)

❍ 사인(사망의 원인)

(1) 직접사인: 급성심근경색

(2) 원인: 심장동맥 죽상경화증 및 죽종의 급성변화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시체검안서상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정지(미상)'이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인됨. 건강보험 진료내역 상 '당뇨병'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2019-*호, 주요 내용만 발췌)**

- 고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에 1주 평균 약 7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고, 장시간 운전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업무부담 요인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이 발병 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성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다만, 고인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는 소속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상병 '급성심근경색(심장동맥 죽상경화증 및 죽종의 급성변화)'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5 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및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라. 고용노동부(2018. 8. 13.)『화물운송(지입)차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이 사망 당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는지 여부임. 고인은 2018. 7. 7. 사망하였는데, 고인은 사망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었고, ㈜○○골재는 고인에게 운반에 따른 운반비만 지급하였으며, ㈜○○골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을 적용받지 않았고,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 소득을 신고하였으며, 4대 사회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트럭 2대를 소유 및 운영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고인 책임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따라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청구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상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로서 차량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마땅히 이를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인은 사망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점, ㈜○○골재는 고인에게 운반에 따른 운반비만 지급한 점, ㈜○○골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을 적용받지 않은 점, 근로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 소득을 신고한 점, 4대 사회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트럭 2대를 소유 및 운영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를 고인 책임하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따라서 고인의 사망에 대한 청구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이 피아노 연주자를 대신하여 참가한 자발적인 봉사단체인 ㅇㅇㅇㅇ현악4중주팀은 ㅇㅇㅇ교회에서 채용하였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찬양제 참가를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팀원인 ㅇㅇㅇ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며 ㅇㅇㅇ교회 목사가 지급한 비용 30만원이 있으나 이는 저녁식사 비용으로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그 비용 중 청구인 5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임금으로도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6519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12. 1. 공주시 ○○찬양제(이하 "찬양제"라 한다)에 피아노 반주자로 참여한 후 일행과 함께 거주지로 복귀 중 경기 용인 소재 숙박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06:00경 5층 입구 복도의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옆구리를 난간에 부딪쳐 다쳤다"라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찬양제 참여는 친목 또는 종교적 봉사 성격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회 연주회 모임이 자원봉사로 모인 것인지 여부는 본인이 알 수 없는 것이며 사전에 계획된 반주자의 결원으로 급하게 반주자가 필요하다는 지인의 요청이 있어 행사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사례비로 받은 5만원이 적어 이를 급여가 아닌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본다는 의견이나 사례를 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를 줄지 청구인은 알 수 없거니와 그렇다고 반드시 사례금이 많아야만 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다시 한 번 면밀히 심사하여 이 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청구인의 추가서면(2020. 8. 31.)

4) 원처분기관 의견서

5)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공문 사본

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7)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8) 의무기록지 사본

9) 원처분기관 사실확인서(2020. 3. 16. 노○○)

10) 원처분기관 문답서(2020. 4. 14. 노○○, 조○○)

11) 원처분기관 확인서(2020. 4. 29. 서○○)

12) 원처분기관 문답서(2020. 5. 21. 청구인)

1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4)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 경위(최초요양신청서): 2019. 12. 1. 공주시 찬양제에 반주자로 임시 채용되어 반주 후 서울로 돌아오는 중에 용인에서 함께 1박을 하다가 숙박지에서 2019. 12. 2. 06:00경 5층 입구 복도 계단에서 넘어지며 늑골을 난간에 부딪치며 다침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속 사업장

가) 사업장명: ○○교회

나) 소재지: 충남 공주시 ○○길 **-*

다) 산재보험 적용관계: 서○○ 목사 부부가 근로자 없이 운영

3) 찬양제의 내용

가) 행사명: 공주시 ○○찬양제

나) 일시: 2019. 12. 1.(일) 오후 7시

다) 주최: 공주시 ○○○합회

4) 청구인이 찬양제에 참석하게 된 경위

가) ○○교회 소속 ○○현악4중주팀이 찬양제에 참여함

- ○○현악4중주팀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인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교사(노○○), 외부 연주자[조○○, 청구인(대체자), 노□□]로 구성

- 노○○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바이올린 수업(주 1회)과 다른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해옴

나) 찬양제에 참여하기로 한 피아노 반주자가 갑작스런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자 조○○이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피아노 연주자인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대체자로 참여

5) 찬양제 참여와 관련된 경비 등 금전관계

가) 리허설을 위해 찬양제 전날인 2019. 11. 30.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해 공주로 이동한 비용은 노○○가 부담(노○○는 본인 차량으로 이동)

나) 찬양제가 끝난 후 ○○교회 담임목사가 저녁 식사비로 30만원을 노○○에게 줌

다) 노○○는 청구인에게 사례비로 5만원을 주었으나 교회 시설비용에 보태 쓰라며 돌려주어 노○○는 다시 담임목사에게 그 돈을 돌려줌

라) 귀가 중 용인에서의 숙박비용은 노○○가 지불

6) 원처분기관에서 조사한 문답내용 요약

가) 청구인의 문답서(2020. 5. 21.)

(1) 2019. 11. 30. 조○○ 원장으로부터 피아노 반주자의 갑작스런 결원으로 찬양제에서의 반주를 요청받았고 2박 3일 일정이었음

(2) 공주 ○○교회에서 고속버스(서울-공주) 편도 비용과 2일간 숙식을 제공하였으며 복귀 중 들린 숙박시설의 비용은 노○○가 부담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얼마의 반주비를 받기로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음

(4) 노○○로부터 반주비 5만원을 받았으나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스렌지 교체비로 사용하라고 돌려줌

나) 노○○의 문답서(2020. 4. 14.)

(1) ○○교회 음악 목사로 주 1회 방문하며 다른 교회에서도 찬양(음악) 목사 활동을 하고 있음

(2) 청구인은 조○○ 원장이 다니는 교회의 반주자로 찬양제에는 원래 피아노 연주자가 섭외되어 있었으나 당일 시아버지상을 당하여 급하게 조○○ 원장이 청구인을 섭외하게 되었음

(3) 청구인에게 사전에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없으며 청구인은 찬양제에 얼마를 받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라 봉사 겸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조○○ 원장의 부탁으로 오게 된 것임.

(4) 찬양제에 참여한 15명 중 4명(바이올린 2명, 첼로, 피아노)은 본인이 외부에서 섭외한 분들로 같은 교인이며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분들임

(5) 사전에 교회 측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한 행사가 아니며 관련 경비는 본인과 조○○ 원장이 냈고, 담임목사로부터 감사하다며 식사비로 30만원을 받아 외부 초빙 연주자들에게 5만원씩 드렸으나 이마저 청구인은 어려운 교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거절하여 담임목사에게 돌려줌

다) 조○○의 문답서(2020. 4. 14.)

(1) 노○○ 목사가 찬양제에 바이올린 연주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참여하게 되었으며, 서로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로 다른 교회 행사에 연주자가 필요하면 서로 품앗이로 참여하였음

(2) 찬양제에서 연주할 피아노 연주자를 급하게 찾아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연주자인 청구인에게 연락하였고 교회가 어려우니 봉사 겸해서 가자고 본인이 청하였음

(3) 사전에 약속한 금액은 없고 상황에 따라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면 받고 어려운 교회면 못 받아도 되는 행사였음

(4) 찬양제가 끝나고 노○○ 목사가 저녁 식사비 5만원을 주었으며 청구인과 조□□는 교회 가스렌지 교체비용으로 반납하였음

라) 서○○ 담임목사의 확인서(2020. 4. 29.)

(1) 피아니스트인 청구인과 바이올리니스트 3명은 노○○ 목사가 담임목사인 본인의 허락을 받아 찬양제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정상적인 사례를 할 수 없음에 양해를

구했고 행사가 끝나고 밤 10시경 서울로 올라갈 때 노○○ 목사에게 수고가 많았다는 인사와 함께 저녁을 드시라고 30만원을 봉투에 넣어 드렸음

(2) ○○교회는 담임목사인 본인과 배우자 장은애 목사 두 사람이 모든 행정, 교회 관리, ○○바이올린팀 운영을 전담하며 다른 직원은 없음

7) 원처분기관의 반주비에 대한 조사내용 요약

구분	진 술 내 용			
	청구인	노○○	조○○	서○○
사전에 반주비가 정해져 있었는지	**사전에 정해지지 않음** 일반 행사인 경우 사례를 받으나, 친분이 있는 관계에서 연주자 결원으로 연주하는 경우 사전에 임금을 정하지 않는 것이 보통	**사전에 정해지지 않음** 연주자들은 **전원 자원봉사**였음	**사전에 정해지지 않음** 봉사였음	**행사 전 노○○에게 연주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사례를 할 수 없음을 알림**
지급 의무		이전에도 교회 상황에 따라 반주비를 받지 않고 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친선 도모 및 봉사** 겸해서 참여한 것임.	**봉사** 겸해서 청구인에게 참여를 청한 것임.	
평소 연주 비용	종교 행사 반주자로 참여하는 경우 1회 연주 사례비 10~20만원 일반 행사의 연주 사례비는 일반 시간당 10~20만원	청구인은 경력이 오래 된 연주자로 1곡 연주당 30~40만원의 페이를 받음	일반적으로 연주자들의 연주비는 시간당 5만원으로 일당 40만원에 해당하며, 숙박을 할 경우 24시간으로 환산하여 연주비를 받음.	
감사찬양제 반주비로 지급받은 (지급한) 금액	노○○로부터 50,000원 지급받음	청구인이 수고를 많이 하여 감사한 마음을 따로 표할 생각이었음	돈을 바라고 참여한 것이 아니며,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 안 받아도 되는 상황	행사 후 저녁 식사 비용으로 30만원 지급
기타	**노○○가 연주자들에게 사례비 5만원씩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연주자들이 ○○교회 가스렌지 교체 비용으로 사용하라며 **받지 않음**			

8) 청구인의 추가서면(2020. 8. 31.)

조○○ 원장에게 돈을 안 받는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물어보니 돈을 받기로 했다고 하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랬다며 산재 처리가 잘 되게 하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였음

4 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찬양제에 피아노 반주자로 참여한 후 거주지로 돌아오던 중 숙박업소 복도의 계단에서 넘어지는 재해로 최초요양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교회를 소속 사업장이라고 주장○○, 청구인이 찬양제에 참가하게 된 경위를 보면 ○○교회 소속 ○○현악4중주팀이 찬양제에 참가하려 하였으나 피아노 반주자의 사정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자 ○○현악4중주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조○○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지인인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참여하게 되었고, ○○현악4중주팀은 자발적인 봉사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그 구성원들을 ○○교회에서 채용하였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아노 연주자를 대신하여 참가한 청구인 역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찬양제 참가를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팀원인 노○○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며, ○○교회 담임목사가 노○○에게 지급한 비용 30만원이 있으나 이는 팀원들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노○○가 그 비용에서 5만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는 하나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해가 그 질환 또는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감사찬양제에 참여하였으므로 이 건 사고는 마땅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현악4중주팀은 자발적인 봉사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그 구성원들을 ○○교회에서 채용하였다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아노 연주자를 대신하여 참가한 청구인 역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찬양제 참가를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팀원인 노○○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며, ○○교회 담임목사가 노○○에게 지급한 비용 30만원이 있으나 이는 팀원들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급한 것으로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노○○가 그 비용에서 5만원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는 하나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워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4 » 자활근로 참여 전 적정 사업단 배치를 위한 사전교육 및 견습과정의 참여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609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8. 2. ○○이라는 자활사업단에 견습을 나가 계단을 빗자루로 쓸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면서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허리와 엉덩이뼈 부분에 금이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진단받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산재보험법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자활근로를 할 목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기 전 적정 사업단 배치를 위한 교육 및 견습 과정인 Gateway 과정에 참여하여 견습하던 자로서, 사고 당일 ○○이라는 청소관련 사업단에서 견습 중 청소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

나. 산재보험법 제123조제1항과 제2항,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9호 제1조와 제2조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자활근로 현장실습생으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마땅히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 대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공문 사본

4)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사고성) 사본

6)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에 대한 답변자료 제출 사본(2019. 8. 27. ○○지역자활센터)

7) 고용·산재보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2019. 8. 30. 청구인)

8) 신청인(근로자) 의견서(2019. 10. 2.)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0)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최초요양 신청내역

가) 재해경위: 2019. 8. 2. 13:40경 ○○지역 상가건물에서 계단을 빗자루로 쓸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되면서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허리와 엉덩이뼈 부분에 금이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함.

나) 신청 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보험가입자(○○지역자활센터) 확인사항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2019. 8. 27.)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 및 제15조,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며, ○○시에서 자활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본 센터로 의뢰하면 2개월(최대 3개월)의 Gateway 과정을 거쳐 사업단 배정을 하고 '자활근로 참여 조건'에 계약 체결함.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에 의거하면 Gateway 과정 참여자는 자활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 김○○은 Gateway 과정 참여자로서 산재보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나)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2019. 8. 27. 내용 발췌)

(1) 재해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9. 6. 10.자로 사례관리와 Gateway 교육과정을 시작하여 사업단 배정 전(채용 전)임.

(2) 재해자는 사례관리와 Gateway 과정 교육참여자로 Gateway 교육과정 중에는 수행 업무나 직책은 없음.

(3)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조건은 보건복지부 2019년 자활사업안내(I)를 따르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사업단 배정(입사) 전 Gateway 과정에 따른 '사례관리 및 개인정보 동의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음.

(4) 자활급여는 교육시간에 출석한 날짜에 한하여 해당 월 말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자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좌로 입금함.

(5) 주 5일 근무로 종일 9:00~18:00, 반일 9:20~11:50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이며 Gateway 교육과정 중 휴가는 없음

(6) 근무장소는 교육장 및 체험사업단이고 출장은 없으며 지각·결근 시 본인이 지각, 결근계, 조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급여에서 차감됨

(7) 단체협약,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은 없으며,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이 없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및 비품도 없음. 재해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

(8) 재해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와 같은 기수의 Gateway 과정 참여자는 재해자 포함 2명으로 ○○시에서 공문으로 참여자를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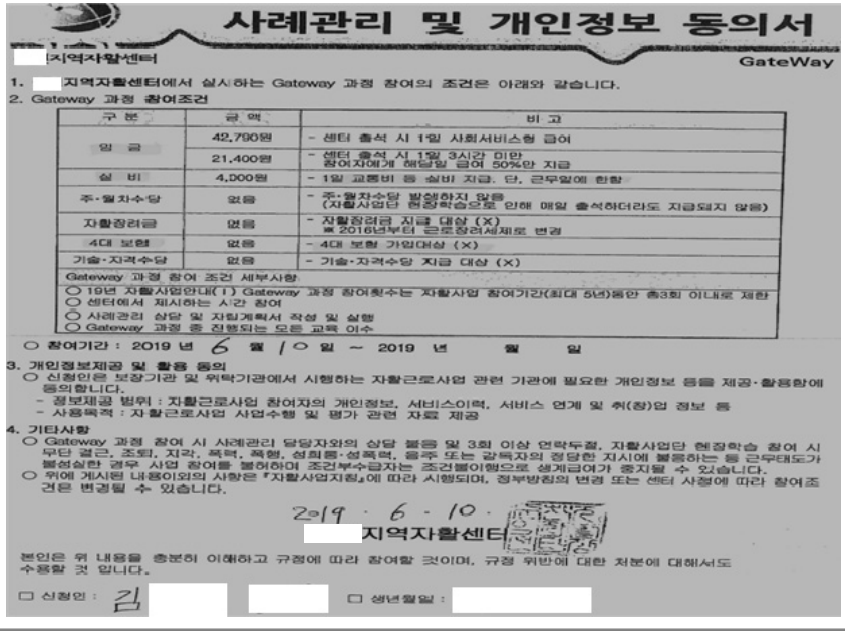

사례관리 및 개인정보 동의서

[redacted]지역자활센터 GateWay

1. [redacted]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Gateway 과정 참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Gateway 과정 참여조건

구 분	금 액	비 고
일 급	42,790원	- 센터 출석 시 1일 사회서비스형 급여
	21,400원	- 센터 출석 시 1일 3시간 미만 참여자에게 해당일 급여 50%만 지급
실 비	4,000원	- 1일 교통비 등 실비 지급. 단, 근무일에 한함
주·월차수당	없음	- 주·월차수당 발생하지 않음 (자활사업단 현장학습으로 인해 매일 출석하더라도 지급되지 않음)
자활장려금	없음	- 자활장려금 지급 대상 (X) ※ 2016년부터 근로장려세제로 변경
4대 보험	없음	- 4대 보험 가입대상 (X)
기술·자격수당	없음	- 기술·자격수당 지급 대상 (X)

Gateway 과정 참여 조건 세부사항
○ 19년 자활사업안내(I) Gateway 과정 참여횟수는 자활사업 참여기간(최대 5년)동안 총3회 이내로 제한
○ 센터에서 제시하는 시간 참여
○ 사례관리 상담 및 자립계획서 작성 및 실행
○ Gateway 과정 중 진행되는 모든 교육 이수

○ 참여기간 : 2019 년 6 월 10 일 ~ 2019 년 월 일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 신청인은 보장기관 및 위탁기관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관련 기관에 필요한 개인정보 등을 제공·활용함에 동의합니다.
- 정보제공 범위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서비스이력, 서비스 연계 및 취(창)업 정보 등
- 사용목적 : 자활근로사업 사업수행 및 평가 관련 자료 제공

4. 기타사항
○ Gateway 과정 참여 시 사례관리 담당자와의 상담 불응 및 3회 이상 연락두절, 자활사업단 현장학습 참여 시 무단 결근, 조퇴, 지각, 폭력, 폭행, 성희롱·성폭력, 음주 또는 갑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하며 조건부수급자는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위에 게시된 내용이외의 사항은 『자활사업지침』에 따라 시행되며,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센터 사정에 따라 참여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 · 6 · 10 ·
[redacted]지역자활센터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규정에 따라 참여할 것이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도 수용할 것 입니다.

□ 신청인 : 김 [redacted] □ 생년월일 : [redacted]

(9) 참여자는 ○○시 의뢰로 Gateway 과정에 배치하여 본 센터 상담실이나 2층 교육장에서 오전 교육(09:20~11:50)을 하며, 교육기간은 기본 2개월이나 최대 1개월 추가 가능함. Gateway 교육과정에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침 교육과 자활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교육을 위해 직업적성검사, 성격검사, 개인역량 평가, 지역기관과 연계

하여 참여자에게 필요한 금융상담, 건강상담, 각 소양·직무교육, 각 사업단 설명, 현장학습, 개인상담을 통한 자활지원계획과 자립경로 설정을 진행함.

(10) 'Gateway 과정 중 배치'라는 의미가 사업단 체험을 일컫는다면 기본 1~3개 사업단 체험을 하게 되며 사업단 배정 전까지 Gateway 소속으로 사업단 설명을 거쳐 참여자와 사업단과의 합의를 통해 현장체험 사업단을 선택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기 또는 종료할 수 있음.

(11) 재해자는 사고 당시 ○○청소사업단에서 현장체험 중이었음.

(12) Gateway 과정은 지역자활사업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자활센터에서 보건복지부 2019년 자활사업안내(Ⅰ)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진행됨.

(13) ○○지역자활센터의 2019년 사업계획서(자활근로사업)에 따르면, 자활근로-Gateway 과정 내용 중 연중 교육프로그램 세부내용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이 교육하는 4대보험 관련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을 재해자에게 고지하였다.

3) 청구인 확인사항

가) 근로자성 확인 문답서(2019. 8. 30. 발췌)

(1) 재해자는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중 Gateway 과정에 참여하여 자활근로를 견습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임.

(2) ○○고용복지+센터 자립지원상담사의 안내로 2019. 6. 10.자로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근로에 배정되기 전에 자활근로를 견습하는 Gateway 과정 진행 중에 있음. 본인의 업무내용은 Gateway 팀장에 의해 정해지고 근무에 대한 감독의 주체도 Gateway 팀장임.

(3) 사업주와 맺은 근로계약은 없으며, 업무의 지휘감독은 Gateway 팀장과 견습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의 팀장과 반장으로부터 받음.

(4) 주 5일, 1일 8시간(9:00~18:00)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2:00~13:00로 근무장소는 재해 당시 ○○사업단이나 현재는 □□사업단에서 일하고 있음. 출장은 없으며 지각·결근 시 자활급여가 차감됨.

(5) 급여는 계좌로 매월 말일에 계좌로 지급되며 정해진 급여 외 받는 별도의 보수는 없음. 연장근무 및 수당, 퇴직금이 없고 의무적으로 1년에 6일 이상 월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주휴일은 일요일임.

(6) 재해자는 업무수행 시 자활근로사업단 소유의 비품(○○: 빗자루, 쓰레받이, 걸레, 소독기계 / □□: 트랙터, 삽, 호미, 비료)을 사용하며 제3자를 고용해 본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함.

(7) 4대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에는 가입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다.

나) 근로자 의견서(2019. 10. 2. 발췌)

(1) 사업주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2) 본인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조건부 수급자로 ○○고용복지+센터에 있는 자립지원 상담사의 상담과 안내에 따라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Gateway 과정으로 자활상담과 기초적인 자활교육 그리고 개인별 자립경로(IAP) 및 자활지원계획(ISP)을 수립한 뒤 자활사업단 현장학습으로 ○○이라는 청소하는 자활근로사업장에 견습나가서 그곳 선임자가 시키는 청소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으로 산재보험법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와 제126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재해자임.

4) 보건복지부 2019년 자활사업안내(Ⅰ) 발췌

가) 조건 불이행 시의 생계급여 중지 결정(P.42)

-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조건불이행 처리
- 시·군·구는 중지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조건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의 중지기간, 중지액 및 급여의 재개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함.

나) Gateway 과정(P.50~P.51)

- Gateway 과정 참여자는 자활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4대보험 가입 및 일용근로 등 소득신고 대상이 아님.

- 참여자의 인건비는 참여기간 동안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에 준하여 인건비 지급

  • 참여자의 자활급여는 Gateway 과정 수행(상담 및 IAP·ISP 수립)을 위하여 지역자활센터에 출석한 날짜에 한하여 지급하고, Gateway 과정 수행중이나 참여자가 센터에 출석하지 않은 날짜에는 자활급여 지급 금지.

  ※ 참여자가 출석한 날에는 1일치 사회서비스형 급여 지급(단, 주차·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Gateway 과정 프로그램에 1일 3시간 미만 참여자에게는 해당일 급여의 50%만 지급

-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은 70:30으로 함

  • Gateway 과정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Gateway 과정 사업비로 상해보험 가입 가능

-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수행기관이 Gateway 과정을 위한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자활사업 참여자」내일배움카드 발급업무 처리지침(P.55)

- Gateway 단계의 참여자는 자활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자와 동일한 신분이므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 필요

  ※ Gateway 단계 이후 자활근로단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종전처럼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이 아님.

라) 자활근로 참여 조건(P.64)

- 2019년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인건비 지급 기준(원/인·일)

  • 지급액계(46,790): 급여단가 42,790 + 실비 4,000

  • 표준소득액(월): 1,112,540

• 비고: 1일 8시간, 주 5일

마) 사례관리 및 개인정보 동의서(P.250)

- 4대보험: 금액 없음, 4대보험 가입대상(×)

4 관계법령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Gateway 과정에 참여하고 있던 상태로, Gateway 과정은 사업단 배정 이전 적정 사업단 배치를 위한 교육 및 견습 과정이고, ○○시에서 자활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자활센터로 의뢰하면 2개월(최대 3개월)의 Gateway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사업단 배정을 하고 '자활근로 참여조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Gateway 과정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침 교육과 자활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교육을 위해 직업적성검사, 성격검사, 개인역량 평가, 금융상담, 건강상담, 각 소양·직무교육, 각 사업단 설명, 현장학습, 개인상담을 통한 자활지원계획과 자립경로 설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Gateway 과정 참여자의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산재보험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재해가 그 질환 또는 질병을 악화시킨 것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이 건 재해에 대하여도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Gateway 과정은 사업단 배정 이전 적정 사업단 배치를 위한 교육 및 견습 과정이고, ○○시에서 자활급여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역자활센터로 의뢰하면 2개월(최대 3개월)의 Gateway 과정을 거친 뒤 최종 사업단 배정을 하고 '자활근로 참여조건'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Gateway 과정에서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침 교육과 자활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 교육을 위해 직업적성검사, 성격검사, 개인역량 평가, 금융상담, 건강상담, 각 소양·직무교육, 각 사업단 설명, 현장학습, 개인상담을 통한 자활지원계획과 자립경로 설정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Gateway 과정 참여자의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5 » 해외 근무를 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것으로 해외파견자로는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282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8. 12.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7. 1. ㈜○○에 입사하여 2019. 7. 21.부터 베트남현지 경영지원팀장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20. 2. 12. 어지러움 증세가 발생하여 현지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입국하여 진단받은 상병명 '뇌경색, 편마비'에 대하여 2020. 6. 22.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122조제1항(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청구인은 해외파견사업장에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님."이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2020. 8. 12.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9. 7. 1.자로 ㈜○○에 입사하여 베트남 사업장에서 근무 하였으나 인사발령, 급여, 출장, 휴가승인, 업무지휘 및 지시, 감독을 국내 사용자로부터 받았고, 이에 따라

근무한 경우로서 해외출장(산재보험법 제122조 근거)개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외파견자 미가입 을 이유로 불승인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고가 산재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

4)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6)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7) 소속사업장 (주) ○○ 사실조회서 사본

8) 주재원파견계약서 사본

9) 취업규칙 사본

10) 소속 사업장 담당자 추가제출(2020. 10. 15. 및 2020. 11. 9.) 서류 사본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급여청구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베트남 사업장에서 사무실 근무 중 연간, 월 결산 재무 작업을 하던 중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쓰러져 한국긴급후송 병원에 입원 치료함.”으로 확인된다.

2) 이 건 국외 재해에 대한 출장 또는 파견여부 조사서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채용경로 및 근무상황: 청구인은 2019. 7. 1. ㈜○○에 입사하였고, 베트남 전임 경영지원팀장이 이직으로 인한 공석으로 충원결정 되어 입문교육 후 2020. 7. 21. 부터 베트남법인에서 경영지원팀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 2019. 7. 1. ○○ 입사
- 2019. 7. 2. ~ 2019. 7. 20. 국내사업장 근무, 입문교육 받음.
- 2019. 7. 21. ~ 2019. 8. 13. 베트남(하노이) 출장
- 2019. 8. 14. 국내복귀
- 2019. 9. 3. 베트남(하노이) 출국하여 사고 전까지 계속 근무

나) 국내사업장 및 해외사업장 현황

- 국내사업장명: (주)○○ (법인번호: 1*****-*******)
- 사업종류: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사업장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근로복지공단 전산시스템 상)

관리번호	본지사	법인번호	성립일	대표자	인원	사업장 주소
3**********	지사	1*****-*******	2007.6.1.	○○	48	대전 ○○구
9**********	지사	1*****-*******	2014.4.1.	○○	613	경기 성남시 ○○구
9**********	해외사업장	1*****-*******	2020.9.11.	○○	59	
3**********	지사	1*****-*******	1999.5.26.	○○	59	대전 ○○구
6**********	본사	1*****-*******	1989.8.8.	○○	7	경남 창원시 ○○구
6**********	해외사업장	1*****-*******	2003.4.30.	○○	28	

다) 해외사업장 관련 조사 사항(사업장 진술, 사실조회서 참조)

- 베트남사업장 소재지: 베트남 ○○성 ○○○2공단

- 사업내용: 핸드폰 filter 및 조립제품 제조(○○ 핸드폰 부속 렌즈 생산)

- 근로자수: 900명(한국인 파견 관리직 근로자 9명)

- 현지인 근로자 재무 7명, 인사 7명, 총무 11명, 공무 10명 근무

라) 담당업무 및 근로관계: 청구인의 베트남 해외사업장 파견전과 이후 업무는 동일하며 담당업무는 경영지원을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인사, 총무, 재무 업무를 총괄하였음.

- 근무시간: 주6일제(월~토)근무 1일평균 9시간(출근 오전 7시 40분~퇴근 오후 5시 30분)

- 베트남 주재원 숙소는 수도인 하노이이며 공장이 있는 '○○성 ○○시' 까지 60~70분 소요(주재원 거주 안전이 우선으로 원거리 통근함.)

마) 업무지시: 청구인은 현지 조*식 부사장에게 업무지시를 받았지만, 현지 부사장은 주요 업무지시, 인사발령, 법인운영 등 모든 의사결정 사항을 본사의 지시에 따랐음.

바) 임금 지급 주체: 현지 관리자의 임금은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되었음.

사) 해외 파견 시 출장명령서 또는 파견명령서: 근로자와 회사 간 별도 파견계약서를 체결하였음.

아) 해외파견 근무 시 파견계약서 별도로 작성함(주재원 파견계약서 참조, 채용일인 2019. 7. 1.부터 3년)

자) 취업규칙 적용 여부: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도 국내 기준을 적용 받음.

차) 부서이동 등 인사관리: 해외 사업장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는 국내 사업장에게 지휘권이 있음.

카) 출장 시 출장 품의는 국내 대표 및 사업부장 결재를 받음.

타) 상기 조사내용을 검토한 원처분기관 판단

- 청구인은 2019. 7. 1.부터 (주)○○ 대전사업장으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는 되어 있으나, 베트남 현지 사업장의 해외파견근로자로서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

파견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현재 해외파견자 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요양 불승인 하고자 함.

3)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장 추가 조사에 따른 제출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자: ㈜○○ 양*대 이사, 2020. 10. 15. 및 2020. 11. 9. 추가자료 제출)

가) 청구인 입사경위

- 소속사업장은 국내 사업장보다는 베트남 공장이 마더팩토리로서, 실질적인 생산기지에 해당함. 공장 현지 베트남 근로자 500명~1000명(신제품 출시 일정 및 수요에 따라 성수기, 비수기 연동되어 공장인원 유동적임.)으로서 현지 공장인원의 관리업무를 위해 채용됨. ㈜○○은 ○○(주)의 ○○ 등 핸드폰 광학렌즈를 제조하는 업체이므로 ○○(주)의 재무관리통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던 청구인은 당초 CFO 후보를 염두에 두고 채용되었음. 2019. 7. 1. 입사하여 한국에서 한 달 가까이 업무를 파악하였고, 베트남에 출국한 후 작년 8월 및 금년 설 연휴 한국에 들어와 있다가 다시 출국하였음.

나) 업무보고 및 지시 관련

- 국내 사업부장(부사장)에게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올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장의 이슈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있음. 청구인의 근무지가 베트남 사업장인 타국에 있지만 제무재표 및 손익, 인사, 코로나 동향 등 회사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사업부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별도로 사업부장과 전략팀장(이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받는 상황이었음.

- 이에 청구인이 임원회의 및 경영회의에 참석과 관련하여 메일 수신한 점, 변호사 자문계약 품의서 및 구매인력 채용품의 시 사업부장 최종 결재를 득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하여 매일 사업장 일일 카톡 보고를 하였다.(관련 자료를 발췌하여 제출함.)

- 청구인은 ○○ 재무관리 간부급으로 근무한자로서, 경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공장의 인사, 재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국내에 복귀하는 시점에는 CFO후보로 역할이 기대되어지는 상황이었음.

4)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에 따른(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1890, 2019. 3. 26.) 주요 적용기준 (발췌)

□ 판단 기준

❖ **(전제)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포함)**하는 경우

*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노동법 적용)

□ 판례 입장

❖ 국내본사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던 중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공장에서 생산관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국내에서 파견된 총경리를 통하거나 전화로 직접 국내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파견된 근로자들이 일정한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국내근무를 명하는 등의 인사관리**를 한 점 등 근무의 실태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 사업장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대법 98두18503)

❖ **국내본사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은 물론 퇴직, 전출, 업무 변경 등 **인사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대법 2010두23705)

❍ 지휘·명령 주체 판단기준에 따라, “지휘·명령 주체 해외 사용자 ⇒ 파견”, “지휘·명령 주체 국내 사용자 ⇒ 출장”으로 판단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준》

❍ 지휘·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

① **(업무지시)**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

* 문서, 메일, 전화 등 지시의 방법은 불문하고 주로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지에 따라 결정

* 업무 지시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근무자로부터 업무 관련 정기 또는 수시 보고를 받는 사용자가 업무 지시 관련성이 큰 것으로 봄
(문서 보고, 구두 보고 등 보고 형식에 관계 없음)

② **(취업규칙)**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가 결정·시행

-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근무 중 출장업무 수행 또는 휴가 사용 시 승인 등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결정

③ **(인사관리)**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서

(○○대학교병원, 2020. 2. 24.)

- 57세 남환, T1DM(2005) retinopathy &neur opathy, HTN, Dyslipidemia 병력 있고, 2017년에는 FUO로 감염. 내과 입원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했고, 하루 반 갑 흡연자, 주3회 이상 회당 소주1병 이상 마시는 자,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원 전일 오전 일하는 중 갑자기 우측 팔다리 저림 증상 있고 글씨 쓸 때 불편감 있을 정도의 위약감 있었는데, 내원당일 일어나보니 우측 팔다리 힘 빠짐. 더 악화되어 비행기타고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뇌경색 진단으로 본과 입원 치료 중이며, 현재 motor Rt 4-/4로, 운동재활 필요한 상태입니다.

(최초요양 소견서, ○○병원, 2020. 6. 22.)

- 종합소견: 도수근력 평가 상 우측 상지근력 2등급, 우측 하지근력 2-3등급으로 독립적 보행 및 일상동작 수행 어려워 타인의 도움 필요한 상태임

- 상기환자 DM, HTN, dyslipidemia 과거력 있는 분으로 2020. 2. 12. 갑자기 발생한 좌측 상하지 위약으로 ○○대학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 상 좌측 기저핵 부위 뇌경색 소견 보여 입원치료 시행함. 이후 신경학적으로 안정되어 포괄적 재활치료 위해 2020. 2. 28. ~ 2020. 4. 29. 본원에서 입원치료 시행 하였고 2020. 5. 7. 재입원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 신청 상병 인지되며 작업력 조사를 요합니다.

5 관련 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업무상의 재해)

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심사청구 이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당초 CFO후보를 염두에 두고 2019. 7. 1. ㈜○○에 입사하여, 한국에서 약 한 달 가량 업무를 파악한 뒤 베트남사업장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인사, 총무, 재무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청구인의 임금은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되었고, 취업규칙도 국내 기준을 적용받았으며, 국내사업부장(부사장)에게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올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장의 이슈를 보고하였으며, 변호사 자문계약, 구매인력 채용, 출장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국내 사업부장(부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등 국내 사용자로부터 직접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경유하여 별도로 판단하되,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미가입이라는 사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에서 이 법에 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인사발령, 급여, 출장, 휴가승인, 업무지휘 및 지시, 감독을 국내 사용자로부터 받았고, 이에 따라 근무한 경우로서 해외출장 개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심사청구 이후 추가로 제출한 자료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당초 CFO 후보를 염두에 두고 2019. 7. 1. ㈜○○에 입사하여, 한국에서 약 한 달 가량 업무를 파악한 뒤 베트남사업장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 인사, 총무, 재무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청구인의 임금은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되었고, 취업규칙도 국내 기준을 적용받았으며, 국내 사업부장(부사장)에게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올리고, 매주 월요일에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사업장의 이슈를 보고하였으며, 변호사 자문계약, 구매인력 채용, 출장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국내 사업부장(부사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등 국내 사용자로부터 직접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경유하여 별도로 판단하되,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미가입이라는 사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원처분 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6 » 청구인의 급여는 2014.1.1.부터 해외법인 법인장으로서 국내에서 일부 지급되고 나머지 급여 잔액과 주재수당은 현지법인에서 지급되며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는 해외파견자로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335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주)○○디스플레이 ○○공장에 1991. 6. 3. 입사하여 27년 9개월 간 근무하였고, 2014. 1. 1.부터 멕시코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5년 2개월 동안 멕시코 공장과 미국 판매법인의 법인장 및 관리팀장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상병명 "뇌내출혈, 고혈압, 2형 당뇨병"이 발병하였다며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신청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하였고 그 심의 결과는 신청상병 중 "뇌내출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고혈압, 2형 당뇨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질병이라는 것이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2019. 3. 29.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에 따라 2019. 3. 30. 보험관계가 성립하였고 청구인은 해외파견자 성립일 전인 2019. 3. 17. 업무상 질병을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기간 중 발병한 질병이라고 하며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국내 사용자와 2014. 1. 1. 근로계약 체결 후 사업장 USA 법인장으로 파견근무를 시작하여 발병일 기준 멕시고 현지법인(○○ DISPLAY MEXICO, S.A. DE C.V) 소속으로 근무를 하던 중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였고, 국내법인에서 급여 지급, 4대보험료 원천징수, 복무관리 및 현지법인 채용 등을 국내법인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받는 등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정책과-3071(2018. 8. 14.)「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 지침 시달」관련 해외 출장 중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범위)에 따른 당연적용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추가이유서에서, 청구인은 국내에서 채용되어 급여의 일부를 본사로부터 지급받았으며, 법인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관리팀장을 겸직하면서 관리·회계업무 등의 실무적인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여 과로가 누적되었다. 청구인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위임 영역내에서 전결처리 하였지만 나머지 업무는 본사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라 실행하였다(월간보고서: 매출보고서등 4건, 실행계획보고서, 해외비교재무제표, 월차보고서, 수시보고).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장으로서 주재원들에게 업무 지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본사로부터 업무 품의서 제출 또는 메일로 제출하며 승인받아 처리하거나 본사의 지시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역할이 대부분이였고, 심지어 관리회계업무는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USA 법인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업무의 결재권한은 본사 대표자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2014. 1. 1.부터 사업장의 해외 주재원으로 5년 2개월 동안 멕시코 공장과 미국 판매법인의 법인장 및 관리팀장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해외출장인지 해외파견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2020. 9. 21. 심사청구 추가이유서 포함)

2) 확인서(2020. 10. 20.)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처리결과 알림

5)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적용제외)

6)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7) 의무기록

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9)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관계

1) 해외파견 사업장 현황(2020. 11. 3. 현재)

가) 사업장명: ㈜○○디스플레이○○공장

나) 해외사업장 관리번호: 9**-**-*****-*

다) 해외사업장명: 청구인 소속인 ○○ DISPLAY MEXCO S.A DE *.*. 등 8개 사업장

라) 국가명: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멕시코 등(중국, 인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마) 국내사업장과의 관계: 해외사업장은 모두 '현지공장'임

바) 파견근로자수: 총 30명

사) 기타: 청구인 관련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상, 청구인의 '출국일은 2014. 1. 1.', '보수지급방법은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외 파견자들도 '보수지급방법은 국내사업장☑, 해외사업장☑'로 되어 있음. 청구인 관련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는 2019. 3. 29. 접수되었고, 청구인은 기 파견자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성립일은 가입신청서가 접수된 다음날인 2019. 3. 30.임

2) 청구인의 근로관계(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가) 고용형태: 정규직(상용직)

나) 직위: 법인장 겸 관리팀장

다) 근무기간: 1991. 6. 3. ~ 현재까지(멕시코 파견기간: 2014. 1. 1. ~ 발병일까지), 멕시코 출국일은 2014. 1. 1.로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단신으로 부임

라) 업무내용: 미국 캘리포니아 판매법인 업무 총괄관리업무 및 매출 손익보고, 전체 관리인원, 멕시코 공장 종업원관리, 법인장 직접 회계업무, 실무

마) 청구인 소속 멕시코 공장은 □□디스플레이에 납품하기 위한 LCD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이며 현지에서 바로 □□디스플레이에 납품

바) 파견증명서(2014. 3. ㈜○○디스플레이)

(1) 성명: 조○○(청구인)

(2) 소속: ○○디스플레이 USA 법인

(3) 파견지: 미국

(4) 파견목적: ㈜○○디스플레이 USA법인장

(5) 파견기간: 2014. 1. 1. ~ 2018. 12. 31.(이후 연장됨)

3) 문답서(확인인 ㈜○○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최영대 2020. 8. 28.)

가) 청구인이 해외파견 법인에서 근무하며 임금은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2018년 7월 급여부터 해외주재원 급여 지급 방법 변경 시행(국내: 1,000,000원+해외공장: 급여잔액+주재수당)

나) 청구인이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누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공장 대표이사

다) 청구인이 해외사업장 근무 중 출장업무 수행 또는 휴가 사용시 승인 등 복무관리는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행하였는지: ○○공장 대표이사

라) 청구인이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이동 등 인과관리는 누구에 의해 이루어 졌는지: '현지인&현채인; 청구인', '주재원; 대표이사&청구인'

마) 청구인이 국내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던 중 해외법인에 파견되어 현지공장에서 생산, 관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본사의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국내 사업장 사업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예

다. 관련 지침 등

1) 해외출장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지침[17)]

가) 해외 출장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적용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 장소가 해외일지라도 근로자가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으로 흡수 적용. 다만, 명백히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1) 상담, 회의, 시찰, 업무연락, 기술교섭, 기술취득(기술연수), 기술서비스(애프터서비스) 등의 목적으로 사명에 의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2) 시장조사 등의 목적으로 해외의 각지를 이동하는 경우

(3) 건설관계의 식전참가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국외에 나가는 경우

(4) 건설사업에 관한 기술지도, 작업지도, 기계장치의 운전, 개조 및 수리지도 등을 위하여 사명에 의하여 외국에 나가는 경우

(5) 기타 사명에 의해 특정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소재하는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해외의 용무지에 도착하여 용무를 끝내고 근무지로 돌아오는 경우로서 그 과정 전반에 걸쳐서 국내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해외근무근로자 산재보험 적용업무 지침(고용노동부 징수 68760-157, 1995. 4. 6.)

다) (추가 적용 기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장의 일부로 보아 본사에 흡수 적용

(1) 외국환거래규정 제14장 제2조(해외지사의 구분) 제1항 제2호[18]에 규정된 "해외사무소"로 설치 인증을 받은 사업장일 것

(2)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하고 임금대장을 국내 본사에서 관리할 것

(3) 해외근무 장소내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를 국내 본사에서 행할 것

2)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19]

가) 검토 배경: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기준 명확화

나) 관련 법령

(1) 산재보험법 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를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로 규정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근로자파견"의 개념을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

※ [채용·임금지급]이 파견사업주인 경우 (국내 사업의 사용자, 이하 '국내사용자'라 함), [지휘·명령]사용사업주(해외 사업의 사용자, 이하 '해외사용자'라 함)

다) 판단 기준

(1) (전제) 국내에서 채용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일부 지급

18) (현행) 외국환거래규정 제9장제2절제1관제9-17조(해외지사의 구분)제2호: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외사무소'

19) 해외파견(주)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기준(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정책과-3071, 2018. 8. 14.)

포함)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노동법 적용)

(2) 지휘·명령 주체 판단기준에 따라, "지휘·명령 주체 해외 사용자 ⇒ 파견", "지휘·명령 주체 국내 사용자 ⇒ 출장"으로 판단

(3) 지휘·명령 주체 판단 기준

(가) 지휘·명령 주체는 제출된 입증자료를 토대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되, ①을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①에 의해 판단이 어려울 경우 ②, ③을 순차적으로 판단

① (업무지시)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음. 문서, 메일, 전화 등 지시의 방법은 불문하고 주로 누구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지에 따라 결정. 업무 지시의 주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해외근무자로부터 업무 관련 정기 또는 수시 보고를 받는 사용자가 업무 지시 관련성이 큰 것으로 봄 (문서 보고, 구두 보고 등 보고 형식에 관계없음)

② (취업규칙) 해외 근무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 등을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가 결정·시행. 명문화된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근무 중 출장 업무 수행 또는 휴가 사용 시 승인 등 복무관리를 누구에게 받는지에 따라 결정

③ (인사관리) 해외사업장 내에서의 부서 이동 등 인사관리가 (□ 해외 사용자, □ 국내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짐

(4) 판례 입장

국내본사에서 상당기간 근무하던 중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공장에서 생산관리,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 국내에서 파견된 총경리를 통하거나 전화로 직접 국내 사업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점, 파견된 근로자들이 일정한 근무기간이 경과하면 국내근무를 명하는 등의 인사관리를 한 점 등 근무의 실태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 사업장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대법 98두18503). 국내본사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한 것은 물론 퇴직, 전출, 업무 변경 등 인사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고 봄이 타당(대법 2010두23705)

라. 원처분기관 본안 의견

1) 업무상 질병 여부 결정(일부승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원처분기관의 결정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 의견에서 제외함

2) 청구인의 산재보험 피보험 이력상 적용관계는 다음과 같음

관리번호	사업장명	취득일	상실일	관할지사
5**-**-*****-0	(주)○○전자	1991. 6. 13.	2011. 1. 29.	○○지사
5**-**-*****-6	(주)○○전자(해외)	2011. 1. 29.	2013. 5. 18.	○○지사
5**-**-*****-0	(주)○○전자	2013. 5. 17.	2014. 1. 1.	○○지사
1**-**-*****-*	(주)○○디스플레이 ○○공장	2014. 1. 1.	2020. 1. 1.	○○○지사
9**-**-*****-*	(주)○○디스플레이 ○○공장(해외)	2019. 3. 30.	2019. 4. 5.	○○○지사

3) 보험료징수법시행규칙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제4항 제2호에서 산재보험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는 2019. 3. 29.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처분기관은 2019. 3. 30.자로 보험관계 성립처리 함

4) 사업장 인터넷 홈페이지(○○○○.co.kr)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멕시코(멕시칼리) 공장 등 총 5개의 해외현지공장을 운영 중이며, 청구인은 동 멕시코공장 해외법인 법인장으로 근무

5)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여부 판단 기준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내 (주)○○디스플레이 ○○공장 소속으로 채용되어 해외법인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해외출장자 판단의 전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6) 청구인이 제출한 파견증명서, 업무 기안 내용, 이메일 등을 검토하면, 비자나 본국으로의 출국 등 국내 법인과 업무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받고 있으나,

7) 해외파견 및 출장 구분시, 국내 법인 소속 파견/출장 근로자이므로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에 대하여 국내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하며, 단지 국내외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른 업무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파견으로 판단되는 근로자를 구분할 수 없고, 이는 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및 보험료징수법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에 따른 특례 규정이 사문화되며,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별도의 요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장기간 파견의 경우 업무특성상 산재보험을 적용제외하여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는 세부 업무처리 과정에서 판단하여야 함

8) 해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2018년 현지법인 조직도에 따르면 총 124명의 법인 직원 중 주재원은 7명과 현지 생산직 직원이 근무하며, 월별 매출실적 등 정기 보고 내용이 확인되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지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9) 따라서, 청구인은 국내에서 채용되어 급여의 일부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등 출장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을 제외한 모든 주재원들이 청구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이 동 주재원의 법인장으로서 세부 업무내용을 결정할 위치에 있으므로, 타 주재원과 달리 청구인의 근무형태만을 출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음

10)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 처분은 관계 법령을 근거로 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본 심사청구서는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증거조사 내용

<table>
<tr><th colspan="4">증거조사조서</th></tr>
<tr><td>①사 건</td><td colspan="3">사건번호 2020-8335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td></tr>
<tr><td>②심사청구인</td><td>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법률상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td><td>③ 피청구인</td><td>○○○지사장</td></tr>
<tr><td>④출장일시</td><td>2020. 11. 13. 11:00~17:00경</td><td>⑤ 전화번호</td><td>031-***-****</td></tr>
<tr><td>⑥ 조사 당사자</td><td colspan="3">㈜○○디스플레이 ○○공장 사업주측 관계자(이△호 총무팀장/수석부장)</td></tr>
<tr><td>⑦증거방법 및 조사대상</td><td colspan="3">㈜○○디스플레이 ○○공장 관계자(이△△ 부장(이하 '사업주측 관계자'라 함)에게 청구인의 파견업무, 근태관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관련하여 질의·응답하다.</td></tr>
<tr><td>⑧조사결과</td><td colspan="3">☐ 조사목적
청구인은 (주)○○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디스플레이 미국법인장 및 멕시코공장 법인장, 관리팀장으로 파견되어 근무 중 상병명 '뇌내출혈 등'이 발병하였던 바, 해외사업장에서 청구인의 근무형태가 해외출장인지 해외파견인지 여부 확인 차

☐ 조사내용
조사내용
❍ 청구인의 직위는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측 관계자) 청구인은 ㈜○○디스플레이 미국법인장 및 멕시코공장 법인장(판매법인: 미국, 제조공장: 멕시코)이며 관리팀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 미국법인 및 멕시코공장에 청구인 보다 상급자가 있는지
(사업주측 관계자) 청구인보다 상급자는 없으며 청구인이 최상급자이다.
❍ 청구인의 업무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사업주측 관계자)미국 판매법인 및 멕시코공장 총괄관리업무, 미국 판매법인 및 멕시코 멕시코 공장의 종업원관리, 매출 손익보고 등 회계업무를 수행한다.
❍ 청구인이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장 대표이사(이하 '한국 본사'라 한다)로 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td></tr>
</table>

	(사업주측 관계자) - '현지인(멕시코인)'은 멕시코법을 적용받으며 이들의 부서이동, 복무관련 사항 등은 멕시코 노동법의 테두리 내에서 청구인이 지휘·감독하고, 현채인(한국인으로 멕시코 현지에서 채용된 사람)과 '주재원(㈜○○디스플레이직원으로 파견된 사람)'은 한국 본사에서 한다. - 청구인은 현지공장에서 생산, 관리, 기술지도 등의 업무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나, 인사, 회계, 주요 의사결정(설비투자 등)은 반드시 본사와 협의 또는 지시에 의해서만 수행한다. ○ 청구인이 해외 업무 수행과정에서 청구인 이외 다른 주재원, 현채인들과 다르게 한국 본사로부터 다르게 적용받는 사항(인사, 출장·휴가 등 복무, 주재수당 등)이 있는가 (사업주측 관계자) 청구인이 멕시코 현지에서 다른 주재원 및 현채인들과 다르게 적용받는 '인사, 출장·휴가 등 복무, 주재수당 등'에 대한 것은 없고, 주재수당을 제외하고는 청구인, 청구인외 다른 주재원, 현채인들이 모두 한국 본사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한국 본사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4 관련 법·규정 등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

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라. 산재보험법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리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4. 1. 1.부터 뇌내출혈 발병시까지 ㈜○○디스플레이 멕시코 현지법인(○○ DISPLAY MEXICO, S.A. DE *.*)과 미국 캘리포니아 판매법인의 법인장 및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지휘·명령 주체는 국내 사용자(대표이사)이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으로 흡수 적용함이 상당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는 반면, 다수 의견은 청구인의 경우 파견증명서를 보면 2014. 1. 1.부터 해외 현지법인 법인장으로 파견 근무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주재원의 급여는 국내에서 일부(1,000,000원) 지급될 뿐 나머지 급여 잔액과 주재수당은 해외법인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해외 현지법인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법인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외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위치가 아니며 오히려 해당 해외법인의 주재원 및 현지 직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위치이며, 해외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 본사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은 해외법인 법인장으로 당연한 것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기 이전에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국외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 산재보험법에서는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게 하여 해외파견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해외지점, 공사현장, 현지법인 등)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는 해외파견자와 달리 '국내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해외파견자의 명단,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해외파견기간, 해외파견자의 업무내용,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며, 이때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다.

나. 청구인은 국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 사업장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에 해당한다고 하며 국내의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고 하며 원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리결과는, 청구인은 2014. 1. 1.부터 뇌내출혈 발병시까지 ㈜○○디스플레이 멕시코 현지법인(○○ DISPLAY MEXICO, S.A. DE *.*)과 미국 캘리포니아 판매법인의 법인장 및 관리팀장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며,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지휘·명령 주체는 국내 사용자(대표이사)이므로,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국내사업장으로 흡수 적용함이 상당하다는 소수 의견이 있는 반면, 다수 의견은 청구인의 경우 파견증명서를 보면 2014. 1. 1.부터 해외 현지법인 법인장으로 파견 근무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주재원의 급여는 국내에서 일부(1,000,000원) 지급될 뿐 나머지 급여 잔액과 주재수당은 해외법인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해외 현지법인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법인장의 지위에 있으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해외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위치가 아니며 오히려 해당 해외법인의 주재원 및 현지 직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위치이며, 해외법인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 본사 대표이사에게 업무 보고를 하거나 업무 지시를 받는 것은 해외법인 법인장으로 당연한 것이며 이를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기 이전에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적용관계

1 » 농장에서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는 녹색펜스 설치는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가 수행한 농업의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사업으로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7833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신○○(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20. 4. 14. 고라니 망 보수작업 중 망을 펜치로 조이다 망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3m높이 아래로 추락하는 재해로 상병명 '목척수의 손상, 척추전방전위증(경부), 제2경추의 골절(폐쇄성)'을 진단받아 2020. 4. 20.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개인이 밭농사(도라지, 더덕)를 하면서 필요시 동네 지역주민인 재해자를 일당을 주고 일을 시켰던 사실이 있고, 다른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은 없으며 재해당일 재해자가 밭농사를 도와주다가 고라니망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녹색 펜스를 고정하는 과정에서 철사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밭 아래로 추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동 사업장은 농업으로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이다"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2020. 5. 25.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재해자는 사고 당일 고용주 조○○의 지배와 관리 범위 내에서 휀스 공사 중 일련의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고용주 조○○가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하였지만 또 한 명의 목격자가 존재하고 있었으며(김○○), 119구급대원이 사고 출동 당시 평가 소견의 내용 중 환자가 누워있고, 한명은 머리 부분을 무릎에 올려놓고 다른 한명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일지에 기술되어 있다. 그 중 한 명이 김○○이며 재해자의 작업과정을 목격했다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때 고용주 조○○의 진술 내용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

더덕과 도라지는 파종시기가 봄철 및 가을철에 직파로 흙과 함께 바닥에 뿌려 싹틔우는 방법으로 재배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며, 파종 후 별도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30일이 지나 사고 재해조사가 시작되었다. 사고조사서 내용 중 적용제외 사유 및 조사내용을 보건대, 사고 당일 밭일을 한 것처럼 두루뭉술하게 사고 전 일을 언급함으로써 결정기관의 판단에 혼돈할 수 있도록 진술 하고 있다.

재해자는 집에서 휀스(울타리) 공사를 하기 위해 공구를 챙겨 고용주 조○○ 집으로 갔었고, 내용과 같이 휀스(울타리) 공사를 하였으며, 또 제2의 목격자의 녹취록과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재해가 발생한 시기와 재해자가 당시 밭일을 했었다고 진술한 고용주 조○○의 증언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

재해자의 사고 당일 공사과정을 알 수 있는 동영상을 보면 고용주 조○○의 밭 주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서 밭일을 하거나 농사일을 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저 멀리 CCTV 우측 상단을 보면 휀스(울타리)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영상 43분54분에 휀스(울타리)공사 중 공사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면서 재해가 발생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 조○○의 허위증언을 반증한다 하겠다.

재해자는 사고 당일 차광막 공사를 하고 있어 청구 취지에서도 언급한 바, 인근 야산 조수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의 지시에 따라 휀스(울타리)공사 하는 과정에

휀스와 휀스 부분을 연결하던 중 3m 경사 돌무더기 옹벽으로 넘어지면서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이 또한 농사일과는 아무런 연과성이 없다. 재해자의 사고 이후에도 별첨 사진과 같이 휀스(울타리)공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완성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실제 고용주 조○○는 휀스(울타리)공사를 보수공사로 둔갑시키는 등, 눈 속임에 불가하고 주된 목적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시중 일당의 반값의 노임을 지불해 주면서 휀스(울타리)공사를 시키려고 했다.

사고 당일 고용주 조○○는 밭일을 했다라고 급구 주장해왔던 이유는 재해자의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점과 산재보상의 성립요건인 업무상의 판단과 손해배상 청구의 인과관계의 재판 실무상 문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이다. 사고 당시 밭일과 전혀 무관한 휀스(울타리) 공사를 하였음에도 굳이 밭일을 한 것으로 주장해 왔다는 것이다. 고용주 조○○는 휀스(울타리) 공사를 지시해놓고 공사 할 곳이 경사가 심한 구역이며, 옹벽이 뾰족한 석조로 쌓아 놓아 넘어지거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안전에 대해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공사 중 재해자가 붕괴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였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소규모 사업의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된 2018. 7. 1.이후부터는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2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며, 소규모 개인공사의 일용 노동자나 편의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노동자 역시 근무 중 부상을 당하게 되더라도 이제부터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재해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6)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사본

7) 보험가입자(조○○) 의견서 사본

8) 목격자진술서(조○○) 사본

9) 구급증명서 및 구급활동일지(충남 □□ 소방서장) 사본

10) 사실확인서 및 거래명세서(○○철망) 사본

11) 출장조사복명

12) 문답서(조○○) 사본

13) 녹취록(청구인, 김○○) 사본

14) 진술조서(조○○, □□경찰서)

15) CCTV 영상파일 사본

16)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17) 의무기록 사본

18) 의학 영상자료

1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20)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적용여부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1) 대표자명: 조○○

(2) 사업장명: 적용사업장 없음

(3) 소재지: 충남 □□시 ○○면 ○○길 48-21

(4) 사업자등록: 없음

나) 근로관계

(1) 재해자: 신○○

(2) 채용일: 2020. 4. 14.

(3) 사고일: 2020. 4. 14.

(4) 임금: 일당 70,000원

다) 재해내용(조○○ 진술내용)

(가) 재해사실: 인정

(나) 재해경위: 2020. 4. 14. 이전부터(4. 8.경) 재해자가 밭농사(도라지, 더덕)를 도와주었고, 재해일에도 밭농사를 도와주다가 고라니망과 녹색펜스를 고정시키는 과정에서 철사의 피복이 벗겨지며 밭 아래로 추락함

(다) 사고발생장소: □□시 ○○면 ○○리 265-8번지 밭

(라) 사고당시 재해자가 하던 일 혹은 동작: 고라니 망 보수작업 중 망을 펜치로 조이다 망의 피복이 벗겨지면서 아래로 추락(3m 높이)

(마) 사고 후 조치사항: 119신고, 구급차에 의해 □□의료원에서 다시 헬기로 ○○대병원으로 후송됨

2) 원처분기관은 조○○에게 펜스 설치와 관련하여 자재 구입내역을 요청하였고, 조○○가 제출한 거래명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발행일: 2018. 6. 2.

나) 금액: ₩2,630,000원

다) 내역: 펜스설치공사

3) ○○철망 사업주가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먹방길 48-21, 2018년 5월경 휀스 설치공사를 하였음

나) 작업자 3명(윤○○, 조○○, 오○○)

4) 원처분기관은 산재보험 적용관계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발생 사업장은 법인이 아닌 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농업에 해당되어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하였다.

5) 이 건 심사청구 이후 담당 심사장이 조○○ 대면문답, 사고 현장 및 CCTV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적용사업장 관련

(1) 2013년부터 더덕, 도라지를 재배하고 있으며, 통상 3월부터 파종을 시작하여 5월부터 풀(잡초) 뽑기를 함. 수확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함. 더덕, 도라지는 2~4년근으로 재배

(2) 파종, 풀 뽑을 때, 파종을 위해 검정 비닐을 덮을 때 일손이 필요함. 2020년 처음으로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했고, 이때 3명을 고용하여 3~4일간 일하게 함. 파종 시 동네 아주머니들 2명을 불러 3일 정도 일함

(3) 일손이 필요할 경우 일당도 주고 품앗이도 하며 동네 사람들에게 일당 7만원 가량을 주고 일을 시킴

나) 재해자 고용 관련

(1) 농사일을 주로 시켜, 파종, 골치기 등을 하였으며 2020년 3월에 2~3일 와서 일했고, 4월에는 사고일 포함하여 2일 일함

(2) 조○○는 평소에 재해자에게 일을 시킬 때, 재해자가 언어장애가 있는 청각 장애자여서 재해자 자택으로 직접 가 일을 부탁함. 부직포 덮는 일도 미리 부탁함(일을 시킬 경우 조○○가 직접 출퇴근 시킴)

다) 재해당일 업무내용

(1) 사고일 오전 부직포 덮는 일을 조○○와 재해자가 같이 했고 12시~1시 사이 점심을 먹은 후 철물점으로 같이 가 케이블타이를 구매했으며 구매 후 재해자 집에 들려 재해자가 펜치를 갖고 옴

(2) 조○○는 재해자에게 고라니망이 축 처져 있어 고라니가 들어 올 수 있는 곳을 손 봐 줄 것을 말했고, 재해자는 고라니망 시작점부터 해야 한다고 해 사고가 난 곳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고 함.(조○○는 평소 재해자가 일을 할 때 꼼꼼하게 하는 성격이여서 사고일에도 그렇게 일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진술함)

(3) 재해자는 고라니망 보수작업 차 지주대에 철망을 지주대 옆에 있는 휀스에 고정시키다 사고 발생

라) CCTV 영상 확인내용: 영상파일 ch08_ch08_070000, ch08_ch08_10 4802에서 2020. 4. 14. 오전에 재해자와 조○○가 밭고랑에 검정색 부직포를 덮는 작업 장면이 확인됨

마) 재해자는 사고 후 병원 치료 중 사망하였고, 조○○는 원처분기관의 산재 불승인에 따라 2020. 7. 10. 신○○의 유족과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금 2,500만원에 합의한 사실이 있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대학교병원, 2020. 4. 28.)

1) 상병명: 목척수의 손상, 척추전방전위증(경부), 제2경추의 골절(폐쇄성)

2)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축사에서 작업도중 3m fall down으로 수상, Awest 발생하여 CPR후 ROSC된 분,이후 본원 헬기이송됨

3)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ROSC 이후 coma state로 conservative management 하기도 하며 TICO 입원하였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확인한 바, 신청 상병 확인되며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이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도라지나 더덕을 밭농사로 재배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망을 기존에 설치된 녹색 펜스에 고정하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최초요양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일은 주된 사업인 농업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사업 종류는 농업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휀스(울타리) 보수공사에서 발생하였고, 2018. 7. 1.이후부터는 노동자가 1인 미만이거나, 건설공사 2천만원 미만이라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이 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은 도라지나 더덕을 밭농사로 재배하는 개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망을 기존에 설치된 녹색 펜스에 고정하는 작업 중 발생한 재해로 최초요양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수행한 일은 주된 사업인 농업에 부수된 행위로 보아 사업 종류는 농업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미역채취 사업은 각각이 어민들이 한조를 이루어 공동으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였으나 각자의 양식장 구역에서 생산된 미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거래하여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각각 적용할때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711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3. 16. ○○마을 미역양식장의 무동력 바지선 위에서 미역채취 작업 중 미역줄을 끌어당기는 롤러에 손가락이 끼이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 제4, 5번 수지 완전절단 및 골절'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상기 사업장은 어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법의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함"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5명은 미역 채취사업이라는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근로자들을 고용 및 사용함으로써 공동사업 경영약정(최소한 묵시적이라도)이 존재하고, 각자 돈을 걷어 위 미역 채취작업을 위한 무동력 바지선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출자행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관된 기준은 없고 각 사례에 맞추어 판단하고 있는바, 행정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른지 여부, 서로 다른 단체협약,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5명의 사업주가 미역 채취작업이라는 동일한 산업분류에 해당하고, 공동으로 일용근로자 9명을 고용 및 사용함으로서 서로 다른 취업규칙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5명의 사업주가 공동작업시 투입된 노무비, 식대 등을 정산하고, 9명의 일용근로자를 하나의 그룹으로 작업지시를 하는 등 노무관리가 통합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인 김○○의 미역양식장과 사업주 4명의 미역양식장을 구분하여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이 1회적이거나 그 사업기간이 일시적이라는 점은 문제되지 않고,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을 공동으로 고용 및 사용함으로써 세부적인 운영 즉 작업지시, 작업방법, 식사방법, 작업장까지의 이동방법, 노무비 지급방법 등에 있어서도 모두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결정기관이 판단한 것과 같이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를 사고당일 당시 양식장의 소유자인 김○○라고 할지라도 김○○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인 2020. 3. 6. 근로자는 김○○ 외 사업주 4명, 일용근로자 9명이고, 재해일인 2020. 3. 16. 근로자는 김○○ 외 사업주 4명, 일용근로자 9명으로 26명을 실제 가동일수인 2일로 나누면 13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5명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건사고 당일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재적용 사업장이므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

4) 요양급여 신청서 사본

5) 재해조사서 사본

6) 보험가입자 의견서 사본

7) 조사결과보고서 사본

8) 유선통화복명서 사본

9)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1)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20. 3. 16. 06:30경 전남 고흥군 ○○면 ○○마을 미역양식장의 무동력 바지선 위에서 미역채취 작업 중 미역줄을 끌어당기는 롤러에 좌측 4, 5번 수지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사고일 이후 내원한 병원의 초진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 ○○병원 응급센터기록지(2020. 3. 16. 8:21)

- amputation of 4th &5th finger. Lt.

- 배에서 일하다 밧줄이 감기며 수상하여 내원

나) □□병원(2020. 3. 16. 10:15)

- 재해경위: 3.16일 작업중 배 밧줄에 수상하였다 함

- 치료기간: 2020. 3. 16. ~ 2020. 4. 6.(입원), 2020. 4. 7. ~ 2020. 8. 31.(통원)

- 신청상병명: 좌측 4,5번 수지 완전절단 및 골절

3)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재해조사서와 산재보험 적용여부 조사복명서에 적시된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마을 미역양식장

- 사업주: 김○○

- 소재지: 전남 고흥군 ○○면 ○○마을

- 업종: 양식어업

- 사업자등록여부: 부

나) 근로관계

- 채용일: 2020. 3. 16.

- 담당업무: 미역채취

- 일당: 15만원

다)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 조사내용

(1) 사업운영 실태

(가) ○○마을 어촌계 소유의 미역양식 어장을 마을 어민들에게 각 구역별로 할당하여 각 어민들이 자기 구역에서 미역을 양식 수확하여 미역가공 공장에 납품하는 방식

- 재해가 발생한 미역양식장 작업에는 총 5명의 사업주(어민)와 9명의 일용근로자가 투입되었고, 어민 김○○의 양식장 작업을 하던 날 재해가 발생

- 어민 김○○의 양식장에서 미역수확작업 중 재해가 발생함

(나) 주요작업 내용 및 작업 공정

- 미역종자 구입: 각 어민별로 거래하는 미역종자 종묘장에서 미역종자를 구입

- 미역종자를 미역줄에 끼우는 일: 미역종자 종묘장에서 구입해 온 미역종자를 미역줄에 끼우는 작업(육지에서 작업하며, 매년 10월경 수행)(근로자 사용)

- 미역줄을 양식장에 설치하는 일: 미역종자가 끼워진 미역줄을 양식장에 설치하는 작업(매년 10월경 수행)(근로자 사용)

- 미역양식: 약 3~4개월간 미역이 잘 자라도록 양식장 관리 등(주로 가족운영, 근로자 사용안함)

- 미역수확: 2월말에서 3월말까지 약 한달여 기간 동안 미역수확작업(다른 어민들과 한 조를 이루어 비교적 다수의 일용근로자들을 사용)

- 미역납품: 각 어민별로 거래하는 미역가공공장에 미역을 납품

(2)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 검토

(가) 해당 미역양식작업은 무동력바지선을 이용하여 해면에서 미역을 양식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사업종류는 “양식어업”에 해당

(나) 육지에서 양식장으로 이동할 때 승선한 배는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으로서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붙임 수협중앙회 공문참조)

(다) 재해자를 고용한 어민들 모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며, 별도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라) 따라서 재해발생사업장의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가동일수 14일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3) 공동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 및 검토

(가) 2020. 8. 27. ○○마을회관에서 위 사업주 5명을 동시에 만나 직접 면담 확인한 결과, 5명의 각 양식장 어민들이 함께 조를 이루어 공동으로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였고, 작업지시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나) 이들이 근로자들을 미역양식 사업과정에서 공동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것은 미역수확철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다) 각자 거래하는 종묘장(미역종자를 전문적으로 키워 공급하는 곳)에서 별도로 미역종자를 구입하고, 이를 전년도 10월에 양식장에 뿌리고 양식하는 과정 또한 각자 개별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본인 가족운영 위주로 일하며,

(라) 특히 수확된 미역에 대하여 전체 수확량 및 그에 따른 수익을 1/n로 나누는 것이 아닌, 각자의 양식장 구역에서 생산된 미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각 거래하는 미역가공공장에 납품하여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임

(마) 즉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미역수확작업의 특성상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용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조를 이룬 다른 어민들도 모두 함께 작업하는 것으로서

(바) 공동작업 시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만 각 사업주 양식장 작업일수에 맞추어 정산하는 방식으로서,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는 각자 자기 사업에 해당함

(사) 따라서 해당 작업에 참여한 사업주 5명은 공동사업주로 볼 수 없음

(4) 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 구분

- 재해가 발생한 미역양식장 작업에는 총 5명의 사업주(어민)와 9명의 일용근로자가 투입되었고, 어민 김○○의 양식장에서 미역 수확작업 중 재해 발생함

(5) 재해발생 사업장(김○○ 소유 미역양식장) 상시근로자수 산정(사업주, 청구인의 일치하는 진술내용 및 사업주 윤○○의 달력에 기재된 내용, 사업주 5명의 문답확인서상 내용을 토대로 재해가 발생한 김○○ 미역양식장의 근로자 사용내역에 근거하여 산정함)

- 2019. 10. 동네할머니 2명 3~4일간 작업(미역종자를 미역줄에 끼우는 작업)
- 2019. 10. 본인 외 2명과 함께 미역줄 설치작업 3~4일간
- 2020. 3. 6. 사업주 5명 + 일용근로자 9명 투입 미역양식작업
- 2020. 3. 16. 사업주 5명 + 일용근로자 9명 투입 미역양식작업(재해발생)
- 위 근로자 사용내역을 재해발생일 기준 가동일수 14일로 나누면 근로자수는 1.85명(26명/14일)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임(사업주 5명은 본인 어장 외 남의 어장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수에 포함[20]하여 산정함)

가동기간이 14일 이상인 경우(휴무 없이 계속 가동인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

월 일	'20. 3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근로자수	–	–	–	–	–	13	–	–	–	–	–	–	–	–	–

↑ 근로자 채용일

'20. 3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3															

↑ 재해일

20) 자기 구역외에 남의 구역일을 할때는 어민들 본인도 각자 15만원 일당으로 환산함. 예를 들어 본인 구역에 9명의 일용근로자와 4명의 다른 어민들이 와서 2일간 작업을 했다면 나중에 정산할 때 (9명+4명)=15만원*2일의 금액을 내고, 추후 본인이 다른 어민 구역에 나가서 일한 일수만큼의 일당 금액을 제하는 방식임

4) 원처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상기 사업장에서 미역채취작업을 수행하던 중 재해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나, 가입지원부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여부 조회에 대한 회신 상 “상기 사업장은 어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에 의거,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함

5) 보험가입부-1638(2020. 12. 22.) 『질의회시(미역양식장 적용단위 및 가동일수 관련 질의)』

□ 적용단위 판단 여부

- ○○마을 어촌계에서의 미역 채취작업은 5명의 각 양식장 어민들이 한 조를 이루어 공동으로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작업지시가 이루어졌으나, 생산된 미역 수익을 1/n로 나누는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공동사업 개념이 아닌 각자의 양식장 구역에서 생산된 미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각 거래하는 미역가공공장에 납품하여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서 공동작업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 동 건의 경우 보험의 적용단위는 어민 5명이 운영하는 양식장별로 각각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가동일수 포함 여부

- 동 미역 양식장의 경우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 이후 미역 채취작업을 수행할 때까지 사업주가 양식장 관리를 위하여 연중 수시로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 미역 양식은 미역종자를 미역줄에 부착하여 양식장에 설치하면서부터 양식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준비작업인 미역종자를 부착하는 날부터 미역 채취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가동일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최초요양신청서, □□병원, 2020. 7. 31.)

- 재해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3. 16. 작업 중 배 밧줄에 수상하였다 함
- 좌 제4, 5수지 완전 절단 및 골절에 대해 3. 16. 제4수지 단단봉합술과 5수지골절 정복술 및 강선 고정술 시행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상기 환자분 상병 상태 확인되었으며 상기 재해와의 인과관계 인정되며 신청기간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마.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20. 3. 16. 발생한 재해 현장인 미역 채취 작업장을 5명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고 당일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재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고 주장함.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미역 채취작업은 각 양식장

어민들(5명)이 한 조를 이루어 공동으로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작업지시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일 뿐 생산된 미역 수익을 1/n로 나누는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공동사업 개념이 아닌 각자의 양식장 구역에서 생산된 미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각 거래하는 미역가공공장에 납품하여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어민 5명이 운영하는 양식장별로 각각 적용함이 타당하고, 미역 양식장의 경우 미역종자를 미역줄에 부착하여 양식장에 설치하면서부터 양식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준비작업인 미역종자를 부착하는 날부터 미역 채취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가동일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른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법의 적용제외(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을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사업장을 5명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건사고 당일 사업장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를 산정하더라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산재적용 사업장이므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재해를 입은 미역 채취작업은 각 양식장 어민들(5명)이 한 조를 이루어 공동으로 일용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작업지시가 이루어졌으나, 이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일 뿐 생산된 미역 수익을 1/n로 나누는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공동사업

개념이 아닌 각자의 양식장 구역에서 생산된 미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각각 거래하는 미역가공공장에 납품하여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어민 5명이 운영하는 양식장별로 각각 적용함이 타당하고, 미역 양식장의 경우 미역종자를 미역줄에 부착하여 양식장에 설치하면서부터 양식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준비작업인 미역종자를 부착하는 날부터 미역 채취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가동일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른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 여부를 확인한 결과 산재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법의 적용제외(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함을 사유로 요양급여 불승인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Ⅳ

추가상병 및 재요양

1. 추가상병
2. 재요양
3. 진료계획

1

추가상병

1 » 청구인의 신청 상병명 '이차성 파킨스증'은 통상 파킨슨증의 발병이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발생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사고 또는 승인 상병과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에 따라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541호
- **사 건 명**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8. 11. 2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흉추 제2, 3, 4, 5, 6번 압박골절, 흉골 골절, 좌측 늑골 제5, 6번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적응장애'를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상병명 '이차성 파킨슨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2020. 1. 6.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 2인의 "①현재 보이고 있는 파킨슨의 임상 증상은 기 승인상병(경막하 출혈)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②발병 당시 CT사진 상 출혈이 극히 미량이며, 임상 양상의 변화,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차성 파킨슨증과 기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추가 신청 상병이 2018. 11. 25. 재해로 인해 발병한 것이므로 주치의사의 소견(전원의뢰서) 등을 참고하여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추가상병 신청서 사본

4) 원처분기관 추가상병 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문서 사본

5)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6) 의무기록 사본

7) 영상의학 자료

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9)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8. 11. 25. 4:17경 택시 운행(영업) 중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버스의 우측 측면에 충돌하는 사고 발생함."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승인 상병: 흉추 제2, 3, 4, 5, 6번 압박 골절, 흉골 골절, 좌측 늑골 제5, 6번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적응장애

나) 불승인 상병: 경도인지장애

다) 요양기간: 2018. 11. 25. ~ 2020. 4. 29.(입원 43일, 통원 477일)

3) 청구인을 진료한 의료기관(○○병원)의 의무기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 8. 8.) 2018. 11. 25. 택시 운전 중 버스와 부딪힘. 당시 LOC·뇌출혈이 있었음. 이후로 어지럼증과 인지기능 저하를 호소함. 길을 가는데 운전이 예전 같지 않다. 머리에 지도가 그려지지 않는다. 목적지가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간 적도 있다. 누웠다가 일어날 때 어지럽다. Brain CT: diffuse scanty left fronto temporal SDH

- (2019. 9. 19.) 손 떨림이 더 심해졌다(3알 → 1알로 약이 줄었다). 현재 운전을 하고 있다.

- (2019. 12. 27.) 운전을 하고 있다. 과정이 힘들다. 접촉 사고도 2번 났다. 손이 자동으로 많이 떨린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1) 추가상병신청서(○○병원, 2020. 1. 3.)

- 추가상병 신청 사유: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추가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외상 이후 회복 과정 동안

-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경막하 출혈과 같은 두부 외상

- 추가상병의 기 승인상병(또는 재해)과의 인과관계: 인과관계 상당함.

2) 전원의뢰서(심사청구시 제출, ○○병원)

- 상병명: (G218) Other secondary parkinsonism

-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두부 외상 이후 기억력 장애 및 양손 떨림으로 신경과 외래 경과관찰 중인 환자임. 사고 이후 인지기능 저하는 출혈의 부위와 관련이 있는 전두엽

부위의 이상이 많은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와 외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양손 떨림의 경우에는 파킨슨병의 전형적인 양상이 아니며 현재 도파민 같은 치료제에 반응이 있는지 외래에서 경구 복용하면서 경과 관찰 중이나, 전형적인 퇴행성 파킨슨병의 환자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레보도파 반응성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어 퇴행성 질환에 의한 발생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1) 현재 보이고 있는 파킨슨의 임상 증상은 기 승인상병(경막하 출혈)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됨.
- (자문의2) 발병 당시 CT사진 상 출혈이 극히 미량이며, 임상 양상의 변화, 시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차성 파킨슨증과 기존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적을 것으로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병명 '이차성 파킨슨증'은 청구인의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영상 자료상 경막하 출혈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파킨슨증의 발병이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 또는 승인 상병과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49조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당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거나 또는 그 업무상 재해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재해로 추가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의 업무상 재해 발생 당시 영상 자료상 경막하 출혈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통상 파킨슨증의 발병이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인해 발생하는 점에 대한 의학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사고 또는 승인 상병과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청구인은 재해 당시 비골의 골절이나 연부조직 손상, 보형물의 이탈 소견이 없어 신청상병인 “구형구출코, 비중격만곡, 비밸브협착”은 상당인과관계 인정이 어렵고, “비후성비염”도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비점막의 종창 상태로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1177호
- **사 건 명**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12.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코피(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승인받아 2018. 1. 19.까지 요양한 자로서, 상병명 ‘구형구축코, 비중격만곡, 비밸브협착, 비후성비염’을 추가로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신청상병 중 구형구축코, 비밸브 협착은 기존 2차례 시행 받았던 비성형술 후 상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비후성비염은 기존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비점막의 종창 상태로 보이고 비중격 만곡은 의무기록 및 CT상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원처분기관은 2차례 시행 받았던 비성형술 후 상태라고 판단하여 불승인하였으나, 1차 수술은 2000년에 콧대(기증연골) 시술이었으며, 2차 수술은 2017년 ○○성형외과에서 했다. 수술 6개월 이후 수술 경과가 좋아서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상해를 입고 나서 수술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나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으나 수술 후 문제는 없었으므로 추가 보상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상해로 인한 염증과 구축으로 2차 염증을 막기 위하여 □□의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므로 신청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5)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서 사본

6)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의학자료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7. 12. 29. ○○학교(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하교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집으로 가려고 학교 이탈을 시도하였고, 교과 담당 교사를 도와 학생을 교실로 이동하도록 도와주었다. 청구인은 학생을 교과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 후 뒤돌아 서는 순간 학생이 갑자기 일어나 청구인의 얼굴을 손에 힘을 주어 퍽 소리가 나게 내리침'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 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상병명: 코피(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 요양기간: 2017. 12. 29. ~ 2018. 1. 19.(통원 22일)

3) 청구인의 신청 상병과 관련된 주요 의무기록은 아래와 같다.

- 2016. 3. △△이비인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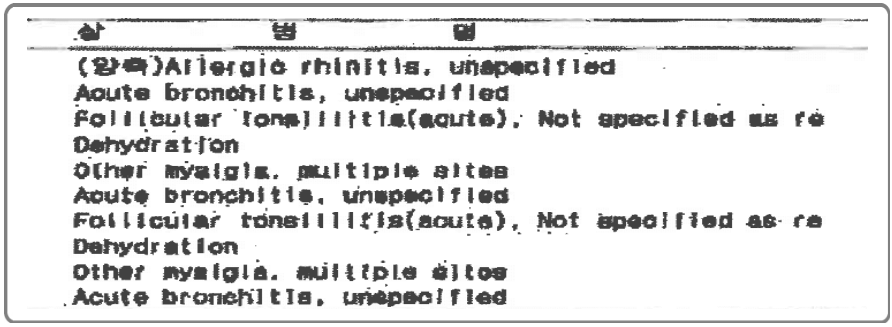

- 2017. 12. 29. ◇◇병원 초진기록지

• 6개월 전에 코 성형 수술을 받았는데 장애아동에게 맞아서 코피가 많이 남. 지혈 처치는 받았는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러 옴. 성형에 대한 처치는 어렵고 CT 찍어서 이상 유무만 확인해 드리기로 함. CT 상 특이사항 없음

- 2018. 2. 13. ☆☆병원

• septal ulceration 진단. ENT refer. nasal discomfort. nasal vestibulitis

- 2020. 1. 14. □□의원

• 보형물(?)+콧볼축소-(20년전, 연세PS), 재수술(1년 뒤, 상동). 콧대 재료 모르심+귀연골(2017. 1. ○○PS). 2017. 12. 29. 장애학생에게 주먹으로 코를 가격당함. 2018. 1. ☆☆병원에서 염증치료

- 2020. 1. 21. □□의원 수술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의원)

1) 추가상병 소견(2020. 6. 19.)

- 상병명: 구형구축코, 비중격만곡, 비밸브협착, 비후성비염

- 추가상병 발병원인: 2017. 12. 29. 장애학생에게 주먹으로 코를 가격 당함. 이후 2018. 1. 염증으로 인한 치료(☆☆병원). 수술 후 감염은 구형구축코 발생에 주요한 역할 가능성 있음

2) 재요양 소견(2020. 3. 19.)

- 호소하는 증상: 구형구축코, 코막힘, 비염

- 주요검사: X-Ray, CT

- 소견: 상해 발생 이후에 증상 발현

- 치료계획

  • 입원 2020. 1. 21. ~ 2020. 1. 22. 늑연골을 이용하여 구형구축코 교정, 비중격 교정술, 비밸브 교정술 시행

  • 통원 2020. 1. 21. ~ 2020. 2. 4. 수술 후 처치

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청구인의 재해 경위와 재해 당시(2017.12.)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수상 이후 비골의 골절이나 연부조직 손상, 보형물의 이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2018년 ☆☆병원 진료 기록에서도 비중격 좌측 편의 궤양과 비점막 부종 외에 외형의 변형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을 때 신청 상병 중 구형구축코, 비밸브 협착은 기존 2차례 시행 받았던 비성형술 후 상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비후성 비염은 기존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비점막의 종창 상태로 사료됨. 비중격만곡증은 2020년 수술 기록 이외의 의무기록이나 CT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며 수술

기록에서 비첨부 성형을 위한 재료를 얻기 위해 비중격 연골을 사용한 내용이 있을 뿐,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 확인되지 않음

- 자문의 2: 수술 전후 사진을 확인해볼 때 구형구축코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며, 이 수술이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듬. 재해당시 check한 CT 상 비중격만곡, 비밸브 협착 보이지 않으며, 비후성 비염은 재해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나.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라. 산재보험법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은 2017. 12. 29. 재해로 '코피(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승인 상병으로 2018. 1. 19.까지 요양한 자로서, '구형구축코, 비중격만곡, 비밸브협착, 비후성비염'을 추가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재해에 따른 승인 상병은 '코피(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이며, 재해 당시 검사한 영상에서 비골의 골절이나 연부조직 손상, 보형물의 이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비중격 만곡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구형구축코, 비밸브 협착은 청구인이 재해발생 이전 개인적으로 시행한 비성형술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비후성비염은 기존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비점막의 종창 상태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같은 법 제49조에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신청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 당시 검사한 영상에서 비골의 골절이나 연부조직 손상, 보형물의 이탈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비중격 만곡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구형구축코, 비밸브 협착은 청구인이 재해발생 이전 개인적으로 시행한 비성형술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비후성비염은 기존 알레르기 비염에 의한 비점막의 종창 상태로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 상병과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재요양 인정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3 » 우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로 거골하관절에 외상 후 2차성 관절염이 진행된 소견으로, 골절 및 수술로 피부 병변이 악화됨이 확인되어 신청 추가상병명 “후외상성 관절염”, “우측다리의 울체성 피부염”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1103호
- **사 건 명**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11. 13.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9. 1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종골의 골절(폐쇄성)’을 승인받아 요양 중, 2020. 10. 23. 상병명 ‘후외상성 관절염(우측 발목 및 발), 우측 다리의 울체성 피부염’을 추가로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의 ‘후외상성 관절염은 인지되지 아니하고 불유합에 해당하며, 우측 다리의 울체성 피부염은 좌측 족관절 부위에도 비슷한 정도로 관찰되므로 재해경위 및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함’이라는 심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20. 8. 이후 골절 염증이 너무 심하여 걷기가 힘들 정도였다. 집에서 버스 정류장 비탈길을 오를 때 통증이 심하며, 통증이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온다. ○○대학병원에서 감염촬영 및 정형외과 진료 시 수술은 이상 없이 잘되었다고 하였다.

약 23년 전 외국에서 선박을 타고 와이어 로프 작업 중 생긴 상처가 당뇨가 있어 흉터로 남아 있는 것이지 피부병이 아니다. 제출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의 피부 상태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왼쪽 발은 비교적 백색이고, 오른 발은 종골의 골절 수술(금속 핀 등 10개 고정술) 후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종아리까지 피부 색깔이 갈색에서 흑색으로 변했고, 수술 부위는 나무처럼 딱딱하게 되었다. 왼쪽 발은 20년 전에 9번 수술을 하였음에도 오른 발처럼 피부가 까맣게 변하지 않고, 트는 현상이 없다.

피부과 의사 등은 혈액 순환이 되지 않아 이러한 변화가 있다고 하였고, 조직검사 결과 골절 수술로 인하여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재검토하여 청구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조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추가상병을 승인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추가상병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4)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서 사본

5) 의무기록 사본 및 영상의학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9. 9. 18. 부산 ○○동 부두에 입항, 계류 후 퇴근 차 □□ 선수에서 내려오는 과정에 선수 벤더를 타고 약 150cm~170cm 높이에서 뛰어 내린 과정에 바닥 대리석 돌에 부딪힘'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승인 상병명: 우측 종골의 골절(폐쇄성)

- 요양기간: 2019. 9. 20. ~ 2021. 2. 3.(입원 70일, 통원 433일)

3) 청구인의 주요 의무기록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병원 수술기록

- 수술일자: 2019. 10. 4.

- 수술명: OR/IF-Foot bone graft

나) ○○병원 의무기록(2019. 9. 20.)

- C.C Rt 발목 pain, 무릎타박상(Rt 피부벗겨짐)

- H.X 상기환자 18일 19시30분경 선착장에서 내리는 도중 c.c 생겨 자택에서 obs 하다가 금일 opd통해 adm

- P.H DM(20년전, local), 고막-염증(오래전, 1월 본원 ENT 진료 후 3차병원 의뢰, □□병원 tx했었음

- F.H Lt 발등 amputation(18년전 local). Rt 손목 fx 철심박는 수술(10년전 local)

다) ○○병원 경과기록지

- 2020. 5. 13. 사진상 지연유합 소견 보임. 고정된 나사 주위 염증 소견 보여 추가 치료 필요함

- 2020. 8. 3. EMG/NCV 검사해서 신경 이상 검사

- 2020. 8. 6. 후외상성 관절염의 소견을 보임

- 2020. 9. 24. 3일전에 발바닥에 전기가 통하는 듯 찌릿한 느낌. 피부가 검어지는 양상을 보임

- 2020. 10. 12. 사타구니에 몽우리(이물) 증상을 간헐적으로 호소

- 2020. 10. 23. 발바닥 전기 통하는 느낌 지속. 지연유합

라) ○○대학교복음병원 의무기록(2020. 6. 3. 감염내과)

- 주 증상: Rt foot pain

- 현 병력: ○○병원에서 우측 발에 대해 정형외과 치료 지속하던 환자분. 최근 pain 있어 antibiotics(po ciprofloxacin) 복용하며 경과관찰 하였음. fever(-) redness(-) edema(+) Td(-). 현재는 pain 없는 상태로 최근 열나거나 infection sign은 호전되는 상태라고 함. bone이 잘 붙지 않는다고 큰병원에서 진료 recommned 받았다고 함

마) ○○대학교복음병원 전기진단검사(2020. 7. 27.)

- Electrodiagnostic Impression: These findings are compatible with peripheral polyneuropathy at all extremity in moderate degree at this time

- 상기환자 DM, CKD로 인한 PPN으로 우측 하지의 신경 손상의 유무 및 정도를 전기진단학적 검사로는 판단할 수 없음

바) ○○대학교복음병원 의무기록(피부과)

- 2019. 6. 25.

  • 주증상 왼쪽 팔, 다리의 crusted erosion 병변

  • 현병력 Localized multiple crusted erosive patches on the Lt. forearm Lt. lower leg for 1 week. 2019. 6. 17. 상처가 발생

- 2020. 10. 20.
  - 주관적 소견: 우측 다리에 피부가 검어져요
  - 객관적 소견: 1. Localized asymptomatic brownish scaly patches on the Rt. lower legs for 10 months. 2. 작년 10월 말에 뒷굽이 골절되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부터 서서히 증상 발생
  - 진단명: r/o Stasis dermatitis
  - 조직검사 필요함을 소견서 작성
- 2020. 11. 25. 조직병리검사
- 2021. 1. 6. 조직병리검사 결과
  - A. Skin, right leg, incisional biopsy: Psoriasiform dermatoses
  - B. Skin, right foot, incisional biopsy: Psoriasiform dermatoses

사) 이 사건 재해 이전 청구인의 ○○병원 의무기록(정형외과)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9. 1. 7. wound on Rt plantar surface
- 2019. 4. 1. 발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음. 계속 상처가 지속되면 debridement & suture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19. 6. 10. debridement was done. wound dressing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2020. 10. 30.)

- 추가상병명: 우측 후외상성 관절염(발목 및 발), 우측 다리의 울체성 피부염
- 진단일: 2020. 10. 23.
- 발병 원인: 당뇨 환자로 종골 골절로 인해 관절 및 발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가해져 이차적인 상병 발현

나. 소견서(○○대학교병원, 2020. 12. 4.)

- 상병명: 정맥기능부전(만성)(말초성)
- 향후 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다리에 발생한 갈색 반을 주소로 본원 피부과 외래에 내원하여 피부 조직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울체피부염으로 진단 받았음. 이전 발생한 발의 골절과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됨.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함

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

- 자문의 1: 후외상성 관절염은 인지되지 아니하고 불유합에 해당함. 울체성 피부염은 좌측 족관절 부위에도 비슷한 정도로 관찰되므로 재해경위 및 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인정되지 아니함
- 자문의 2: 추가상병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 타당함
- 자문의 3: 후외상성 관절염은 영상 사진 상 인지 안됨. 좌측 하지와 우측 하지 비교 시 양측 모두 피부염 소견, 재해와 무관하다고 판단됨
- 자문의 4: 후외상성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으며, 울체성 피부염은 기존 질환으로 보임.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 자문의 5: 후외상성 관절염은 인지되지 않음. 울체성 피부염은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환부 사진 포함)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19. 9. 1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종골의 골절(폐쇄성)'을 진단받아 2019. 10. 4. OR/IF-Foot bone graft 수술 시행한 상태로, 거골하관절에 외상 후 2차성 관절염이 진행된 소견 확인되며, 좌측 발에 비해 수상 부위인 우측 발이 많이 부어 있고, 착색도 반대쪽에 비해 심하며 점점 진행되고 있는 양상으로, 골절 및 수술 등으로 인해 피부 병변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상 재해 및 승인상병과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9조에 의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당초 재해로 신청 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마땅히 이를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2019. 9. 1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종골의 골절(폐쇄성)'을 진단받아 2019. 10. 4. OR/IF-Foot bone graft 수술 시행한 상태로, 거골하관절에 외상 후 2차성 관절염이 진행된 소견 확인되며, 좌측 발에 비해 수상 부위인 우측 발이 많이 부어 있고, 착색도 반대쪽에 비해 심하며 점점 진행되고 있는 양상으로, 골절 및 수술 등으로 인해 피부 병변이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승인상병과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신청 상병인 '후외상성 관절염(우측 발목 및 발), 우측 다리의 울체성 피부염'은 당초 재해 또는 기 승인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 “손목의 드퀘르벵 병”은 만성적인 질병이나, 청구인의 경우 우측 요골하단의 경상돌기 골절이 힘줄을 지나가는 근접부위에서 골절이 된 상태로 힘줄에 압력 발생으로 드퀘르 병의 증상을 유발하여 승인상병과 신청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0617호
- **사 건 명**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11. 18.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7. 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요골하단의 경상돌기 골절, 우측 대퇴의 타박상’을 승인받아 요양 중 상병명 ‘우측 손목 드퀘르벵 병’을 추가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의 “신청상병은 손을 자주 쓰거나 많이 움직이는 등의 만성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신청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0. 7. 3. 사다리 사고가 발생한 후 6주 동안 통깁스를 하였으며 2020. 8. 14. 깁스 제거 후부터 지금까지 손목에 힘줄막 돌출로 인하여 통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손바닥 좌측 끝부분은 아직도 부어 통증이 심한 상태이다.

사고 후 ○○의료원 제3정형외과 김○○ 담당의 소견으로 2020. 7, 8월은 휴직하였으며 2020. 9. 1. 복직하여 2020. 10. 27.까지 근무하였고 사고 후유증으로 2020. 10. 8.부터 지금까지 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

2020. 10. 28.부터 지금까지 휴직을 한 상태여도 계속 통증이 있는데 '손을 자주 쓰거나 많이 움직이는 등 만성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사고 당시 골절과 심한 타박상이 동반되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통증이 계속되고 있다고 본다.

불승인 통보를 받고 즉시 ○○의료원 담당의 진료소견서를 받아왔으며, 사고 당시 사진을 첨부하오니, 치료를 잘 마치고 복직할 수 있도록 빠른 검토와 처리를 바란다라고 주장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추가상병신청서 사본

4) 치료확인서, 진료소견서, 소견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6)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 결과 현황 사본

7) 의무기록 사본

8) 영상의학 자료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0)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최초요양신청서 상 청구인의 이 건 재해 경위는 “2020. 7. 3. 14:30경 ○○식물원 온실 내 열매과수원에서 4단 사다리에 올라가 고사엽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오른쪽 손목 골절 및 팔, 어깨, 골반, 다리 등에 타박상을 심하게 입음.”으로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1) 추가상병신청서상 소견서(2020. 11. 2. ○○대학교병원)

- 추가신청 상병명: 우측 손목 드퀘르벵 병
- 추가상병의 일반적 발병원인: 손을 많이 써서 발생함
- 신청인의 추가상병 발병의 구체적인 원인: 평소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외상 후 증상발현
- 신청인의 업무상 재해(또는 승인상병)와 추가상병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여부: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함

2) 소견서(2020. 11. 17. □□의원)

- 병명: 손목의 연조직염
- 의견: 상기 환자는 골절 고정치료후 발생한 손목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의 자발적 연조직(힘줄)염 의심으로 지속적 경과관찰 및 보존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최초 외상 발생이 현 증의 직접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진료소견서(2020. 11. 19. ○○의료원)

- 진단명

  • 우측 수근관절 요골 하단의 경상돌기 골절

  • (상기 경상돌기 골절의 후유증)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 소견

  • 2020. 7. 3. 낙엽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다 1.5미터 사다리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수상하여, 2020. 7. 4. 본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상 경상돌기(styloid process) 골절 확인되어 보존적 치료(2020. 8. 14.까지 통깁스 고정 후 물리치료)하였음

  • 단순 방사선 검사상 골유합은 되었으나 골절부(경상돌기)를 주행하는 장무지 외전건(APL)과 단무지 신건(EPB)의 협착성 건활막염이 합병되어 소위 드퀘르벵 병이 속발한 것으로 판단함.

  • 수상직후와 깁스제거 후 재활 및 물리치료 중에도 환자는 일관되게 이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신체검사 상으로도 전형적인 드퀘르벵 병의 징후(핑켈스타인 검사, 엘코푸 검사)를 보였음

  • 그러므로 이 환자에서 드퀘르벵 병은 경상돌기 골절의 후유증으로 봄이 타당함

4) 치료확인서(2020. 12. 1. ○○대학교병원)

- 병명: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드퀘르벵),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 의견: 상기 환자는 1m 높이에서 낙상 후 발생한 우측 손목 통증으로 내원하였음. 타병원에서 우측 원위 요골 경상돌기 골절 진단 후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통증 지속되어 시행한 검사상 드퀘르벵 병이 의심되는 상태임. 수상 후 초기 치료를 싱해한 병원의 소견서 상에서도 상기 부위의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외상으로 인하여 상병이 합병된 것으로 사료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신청상병은 손을 자주 쓰거나 많이 움직이는 등의 만성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신청상병은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손목의 드퀘르벵 병은 통상적으로 일회성 외상으로 발병하는 상병이 아닌 손목의 과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질병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경우 우측 요골하단의 경상돌기 골절이 힘줄이 지나가는 근접 부위에서 골절이 된 상태로 힘줄에 압력이 발생하여 드퀘르벵 병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 외상에 따른 골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9조에서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인정요건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추가상병이 업무상으로 인정되려면 당초 재해 및 요양상병과의 사이에 시간적·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해서 추가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우측 손목의 드퀘르벵 병은 통상적으로 일회성 외상으로 발병하는 상병이 아닌 손목의 과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질병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경우 우측 요골하단의 경상돌기 골절이 힘줄이 지나가는 근접부위에서 골절이 된 상태로 힘줄에 압력이 발생하여 드퀘르벵 병의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여 외상에 따른 골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추가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추가 신청 상병명 '우측 손목 드퀘르벵 병'는 업무상 재해 또는 기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재요양

1 » 제5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을 진단받고 요양후 제5수지 유착에 따른 굴곡 장해에 대한 박리술 시행으로 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5837호
- **사 건 명**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6. 5. 청구인에게 행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6.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 제4수지 좌멸창, 좌 제5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을 승인받아 2020. 3. 1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제6호의 결정 처분을 받은 자로서, 좌 제5수지 건 유착에 따른 박리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따라 2020. 5. 19.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현재 좌 제5수지의 굴곡 장애 등으로 건 유착 박리술이 요한다고 하나 X-선 사진으로 보아 종결 당시보다 악화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건 박리 수술 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수술을 위한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친 손가락의 마디가 딱딱하게 굳어져 굽혀지지 않아 용접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많으니 손가락의 기능 회복을 위한 굴곡건 박리술과 건 봉합술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 재요양을 승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재요양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원처분기관의 의견서

4) 재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

5) 재요양신청서 사본

6)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7) 의무기록지 사본

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9)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 경위(최초요양신청서): 2019. 6. 20. 08:30경 동료와 함께 엔진룸으로 가는 다리 위에서 구르마에 장비를 싣고 이동하던 중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2) 주요 요양내역

가) 승인상병: 좌 제4수지 좌멸창, 좌 제5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

나) 요양기간: 2019. 6. 20. ~ 2020. 3. 10.(입원 51일, 통원 214일)

다) 장해등급: 제14급제6호(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좌 제5수지 중수지절 90도, 근위지절 35도, 원위지절 40도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병원)

1) 재요양신청서상 소견(2020. 5. 19.)

가) 재요양 사유: 수술(건 박리술)

나) 재요양 사유가 발생한 상병명: 좌 제5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

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제5수지 관절운동 제한으로 직업 활동에 있어 불편감 호소하는 상태임

라) 예상기간

- 2020. 6. 1. ~ 2020. 6. 12.(입원 2주)
- 2020. 6. 13. ~ 2020. 8. 7.(통원 8주)

마) 종합소견: 상기 병명에 수반되는 제 증세로 본원에서 수술적 가료 시행 후 대증치료 중 종결한 환자로 현재 좌측 수부 제5수지 건 유착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로 2020. 6. 2. 좌측 수부 제5수지 유착건 박리술 예정이므로 경과에 따라 재평가 요함

2) 소견서(2020. 6. 30.)

가) 병명

-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부 부분 절단상(S68107)
- 좌측 수부 제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S62621)
- 좌측 수부 제4, 5수지 좌멸창(S6701)
- 좌측 수부 제5수지 요측지 혈관 파열(S659)
- 좌측 수부 제5수지 요측 및 척측 지신경 파열(S644)
- 좌측 수부 제5수지 굴곡건 파열(S6610)

나) 치료 소견: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에 대해 수술적 치료 시행하였던 분으로 좌측 제5수지 힘줄 유착 및 관절 강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절 굴곡 운동하였던 분입니다. 불완전하더라도 힘줄 유착 박리 및 단축술을 통하여 수지 기능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020. 6. 2. 굴곡건 유착 박리술 및 단축술 시행하였음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2020. 6. 4.)

상기 환자는 2019. 6. 20. 장비 이동 중 손가락이 끼인 재해를 입고 좌 5수지 근위지부 불완전 절단 등의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 후 2020. 3. 10. 종결하였고 장해 제14급을 받았음. 현재 좌수 5수지의 굴곡 장애 등으로 건 유착 박리술이 요한다고 하나, X-선 사진으로 보아 종결 당시보다 악화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건 박리수술 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수술 위해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음.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은 2019. 6.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 제4수지 좌멸창, 좌 제5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을 진단받고 요양 후 좌 제5수지 건 유착에 따른 박리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요양 신청하였으며, 관련 의무기록 및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좌 5수지 부위 굴곡 장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해당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재요양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1조(재요양)에서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에서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①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②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③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재요양을 통해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의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수술을 통해 다친 손가락의 기능이 호전될 수 있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그에 관한 재요양을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좌 5수지 부위 굴곡 장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해당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그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진료계획

1 »

2016.4.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았고, 정신과적 상병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 2년 8개월 정도 치료받은 시점에서 진료계획서상 상당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의 악화를 인정할 만한 특이소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7678호
- **사 건 명**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6.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외상성 혈기흉(우측), 동요흉(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우7~11, 좌 10~12), 폐 좌상, 외상성 간의 열상, 외상성 신장의 열상, 제11-12 흉추간 골절 및 탈구, 압박 척수병증(흉수), 좌측 안와골절, 광대뼈 및 위턱뼈의 골절(좌측), 좌측 대퇴 경부골절, 좌측 견관절 관절 와순 손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승인받아 2020. 6. 23.까지 요양 후 2020. 6. 24. ~ 2020. 9. 11. 통원 치료(정신건강의학과)가 필요하다며,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료계획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정신건강의학과)의 "2020. 4. 1. ~ 2020. 6. 23. 기간 진료계획은 타당하고, 이후 증상 고정으로 치료종결 타당함"이라는 심의 결과와 자문의사의 "2020. 4. 1. 자문의사회의 이후 현재까지 진료기록 검토 결과, 악화 소견 관찰되지 않는 바, 추가 요양 불필요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이 건 진료계획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측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사고 후 현재까지 너무나 고통 속에서 치료 중에 있었고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치료과정 등에서 더욱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조금은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중에 있었는데, 이번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은 청구인을 다시 한번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등은 문제점이 있다. 청구인이 이제 그나마 조금은 마음의 불안에서 벗어날까 하는 시점에 불승인 결정을 한 것이다. 청구인의 진료계획은 승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을 받고, 잠도 못자고 스트레스, 자살 충동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고 성격이 난폭해지고 쉽게 짜증과 성질을 낸다. 악몽도 계속된다. 이러다가 청구인이 자살을 할까봐 걱정도 된다. 치료 연장을 조금이나마 해주면 조금 나아질 것도 같은데 승인을 좀 부탁드린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청구인에 대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계획서 사본

4) 소견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6)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사본

7) 청구인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 사본

8) 청구인 추가 제출 서면 사본

9) 의무기록 사본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1)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 경위는, "2016. 4. 29. 지붕판넬 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부상을 입음"으로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1) 직전 진료계획서(2020. 3. 13.)

❍ 통원 예상기간: 2020. 4. 1. ~ 2020. 6. 23.

❍ 사유: 약물치료

❍ 소견: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 짜증, 정신운동성 지체, 불안정한 정동, 불면, 악몽 재경험 등의 증세가 지속됨. 계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2) 소견서(2019. 12. 13.)

❍ 병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소견

- 현재 재해자의 정신건강의학과 승인 상병명의 상병상태: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 불안, 짜증, 예민, 불안,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생각 등의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임

- 최근 치료내용(처방 변경): 지지 정신치료 및 정신 약물치료 중임. 2019년 10월부터 주 치료제인 항우울제를 다른 약물로(둘록세틴에서 브린헬릭스로) 변경 후 처방 중임

-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승인 상병의 증상 고정 여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약 3년 8개월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중에 2017. 8. 1.부터 현재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 꾸준하고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음. 그럼에도 남아 있는 현재의 증상은 고정되었고 판단함

❍ 비고: 본 소견서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의 요청(시행 재활보상2부-5276)에 따라 작성되었음. 소견의 내용은 배상문제에 관련된 것으로 배상의학적 개념(배상의학의 기초, 제4판 개정판 임광세, 중앙문화사, p.19 참고)에 따라 작성되었음

3) 이 건 진료계획서(2020. 6. 17.)

❍ 통원 예상기간: 2020. 6. 24. ~ 2020. 9. 11

❍ 사유: 약물치료

❍ 소견: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울, 짜증, 정신운동성 지체, 불안정한 정동, 불면, 악몽 재경험 등의 증세가 지속됨. 계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생각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20. 4. 1.)

1) 자문의사1

우울하고 호전이 없다. 약 증량 아침시간 힘들다. 1시간 경과 후 잔다. 약 복용 후 조금 효과(“죽고싶다” 등 덜 해진다).

신청기간(2020. 4. 1. ~ 2020. 6. 23.) 모두 인정. 이후 증상 고정. 종결 요함.

2) 자문의사2

계속 우울하고 죽고 싶다. 약을 세게 지으면 다음날 일어나기가 힘들다. 약을 먹으면 좀 나은 것 같다. 척추, 고관절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동네 산책도 힘들다.

신청기간(2020. 4. 1. ~ 2020. 6. 23.) 모두 인정. 이후 증상 고정.

3) 자문의사3

계속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불면증(+) 약을 복용하면 우울 증상과 죽고 싶은 생각은 좀 덜해진다. 전반적으로 증상이 크게 호전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신청기간(2020. 4. 1. ~ 2020. 6. 23.) 모두 인정. 이후 종결.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이 건 진료계획 신청 기간인 2020. 6. 24. ~ 2020. 9. 11. 관련 자문) 2020. 4. 1. 자문의사회의 이후 현재까지 진료기록 검토 결과, 악화 소견 관찰되지 않는 바, 추가 요양 불필요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진료계획의 제출)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은 2016.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외상성 혈기흉(우측), 동요흉(우측),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승인받은 자로 정신과적 상병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 6. 24. ~ 2020. 9. 11. 기간 통원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련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중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 2년 8개월 정도 치료받은 시점에서 우울, 예민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증상이 상당기간 지속된 상태로 진료계획상 치료로 증상의 상당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달리 증상의 악화를 인정할 만한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볼 때, 호소하는 증상은 이미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상기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40조, 제41조에서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상병 경과, 치료 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고, 주치의사 소견도 이에 부합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업무상 재해로 중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 2년 8개월 정도 치료받은 시점에서 우울, 예민 등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그 증상이 상당기간 지속된 상태로 진료계획상 치료로 증상의 상당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달리 증상의 악화를 인정할 만한 특이소견은 없는 것으로 볼 때, 호소하는 증상은 이미 고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따라서 청구인의 상기 기간에 대한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건 진료계획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V

간병료 및 요양비

1. 간병료
2. 요양비

1

간병료

1 » 청구인 도뇨관 삽입 상태이고 침대차로 이동하는 등 침상 안정이 필요하며 거동이 제한되어 간병료 지급기준 상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병상태로 보아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4186호
- **사 건 명**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3. 25.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1.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천추의 골절(폐쇄성), 요천추 횡돌기 골절(L5, 우), 늑골의 다발성 골절(우측 제6, 7번), 외상성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 31. ~ 2020. 2. 14.에 대해서 간병이 필요하다며,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비(간병료)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승인 상병에 대해서는 환자의 운동력 제한이 불필요하여 간병료 지급은 불승인이 타당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비(간병료)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인은 이 건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정신이 들었을 때 병원에서 간병인(보호자)이 꼭 있어야만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당시 사고로 인해 엉덩이 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으로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침대에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비(간병료)가 부지급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 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비청구서 사본

4)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5) 의무기록 사본

6) 영상의학 자료 사본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이 건 재해 경위는, “2020. 1. 30. 건물 지붕에 사다리를 놓고 인터넷 수리 작업을 마치고 내려오던 중 낙상하여 부상을 입음”으로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대학교 ○○병원)

1) 간병기간: 2020. 1. 31. ~ 2020. 2. 14.

2) 간병 필요정도 소견: 허리, 골반 골절로 주변인의 도움이 필요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승인 상병에 대해서는 환자의 운동력 제한이 불필요하여 간병료 지급은 불승인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범위)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은 2020. 1. 30. 재해로 '천추의 골절(폐쇄성), 요천추 횡돌기 골절(L5, 우), 늑골의 다발성 골절(우측 제6, 7번), 외상성 경추간판 탈출증(제5-6번)'을 승인상병으로 요양하던 중 2020. 1. 31. ~ 2020. 2. 14. 기간에 대해 간병료를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결과, 도뇨관 삽관 상태이고, 침대차로 이동하는 등 위 청구기간은 침상 안정이 필요하고 거동이 제한되어 간병료 지급기준 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병상태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기간에 대해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제4항제6호에 따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체적 기준을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재해로 인해 간병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 등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간병료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기간은 침상 안정이 필요하고 거동이 제한되어 간병료 지급기준 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병상태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기간에 대해 3등급에 해당하는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이 건 청구기간(2020. 1. 31. ~ 2020. 2. 14.)에 대하여 간병료(3등급)의 지급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중환자실 퇴원 이후에도 욕창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며 통증에 대한 반응이 없을 정도의 상병상태였고 영상자료상 뇌연화증이 심하게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침상에서 체위 변경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항상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인지기능이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기 기간 뇌의 손상으로 인해 생명유지를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5317호
- **사 건 명**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4. 24.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간병료)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1.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전측 두정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전측 두부 두개골 골절, 우측 대퇴 경부 골절, 우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 대뇌 손상에 의한 양측 시신경 손상'을 승인받아 요양 중, 원처분기관에 2020. 1. 31. ~ 2020. 4. 7. 기간에 대한 간병료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3등급 간병료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기간 3등급 간병료를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력으로 생명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간병인이 24시간 근접해서 간병을 하고 있고, 혼수나 반혼수 상태는 아닐지라도 시신경

손상에 따른 실명 상태이며, 스스로 체위변경도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1등급 간병 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상병상태가 원처분보다 상위 등급의 간병료 지급 기준에 합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비청구서 사본

4) 의무기록 사본

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0. 1. 8. ○○○○○협회 사내 정문 출입구 간판 흔들림 고정 작업 중 추락한 재해로 상병명 '좌측 전측 두정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우측 전측 두부 두개골 골절, 우측 대퇴 경부 골절, 우측 대퇴 간부 개방성 골절'에 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고, 2020. 1. 8. ~ 2020. 1. 30. 중환자실 입원 후 일반 병실로 전실하여 요양 중이다.

2) 청구인은 2020. 1. 8. '혈종 제거를 위한 개두술', 2020. 2. 5. '우측 대퇴골 정복술', 2020. 3. 5. '고관절 전치환술'을 시행받았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20. 6. 24. 상병명 '대뇌 손상에 의한 양측 시신경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

4) 청구인에 대한 ○○대학교병원 진료기록에서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일 자	내 용
2020. 01. 31.	mentality: stupor, motor: Rt arm G3, Lt arm G4-
2020. 02. 02.	m/s: stupor, motor: both arm G3, Lt leg G2, Rt leg traction 적용 중으로 motor 측정 불가
2020. 02. 05.	leg traction, L-Tube, Mental stupor 상태여서 양손 억제대 상태임, 묻는 말에 대답 없음, 욕창 고위험군에 해당되어 욕창 예방 교육함, 스스로 체위변경 불가능함
2020. 02. 09.	스스로 체위변경 불가능함
2020. 02. 11.	m/s: stupor, L-tube, FCT keep 상태임
2020. 02. 14.	욕창, 낙상 고위험 대상자임
2020. 02. 18.	mental deep drowsy
2020. 03. 03.	mentality: stupor
2020. 03. 04.	스스로 체위변경 불가능함
2020. 03. 12.	m/s: stupor로 obey되지 않으며 pain에 반응 없음. motor: quadriparesis(upper G2, lower G1) 욕창 고위험군에 해당
2020. 03. 17.	t-tube, Rt. PICC, PEG, FCT keep state
2020. 03. 20.	motor 변화 없음
2020. 03. 24.	m/s: drowsy. motor: 사지 G2
2020. 03. 26.	m/s: drowsy(이름에 대한 지남력 있음) motor: 사지 G3
2020. 03. 27.	욕창 고위험군에 해당되어 욕창 예방 교육(체위변경/ambulation 격려함)
2020. 03. 28.	왼쪽 손목 보호대 적용중이며 피부 순환상태 양호함
2020. 04. 04.	간병사 상주하에 양쪽 침낭 난간 올리고 수면 중임

5) 청구인의 상병상태에 대하여 보호자가 기록하고 발췌하여 제출한 메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내 용
2020. 02. 28.	기력 없음(자는지, 의식이 희미한지 알 수 없음), 욕창이 심함 매일 소독을 하지만 엉덩이는 매우 심하고 더 번짐
2020. 03. 03.	욕창이 심해 성형외과 진료 받음(대학병원) 묻는 말에 반응을 보이려는 듯하나 뚜렷하지 못함
2020. 03. 06.	힘 없이 잠만 자는 듯, 밤새 욕창이 더 심해짐 L-tube로 식도 상처 및 출혈이 있어 뱃줄 시술함 주치의 말하기를 엉덩이 욕창이 심하다며 사진 찍어감
2020. 03. 14.	뇌에 물이 차 신경외과에서 척추에 관을 박아 뇌에서 물을 빼는 시술을 함. 사고난 후부터 오른쪽 손목이 계속 부어있고 멍이 있었는데 금일 반깁스함.
2020. 03. 21.	인지기능검사에서 물음에 무조건(맞는 말도 틀린 말도) 고개만 끄덕임, 눈을 감아보라는 말은 잘 따름
2020. 03. 26.	수술 때문인지 힘이 없음. 얼굴이 많이 붓고 눈도 잘 뜨지 못함. 중얼거리지만 알아들을 수 없음. 욕창이 매우 심함
2020. 03. 27.	말을 하는 듯하나 배우자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들, 딸 이름을 들려주고 누구냐고 물어보니 조카라고 대답함
2020. 03. 30.	재활의학과 주치의 말하기를 뇌 손상으로 시신경이 손상되어 실명되었다고 함
2020. 04. 04.	여러 가지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함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1) 요양비청구 소견서(○○대학교병원, 2020. 4. 7.)

뇌 손상으로 인한 보행 및 식사, 배변 기능의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

2) 소견서(□□병원, 2020. 5. 28.)

현재 근력은 우측 상지 1~2단계, 우측 하지 1~2단계, 좌측 상지 2단계, 좌측 하지 2단계 정도로 관찰되나 협조가 되지 않아 정확한 측정은 어려운 상태임. 경직은 우측

상지 1+, 좌측 상지 1, 우측 하지 2단계정도 측정되고 있으며, 기능적 움직임 및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스스로는 불가능하여 항시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 또한 자기 표현이 안 되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침상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정도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3등급 간병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요양급여)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라. 근로복지공단 간병료 지급기준 업무처리 지침(2017-29호)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중환자실 퇴원 이후에도 욕창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며 통증에 대한 반응이 없을 정도의 상병상태였고 영상자료상 뇌연화증이 심하게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침상에서 체위 변경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항상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인지기능이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기 기간 뇌의 손상으로 인해 생명유지를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게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부상을 입은 자는 근로복지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고, 산재근로자의 상병상태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때에는 간병료를 지급하며,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체위변경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이므로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중환자실 퇴원 이후에도 욕창 발생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며 통증에 대한 반응이 없을 정도의 상병상태였고 영상자료상 뇌연화증이 심하게 진행된 소견이 관찰되는 점, 청구인이 침상에서 체위 변경 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항상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정상적인 인지기능이 유지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상기 기간 뇌의 손상으로 인해 생명유지를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에게 1등급 간병료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상병 상태는 1등급 간병료 지급 기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요양비

1 » 청구인은 상병명 '요추4-5추간판탈출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2020. 6. 29. ~ 2020. 7. 19. 기간 요양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 요양비(개별요양급여신청 포함)로 청구한 것으로, 해당 부지급 항목은 모두 동일 치료목적의 급여대체 품목이 있는 항목으로 요양급여 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790호
- **사 건 명**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9. 16. 진단받은 상병명 '요추4-5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자로서, ○○대학교병원에서 2020. 6. 29. ~ 2020. 7. 19. 기간에 척추고정술 등 요양으로 발생한 산재보험 진료비 외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3,505,770원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 요양비(개별요양급여신청 포함)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개별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료비심사자문위원회의의 "불인정항목은 동일 치료목적의 요양급여 행위, 약제 또는 치료재료가 있는 항목이거나, 요양급여 항목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 인정이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전액본인부담 진료비 126,520원만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나머지 비급여 진료비(3,379,250원)에 대하여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9. 9. 16. 염좌와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바 있다. 치료 도중 세 번에 걸쳐 수술을 하였고, 2020. 6. 30. 수술은 인공 디스크 삽입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기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 후 수술비가 너무 많이 나오자 병원 산재 담당자가 인공디스크는 개별요양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는데 불승인이 나서 재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불가피한 수술이었고, 재발 가능성이 너무 많아 부득이하게 인공디스크를 넣는 수술을 한 것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대학교병원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4) 요양비청구서

5)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6) 요양비청구서 처리결과 알림(개별요양급여) 공문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2019. 9. 16. 진단받은 상병명 '요추4-5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를 승인받은 자로서, ○○대학교병원에서 2020. 6. 29. ~ 2020. 7. 10. 입원기간에 제4-5요추 척추기기고정술을 받았다.

〈수술내역〉

❍ 2020. 3. 5. 4-5요추 추간판제거술(○○병원)

❍ 2020. 4. 10. 4-5요추 추간판제거술(○○병원)

❍ 2020. 6. 30. 4-5요추 척추고정술(○○대학교병원)

- 수술명: Wound revison and total laminectomy L4, PLIF L4/5 with Eden cage and DBM, PLF L4/5 transpedicular screw fixation L4/5 with Perfix system

2) 청구인이 제출한 요양비 청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진료기간	급여 (전액본인부담) (A)	비급여(B)	청구액 (A+B)	부지급액	지급액
'20.6.29.-7.10.(입원)	126,520	3,379,250	3,505,770	3,379,250	126,520

❍ 비급여 진료비 세부내역

(단위: 원, 개)

수가코드	명칭	○○대병원 단가	수량	청구액	부지급액
합계				3,379,250	3,379,250
659900341	아큐판 주사액	3,120	37	115,440	115,440
669905811	징크에스주	21,760	3	65,280	65,280
BM5101EJ	Curepad	680	9	6,120	6,120
M1101007	Filter Needle	830	1	830	830
M1101126	Filter Syringe 10cc	500	1	500	500
M1101126	Filter Syringe 50cc	500	1	500	500
BM5103UP	하이드로픽스	5,150	1	5,150	5,150
BM5109CD	Hypafix	12,000	1	12,000	12,000
BM2002LG	Innotape	7,130	1	7,130	7,130

수가코드	명칭	○○대병원 단가	수량	청구액	부지급액
BJ1003PL	Nafix Plus I.V반창고	2,760	4	11,040	11,040
BJ7002XF	Surgi Chito	36,000	1	36,000	36,000
BJ1001EM	Tegaderm I.V	760	1	760	760
BC0102QT	Bongener. CGDBM Deep EL FUSE injectable	976,800	1	976,800	976,800
BC0104ED	Eden Lumbar (HANSBIOMED)	1,080,000	1	1,080,000	1,080,000
BJ7000CH	Quikclot 4*4 Hemostatic Dressing	134,850	2	269,700	269,700
BF0100RJ	Oxiplex1	792,000	1	792,000	792,000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진료비심사자문위원회 심의결과

구분	신청금액	인정금액	심의결과
○○대병원	3,379,250	0	불인정항목은 동일 치료목적의 요양급여 치료재료가 있는 항목이거나, 요양급여 항목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지급이 타당하지 않음.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및 제3조(비급여 대상), 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 등)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상병명 '요추4-5추간판탈출증'으로 ○○대학교병원에서 2020. 6. 29. ~ 2020. 7. 19. 기간 요양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 요양비(개별요양급여신청 포함)로 청구한 것으로, 해당 부지급 항목은 모두 동일 치료목적의 급여대체품목이 있는 항목으로, 요양급여 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개별요양급여로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어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법령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청구한 비급여 항목은 모두 동일 치료목적의 급여대체품목이 있는 항목으로, 요양급여 품목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부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호(약제)」에 따라 포스테오주의 인정기준 외에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17. 11. 1. 재해 발생 이후 우측 상완골 골절의 불유합 및 지연유합으로 인해 4차례의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골 생성 촉진을 위해 투여한 골대사제제인 포스테오주는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5014호
- **사 건 명** 요양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4.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7. 11.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상완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을 승인받은 자로서, ○○대학교 □□□병원에서 산재로 요양 중에 2020. 3. 26. 우측 상완골에 대한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을 시행받고 본인이 부담한 포스테오주 600MCG/2.4ml/PEN 진료비 326,350원을 원처분기관에 요양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포스테오주에 대하여는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학교 □□□병원 주치의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포스테오주를 2020. 3. 31.부터 투약하였고, 보험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환자 4번의 상완골 골절에 대한 불유합 및 재골절 발생하였기 때문에 포스테오주를 투약하는 것이 환자의 골유합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으로 투약하였고, 청구인의 경우 재해 이후 불유합으로 3년 동안 4번의 수술하였음을 고려하여 포스테오주 처방 후 골유합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급여·비급여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심사청구하였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4) 요양비청구서

5)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2017. 11 .1. 재해로 상병명 '우측 상완골 몸통의 분쇄골절 등'을 승인 받은 자로서, 해당 상병에 대하여 2017. 11. 2. □□□병원에서 사지골절정복술을, 2017. 11. 21. ○○대학교 □□□병원에서 가관절수술(복잡) 및 골이식술, 2018. 2. 23. 사지골절정복술(복잡) 및 골이식술, 2019. 7. 8. 골이식술을 시행받았다.

2) 청구인은 2020. 3. 25. ~ 2020. 4. 9. ○○대학교 □□□병원에서 산재로 요양하면서 불유합 및 재골절로 인하여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복잡) 시행 및 포스테오주 600MCG/2.4ml/PEN를 투약하고, 포스테오주 약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 후 원처분기관에 요양비로 청구하였다.

3)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포스테오주는 급여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약품비 지급이 타당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라.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및 제3조(비급여 대상)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호(약제) 「Teriparatide(품명: 포스테오주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호(약제)

「Teriparatide 주사제(품명: 포스테오 주 등)」

허가 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가. 투여대상

: 기존 골흡수억제제(alendrnate, risedronate, etidronate) 중 한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1) 65세 이상

2)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3)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 (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투여기간: 생략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조에 의거 산재근로자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의 산정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호(약제)」에 따라 포스테오주의 인정기준 외에는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2017. 11. 1. 재해발생 이후 우측 상완골 골절의 불유합 및 지연유합으로 인해 4차례의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골 생성 촉진을 위해 투여한 골대사제제인 포스테오주는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요양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에 따르면,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어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법령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의 경우 2017. 11. 1. 재해발생 이후 우측 상완골 골절의 불유합 및 지연유합으로 인해 4차례의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골 생성 촉진을 위해 투여한 골대사제제인 포스테오주는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요양비로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상병 상태상 포스테오주 약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Ⅵ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

1. 평균임금
2. 휴업급여

1

평균임금

1 » 청구인은 당초 지급받기로 한 일당은 18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사고 발생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도와주는 조공 업무를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최초 요양 승인 당시에도 일당이 13만원이었다고 인정하는 관련 서류에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8년도 및 그 이전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 내역은 확인되나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에서 증명하는 경력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급받기로 한 일당이 18만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561호
- **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20. 4.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손가락 신전건 손상'을 승인받아 2020. 9. 19.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을 결정받은 자로, 일당 130,000원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재해 당시 일당이 180,000원임을 주장하며 2020. 7. 6.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채용 당일 일당 18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다가 다쳤으므로 평균임금을 일당 180,000원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설현장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건설근로자공제조합 경력증명)가 제출되지 않는 점, 재해 당시 함께 근로한 동료근로자는 청구인의 직종 및 일당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을 고용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을 해당 사업장에 조공으로 채용하여 일당 130,000원임을 주장하는 점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평균임금은 재해 당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타 현장에서 기공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재해 당시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함"이라는 조사결과에 따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당 180,000원으로 사업주와 구두 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나, 출근 첫 날 재해를 입었기에 실제 일급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청구인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 동료 근로자들 역시 일당 18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년 이상의 건설 현장 근로 경력이 있는 숙련공으로 잡부로 취급되어 13만원의 일당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에 따르면 '철공' 직종 노임단가 또한 192,968원이므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일당 18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및 심사청구 이유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평균임금정정신청서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사본

4)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청구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조사복명서 사본

6) 목격자 진술서 사본

7) 보험가입자의견서 및 재해사실 확인서 사본

8)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연대각서 사본

9) 동료근로자 등 유선통화복명서 사본

10) 청구인 4대보험 취득이력 사본

11) 청구인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사본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3)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의 이 건 재해 관련 요양 승인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장명: ㈜○○(하도급 사업장: ○○산업)

나) 공사현장명: ○○ □□물류센터 4층 물류장비 및 제반시설공사

다) 채용일자: 2020. 4. 14.

라) 재해경위: 2020. 4. 14. 10시경 □□ ○○ 4층 철거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커팅에 방해가 되는 주변 전선을 치우다 그라인더에 손가락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함.

마) 요양 승인기간: 2020. 4. 14. ~ 2020. 9. 19.

바)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2)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산정방법: 일당 13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 적용

나) 최초평균임금: 94,900원

다) 원처분기관은 보험가입자 의견서, 재해사실확인서,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연대각서 등을 통해 확인된 임금 일당 130,000원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최초 평균임금을 2020. 6. 19. 산정함.

3)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 및 정정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주요 내용(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가) 보험가입자 의견서(㈜○○)

(1) 채용일자 및 종사상 지위: 2020. 4. 14., 일용

(2) 임금: 일급 130,000원

(3) 재해발생일: 2020. 4. 14.(근로제공 초일), 재해발생 이후 근무이력 없음

나) 재해사실확인서(하도급 사업장: ○○산업, 사업주: 조○○)

(1) 채용일자 및 담당업무: 2020. 4. 14., 철거작업 도와주는 일

(2) 임금: 일급 130,000원(근무시간 8시간)

(3) 재해발생내용: 2020. 4. 14. 오전 안산 ○○ 현장에서 철거작업 시작 중 그라인더 작업을 시작하다가 바로 손을 다침. 본인 부주의로 안전하게 그라인딩을 하지 못하고 바로 손을 다쳤고, 철거작업을 하러 온 사람이 그라인더 작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4)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여부: 2020. 4. 23. 청구인에게 2,000,000원을 계좌입금 하였고, 배상금 지급 당시 치료비 1,252,890원으로 안내 받았으며 치료비 이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이유는 당장 일을 못하였으니 돈 쓸 일이 많을 것 같아 조금 여유 있게 입금하였음.

다) 손해배상 지급에 대한 연대각서(청구인 및 하도급 사업장 ○○산업)

(1) 채용일자: 2020. 4. 14.

(2) 근로계약 내용: 일용, 일급 13만원, 근로시간 8시간

(3) 배상금: 지급액 2,000,000원, 병원비 및 기타 명목으로 계좌이체

라) 유선통화복명서(2020. 8. 3.)

(1) 하도급사업장 ○○산업 서○○이사

- 청구인은 일당 13만원 잡부이고, 일하러 온 날 안전교육 마치고 5분도 안되어 그라인더 작업하다가 병원에 갔다고 전해 들었으며, 기공이라면 그라인더 작업할 때 그렇게 허술할 수가 없었을 것으로 기공이 아니고 보통인부로 고용하였음.

- 청구인은 원래 기공이었으며, 재해발생 현장에서 기공으로 일을 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공으로 불러서 사용한 것이 명확하다는 진술임.

(2) 동료근로자 양○○

- 본인은 재해발생 현장에서 4. 14.부터 18일간 근무했고, 일당 18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함께 일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기공인지, 조공인지, 일당이 얼마인지는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잘 얘기를 하지 않아 모름.

(3) 동료근로자 김○○

- 재해발생 현장에는 오야지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가게 되었고, 한국사람 7명, 외국인 몇 명이 있었으며, 한국 사람은 기공, 외국인은 조공으로 생각했으며 각자 연락을 받아 현장에 모이므로 누가, 몇 명이 오는지 모름.

- 본인은 동 현장에서 그라인더 해체작업을 했고, 일당 18만원을 받았음.

- 청구인이 기공인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고용한 사람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며, 조공에게는 그라인더 작업을 안 시키므로 그라인더 작업자들이 기공이고, 자격증 여부를 떠나 경력, 경력보다는 실력으로 기공여부 판단함.

마) 조사결과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의견

❍ 청구인의 근무이력 등을 검토한 결과,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고용보험 신고 자료 외에는 없고, 고용보험 신고 자료의 경우 고용 신고 일수를 회사에서 짧게 신고하면서 일당이 올라가는 변수가 있어 신뢰하기가 어려우므로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신고된 경력증명자료로 경력 및 인건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경우 신고 자료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음.

❍ 재해발생 현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일당이 얼마인지, 직종이 기공인지, 조공인지는 알 수 없다는 진술임.

❍ 보험가입자 의견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일당 13만원의 조공으로 고용한 것이며, 이 건 재해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병원비 1,252,890원, 기타 747,110원으로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청구인이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기공으로 일당 18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그 외 건설 현장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며, 청구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청구인을 조공으로 고용하여 철거 보조작업 중 재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임. 또한 청구인의 평균임금은 사고 당시 수행하던 업무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바, 타 현장에서 기공으로 근무했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재해발생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인건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함.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정의)제2호

나.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20. 4. 1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 받은 자로서, 당초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을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근로자로서 일당을 13만원으로 인정하고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사실이 확인됨. 청구인은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 신청 관련으로 당초 본인이 지급받기로 한 일당은 18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사고 발생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도와주는 조공 업무를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최초 요양 승인 당시에도 청구인이 일당이 13만원이었다고 인정하는 관련 서류에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2018년도 및 그 이전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 내역은 확인되나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에서 증명하는 경력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급받기로 한 일당이 18만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등 처분은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이하 "통상근로계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청구인은 일당 180,000원으로 사업주와 구두 계약 후 업무수행중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일당 18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 신청 관련으로 당초 본인이 지급받기로 한 일당은 18만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사고 발생 현장에서 철거작업을 도와주는 조공 업무를 위해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최초 요양 승인 당시에도 청구인이 일당이 13만원이었다고 인정하는 관련 서류에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2018년도 및 그 이전의 고용보험 일용근로신고 내역은 확인되나 건설근로자 공제회 등에서 증명하는 경력자료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지급받기로 한 일당이 18만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등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진단일(2015. 7. 21.) 이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은 있으나, 2014. 12. 23. ~ 2015. 1. 12. 기간 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2015. 2. 4.부터 다시 휴직한 것으로, 2015. 1. 13. ~ 2015. 2. 3.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15. 2. 4.로 봄이 상당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4. 11. 4. ~ 2015. 2. 3. 기간 청구인의 임금자료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160,039원34전)을 산정하고 이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179,063원49전)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179,063원49전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9635호
- **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제철소 근무기간 중 유기용제 취급 작업을 수행함'이라는 재해 경위로 2015. 7. 21. 상병명 "전신성 경화증 관련 간질성 폐질환 및 폐이식"을 진단 받아 2019. 9. 25.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최초 평균임금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이 178,829원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2019. 12. 16.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15. 2. 4. 봄이 상당하여 해당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높은 금원을 청구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나. 원처분기관은 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2015. 2. 4.로 하여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160,039원34전)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179,063원49전)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인 179,063원49전으로 평균임금 정정 후 차액 보험급여 206,93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한 평균(통상)임금이 유리하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 바, 청구인은 고용노동부고시 제5조의 제2호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상 소득 입증자료를 근거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소득금액증명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한 평균임금은 227,855원95전, 과세대상 소득액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214,588원29전이다.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제3차 휴직 이전의 근무기간은 2015. 1. 13. ~ 2015. 2. 3.의 21일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휴직기간 역시 2014. 12. 23. ~ 2015. 1. 12.의 21일에 불과하며, 2015. 1. 13. ~ 2015. 2. 3. 근무기간에 대한 정확한 평균임금의 구분과 산정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탓에, 제2차 휴직기간의 초일인 2014. 12. 23.을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간주하여야 한다.

원처분기관에서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의하려면, 폐업상태 등과 같이 청구인의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의 임금 관련 자료가 확보 불가 등과 같은 경우여야만 하는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의 법리해석을 오해하여 일방적으로 산재보험법 특례임금을 적용한 점, 청구인의 경우 정확한 임금 관련 자료가 불가하다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5조의 2호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법상 소득 입증자료를 근거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점, 일부 정확치 못한 자료가 있더라도 그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여타 방법에 의해 산정된 평균임금과 비교 우위를 선택해야 하는 점,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한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에 비해 유리하다면 우선 적용해야 하는 점, 청구인의 회사가 존속하므로 청구인과 동일 직종 및 직급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수준에 관한 자료의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바, 차선책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점, 통상임금은 산정 대상기간의 임금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최초 평균임금 정정 재산정 처분은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보험급여 결정통지서 사본

4)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 사본

5) 평균임금 적용 내역(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6) 심사결정서(2020-2937) 사본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심사청구 제척기한에 대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최초 평균임금을 179,063원49전으로 재산정한 후 2020. 7. 9. 휴업급여 차액분 206,9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한 날로부터 심사청구일까지 90일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의 최초 평균임금 재산정 금액 및 산정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2020. 7. 24.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하였고, 원처분기관은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최초 평균임금 재산정 금액 및 산정내역을 2020. 7. 28.자로 송부하여 청구인은 2020. 7. 3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처분

내용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 상 그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최초 평균임금 재산정 금액 및 산정내역을 통지받은 2020. 7. 31.을 제척기한 기산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2) 원처분기관이 산정한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진단일(2015. 7. 21.) 이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2014. 12. 23. ~ 2015. 7. 20.)이 있어,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2014. 12. 23.

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139,492원69전

-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①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2014. 9. 23. ~ 2014. 12. 22.)이고, ② 상여금 등의 수당은 이전 1년(2014. 1. ~ 2014. 12)이다.

- 근거자료: 사업장이 제출한 급여 자료 및 상여금·수당 지급내역

나) 산재보험법상 직업병 특례산정 임금: 178,829원

-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의 기간은 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2013. 7. ~ 2014. 6.)이 된다.

- 근거자료: 해당 기간 사업체 노동력 조사 보고서를 인용

다) 적용 평균임금: 178,829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은 139,492원69전, 산재보험범에 따른 직업병 특례 산정 평균임금은 178,829원00, 둘 중 높은 금액인 직업병 특례 산정 평균임금(178,829원00전)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함

3) 이 사건 이전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2020 심사결정 제2937호)의 주요 청구취지 및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취지: 청구인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의 전일로부터 이전 1년간의 기간 중 지급된 임금자료 등을 확보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근거로 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 214,585원35원에서 최고 227,852원83전까지 산출되므로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차액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장임

나) 심사결정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산재보험법 상 보험급여액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년간의 총소득 또는 과세소득을 기준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상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이 사건 업무상 질병 진단일인 2015. 7. 21. 이전 기간 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이 있어 이를 제외하고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2014. 12. 23.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14. 12. 23. ~ 2015. 1. 12. 기간 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다시 2015. 2. 4.부터 휴직하였으므로 2015. 1. 13. ~ 2015. 2. 3.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으로 볼 수 없고 이에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15. 2. 4.로 봄이 상당하여 해당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높은 금원을 청구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함이 타당함

4) 심사결정에 따른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및 차액분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평균임금 정정내역: 2015. 2. 4.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일로 하여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160,039원34전)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179,063원49전)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인 179,063원49전을 청구인의 최초 평균임으로 정정하고 보험급여 차액 206,930원을 지급함

-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산정내역

• 청구인 병가휴직 기간은 ① 2002. 9. 28. ~ 2003. 11. 23. ② 2014. 12. 23. ~ 2015. 1. 12. ③ 2015. 2. 4. ~ 2015. 11. 3.

• 원처분기관은 사업장으로부터 2014. 11. 4. ~ 2015. 2. 3.기간의 임금자료를 요청하여, 회신 받은 자료를 근거로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재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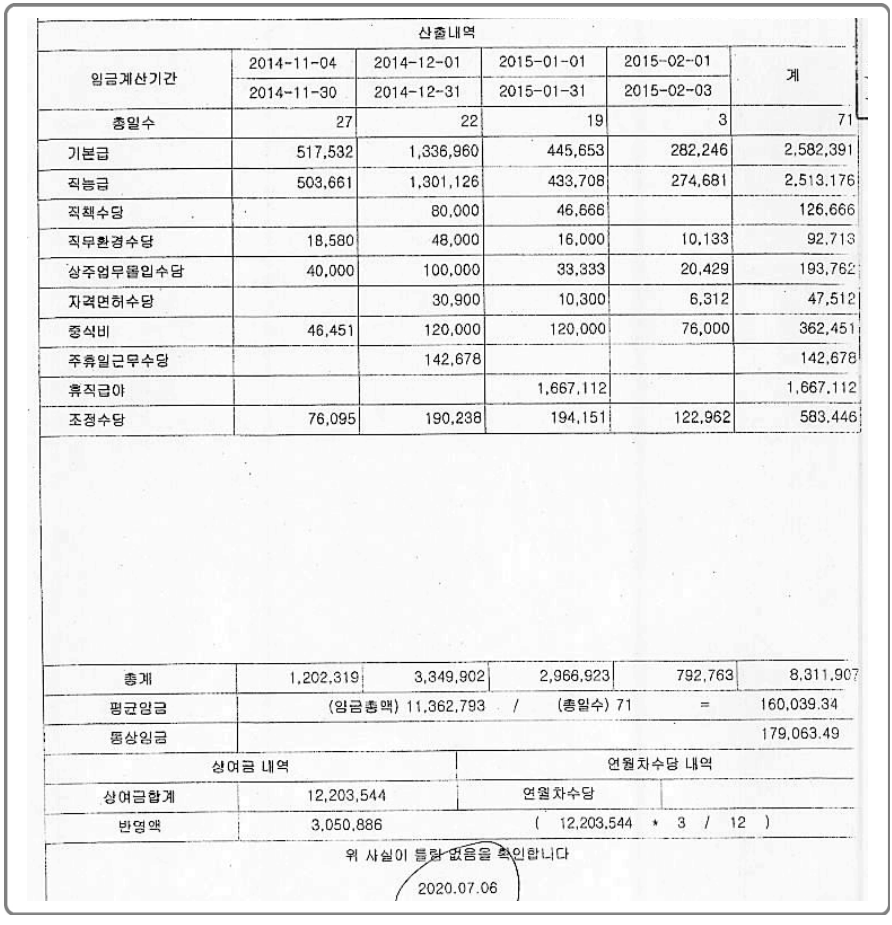

산출내역

임금계산기간	2014-11-04 2014-11-30	2014-12-01 2014-12-31	2015-01-01 2015-01-31	2015-02-01 2015-02-03	계
총일수	27	22	19	3	71
기본급	517,532	1,336,960	445,653	282,246	2,582,391
직능급	503,661	1,301,126	433,708	274,681	2,513,176
직책수당		80,000	46,666		126,666
직무환경수당	18,580	48,000	16,000	10,133	92,713
상주업무물입수당	40,000	100,000	33,333	20,429	193,762
자격면허수당		30,900	10,300	6,312	47,512
중식비	46,451	120,000	120,000	76,000	362,451
주휴일근무수당		142,678			142,678
휴직급야			1,667,112		1,667,112
조정수당	76,095	190,238	194,151	122,962	583,446

총계	1,202,319	3,349,902	2,966,923	792,763	8,311,907
평균임금	(임금총액) 11,362,793 / (총일수) 71 = 160,039.34				
통상임금					179,063.49

상여금 내역		연월차수당 내역	
상여금합계	12,203,544	연월차수당	
반영액	3,050,886	(12,203,544 * 3 / 12)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07.06

- 산재보험법 특례임금 산정내역: 2015. 2. 4.기준 전전분기 말일부터 이전 1년간 (2013. 10. ~ 2014. 9.)의 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 통계자료 활용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2호

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라.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제6항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사.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제2007-47호, 제2012-111호, 제2015-77호)

아.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제2013-12호)

자. 근로복지공단『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 실제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요령(보험급여관리부-6389, 2019. 12. 31.』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경우 진단일(2015. 7. 21.) 이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이 있으나, 2014. 12. 23. ~ 2015. 1. 12. 기간 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2015. 2. 4.부터 다시 휴직한 것으로, 2015. 1. 13. ~ 2015. 2. 3.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15. 2. 4.로 봄이 상당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4. 11. 4. ~ 2015. 2. 3. 기간 청구인의 임금자료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160,039원34전)을 산정하고 이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179,063원49전)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179,063원49전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고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고시에서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같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평균임금을 소득세법상 소득 입증자료를 근거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의 경우 진단일(2015. 7. 21.) 이전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병가기간이 있으나, 2014. 12. 23. ~ 2015. 1. 12. 기간 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하였다가 2015. 2. 4.부터 다시 휴직한 것으로, 2015. 1. 13. ~ 2015. 2. 3.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2015. 2. 4.로 봄이 상당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2014. 11. 4. ~ 2015. 2. 3. 기간 청구인의 임금자료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160,039원34전)을 산정하고 이를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179,063원49전)과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인 179,063원49전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ㅇㅇ인력을 통해 ㈜ㅇㅇ산업이 시공한 '20**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 맨홀 정비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ㅇㅇ인력으로부터 사전에 일당 210,000원으로 안내받은 문자 내용이 확인되고, 협력업체 ㅇㅇㅇㅇ(주)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노임 단가(야간)는 210,000원이며, ㅇㅇ인력 소개수수료 21,000원은 ㅇㅇㅇㅇ(주)측에서 ㅇㅇ인력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개수수료 공제 전 금액인 21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3183호
- **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2. 5.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11.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을 승인받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평균임금 137,970원)를 지급받은 자로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휴업급여) 차액을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당(210,000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사업주가 제출한 일용노무비명세서 등 자료상 청구인의 일당은 189,000원으로, 평균임금은 137,970으로 확인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야간작업 당시 일당 210,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사업주로부터 인력사무소(○○) 소개비 21,000원을 공제한 일당 189,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소개비 공제 전 금액(210,000원)을 일당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한 후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사업주((주)□□) 의견서 사본

4)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5) △△(주) 확인서 사본

6) 근로내역 및 노무비 수령 확인서(○○용) 사본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주)□□이 시공한 '2019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 맨홀 정비공사(연간단가)-○○'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9. 11. 26. 03:20경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을 승인받아 2020. 5. 4.까지 요양하였다.

2)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평균임금: 137,970.00원(일당 189,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

- 휴업급여: 15,452,610원(160일분)

3) 이 사건 현장의 보험가입자인 (주)□□이 확인한 청구인의 근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채용일자: 2019. 11. 25.

- 직종: 보통인부(일용)

- 근무시간: 18:00~24:00(04:00)

- 임금: 일당 189,000원

4) (주)□□은 2019. 11. 26. 청구인의 일당에서 세금(2,660원)을 공제한 후, 186,340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 시 ◇◇(현 △△(주))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의 2019. 11. 25. 근로에 대한 노임단가는 210,000원, 공제액은 21,000원(별도 내역 미기재), 지급액은 18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 담당 심사장이 (주)□□에 유선 확인한바, △△(주)는 이 사건 현장에서 (주)□□의 협력업체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6) △△(주)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주)□□과 △△(주)는 신기술협약 관계사임(해당 현장에서 협업함)

- 청구인의 노임(야간) 단가는 210,000원이고, ○○ 수수료는 21,000원임

- 인력 수수료는 △△(주)가 ○○에 지급함

7) 청구인은 산재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구술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에서 연락을 받고 일당이 210,000원이라고 하여 현장에 갔고, ◇◇ 팀장(이○○)의 지휘를 받아 일을 했으며, 일당은 210,000원으로 알고 간 것으로, 일당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았음. 소개수수료 10%는 ○○에서 계좌로 입금받았다고 했음.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2호

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을 통해 이 사건 (주)□□이 시공한 '2019년 관내 포장도로 불량 맨홀 정비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으로부터 사전에 일당 단가 210,000원으로 안내받은 문자 내용이 확인되고, △△(주)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노임 단가(야간)는 210,000원이며, ○○ 소개수수료 21,000원은 △△(주)측에서 ○○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일당은 210,000원이며, 소개수수료 공제 전 금액인 21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는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때 일당이란 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지급받기로 한 일당이 210,000원이므로 마땅히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사전에 일당을 210,000원으로 안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주)가 청구인의 노임이 210,000원이고 수수료 21,000원은 인력소개 업체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일당은 210,000원인 것으로 판단되고, 소개수수료 공제 전 금액인 210,000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현장에서 청구인이 지급받은 일당은 210,000원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

폐암 재발 시점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인의 '폐암'의 최초 진단일은 2011. 7. 13.로 확인되는 점, 고인이 2011년 진단 받은 폐암의 치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관련 고인의 사망과 연관된 폐암은 고인의 주치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의 의학적 소견이 동일하게 기존에 진단된 폐암의 재발로 그 증상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폐암이 확인된 날은 2011. 7. 13.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3540호
- **사 건 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92년부터 약 18년간 버스 정비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7. 13. 폐암이 발병하여 2016. 7월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2018. 12. 27. 폐암이 재발하여 치료 중 2019. 2. 11. 폐암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고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재해일 및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폐암 최초 진단일(2011. 7. 13.)로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83,704원35원으로 산정 후 사망 당시까지 증감한 금액(107,754원10전)을 기초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고인이 폐암 완치 판정 후 원직에 복귀하여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폐암 재발로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일 및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폐암

재발일(2019. 1. 2.)로 적용하라고 주장하며, 원처분기관에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원처분기관은 주치의사 및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 "고인은 2011년 진단된 폐암이 2019년 재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고인의 재해일 및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폐암 최초 진단일(2011. 7. 13.)이 타당하다며,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2011. 7. 13. 폐암을 진단 받고 2016. 7월말 완치 판정 시까지 재발되지 않은 점, 완치 판정 후 원직에 복귀하여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2019. 1월 타부위에 폐암이 발생되어 사망한 점, 주치의사 및 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을 보더라도 고인이 2016. 7월말 폐암 완치 판정 이후 재발되었거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최근 재발 진단이 최초 진단과 시간적 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재해일을 폐암 재발일(2019. 1. 2.)로 해야 재발 이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미지급보험급여도 청구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해일 및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2019. 1. 2.로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135,570원65전으로 정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고인의 재해일 및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폐암 진단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 사본

5) 최초평균임금 산정 자료 사본

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관련 문서 사본

7) 주치의사 소견조회 회신 사본

8) 의무기록지 사본

9)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 사본

1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 사본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고인은 2003. 1. 13. ~ 2019. 2. 12. ○○운수(주)에서 시내버스 정비사로 근무하였다.

2) 고인은 2011. 7. 13. 진료 및 검사를 시작으로 2011. 7. 20. 조직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폐암을 진단받고, 2011. 7. 27. '흉강경하 우하엽 폐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이후 6개월에 1회 정도 정기검진을 받다가, 수술 후 5년 지난 시점인 2016. 7월말 완치 판정을 받았다.

3) 이후 고인은 2018. 12. 27. 진료 및 검사를 시작으로 폐암이 재발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9. 1. 14. '폐암 쐐기 절제술'을 받았으나, 2019. 2. 11. '직접사인 패혈증, 선행사인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4) 이에 고인의 처인 청구인은 2019. 4. 9.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5) 원처분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11년 진단된 고인의 폐암은 업무수행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2019년 재발된 폐암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판정 결과에 따라 2020. 3. 4.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면서, 재해일 및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폐암 최초 진단일(2011. 7. 13., 최초 진료 시작)로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83,704원35원으로 산정 후 이를 사망 당시까지 증감한 금액 107,754원10전을 기초로 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6) 한편,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게 위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고인이 사망하기 전 발생한 요양급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안내하였다.

7) 청구인은 고인이 폐암 완치 판정 후 원직에 복귀하여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폐암이 재발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일 및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폐암 재발일(2019. 1. 2.)로 적용하라고 주장하며, 2020. 3. 19. 이 사건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8) 원처분기관은 주치의사 및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 “고인은 2011년 진단된 폐암이 2019년 재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고인의 재해일 및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폐암 최초 진단일(2011. 7. 13.)이 타당하다며, 2020. 3. 26. 청구인에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대학교병원)

1) 사망진단서(2019. 2. 11.)

- 발병일시: 2019. 1. 2.
- 사망일시: 2019. 2. 11.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폐혈증/ (나) (가)의 원인: 폐암

2) 소견조회 회신(2019. 11. 7.)

- 2011. 7. 20. 조직검사 시행 후 폐암 진단되어 2011. 7. 27. 흉강경하 우하엽 폐절제술 시행함.

- 수술 후 5년이 지난 시점인 2016. 7월말 완치 판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때까지는 재발이 없었음.

- 폐에서 재발된 것이 아니고 우측 7번째 늑골 혹은 늑막에 생긴 것으로 재발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발소견에 대한 근거: 병리소견이 2011년 수술당시 세포 형태가 2019년 조직과 비슷한 소견임.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대한 자문 회신(2019. 11. 7.)

- 1992년부터 버스 정비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고인이 정비했던 차량은 그 이전에 제작되었던 차량일 것이므로 석면함유 부품이 사용된 차량을 정비하였을 것이고, 디젤엔진배출물질 저감 장치가 장착되기 전 버스에서는 디젤엔진배출물질 수준 또한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국내에서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은 2007년에서야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석면과 디젤엔진배출물질은 폐암 발암물질로,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하다.

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결과

- 고인의 의무기록 및 조직검사 등을 검토한 결과, 2019년 1월 발생한 고인의 폐암은 2011년 진단된 폐암의 재발로 판단되고, 이는 이전 수술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고인은 ○○운수(주)에서 16년 1개월간 시내버스 차량점검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였고, 과거에도 10년 이상 운수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고인은 차량 정비 작업 중 발암물질인 차량 브레이크의 석면과 디젤연소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2011년 진단된 고인의 폐암은 업무수행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2019년 재발된 폐암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조(정의) 제2호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라.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제6항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제3항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인은 업무 수행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고인의 '폐암'의 최초 진단일은 2011. 7. 13.로 확인되는 점, 고인이 2011년 진단 받은 폐암의 치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관련 고인의 사망과 연관된 폐암은 고인의 주치의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의 의학적 소견이 동일하게 기존에 진단된 폐암의 재발로 그 증상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폐암이 확인된 날은 2011. 7. 13.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고인의 사망 당시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등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고, 다만 그 직업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재해일 및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근 폐암을 다시 진단받은 2019. 1. 2.로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고인은 업무 수행 중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여 업무상 질병이 인정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고인의 '폐암'의 최초 진단일은 2011. 7. 13.로 확인되는 점, 고인이 2011년 진단 받은 폐암의 치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관련 고인의 사망과 연관된 폐암은 고인의 주치의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의 의학적 소견이 동일하게 기존에 진단된 폐암의 재발로 그 증상이 다시 악화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폐암이 확인된 날은 2011. 7. 13.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고인의 사망 당시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처분기관의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등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휴업급여

1 »

청구인은 재해 당시 00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대학생 신분으로, 사범일지를 보면 2020. 5. 8.부터 태권도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주 2~3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재해 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주당 4일 이상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 및 제7조 제3항(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의 수급권자 또는 자녀, 한부모 가장(본인 가장 포함)으로서 학비 또는 가족의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생계형 학생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학업에 복귀한 휴업급여 청구기간(2020. 9. 29. ~ 2020. 11. 4.)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0610호
- **사 건 명**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대학생 신분으로 방학기간 중 태권도 학원(○○태권도)에서 강사로 근무 중 2020. 7.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발목 외측 인대 파열'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20. 11. 4.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휴업급여(청구기간: 2020. 9. 29 ~ 2020. 11. 4.)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대학생 신분으로서 2020. 7. 22.까지 의료기관 입원 후 퇴원하였으며, 방학기간(~ 2020. 8. 31.) 및 코로나로 전면 비대면으로 수업한 2020. 9. 28.까지는 휴업급여를 전액 지급하였으나, 2020. 9. 29부터 2020. 11. 4.까지는 학업에 복귀한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 실제 통원한 4일(2020. 10. 7., 10. 23., 10. 28., 11. 4.)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태권도 학원에서는 2개월 근무하고 3개월째 재해를 당했지만, 그동안 생활비 목적으로 매 학기마다 주 3회, 1주간 15시간 이상,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필요에 따라 주말에도 추가 근무를 하여 온 생계형 학생근로자로서 부상으로 인해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비록 학업에는 복귀하였지만 실기 위주의 태권도 학과 특성 상, 이 사고로 인하여 이동 동선이 매우 짧은 이론수업을 듣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휴업급여청구서 사본

4) 치료확인서(○○병원) 사본

5)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6) 사범일지 사본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재해경위 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요양신청서상 재해경위: 2020. 7. 1. 06:30 태권도장 2관에서 관장님 지시 하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뛰어 돌려차기 발차기 시범을 앞에서 보여주던 중 밑에 바닥이 움푹 파여 있어서 그 부분에 착지하다 발목이 꺾임

나) 요양승인기간: 2020. 7. 2. ~ 2020. 12. 23.(입원 21일, 통원 154일)

다) 요양의료기관: ○○병원

라) 수술내역: 2020. 7. 8. 건 및 인대 성형술(○○병원)

마) 4대보험 가입이력 등

(1) 고용·산재보험: ○○태권도 2020. 6. 5.(취득) ~ 7. 3.(상실)

(2)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 2017. 12. 근무일수 12일, 2018. 1. 근무일수 6일

(3) 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

- ㈜□□: 2017. 12. 근무일수 12일

(4)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사업자등록이력, 특수근로자이력: 해당 없음

바) 휴업급여 청구 및 지급내용 발췌

순번	청구기간	지급기간	비고
6	2020. 9. 29. ~ 2020. 11. 4.	실제 통원한 4일분 지급 (2020. 10. 7., 10. 23., 10. 28., 11. 4.)	이 사건 심사청구 관련
5	2020. 9. 1. ~ 2020. 9. 28.	청구기간 전체 지급	
4	2020. 8. 7. ~ 2020. 8. 31.	청구기간 전체 지급	
3	2020. 7. 23. ~ 2020. 8. 6.	청구기간 전체 지급	
2	2020. 7. 2. ~ 2020. 7. 2.	청구기간 전체 지급	
1	2020. 7. 3. ~ 2020. 7. 22.	청구기간 전체 지급	

2) 청구인의 재학증명서 등 확인 결과

- ○○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3학년 재학(2018. 3. 1. 입학)

- 2020. 9. 1. 개학

3) 치료확인서(○○병원 정형외과, 2020. 11. 4.)

- 병명: 좌측 발목 외측 인대 파열

- 치료기간: 2020. 10. 13. ~ 11. 4.(4일)

- 치료받은 날짜: 2020. 10. 7., 10. 23., 10. 28., 11. 4.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수급권자 또는 자녀 등 해당 여부

- 청구인 유선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음

5) 청구인에 대한 노○○ 관장의 사실확인서(2020. 7. 14.)

- 채용일자: 2020. 5.

- 담당업무: 아이들 품새, 발차기 지도

- 근로시간: 14:00~21:00으로 아르바이트생이라서 매일 근무시간이 다름

- 휴게시간: 매시간 10분(6회), 19:00~19:30(1회)

- 임금: 시급 8,590원

6) 청구인이 제출한 소속 사업장의 사범일지 내역

- 2020. 5. 사범내역(총 55.5h): 5. 8.(5h), 5. 11.(7h), 5. 13.(7h), 5. 15.(5h), 5. 18.(7h), 5. 20.(7h), 5. 22.(5h), 5. 25.(7h), 5. 28.(5.5h)

- 2020. 6. 사범내역(총 63.5h): 6. 1.(7.5h), 6. 5.(5.5h), 6. 12.(5.5h), 6. 15.(7.5h), 6. 17.(7.5h), 6. 19.(5.5h), 6. 22.(7.5h), 6. 24.(7.5h), 6. 26.(5.5h), 6. 29.(4)

7) 산재심사실에서 2020. 12. 10. 12:25 청구인과 유선 통화한 결과 추가로 확인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학기 중에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태권도 학원에서 근무를 하였음
- 2020년에는 5. 8.(1학기 중)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음
- 2020년도 2학기 개학일자는 2020. 9. 1.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전면 비대면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음
-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 및 제7조제3항(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의 수급권자 또는 자녀, 한부모 가장(본인 가장 포함)으로서 학비 또는 가족의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다.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제2012-50호)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 당시 ○○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대학생 신분으로, 사범일지를 보면 2020. 5. 8.부터 태권도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주 2~3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재해 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주당 4일 이상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 및 제7조제3항(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의

수급권자 또는 자녀, 한부모 가장(본인 가장 포함)으로서 학비 또는 가족의 생계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생계형 학생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학업에 복귀한 휴업급여 청구기간(2020. 9. 29. ~ 2020. 11. 4.)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행정지침(제2012-50호)에 따르면, 통원기간 중 학업복귀 기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실 통원일자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되, 생계형 학생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생계형 학생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재해 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주당 4일 이상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를 인정할 수 있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 및 제7조제3항(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의 수급권자 또는 자녀, 한부모 가장(본인 가장 포함)으로서 학비 또는 가족의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근무한 지 2개월 밖에 안 되었지만 다치지 않았다면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근무하기로 했던 점, 항상 주 3회, 1주간 15시간 이상,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재해 당시 ○○대학교 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3학년 재학 중인 대학생 신분으로, 사범일지를 보면 2020. 5. 8.부터 태권도 학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주 2~3일 정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재해 당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주당 4일 이상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 및 제7조제3항(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의 수급권자 또는 자녀, 한부모 가장(본인 가장 포함)으로서 학비 또는 가족의 생계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생계형 학생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에 따라, 학업에 복귀한 휴업급여 청구기간(2020. 9. 29. ~ 2020. 11. 4.)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에 한해 휴업급여를 지급한 원처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청구인은 휴업급여 청구기간 동안 ㅇㅇ산업이라는 사업의 사업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해당 사업은 레미콘차량 운행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실제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업주 지위로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는 재해 당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보험급여로서 2013년도부터 임금근로자로 지속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임금근로자로서의 소득상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과는 별개로서 청구인이 요양 중 근로자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기 청구기간 전부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919호
- **사 건 명**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2. 20.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12.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 원위요골 분쇄골절, 천추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승인받아 요양 중인 자로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휴업급여(청구기간 2020. 1. 17. ~ 2020. 2. 17.)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청구 당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일(총 10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사업자등록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남편이 레미콘 차량을 운영하며, 청구인은 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사업자등록과 무관한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가 다쳐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휴업급여는 실 통원일이 아닌 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사본

4) 휴업급여청구서 사본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6)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9. 12. 20. 새벽 식사하러 가려고 현장에서 정리한 후에 돌아서는데 신발이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찌면서 손으로 짚어서 다친 사고임.'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승인 상병명: 좌 원위요골 분쇄골절, 천추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좌상
- 요양 승인기간: 2019. 12. 20. ~ 2020. 4. 19.(입원 13일, 통원 109일)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운영 관련 원처분기관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번호: ***-**-*****
- 개업일: 2007. 2. 5.
- 대표자: 청구인
- 사업장명: ○○산업(○○레미콘), 사업자등록 상에는 ○○건설건기
- 건설기계 종류: 레미콘 차량
- 사업소득 신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사업소득 신고자: 남편이 청구인의 이름으로 신고
- 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금을 받는 방법: 청구인의 남편 통장
- 사업의 운영 방법(사고 전/후)의 변경 여부: 무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 기간인 2020. 1. 17. ~ 2020. 2. 17.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상기 기간 동안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사업의 사업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해당 사업은 레미콘차량 운행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제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사업주 지위로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는 재해 당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보험급여로서 청구인이 2013년도부터 임금근로자로 지속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고 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임금근로자로서의 소득상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과는 별개로서 청구인이 요양 중 근로자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기 청구기간 전부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인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 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근로자로서 일을 하다 다쳤고, 그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기간 전체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 기간인 2020. 1. 17. ~ 2020. 2. 17.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상기 기간 동안 청구인은 ○○산업이라는 사업의 사업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해당 사업은 레미콘차량 운행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실제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사업주 지위로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상 휴업급여는 재해 당시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보험급여로서 청구인이 2013년도부터 임금근로자로 지속적으로 종사하였음이 고용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고 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임금근로자로서의 소득상실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과는 별개로서 청구인이 요양 중 근로자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상기 청구기간 전부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상병 상태 상 2020. 1. 17. ~ 2020. 2. 17. 청구기간 전부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Ⅶ

장해급여

1. 신경계통기능
2. 얼굴(코)
3. 손

1

신경계통기능

1 » 뇌 영상에서 우측 기저핵부의 상당한 양의 뇌출혈로 인해 뇌손상이 광범위하게 관찰되며, 좌측 편마비 상태는 상지 및 하지의 근력은 Gr3-4 정도로 보이나 상하지 말단부에 상당한 관절구축이 남은 상태로, 특히 발목의 경우 상당히 심한 떨림과 구축이 있어 보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이 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따른 장해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3급제3호으로 해당되어 원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9854호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0. 7. 29.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5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8. 4. 15. 재해로 상병명 '뇌실질내 출혈, 상세불명의 시야결손, 색각결손, 신경인성방광, 기질성 정신장애'를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아 2020. 5. 29.까지 요양 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의 "2020. 4. 14. 뇌 CT상 우측 기저핵부의 뇌출혈 및 뇌 탈출 이후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뇌연화증이 우측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기저핵, 소뇌에 관찰되며, 우측 반구의 전반적인 위축이 관찰됨. 좌측 편마비 상지 grade3(수부 grade1), 하지 grade4(족부 grade1)로 관찰되며,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하지만 장거리 보행은 불가능함. 대뇌손상에 의한 절박성 빈뇨를 호소하며, 후대뇌동맥 뇌경색에 의한 양안의 좌측반맹과 색각의 이상을 호소함. 일상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간헐적으로 요구됨.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 감정조절 장애, 불면, 우울이 관찰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됨."이라는 심사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대리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첫째, 원처분기관을 통해 요양종결일까지 간병비 지원대상의 중증환자였고, 둘째, △△재활병원의 주치의는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자용 소견서를 통해 청구인에 대한 수시간병소견을 이미 제시한 바 있었고, 셋째, 평소 및 요양종결일 MMT 검사자료(좌측 상지 Grade 1-2, 좌측 하지 Grade 1~3)로 증세고정 상태였고, 넷째, □□□□병원 신경외과 수술집도의의 청구인 장해심사에 대한 재해석 및 재평가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고, 다섯째, 평소 및 요양종결시 버그균형척도(BBS) 검사가 18점으로 낙상고위험 환자에 해당되어 휠체어 의존 환자에 해당되는 청구인에 대해 수시간병 대상자가 아닌 지팡이 독립보행이 가능하다 등 놀랄만한 호전된 장해상태로 청구인의 상태를 단정한 원처분기관의 판단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린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5급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5급 결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

4) 장해급여청구서 사본

5) 추가 답변서 사본

6) 진단서 사본

7)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사본

8)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서 사본

9) 진료기록 분석 사본

10) 의무기록 사본

11) 영상의학 자료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3)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청구인은 2004. 4. 30. 입사하여 현재 인사, 노무, 총무, 회계, 영업관리 등 회사 전반적인 관리와 현업 업무를 병행하여 맡고 있는 관리자로 업무 과중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청구인의 업무정도와 회사 특성상 야근이 잦은 날이 많았으며 최근 몇 개월도 지속적인 야근 업무로 피로도가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 4. 15. 09:30경 문경 ○○면 ○○길 ***에서 쓰러져, 같이 있던 이○○가 119 구급차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뇌출혈 진단되어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 확인된다.

2) □□□□병원의 수술기록지상 청구인에 대한 수술일자와 수술명은 다음과 같다.

- 2018. 4. 16. craniectomy & hematoma removal Rt.
- 2018. 4. 18. navigation gulded hematoma aspiration. Rt. BG
- 2018. 6. 14. simple cranioplasty. Rt.

3) 간병료 지급내역

- 2018. 4. 16. ~ 2018. 11. 30.: 2등급 간병료

- 2018. 12. 1. ~ 2020. 5. 29.: 3등급 간병료

4) 원처분기관에서 검토한 청구인의 진료기록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목	날짜	치료경과 및 검사결과
진료기록 (○○병원)	**응급기록**	2018.4.15.	- 좌측편마비, 기면상태, 구음장애 - M/S: Drowsy - Lt Motor U/LEX G1/G3 - 우안이 약간 좌측으로 편위되어 있음. - 혈압강하제를 고용량 사용해도 SBP가 200mmHg 이하로 떨어지지 않음. 악성 고혈압 설명하고 재출혈 위험성 설명함.
진료기록 (□□□□병원)	**응급기록**	2018.4.16.	- M/S; alert - Motor Lt U/LEx G1/G3 - GCS score 15점
	외래기록 (신경외과)	2018.8.28	- 재활치료 진행중
		2018.9.28.	- Motor Lt U/LEx G1/G3
		2018.12.28.	- 성질난다, 스트레스장애, 기억력감소
		2019.2.26.	- 소변,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 - 공격적 변화
	외래기록 (정신건강의학과)	2019.4.23.	- 화가 나면 부인을 때리기도 - 이전에는 없었던 증상임 - 기억력 저하 - insight: partial
		2019.5.28.	- 여전히 잘 못 잔다.
		2019.8.6.	- 예민함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 우울함이 있다. 가스가 엉덩이에 달려있다는 생각 - 신체적 증상에 대한 집착 - 보호자 면담
		2019.10.15.	- 우울감은 다소 호전 - 기복+++, 예민 ++
		2019.12.17.	- 감정기복+ crying+ 예민함+ 단기기억력저하++ - nocturia+, insomnia

구분	항목	날짜	치료경과 및 검사결과
		2020.2.11.	- 기분은 양호한편 - insomnia, irritability+-
		2020.6.3.	- 불면++, irritability++, 식사량 감소 - 아들과는 잘 지내는데, 부인에게 주로 폭력적
		2020.6.24.	- 부인분께 나타나는 폭력성 나타남. - 감정기복, 불면+++(가스배출 못해서 잠을 못 잔다고 호소)
	외래기록 (비뇨의학과)	2019.4.23.	- frequency, urgency - nocturia(3~4회)
		2020.4.14.	- nocturia -〉 desmo 추가 후 약간 줄었다.
△△병원	**경과기록**	2019.6.1. ~2019.6.30	- 휠체어 이동시 낙상 및 미끄럼 주의함. - Lt leg 보조기 착용 후 연습 하고 있음. - Gait disturbance - W/C ambulation
		2019.7.4.	- 집에서의 생활이 힘들다.
		2019.11.4.	- Max assist gait중
		2020.2.14.	- Lt hemiside spasticity+ (night time)
	최근 처방약제	2020.4.14. (비뇨기과)	- 베시케어정 10mg 1T x 90일 - 한미탐스캡슐 0.4mg 1T x 90일 - 데소닉정 0.2mg 1T x 90일
		2020.4.21. (신경외과)	- 노바스크정 1T x 90일 - 리피토정20mg 1T x 90일 - 실로스탄씨알정 200mg 1T x 90일 - 오마코연질캡슐 1T x 90일
		2020.4.21. (정신건강 의학과)	- 자낙스정 0.5mg 1T x 84일 - 데파코트 서방정 250mg 1T x 84일 - 데파코트 서방정 500mg 1T x 84일 - 쿠에타핀정 25mg 1T x 84일 - 쿠에타핀정 50mg 1T x 84일 - 렉사프로정 10mg 1T x 84일

<table>
<tr><th>구분</th><th>항목</th><th>날짜</th><th>치료경과 및 검사결과</th></tr>
<tr><td rowspan="11">검 사</td><td>도수근력 평가 (MMT)</td><td>2018.4.16.~
2020.5.29</td><td>
<table>
<tr><th rowspan="2">구분
날짜</th><th colspan="2">상지</th><th colspan="2">하지</th></tr>
<tr><th>좌</th><th>우</th><th>좌</th><th>우</th></tr>
<tr><td>2018.4.16</td><td>1등급</td><td>5등급</td><td>3등급</td><td>5등급</td></tr>
<tr><td>2018.12.24.</td><td>1~2-등급</td><td>4등급</td><td>1~3-등급</td><td>4등급</td></tr>
<tr><td>2020.5.29.</td><td>1~2-등급</td><td>4등급</td><td>1~3-등급</td><td>4등급</td></tr>
</table>
</td></tr>
<tr><td>Berg's balance scale (BBS)</td><td>2018.12.24.
2020.5.29.</td><td>- 17/56
- 18/56</td></tr>
<tr><td rowspan="2">상지기능 평가</td><td>2019.7.3.</td><td>- Rt: 29/32
- Lt: 7/32</td></tr>
<tr><td>2020.5.29.</td><td>- Rt: 29/32
- Lt: 5/32</td></tr>
<tr><td rowspan="2">일상생활동작평가</td><td>2019.1.14.
2019.6.12.
2019.12.12.
2020.5.29.</td><td>- 60/100
- 50/100
- 45/90
- 54/100</td></tr>
<tr><td colspan="2">※ walking(평평한 실내에서 최대 20m) & stair climbing 항목에서 care-giver의 moderate assist하에 수행가능하나 낙상에 대해 크게 불안감 호소하며 수행시 endurance 저하되어 힘들어 하는 모습 관찰됨.
※ 전반적인 BADL 수행시 care-giver의 moderate assist 요구됨.</td></tr>
<tr><td rowspan="2">검사태도</td><td>2019.5.16</td><td>- 보호자 도움으로 휠체어를 타고 검사실로 입실
- 묻는 말에는 비교적 차분하고 조용하게 대답함.
- 검사는 대체로 협조적이고 성실하게 임함.</td></tr>
<tr><td>2020.6.17.</td><td>- 보호자 동반 하 휠체어에 탑승한 채 입실함.
- 호명하면 눈맞춤이 가능하나 대체로 다른곳을 보고 있음.</td></tr>
<tr><td rowspan="3">K-WAIS -IV</td><td></td><td colspan="5">언어이해 / 지각추론 / 작업기억 / 처리속도 / 전체지능</td></tr>
<tr><td>2019.5.16</td><td>104</td><td>70</td><td>98</td><td>59</td><td>78</td></tr>
<tr><td>2020.6.17.</td><td>106</td><td>68</td><td>98</td><td>50</td><td>76</td></tr>
<tr><td></td><td colspan="5">- 전체지능은 78(경계선 수준)
- 인지적 능력은 이전 검사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td></tr>
<tr><td>주의력 및 집중력</td><td>2019.5.16.</td><td colspan="5">- 청각적 주의력은 평균 수준을 유지함.
- 시각적 주의력은 경계선 수준임.</td></tr>
</table>

구분	항목	날짜	치료경과 및 검사결과
	Rey-kim 기억력 검사	2019.5.16.	- MQ; 70점(경계선수준)
	전두엽 관리기능 검사 (Frontal/ Executive Function)	2019.5.16.	- EFQ: 56(장애수준)
	사고 및 정서평가	2019.5.16.	- 병식이 부족한 듯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임. - 우울감은 상당히 심한 것으로 보고됨. - 뇌손상에 따른 후유장애 증상은 별로 호소하지 않고 누군가가 날 무시하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다소 나타남. -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이나 이는 병식이 부족한 부적절한 상태 - 성격적으로는 몹시 외향적이고 활발하며, 자기주장도 강한편임. 하지만 원래 조용하고 말도 없는 성격이었음.
		2020.6.17.	- 심각한 사고의 왜곡은 관찰되지 않으나 조망의 폭이 협소하며 사고의 생산성 또한 저조한 바, 일상적인 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통합적인 사고 능력 및 조직화 여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 -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힘들 것으로 보임. - 스스로가 경험하는 정서적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 상승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다만, 이전에 비해 심적인 불편감이 경감되었다고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던 바, 감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실제 정서 조절 능력은 저하되어 있어 쉽게 동요되고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전반적 퇴화척도 (GDS)	2019.2.13. 2019.9.18. 2020.5.29	- 3(경미한 인지장애) - 3(경미한 인지장애) - 3(경미한 인지장애)
	간이정신상태검사 (MMSE)	2019.2.13. 2019.9.18. 2020.5.29.	- 26/30 - 27/30 - 28/30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1) 장해진단서(△△병원 재활의학과, 2020. 5. 29.)

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뇌출혈

나) 장해부위: 좌측 편마비

다) 장해상태

- 도수 근력 검사상 좌측 상지 grade 2, 좌측 하지 고관절 grade 3, 족관절 grade1
- 관절가동범위 검사상 좌측 견관절 굴곡 120도, 외전 90도, 좌측 족관절 배굴 10도로 관절 구축 상태임.
- 수정바델지수가 54점으로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 수행에 중등도 이상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임.

라)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마) 지체장해용 소견서

마 비	원인부위	**뇌성**, 척수성, 말초신경성, 근(육)성, 기타							
	종 류	지각마비, **운동마비**							
	반 사	좌				우			
		상 지	하 지	바빈스키 반사	기타 병적 반사	상 지	하 지	바빈스키 반사	기타 병적 반사
		항진	항진	–	호프만 사인(+)	정상	정상	–	–
	기 타	배변, 배뇨장해: **유**(수의적·**불수의적** 조절), 무							

	보조기 사용상황 : **항상**, 필요시, 필요 없음	사용 보조기 종류 : 휠체어
일상 동작의 장해정도	잡기 (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 좌: (×) 우: (○) 쥐기 (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좌: (×) 우: (○) 수건을 짜기: (×) 끈을 매기: (×)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좌: (×) 우: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좌: (×) 우: (○) 바지의 앞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 좌: (×) 우: (○)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 우: (○) 상의의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 (×)	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 일어서기: (×) 걷기: (×) 계단오르기: (×) 계단내려가기: (×) 한쪽발로 서기 좌: (×) 우: (△) ※ 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는 ○ - 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는 △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는 ×

2) 장해진단서(□□□□병원 비뇨의학과, 2020. 6. 9.)

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신경인성 방광

나) 장해부위: 방광

다) 장해상태: 전립선 문제는 없으나 방광의 과민성으로 절박성 요실금에 대해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함.

라)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3) 장해진단서(□□□□병원 안과, 2020. 6. 9.)

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두 개내 출혈, 우측 기저핵(동정맥기형 파열)로 인한 시야이상

나) 장해부위: 양안

다) 장해상태: 환자분 진술상 TV 보다보면 색상이 뚜렷한 것만 잘 보이고, 옆에 있는 약한 색상 글자 등은 안 보인다고 하며 현재 안과적 검사상 명확한 시야결손 및 색각이상 소견이 보여 악화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기적 외래진료 통해 경과 관찰을 요함.

라)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4) 장해진단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20. 6. 24.)

가)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기질성 정신 장애

나) 장해부위: 두부(전신)

다) 장해상태: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 및 우울, 불안, 불면, 충동성, 감정기복, 예민성, 폭력적 행동, 사회직업적 기능의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

라) 장해상태가 동통 등 신경증상인 경우 영구장해 여부에 대한 소견: 영구

5) 진단서(□□□□병원, 2020. 10. 13.)

- 상환 기저질환 없이 업무 도중 발생한 뇌실질내 출혈로 본과에서 개두술 및 뇌혈종 제거술 시행함. 발생후 타병원에서 지속적인 재활 치료 시행중인 상태임

- 산재 장애진단과 관련한 평가에 2020. 8. 14.에 장애진단 작성 기관에서 시행한 운동기능 검사 결과에서 Grade Ⅰ~Ⅲ의 좌측 편마비 및 독립 보행 불가인데 휠체어를 타인이 밀어주고 있는 상태임. (2020. 5. 29. 해당 기관 내용과 차이 없음)

- 작성 내용과 판정 소견상에서 GrⅣ와 지팡이로 독립보행 결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해 재해석 및 재평가 요소가 여겨짐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 자문의1(비뇨의학과): 상기환자는 현재 약물치료 하에서 자가배뇨 가능한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향후 합병증 예방관리를 통한 약물복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자문의2(안과): 두 눈에 모두 반맹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0105 합병증 예방관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20. 7. 14.)

- 심사위원1: 2020. 4. 14. 뇌CT상 우측 기저핵부의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을 보임. 뇌탈출이후 발생한 양측 (우측이 심함) 후대뇌동맥영역의 뇌경색 및 우측 소뇌 뇌경색을

보임. 좌측 편마비 상지G3(수부G1) 하지G4(족부G1)를 보임.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은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은 어려움, 대뇌손상에 의한 절박성빈뇨감을 호소함. 후대뇌동맥 뇌경색에 의한 시야결손 및 색각이상을 보임. 일상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간헐적으로 요구됨. 약간의 인지기능의 저하, 감정조절의 어려움, 불면, 우울 등을 보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료됨.

- 심사위원2: 2020. 4. 14. Brain CT상 우측 기저핵부에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과 뇌탈출 이후 발생한 양측(우측이 심함)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 및 우측 소뇌 뇌경색이 보임. 좌측 편마비 상지 G3(수부 1) 하지 G4(족부1) 로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은 어려운 상태임. 대뇌손상에 의한 절박성 빈뇨감을 호소하며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에 의한 양안의 좌측부위 반맹과 색각의 이상을 호소함. 일상생활동작의 타인의 도움이 간헐적으로 요구됨. 약간의 인지기능의 저하, 감정조절의 어려움. 불면, 우울을 호소하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3: 2020. 4. 14. 뇌CT상 우측 기저핵부의 뇌출혈에 의한 뇌연화증과 뇌탈출 이후 발생한 양측(우측이 심함) 후대뇌동맥 영역의 뇌경색 및 우측 소뇌 뇌경색 소견. 좌측 상지G3(수부 G1), 하지 G4(족부G1). 지팡이 보행 가능하나 장거리는 어려움. 대뇌손상으로 인해 절박성 빈뇨감 호소. 후대뇌동맥 뇌경색에 의한 양안의 좌측 부위 반맹과 색각의 이상을 호소함. 일상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간헐적으로 요구됨. 경한 인지기능저하, 불면, 우울감 호소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 심사위원4: 2020. 4. 14. 뇌 CT상 우측 기저핵부의 뇌출혈 및 뇌탈출이후 발생한 뇌경색에 의한 뇌연화증이 우측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 기저핵, 소뇌에 관찰되며, 우측반구의 전반적인 위축이 관찰됨. 좌측 편마비 상지 grade 3(수부 grade 1), 하지 grade 4(족부 grade 1)로 관찰되며, 지팡이를 이용한 보행이 가능하지만 장거리 보행은 불가능함. 대뇌손상에 의한 절박성 빈뇨를 호소하며, 후대뇌동맥 뇌경색에 의한 양안의 좌측 반맹과 색각의 이상을 호소함. 일상생활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간헐적으로 요구됨. 약간의 인지기능 저하, 감정조절 장애, 불면, 우울이 관찰됨.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됨.

- 심사위원5: 두부CT (2020. 4. 14.)에서 우측 기저핵부의 뇌출혈 및 뇌탈출로 인한 양측 후대뇌동맥 영역 (우측>좌측)의 뇌경색으로 인한 광범위한 뇌연화증 소견. 좌측 편마비 (좌측 상지 Gr III(좌측 수부 Gr I), 좌측 하지 Gr IV(좌측 족부 Gr I))으로서 지팡이 보행은 가능하나, 장거리 보행은 어려움. 뇌손상에 의한 절박성 빈뇨 및 양안의 좌측 부위 반맹과 색각능의 저하 잔존함. 일상생활동작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기억력 저하, 경도의 인지기능 저하, 성격 변화, 불면, 우울 등의 증상 잔존 상태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1항 별표 6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제1항 별표 4

라.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뇌 영상에서 우측 기저핵부의 상당한 양의 뇌출혈로 인해 뇌손상이 광범위하게 관찰되며, 좌측 편마비 상태는 상지 및 하지의 근력은 Gr3-4 정도로 보이나 상하지 말단부에 상당한 관절구축이 남은 상태로, 특히 발목의 경우 상당히 심한 떨림과 구축이 있어 보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이 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따른 장해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제3호에 해당된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실제 장해 상태에 비해 낮은 등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뇌 영상에서 우측 기저핵부의 상당한 양의 뇌출혈로 인해 뇌손상이 광범위하게 관찰되며, 좌측 편마비 상태는 상지 및 하지의 근력은 Gr3-4 정도로 보이나 상하지 말단부에 상당한 관절구축이 남은 상태로, 특히 발목의 경우 상당히 심한 떨림과 구축이 있어 보행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의 동작이 가능하여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따른 장해정도에는 미치지 않지만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됨.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제3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청구인은 척추 부위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 일반 동통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경근 증상이 남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검사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척추 신경근 장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5433호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3. 11. 진단받은 상병명 '척추강 협착증(제3-4요추간 경도), 척추강 협착증(제4-5요추간 경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아 2019. 11. 30.까지 요양 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회의의 "뚜렷한 신경증상 없음. 일반동통 인정됨"이라는 심의 결과에 따라,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청구인에게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의 결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대리인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장해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제반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검사를 통해서 관련 내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과거 전기자극침 후유증 경험으로 인해 받을 수 없는 근전도검사 미실시를 이유로 상기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1~2012년경 손가락 통증으로 작은 전기자극침 치료를 받았으나, 그 사건 후 손가락 마비 증상이 있었고, 전기자극침의 부작용으로 약 11일 동안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극심한 고통과 불안한 공포에 시달린 사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을 경우 그로 인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 근전도검사를 받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MRI 영상에서 요추3-4-5번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여 신경근이 눌려 들어가 있는 것이 육안으로 명확하게 확인된다. 아울러 청구인은 허리, 왼 엉치 및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이와 같은 장해상태는 주치의사가 작성한 장해진단서에서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근전도검사 없이 MRI 영상 및 장해진단서만 보더라도 척추신경근이 손상되어 적어도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아 신경 증상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충분히 확인된다. 이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제16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제14급 결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

4) 장해급여청구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 소견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6) 장해심사 및 등급판정 관련 사유서 사본

7)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사본

8) 청구인(대리인)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별첨자료 포함) 사본

9) 의무기록 사본

10) 영상의학 자료 사본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청구인은 2019. 3. 11. 진단받은 이 건 상병인 '척추강 협착증(제3-4요추간 경도), 척추강 협착증(제4-5요추간 경도),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서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절차를 거쳐 원처분기관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1) 장해진단서(2019. 12. 19)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2019. 3. 15. ~ 2019. 12. 19.)

❍ 장해 상태: 허리, 왼 엉치 및 허벅지 통증을 호소함

2) 지체장해용 소견서(2019. 12. 19)

❍ 척추의 장해: -

3) 장해진단서(2020. 5. 14.)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약물요법 및 물리치료(2019. 3. 15. ~ 2019. 12. 19.)

❍ 장해 상태: 허리, 왼 엉치 통증 및 좌측 대퇴부 방사통을 호소함

4) 지체장해용 소견서(2020. 5. 14.)

❍ 척추의 장해

- 척추신경근: 근전검사, 특수검사에서 신경 증상 유무-유(MRI검사)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사1(2020. 1. 8.)

제출된 영상 자료상 신경근 압박 소견 관찰되는 바, 근전도검사 시행 후 재판정함이 타당.

2) 자문의사2(2020. 4. 14.)

피재자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근전도검사 등 객관적인 근거는 없음. 승인 상병으로 미루어 국부의 신경 증상이 남아 있는 사람에 해당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2020. 4. 23., 자문의 5인 소견 일치)

1) 자문의사1

환자 진료상 뚜렷한 신경근 증상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순동통 잔존함.

2) 자문의사2

뚜렷한 신경증상 없음. 단순동통 인정.

3) 자문의사3

뚜렷한 신경 증세 없고, 단순 동통 소견 보임.

4) 자문의사4

환자 진료 결과 요추부 동통 이외 호소 소견이 없음. 따라서 단순동통 인정됨.

5) 자문의사5

환자 증상상 뚜렷한 신경근 자극 증상 없음. 일반동통으로 판단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제1항 별표 6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승인상병, 치료경과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척추 부위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 일반 동통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경근 증상이 남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검사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척추 신경근 장해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뿐, 달리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실제 장해 상태에 비해 낮은 등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척추 부위 척추 협착증으로 인해 일반 동통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신경근 증상이 남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검사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척추 신경근 장해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뿐, 달리 이를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건 장해등급 제14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얼굴(코)

1 »

청구인은 안면부와 경부 각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아 있고, 각 부위별 면상반흔의 크기는 안면부 면상반흔 64㎠(8㎝×8㎝), 경부 면상반흔 60㎠(10㎝×6㎝)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외모 중 두부·안면부 및 경부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는 바, 이견이 있는 외모의 흉터장해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9급)으로 청구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025호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9.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몸통의 3도(4도) 화상, 전기화상 10%(얼굴, 양쪽 어깨, 등), 3도(4도)의 언급이 있는 다발부위 화상, 안면과 목 부위의 3도 화상, 상지의 3도 화상(양쪽 어깨), 양안 백내장'을 승인받아 2020. 5. 11.까지 요양 후, 2020. 5. 14.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안면부 반흔 64㎠, 경부 반흔 60㎠이상, 노출면 두 팔 흉터 면적 25%미만, 비노출면 5% 이상이고, 양안 인공수정체 삽입상태"라는 소견에 따라 2020. 6. 26.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9급)과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으로 평가하여 장해등급 조정 8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흉터 반흔에 대하여 "10㎠×10㎠이상이고 장해에 해당된다"라고 했으며 ○○대학교 성형외과 전문의도 "안면부의 흉터 반흔의 길이가 10㎝ 이상이고 경부 반흔은 수장대(8㎠×10㎠) 이상의 착색, 탈색 반흔을 보인다"는 소견이다.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외모 중 두부·안면부 및 경부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흉터가 두부·안면부 및 경부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두부 또는 경부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안면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하거나,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두부 또는 경부의 흉터로 보아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안면부 50㎠ + 경부50㎠ = 100㎠에 해당하므로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경부의 흉터로 보아 장해등급 제7급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흉터장해를 제9급으로 결정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원처분기관의 결정보다 상향 된 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진단서 사본

5) 원처분기관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

6)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7)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서 사본

8) 의무기록지 사본

9) 흉터 사진(청구인)

10) 의학 영상자료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9. 9. 8. 고압선 옆의 나무를 제거하던 중 고압선이 터져 얼굴과 목 전체 화상과 어깨에서 등까지 고압전기가 관통하는 재해로 2020. 5. 11.까지 ○○병원에서 149일간 입원요양, 117일간 통원 요양을 하였다.

2)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정보 조회결과, 이 건 재해로 인한 청구인의 수술 이력(○○병원 시행)은 다음과 같다.

가) 2019. 9. 18. 부분층 피부이식술

나) 2019. 10. 2. 사체피부이식술, 부분층 피부이식술

다) 2019. 10. 18. 피부이식술(STSG-Back, Lt shoulder)

3) 원처분기관이 이 건 장해와 관련하여 사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장해부위	장해상태	장해급호
흉터	안면부 면상반흔 64㎠(8㎝×8㎝)	09-18
	경부 면상반흔 60㎠(10㎝×6㎝),	
	노출면 두팔(25%미만)	14-00
	비노출면(5%이상)	
신경장해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4-10
눈	두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1-01
	최종장해등급	조정 8급

4) 청구인은 2020. 11. 3. 개최된 2020년 제280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회의에 출석하였고, 전문의 위원이 청구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병원 성형외과·정형외과, 2020. 5. 11.)

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전기화상 10%

2) 장해부위: 상지, 좌측어깨, 경부, 안면, 목, 등, 양쪽 팔, 왼쪽 다리

3) 장해상태: 좌측 상지 기능장해(어깨관절), 안면부 피부병변 구축장해, 통증장해, 흉터 부위 소양감 잔존한 상태임

가) 안면부 면상반흔 50㎠(10㎝×5㎝), 경부 면상반흔 60㎠(10㎝×6㎝),

나) 노출면인 우측 상지 1%에 해당하는 면상반흔

다) 비노출면 몸통 후면부 5%에 해당하는 면상반흔, 좌측 무릎 위 다리의 5%에 해당하는 면상반흔.

라) 비노출면 좌측 팔꿈치 위의 1%의 면상반흔

부 위	측정방법	전상방	후방	측상방	내전	내회전	외회전	계	장해등급
	정상범위	150	40	150	30	40	90	500	
좌측 어깨관절		140	40	120	30	40	50	420	기준미달
우측 어깨관절		150	40	150	30	40	80	490	

나. 주치의사 소견(○○병원 안과, 2020. 5. 11.)

1)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안 거짓수정체안

2) 장해부위: 양안

3) 주요치료내용: 상환 양안 백내장으로 2019. 11. 27. 좌안 초음파수정체에 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2019. 11. 29. 우안 초음파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함

4) 장해상태: 상환 2020. 5. 11. 현재 양안 거짓수정체안으로 두 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함, 우안교정시력 0.6, 좌안교정시력 0.8임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

【흉터(화상)장해】

① 안면부 42㎠(6㎝×7㎝), 경부 60㎠(10㎝×6㎝)

② 좌측 상지 노출면의 1% 면상반흔 및 5% 피부변색

③ 비노출면-몸통 후면부 5%의 면상반흔 잔존

④ 비노출면-좌측 팔꿈치위 1%의 면상반흔 잔존

⑤ 좌측 귓바퀴의 소실이 건측(우측)과 비교하여 50% 소실 상태의 소견

【안과장해】

양안 백내장 수술이후 2019. 12. 우안교정시력 0.9, 좌안교정시력 1.0 상태 확인됨. 이후 기록상 악화소견 없어 교정시력은 상기로 판단되며 양안 인공수정체안 삽입 상태임

【정형외과】

부 위	측정방법	전상방	후방	측상방	내전	내회전	외회전	계	장해등급
	정상범위	150	40	150	30	40	90	500	
좌측 어깨관절		150	30	140	20	30	90	460	기준미달
우측 어깨관절		150	40	150	30	40	90	500	

라.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2020. 6. 25.)

1) 심의사유: 면상반흔에 대한 장해측정

2) 심의결과: ① 안면부 64㎠(8㎝×8㎝) ② 경부 60㎠(10㎝×6㎝)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9항

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별표 4

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승인상병, 치료경과 및 의무기록(환부 사진 포함) 등 관련 자료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2019. 9. 8. 전기화상을 입어 2020. 5. 11.까지 요양 후 치료 종결한 상태로, 안면부와 경부 각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아 있고, 각 부위별 면상반흔의 크기는 안면부 면상반흔 64㎠(8㎝×8㎝), 경부 면상반흔 60㎠(10㎝×6㎝)로 확인됨.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외모 중 두부·안면부 및 경부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는 바, 이견이 있는 외모의 흉터 장해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9급)에 해당하며,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안면부에 있는 흉터의 2배를 경부의 흉터로 보아 장해등급 제7급12호 '외모에 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안면부와 경부 각각의 부위에 면상반흔이 남아 있고, 각 부위별 면상반흔의 크기는 안면부 면상반흔 64㎠(8㎝×8㎝), 경부 면상반흔 60㎠(10㎝×6㎝)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거 외모 중 두부·안면부 및 경부 등의 각 부위에 흉터가 남은 경우에는 각 부위별 흉터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는 바, 이견이 있는 외모의 흉터장해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제9급)에 해당하며,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의 안면부 신경장해 및 흉터 장해는 주치의사와 원처분기관 판단이 동일하고,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도 이를 상향할만한 내용은 없으며, 씹는 기능과 후각 장해 등을 주장하나, 씹는 기능 장해는 주치의가 판단한 바 없으며, 후각 장해는 후각기능검사상 후각기능의 저하만 있을 뿐 무후각증 정도는 아니며, 호흡도 기계적 폐쇄 정도는 아니어서 호흡 장해 기준에 미달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0037호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5.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광대뼈 및 상악골의 가타 골절, 폐쇄성(우측),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안와의 골절, 폐쇄성(우측), 볼(내부)의 열린상처(우측),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우측 손목, 우측 골반, 흉곽전벽의 타박상), 외비기형, 비중격 만곡증'을 승인받아 2020. 7. 15.까지 요양한 후 2020. 7. 16.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의 "코의 장해는 기준미달(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심사 소견 및 원처분기관 자문의사의 "우측 안면부 일반동통, 안면부 선상반흔 미달(1×0.5㎝)"이라는 소견에 따라 2020. 10. 19. 청구인에게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결정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2019. 5. 8.부터 2020. 7. 15.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재활 치료를 하다가 우측 광대뼈 함몰이 재건되지 않아 우측 안면부 골절 부위에 티타늄 보형물을 삽입하여 지지를 해놓은 상태이다. 당시 재해 및 보형물 삽입으로 인하여 현재 청구인은 안면부에 극심한 신경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외에 우측 어금니를 포함한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여 씹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후각 역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에 대하여 단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우측 안면부 일반 동통)'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의 씹는 기능과 후각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신경통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계속하여 안면부에 극심함 신경통증을 호소하는 바, 입은 증상으로 보았을 때 신경통증과 관련하여 적어도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안면부에 티타늄 보형물이 삽입되었음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상향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장해급여 청구서 사본

4) 장해진단서 사본

5) 장해등급 결정 통지서 사본

6) 장해급여사정서 사본

7) 주치의 소견서(○○병원) 사본

8) 참고자료 및 의무기록지(○○병원, 2021. 2. 4.)

9)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10)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사본

11) 의학 영상자료

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3)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최초요양신청서상 청구인의 이 건 재해경위는 "2019. 5. 8. 08:20경, 노출 콘크리트 작업현장에서 벽체면 갈아내기 작업 중 높이 1.8M 외부수평비계에서 손이 안 닿는 부분에 작업을 하다가 발이 미끄러져 재해가 발생함."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승인상병: ① 광대뼈 및 상악골의 가타 골절, 폐쇄성(우측), ②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③ 안와의 골절 NOS, 폐쇄성(우측), ④ 볼(내부)의 열린상처(우측), ⑤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우측 손목, 우측 골반, 흉곽전벽의 타박상), ⑥ 외비기형, ⑦ 비중격 만곡증

나) 요양승인기간: 2019. 5. 8. ~ 2020. 9. 17. (입원 69일, 통원 366일)

다) 주요 수술 내역

- 2019. 6. 6. □□대학교병원, 상악골 관혈적 정복술, 상악동사골동 근본수술
- 2019. 7. 30. ○○병원,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비중격 재건술
- 2019. 12. 9. ○○병원, 부정유합된 관골절 골교정술

3)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코(비강) 장해상태 확인을 위하여 ○○병원에 특진을 의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20. 9. 17. 비강통기도 검사 및 비강내시경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초로 2020. 10. 15. 개최된 근로복지공단 ○○지사 통합심사회의에서는 "양측 비강의 완전한 폐쇄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앞서 2020. 12. 31. 보충서면을 제출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로 눈 밑이 상하면서 변형이 되어 얼굴 한쪽은 부서진 뼈가 뭉게져 툭 튀어나왔으며 인공뼈를 넣어 수술한 상태임. 얼굴의 상처로 이빨이 변형되어 잘 씹지도 못하는 상태이고 눈도 침침해 잘 보이지 않으며, 눈을 깜빡할 때마다 아프고 불편함. 얼굴의 안면부 상처 및 씹는 장해에 대해서 장해를 인정하라고 주장함

5) 청구인은 2021. 2. 4. ○○병원 성형외과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및 ○○병원 이비인후과 진단서와 의무기록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장해진단서 (○○병원, 2020. 7. 15. 발행)

1) 신경과(장해부위: 우측 안면)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우측 안면 감각 이상(감각 저하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 시행하였으며, 뇌 자기공명영상에서 증상을 일으킬 만한 병변은 보이지 않으나 우측 안면 부위 수상 후에 발생, 지속되는 신경통 양상의 동통 및 지속되는 두통으로 외상후 증후군으로 판단됨

- 장해상태: 우측 안면 감각 이상(감각 저하 및 통증)

2) 성형외과(장해부위: 우측 관골)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절골술,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2019. 12. 9.), 흉터성형술(2020. 6. 4.)

- 장해상태: 우측 안면 흉터 1cm

3) 이비인후과(장해부위: 코)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 주요 치료내용: 수상으로 인한 외비변형 및 비중격 만곡으로 인하여 외부병원에서 수술 시행하였으나 증상 남아 있어 2019. 7. 30. 전신마취 하 외비교정술 및 비중격 교정술 재수술 시행하였으며, 이전 보다는 호전 되었으나 수술 이후 남아 있는 비중격 만곡 및 외비 사비로 인한 코막힘 증상으로 약물치료 지속 중

- 장해상태: 사비, 비중격 만곡

나. 주치의 소견 조회 회신(○○병원, 이비인후과, 2020. 9. 10.)

1) 산재보험법 기준 “코안의 장해”에 대한 현재 상항

-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코안 통기도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사람에 해당함

2) 기타 소견: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음향 통기도 감사는 시행하지 않았으나 수술 후 시행한 2020. 3. 24. 안면부 CT상 우측 비밸브 부위의 협착이 수술 이후 지속되는 소견 보임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2020. 8. 28.)

우측 안면: 신경 손상에 의한 일반동통, 1×0.5㎝ 선상반흔

라. 근로복지공단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0. 10. 15. 개최)

1) 통합심사 사유: 〈2호-다〉 코(비강)-비호흡

2) 통합심사결과: 코의 장해(기준 미달),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3) 심사결과의견(전문과목: 이비인후과)

(위원 1) 청구인은 재해 후 비중격 교정술 시행 받았으며 이후 비폐색에 대하여 장해보상 신청함. 청구인의 비내시경 검사, 비강 통기도 검사, 비부비동단층 촬영 검사와 KVSS 종합검사에서 21점으로 나타나는 등 비강 통기 소견 보임. 이는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 통기도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를 인정할 수 없음

(위원 2) 우측 비밸브의 협착 가능성이 있으나 비내시경 검사, 비강통기도 검사, 후각검사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 비강의 완전한 폐쇄가 아니므로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위원 3) 비강내시경 검사, 비강통기도 검사에서 양측 비강 폐쇄 소견 없으며, 후각검사에서 저후각증 소견 관찰되어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음

(위원 4) 비강내시경 검사와 비강통기도 검사 상에서 양측 비강의 완전폐쇄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후각검사에서 KVSS TDI 점수 21점 저후 각종 소견이 관찰되어 일상생활에서 구강 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는 정상적으로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코 장해등급 상향 여부임. 청구인은 구술 참석하여 안면부위 손상 장해에 대해 진술하나, 원처분기관 자료상 청구인의 안면부 신경장해 및 흉터 장해는 주치의사와 원처분기관 판단이 동일하고,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도 이를 상향할만한 내용은 없으며, 심사청구 의견서에서 씹는 기능과 후각 장해 등을 주장하나, 씹는 기능 장해는 주치의가 판단한 바 없으며, 후각 장해는 후각기능검사상 후각기능의 저하만 있을 뿐 무후각증 정도는 아니며, 호흡도 기계적 폐쇄 정도는 아니어서 호흡 장해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단임.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정한 안면부 동통 장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상향할 만한 내용은 없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는 장해등급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안면부 장해와 음식물을 씹는 기능 및 후각기능 장해 등을 고려하면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은 부당하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등급을 상향하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구술 참석하여 안면부위 손상 장해에 대해 진술하나, 원처분기관 자료상 청구인의 안면부 신경장해 및 흉터 장해는 주치의사와 원처분기관 판단이 동일하고, 청구인의 의무기록에서도 이를 상향할만한 내용은 없으며, 심사청구 의견서에서 씹는 기능과 후각 장해 등을 주장하나, 씹는 기능 장해는 주치의가 판단한 바 없으며, 후각 장해는 후각기능 검사상 후각기능의 저하만 있을 뿐 무후각증 정도는 아니며, 호흡도 기계적 폐쇄 정도는 아니어서 호흡 장해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단임.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정한 안면부 동통 장해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를 상향할 만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3

손

1 » 좌측 1수지의 상처부위 감염으로 인해 원위지골의 골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골 손실 및 골단축 상태로 좌측 제1수지의 근위지 관절의 운동범위는 20도로 제한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0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원처분을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7803호
- **사 건 명** 장해등급 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0. 8. 3.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제10호로 결정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12.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제1수지 열린상처, 좌측 제1수지 타박상'을 승인받아 2020. 6. 19.까지 요양 후,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 기준미달(중수지절 60도, 근위지절 50도), 일반동통"이라는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4급제10호로 결정·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충분한 치료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수상부위 관절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며 좌측 1수지 근위지절에서 원처분과 주치의 소견이 서로 다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재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장해상태가 원처분기관의 결정보다 상향 된 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장해급여청구서 및 장해진단서 사본

4) 원처분기관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

5) 근로복지공단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사본

6) 의무기록지 사본

7) 의학 영상자료

8)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9)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요양급여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19. 12. 20. 공장내 2층 철판기계에서 일하던 중 철판 2개가 부착되어 나오는 기계에서 1개가 떨어져 나가 빼려다가 좌측 엄지손가락이 협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요 요양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승인상병: 좌측 제1수지 열린상처, 좌측 제1수지 타박상
- 요양기간: 2019. 12. 20. ~ 2020. 6. 19.(통원 183일)
- 수술이력 없음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장해진단서, ○○병원, 2020. 6. 19.)

- 장해상태: 잔존통증 및 운동제한

- 운동장해측정방법: 능동

손가락관절		좌측 제1지	
		굴곡	신전
중수지절	정상	60	0
	청구인	**60**	
근위지절	정상	80	0
	청구인	**25**	**0**
원위지절	정상		
	청구인		

나.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20. 7. 28.)

- 통합심사 결과: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 기준미달(중수지절 60도, 근위지절 50도), 일반동통

- 심사 의견: 연부조직 손상 후 치유되었으나, 연부조직의 유착, 근경직, 섬유화, 석회화 등 변화가 확인되어 일반동통 인정함

- 운동장해측정방법: 능동(강직)

손가락관절		좌측 제1지	
		굴곡	신전
중수지절	정상	60	0
	청구인	**60**	
근위지절	정상	80	0
	청구인	**50**	**0**
원위지절	정상		
	청구인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나.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제1항

다.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1항 별표 6

마.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제9항

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제1항 별표 4

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 및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좌측 1수지의 상처부위 감염으로 인해 원위지골의 골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골 손실 및 골단축 상태로 좌측 제1수지의 근위지 관절의 운동범위는 20도로 제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0호에 해당됨.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10급제10호에 해당된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수상부위 관절 움직임에 상당한 제한이 있으므로 주치의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상향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 검토 및 구술에 참석한 청구인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좌측 1수지의 상처부위 감염으로 인해 원위지골의 골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골 손실 및 골단축 상태로 좌측 제1수지의 근위지 관절의 운동범위는 20도로 제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제10급제10호에 해당됨. 따라서 청구인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장해등급 제10급제10호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처분은 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Ⅷ

진폐

1. 진폐

1

진폐

1 » 장해급여는 청구사유 발생일인 치유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며,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 즉 진폐 진단일을 장해급여 청구사유발생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진폐 진단일자인 1996. 2. 26.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이미 해당 장해급여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기관의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5370호
- **사 건 명** 미지급보험급여(진폐)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고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광업(주) ○○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 이력으로 1996. 2. 26. 진단 받은 '진폐'에 대해 정밀진단 후 진폐심사회의의 "병형 제2형(2/1), 합병증 기흉(px), 심폐기능 경도장해(F1)"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대상자의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7. 2. 5. 사망하였다. 이후 고인의 유족인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요양대상 결정당시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고 진단일(1996. 2. 26.)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한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고인의 평균임금을 진단일 기준이 아닌 장해급여 지급결정 당시의 것으로 적용하라고 주장하며 2019. 12. 2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보험급여(진폐) 차액을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산재보험법상 진폐의 경우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은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 될 당시의 제출된 초진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발급된 날이며, 진폐 진단을 받았을 당시 증상이 고정되는 것으로 보는 상병의 특성상 진폐 진단일을 장해급여 청구사유발생일로 보므로 고인의 경우 제7급 진단일(1996. 2. 26.) 기준 평균

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2020. 3. 12. 청구인에게 미지급보험급여(진폐) 차액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구체적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원처분기관이 장해7급 지급결정을 내린 2018년에 '발생' 하였으므로, 그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이 장해보상일시금 산정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며, 평균임금 증감 규정은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를 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구체적인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장해7급 지급결정시점 까지 증감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보험급여(진폐) 차액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 처리 결과 알림 공문 사본

4) 미지급보험급여(진폐장해급여) 청구서 사본

5) 정밀진단 과거병력 및 분진직력 조회 사본

6) 보험급여원부 사본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자료 상 고인의 분진직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명	직종	분진명	재직기간	직력
○○광업(주)○○광업소	광원	석탄	1973. 2. 1. ~ 1979. 1. 1.	5년 11월

2) 고인은 1995. 4. 18. '진폐'를 진단받고 정밀진단 결과, "병형 2형(2/1), 심폐기능 정상(F0)"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 220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금 8,423,100원)을 지급받은 자로서, 1996. 2. 26. 재진단 받은 '진폐'에 대해 정밀진단 후 진폐심사회의의 "병형 2형(2/1), 합병증 기흉(px), 심폐기능 경도장해(F1)"이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요양대상자의 판정을 받고 요양하던 중 2017. 2. 5. 사망하였다. 이후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유족인 청구인은 2017. 3. 1.부터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8. 5. 29. 고인의 요양판정 당시 '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도장해'에 해당하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하자, 원처분기관은 근로복지공단 지침 「진폐 요양 중 장해급여 소멸시효 적용관련 업무처리 기준(보험급여관리부-759호, 2018. 2. 8.)」에 따라 고인의 요양대상 결정당시 장해등급을 제7급제15호로 결정하고 진단일(1996. 2. 26.) 기준 평균임금(금 59,858원34전)을 적용하여 제7급의 장해보상일수(616일)에서 기 지급된 제11급의 장해보상일수(220일)을 공제한 396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금 23,703,900원)을 산정한 후, 2018. 10. 25.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5호(장해)

나.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다.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장해급여 청구사유발생일인 치유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며,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 즉 진폐 진단일을 장해급여 청구사유발생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고인의 진폐 진단일자인 1996. 2. 26.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청구인은 이미 해당 장해급여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기관의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36조, 제57조에 따르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장해급여는 사유발생일(치유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진폐의 경우는 장해급여 청구 사유발생일은 해당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며,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라 함은 "그 직업병이 보험급여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고인의 제7급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하여 진단일자 기준이 아닌 지급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장해급여 청구사유발생일인 치유일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며, 진폐의 경우 상병 특성상 직업병이 확인된 날 즉 진폐 진단일을 장해급여 청구사유발생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따라서 고인의 진폐 진단일자인 1996. 2. 26. 기준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청구인은 이미 해당 장해급여에 대한 미지급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원처분기관의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보험급여(진폐) 차액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청구인은 2020. 10. 6. 시행한 심폐기능 검사상 노력성폐활량(FVC) 50%, 일초량(FEV1) 43%, 일초율(FEV1/FVC) 56%로 확인되고, 일초량의 경우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인 경우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45%미만(일초율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이라는 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제9호로 상향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0952호
- **사 건 명**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0. 11. 16. 청구인에게 행한 진폐요양급여 등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에 대하여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제9호로 하고, 심폐기능 고도장해에 따른 요양대상자로 결정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탄광에서 근무한 분진이력으로 2015. 1. 7. 상병명 ‘진폐’를 진단받고 정밀진단 결과 “병형 제3형(3/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장해등급 제3급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2020. 10. 6. ‘진폐’를 재진단 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응급) 정밀진단을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0. 10. 6. ~ 2020. 10. 8. ○○의료재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도록 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한 진폐심사회의의 “병형 제4형(4A),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라는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존 장해등급인 제3급제6호의 결정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0. 10. 5. 의료법인 ○○병원에서 진폐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병형은 제4형(4A)이고, 2020. 10. 6. 3회 시행한 심폐기능검사 결과는 고도장해(F3)인 "FVC 50%, FEV_1 43%"로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원처분기관은 심폐기능을 중등도장해(F2)로 착오 판단하여 기존 장해등급인 제3급으로 결정하였다.

나. ○○병원의 폐기능검사 결과지에 따르면 3회 실시한 검사결과는 "FVC 49%~50%, FEV_1 41%~43%"로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진폐 정도는 "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바,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이고 요양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요양대상자로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진폐 정도가 장해등급 상향 기준에 해당됨과 동시에 요양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사본

4)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회의 심의서(2020년 산재법 제43회) 사본

5)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의료재단 ○○병원) 사본

6) 폐기능검사지(○○의료재단 ○○병원) 사본

7) 정밀진단과거병력 및 분진직력 조회 사본

8) 의학 동영상 자료

9)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10)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전산정보상 청구인의 분진직력 및 과거병력은 다음과 같다.

가) 최종 분진노출 사업장 내역

사업장명	직종	분진	재직기간	직력
○○탄광	광원	선산부	1987. 8. 19. ~ 1989. 1. 11.	1년 4월

나) 진폐정밀진단 판정이력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관	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심의결과	
					판정결과	장해
1988. 12. 5.	□□병원	2/1	-	-	장해	11급9호
1994. 5. 30.	□□병원	2/2	-	-	장해	11급9호
2005. 3. 16	□□병원	2/3		F0(정상)	장해	11급9호
2006. 5. 24.	□□병원	2/3		F1/2(경미장해)	장해	11급9호
2007. 7. 18.	□□병원	3/2		F1(경도장해)	장해	7급15호
2008. 9. 5.	□□병원	3/2		F1(경도장해)	장해	7급15호
2009. 11. 13.	□□병원	3/2		F1(경도장해)	장해	7급15호
2010. 12. 20.	□□병원	3/2		F1(경도장해)	장해	7급15호
2013. 2. 1.	□□병원	3/2		F1(경도장해)	장해	7급15호
2015. 1. 7.	□□병원	3/2	ax	F2(중등도장해)	장해	3급6호
2017. 5. 2.	근로복지공단△△병원	3/2		F2(중등도장해)	장해	3급6호
2018. 5. 25.	○○병원	3/2		F2(중등도장해)	장해	3급6호
2020. 10. 6.	○○병원	4A		F2(중등도장해)	장해	3급6호

2) 청구인은 1988. 12. 5. '진폐'를 진단 받고 제11급으로 결정되어 장해보상일시금(금3,077,830원)을 수령한 자로서, 2007. 7. 18. '진폐'를 재진단 받고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되어 등급차액분(금39,607,48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개정된 산재보험법(법률 제10305호)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2010. 12. 1.부터 진폐 보상연금 중 기초연금(최저임금액×60/100×365)을 지급받아 오던 중, 2015. 1. 7. 진단일 기준 정밀진단 결과 "병형 제3형(3/2),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로 장해등급이 제3급으로 상향되었다.

3) 청구인은 2020. 10. 6. '진폐'를 재진단 받고 진폐(응급) 정밀진단을 신청하여 2020. 10. 6. ○○의료재단 ○○병원에서 심폐기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폐기능검사기록지에서 확인되는 심폐기능은 다음과 같다.

회차	폐기능 검사결과(%)			장해등급상 심폐장해	비고
	FVC (%Pred)	FEV_1 (%Pred)	FEV_1/FVC (Pred)		
1회	50	43	56	고도장해(F3)	- 일초량(FEV_1)이 노력성폐활량(FVC)의 70% 미만임
2회	50	41	52	고도장해(F3)	
3회	49	43	56	고도장해(F3)	

4) 청구인은 3회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결과 일초량(FEV_1)이 모두 45%미만으로 고도장해(F3)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진폐심사회의에서는 청구인의 심폐기능을 중등도장해(F2)로 판단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의료재단 ○○병원, 2020. 10. 12. 작성)

1) 흉부영상검사(촬영일: 2020. 10. 6.): 소음영-모양/크기(r/q), 밀도(3/3)

2) 폐환기능검사: FVC 50%, FEV_1 43%

나. 진폐심사회의 심의 소견(2020년 산재법 제43회, 2020. 11. 16. 판정)

1) 심의소견: 병형 4형(4A), 합병증 없음,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2) 판정결과: 장해대상, 장해등급 제3급제6호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 1

일초율을 판독하는 경우 절대값을 사용하는데 청구인의 2020. 10. 6. 폐기능 검사에서 일초율은 하나는 56% 다른 하나는 52%로서 어떤 수치를 사용하던 일초율은 70% 미만임

2) 자문의 2

청구인이 2020. 10. 6. 시행한 심폐기능 검사상 노력성폐활량(FVC) 50%, 일초량(FEV_1) 43%, 일초율(FEV_1/FVC) 56%로 확인되고,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인 경우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45%미만(일초율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 제5호(장해)

나. 산재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라.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마.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별표11의2

바.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2항

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2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 제1항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관련 별표 11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진폐증에 이환을 사유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분진직력을 확인하고 진폐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정밀검진을 의뢰한 후,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야 하고, 진폐병형과 심폐기능 장해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3급의 장해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은 제1급제9호, 병형이 제4형이면서 중등도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은 제3급 제6호에 해당된다.

또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_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는 고도장해(F3)에 해당하고,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는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3회 실시한 심폐기능 검사결과에 따르면 일초량(FEV_1)이 정상예측치의 45%미만으로 고도장해(F3)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고 요양 대상자로도 결정 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청구인이 2020. 10. 6. 시행한 심폐기능 검사상 노력성폐활량(FVC) 50%, 일초량(FEV_1) 43%, 일초율(FEV_1/FVC) 56%로 확인되고, 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인 경우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일초량이 정상예측치의 45%미만(일초율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이라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진폐 정도는 “병형 제4형(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이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1급제9호이고 동시에 요양 대상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Ⅸ

기타

1. 합병증 예방관리
2. 만성폐쇄성폐질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소멸시효

1

합병증 예방관리

1 »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눈 부위 장해등급 제8급을 결정 받은 자로 요양 종결 후부터 이 사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전까지는 예방관리 증상에 대한 진료를 인정받은 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기존에 인정받은 합병증 예방관리 기간 동안 오큐메토론점안액 등의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이는 결막염과 관련되어 처방되는 약물인 점, 청구인이 의안 착용상태이나 의안 착용 시 결막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누선장해가 남은 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결막염 증상의 관리가 필요하는 소견에 따라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6891호
- **사 건 명** 합병증 등 예방관리(연장)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4. 17.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연장)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00. 11. 2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안 안구파열, 좌안 각공막열상 및 좌안 무안구증'을 승인받고 요양 후 장해등급 8급 결정 받은 자로서, 주치의의 '좌안 의안 착용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리와 경과 관찰 및 외래 진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을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 규정 제5조의 '【10103 누선장해】의 적용대상은 치유 후 누선장해가 남아 결막염, 누선염이 재발되는 자에 해당한다'라는 규정 및 자문의사의 '환자는 안구 적출 후 의안 착용 상태로 합병증 예방관리【10103 누선장해】와 무관하므로 연장 타당하지 않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청구인에게 합병증 등 예방관리(연장)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안약을 넣어야 하고, 의안이 돌아가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연장을 승인하라는 취지로 심사청구 하였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연장)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심사청구서 및 이유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서 사본

4) 의무기록 사본

5)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최초요양신청서 상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2000. 11. 22. 피재자가 당사 연마부서에서 스텐제품 연마작업 도중 샤팅바루의 조각이 튀여 작업자의 눈에 맞으면서 부상을 당함'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주요 요양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최초 승인 상병명: 좌안 안구파열, 좌안 각공막열상 및 좌안 무안구증

나) 요양 기간: 2000. 11. 22. ~ 2002. 3. 31.(입원 35일, 통원 460일)

다) 주요 수술내역: 2000. 11. 22. 1차 봉합술
2001. 1. 2. 좌안 안내용물 적출술 및 인공 보형물 삽입술

※ 휴유증상진료(2010. 5. 25. 결막낭재건술, 피판작성술)

라) 장해등급(치유일: 2002. 3. 31.): 제8급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마) 합병증 예방관리 유효기간: 2002. 4. 30. ~ 2020. 3. 30.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 10103, 누선장해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2020. 4. 3.)

1) 환자의 현재 상태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릴 위한 진료 내용

- 상기 환자 좌안 안구파열로 2000년 11월 22일 본원에서 일차 봉합술 시행 받았으며, 이후 좌안 안내염으로 2001년 1월 2일 좌안 안내용물적출술 및 인공 보형물 삽입술 시행 받은 이후 본원 외래를 통하여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중임

2) 예방관리 최초 또는 재결정을 위한 사유

- 좌안 의안 착용한 상태로 지속적인 관리와 경과 관찰 및 외래 진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지원으로 의학적 기대 효과

- 좌측 안와에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의 예방 및 우안의 관리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 환자는 안구적출 후 의안 착용 상태로 합병증예방관리 10103과 무관하므로 연장 타당하지 않음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나. 근로복지공단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예방관리 증상) 및 제5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결정)

다. 근로복지공단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별표 1

1. 눈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관리범위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	관리내용 의과	 한의과	단위기간(연장)
[10101] 외상 후 백내장				
• 수정체혼탁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검진 • 수정체 혼탁 진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검진	• 백내장으로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 받았거나 외상으로 인한 수정체 혼탁이 발생해 있는 자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진찰**: 3개월에 1회 • **임의검사**: 시력검사, 굴절검사, 세극등검사, 안압검사, 안저촬영	• **진찰** • **약제**: 팔물탕, 오적산, 보중익기탕, 보허탕, 황련해독탕, 이진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인삼 등 단미엑스산제 • **시술**: 침술·구술·부항술 (자락관법의 경우 최초 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10102] 외상 후 각막혼탁				
• 각막이식 수술 후 합병증 방지 • 각막 변성으로 계속 관리를 위한 투약 관리	• 각막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외상으로 각막 변성이 있는 자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 **진찰** • **임의검사**: 시력검사, 세극등검사, 안압검사 • **약제**: 안과용제	• **진찰** • **약제**: 대시호탕, 대청룡탕, 팔물탕, 오적산, 보중익기탕, 보허탕, 황련해독탕, 이진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감국 등 단미엑스산제 • **시술**: 침술·구술·부항술 (자락관법의 경우 최초 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2년** (필요시 연장 가능)
[10103] 누선장해				
• 합병증(결막염, 누선염)에 대한 투약처치	• 치유 후 누선장해가 남아 결막염, 누선염이	• **진찰** • **기본검사**	• **진찰** • **약제**: 대시호탕, 대청룡	**2년** (필요시

관리범위	적용대상	관리내용		단위기간 (연장)
	장해등급 기준	의과	한의과	
관리	재발되는 자	• **임의검사**: 시력검사, 굴절검사, 세극등검사 • **약제**: 항생제, 안과용제 • **처치**: 안과처치	탕, 팔물탕, 오적산, 보중익기탕, 보허탕, 황련해독탕, 이진탕 등 혼합엑스산제 및 금은화, 연교, 감국 등 단미엑스산제 • **시술**: 침술·구술·부항술 (자락관법의 경우 최초 시술 3주까지 주3회 이후 주2회) 등 주 3회	연장 가능)
	• **장해등급 제14급 이상**			

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눈 부위 장해등급 제8급을 결정 받은 자로 요양 종결 후부터 이 사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전까지는 예방관리 증상에 대한 진료를 인정받은 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기존에 인정받은 합병증 예방관리 기간 동안 오큐메토론 점안액 등의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이는 결막염과 관련되어 처방되는 약물인 점, 청구인이 의안 착용상태이나 의안 착용 시 결막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누선장해가 남은 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결막염 증상의 관리가 필요하여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서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 결정 및 증상별 진료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지속적으로 안약을 넣어야 하고 의안이 돌아가므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으로 승인하라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눈 부위 장해등급 제8급을 결정 받은 자로 요양 종결 후부터 이 사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신청 전까지는 예방관리 증상에 대한 진료를 인정받은 자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기존에 인정받은 합병증 예방관리 기간 동안 오큐메토론점안액 등의 약물을 처방받았는데 이는 결막염과 관련되어 처방되는 약물인 점, 청구인이 의안 착용상태이나 의안 착용 시 결막염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누선 장해가 남은 자로 보기는 어려우나 결막염 증상의 관리가 필요하여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한 상태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만성폐쇄성폐질환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 소멸시효

1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통상 검사 시기, 급성 악화 등 여부로 인해 측정치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4년 실시한 검사결과는 미국 방식으로 정상 예측치를 환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치의는 이를 한국인의 정상 예측치로 환산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단순 계산식에 따라 한국인의 정상 예측치로 환산하여도 2014년 폐기능검사 당시 청구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인정기준 상 제3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로 확정된 장해등급 제3급의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되어 2017. 5. 11. 요양급여 신청 당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126호
- **사 건 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2. 12.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장기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함.'이라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2014. 1. 8. 장해 3급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었으나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 5. 11.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당시와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고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이 업무상 질병으로 곧바로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진단일을 기산일로 한다는 주장은 산재보험법상 그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청구인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함을 통보한 날인 2019. 12. 12.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함.

나. 소멸시효 도과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최초 요양급여의 청구이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공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소멸시효가 기산되었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청구인의 소멸시효는 최초 요양급여신청서 접수일인 2017. 5. 11. 자로 중단되어 그 권리에 대한 시효는 새로이 기산되어야 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위법·부당함.

다. 기존장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대학병원에서 2014. 1. 8.과 2016. 12. 14. 2회에 걸쳐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였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장해판정은 2016. 12. 14. 이후에 가능한 것이고 최초 요양신청일은 2017. 5. 11.이므로 소멸시효는 도과되지 않았음. 또한 원처분기관 논리대로 하여도 장해상태가 악화되었음이 분명하고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는 전혀 없으므로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적어도 2016. 12. 14. 이후부터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라. 결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이 사건 청구인은 2019. 12. 12. 이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원처분기관의 소멸시효 주장은 위법·부당합니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요양급여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

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

5)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소견서 사본

6) 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

7) 의무기록 사본

8) 영상의학자료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0)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장기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함.'이라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진료기록 및 요양신청서 제출 경과

① 2013. 2. 12. ○○대학병원: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② 2013. 5. 24. ○○대학병원: 상세불명의 폐렴

③ 2013. 12. 27. ○○대학병원: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④ 2014. 1. 3. ○○대학병원: 무기폐

⑤ 2014. 1. 8. ○○대학병원: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폐기능검사 결과 FEV_1 62% →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한국인 정상예측치로 환산시 FEV_1 53%(장해 3급)

⑥ 2015. 5. 6. ~ 2015. 5. 9.(입원) / 2015. 11. 14. ~ 2015. 11. 18.(입원): 객혈 및 기관지염

⑦ 2016. 12. 14. ○○대학병원: 상세불명의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검사결과 FEV_1 48% →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한국인 정상예측치로 환산시 FEV_1 41%(장해 3급)

⑧ 2017. 5. 11.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⑨ 2017. 8. 1.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실시(1차), FEV_1 48%(장해 3급)

⑩ 2017. 9. 1.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실시(2차), FEV_1 48%(장해 3급)

⑪ 2017. 11. 6.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의뢰(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⑫ 2019. 8. 21.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

→ 직업성 인정 및 FEV_1 48%로 장해등급 3급

⑬ 2019. 10.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⑭ 2019. 10. 2. 업무상 질병 진단일 및 보험급여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질의(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⑮ 2019. 10. 30.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서(○○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⑯ 2019. 11. 28. 질의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

⑰ 2019. 11. 28. OO대학병원 주치의 소견조회 요청(FEV_1 환산 요청 등)

⑱ 2019. 12. 10. ○○대학병원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FEV_1 환산 불가)

⑳ 2019. 12. 12.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나) 소멸시효 기산일

❍ 업무상 질병의 재해일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확인된 날(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이며, 다만, 진단서 발급일 이전에 요양승인 질병과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검사 및 치료가 실시된 경우, '그 검사를 위해 요양을 개시한 날'을 재해일자로 판단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양을 개시한 날은 ① 요양승인 상병의 진단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이며, 검사결과와 승인상병이 의학적으로 동일하고, ② 치료 및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요양신청한 날까지 치료경과의 시간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등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③ 요양승인 상병의 진단을 위한 실질적인 검사(치료)로서 단순히 검사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통원진료가 아니어야 함.

❍ 청구인의 COPD 진단이 검사에 의해 확인된 날은 2014. 1. 8.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2013. 12. 27.부터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2013. 12. 27.이며 이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봄이 타당함.

다) 소멸시효 완성여부

❍ 산재보험법(2018. 6. 12. 개정 이전)에서는 보험급여의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치유일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같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기간 인정 없이 곧바로 장해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는 진단일로 판단하고 있는 바,

❍ 신청인은 2014. 1. 8. 및 2016. 12. 14. 폐기능검사를 실시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 3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았고, 2017. 5. 11. 최초로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특별진찰 등을 통하여 장해 3급에 해당되었으나, 최초 진단일부터 요양급여 신청서 제출 시점까지 산재보험법(2018. 6. 12. 개정 이전)에 따른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함.

❍ 또한 청구인은 최초 요양급여 청구이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2014. 1. 8.과 2017. 5. 11.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특별진찰에서 장해등급이 3급으로 동일하므로 최초 요양급여 청구 당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임.

라) 기존장해의 타당성

❍ 근로복지공단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지침에 따르면 '1초량(FEV_1)의 정상 예측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예측식을 사용' 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청구인의 2014. 1. 8. OO대학병원의 폐기능검사 결과 FEV_1 62%는 Morris/Polgar식이며, 이를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서 한국인 정상 예측치로 환산한 결과 FEV_1 53%에 해당되어 장해 3급에 해당되고,

❍ 2016. 12. 14. OO대학병원의 폐기능검사 결과 FEV_1 48%도 Morris / Polgar 식으로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서 한국인 정상 예측치로 환산한 결과 FEV_1 44%에 해당되어 역시 장해 3급에 해당함.

❍ 따라서 2014. 1. 8. / 2016. 12. 14. / 2017. 8. 1. 및 2017 9. 1. 폐기능 검사에서 모두 장해 3급에 해당하는 소견이므로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기존 장해등급보다 악화된 소견이 없으므로 보험급여에 대한 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어 지급할 장해급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부의 질의회시(업무상질병부-6460, 2019. 11. 28.)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상 질병 재해일자 판단

❍ 업무상 질병의 재해일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확인된 날(진단서 또는 소견서 발급일)'이며, 다만, 진단서 발급일 이전에 요양승인 질병과 시간적·의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는 검사 및 치료가 실시된 경우, '그 검사를 위해 요양을 개시한 날'을 재해일자로 판단할 수 있음.

❍ 이 경우 요양을 개시한 날은 ① 요양승인 상병의 진단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이며, 검사결과와 승인상병이 의학적으로 동일하고, ② 치료 및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요양신청한 날까지 치료경과의 시간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등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③ 요양승인 상병의 진단을 위한 실질적인 검사(치료)로서 단순히 검사일정을 확인하기 위한 통원진료가 아니어야 함.

❍ 위 진행경과를 보면, COPD 진단이 확인된 날은 2014. 1. 8.로 볼 수 있고(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보고서 상 해당 진단일에 COPD 확인), 이 경우 2013. 12. 27.부터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직업병이 확인된 날은 2013. 12. 27.이 타당하다고 판단.

나) 소멸시효 기산일 및 장해급여 지급 방법

❍ 대법원은 '장해급여 미청구로 기존 장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장해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할 수는 없다'고 하였고, 이는 기존의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청구권이 시효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판단(대법원 2015. 4. 16. 선고 2012두261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한 바,

❍ 2014. 1. 8. 발생한 장해급여는 2017. 5. 11. 요양급여 신청 당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였으나,

-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2016. 12. 14. 장해등급이 기존 장해등급보다 악화된 경우 2017. 1월분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 전액을 지급하되,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권 전부가 소멸하여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5조(업무상의 재해) 제1호

나. 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라.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마.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바. 산재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사.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2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진단일인 2017. 4. 17. 이전인 2014. 1. 8.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FEV_1 62%로 확인되나, 2014년도에 폐기능검사는 1회만 실시하였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통상 검사 시기, 급성 악화 등 여부로 인해 측정치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4년 실시한 검사결과는 미국 방식으로 정상 예측치를 환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치의는 이를 한국인의 정상 예측치로 환산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단순 계산식에 따라 한국인의 정상 예측치로 환산하여도 2014년 폐기능검사 당시 청구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인정기준 상 제3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로 확정된 장해등급 제3급의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되어 2017. 5. 11. 요양급여 신청 당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그 질병의 발생 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과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7조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최초요양을 승인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이 사건 요양급여 신청과 관련된 진단일인 2017. 4. 17. 이전인 2014. 1. 8.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FEV_1 62%로 확인되나, 2014년도에 폐기능검사는 1회만 실시하였는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경우 통상 검사 시기, 급성 악화 등 여부로 인해 측정치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점, 청구인이 2014년 실시한 검사결과는 미국 방식으로 정상 예측치를 환산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치의는 이를 한국인의 정상 예측치로 환산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단순 계산식에 따라 한국인의 정상 예측치로 환산하여도 2014년 폐기능검사 당시 청구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인정기준 상 제3급에 해당하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특별진찰 결과로 확정된 장해등급 제3급의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되어 2017. 5. 11. 요양급여 신청 당시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12. 27.을 장해급여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라고 전제한 원처분기관의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020년도 심사결정 사례집

진료비 심사 사례

1. 검사료
2. 영상진단
3. 이학요법
4. 처치료
5. 수술료
6. 재료대
7. 기타

1

검사료

1 (합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골스캔검사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7084호
- **사 건 명**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8. 10. 12.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받고 있는 재해자 유○○(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20. 3. 10. 골스캔(삼상) 검사를 시행한 후, 해당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 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스캔검사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중 261,72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는 양측 손 부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받은 분으로, 최근 1~2년 전부터는 양측 어깨 쪽으로 통증 호소, 어깨 운동 범위 감소 소견 보여 이에 대해 고정에 의한 오십견 및 관절염 또는 충돌 증후군에 의한 것인지, 손 부위의 복합부위통증후군이 어깨부위까지 확장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3-phase bone scan을 시행. 이는 두 가지 모두 다 양측 손 부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후유장애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이의신청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합병증등 예방관리비용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지(마취통증의학과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4)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지급결정통지서 및 명세서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6)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09. 1.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복합부위통증증후군(제1형, 손 부위),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을 승인받고 2010. 6. 3. 척수신경자극기 설치술, 2018. 9. 13. 척수신경자극기교환술 받은 상태로 2018. 10. 12.부터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6040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에 대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진료를 받고 있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20. 3. 10. 골스캔(삼상) 검사를 시행한 후 해당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으로 청구하였다.

〈진료기록〉

❍ 2019. 12. 18.: med 30일분 처방

[11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_(0.65g/1정)×3정/일

[119] 리리카캡슐150밀리그램(프레가발린)_(0.15g)×3캡슐/일

[821] 아이알코돈정 10MG(염산옥시코돈)×3정/일

❍ 2020. 1. 15.: med 30일분 처방

- 정맥마취(케타민 정주치료)

❍ 2020. 2. 12.: med 30일분 처방

모로 누워 주무신 후 양쪽 팔을 다 못쓸 정도로 아프다

general skin rash

❍ 2020. 3. 10. 골스캔 검사

conclusion

① Focally increased uptake in the left shoulder- Arthritic lesion, more likely

② Symmetric blood flow, pool and mildly increased delayed uptake in bilateral wrists and hands

- Slightly interval decreased intensity since 2015-11-3

- DDx. Arthritic change VS chronic stage of CRPS

③ Arthritic change more likely, right shoulder and right knee

3) 원처분기관은 골스캔은 “6040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장해” 관리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 검사 비용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업무처리규정 제3조(예방관리 증상) 및 제16조(진료비용 산정기준)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재해자 유○○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장해등급 제12급을 결정받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인정된 자로, 청구인은 재해자가 양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확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골스캔(삼상)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나, 견관절 쪽에 통증이 있다면 골스캔 외 다른 검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했을 것으로 보여 골스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처분기관의 합병증 예방관리비용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합병증 등 예방관리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각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 범위 내에서 진료함이 원칙이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가 양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확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골스캔(삼상)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하나, 골스캔 외 다른 검사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골스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합병증 등 예방관리비용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요추후방고정술 시 산정한 'FY682 수술중 신경생리추적감시-동시에 2종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1020호
- **사 건 명** 진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산재환자 "박○○(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요추의골절(L4), 요추횡돌기골절(L3,4) 등으로 2018. 7. 27. L4 bursting fx.에 대해 L2-3-4-5 posterior fixation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중 Eclipse intraoperative monitoring을 시행하고, 해당 진료수가로 FY682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동시에2종이상의검사를 실시한 경우×2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2018. 7. 27. 시행한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관련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등을 참고하여 의학적 자문결과, 수술 중 신경생리추적감시는 불필요하다는 자문의사 소견 및 공개심의사례 참조하여 검사의 적응증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진료비 금429,420원을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형외과에서 체외금속고정술(하퇴골) 후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척추고정술(요추) 전 신경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술 중 시행한 신경생리 추적감시를 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의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사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4) 진료기록지(입퇴원요약기록,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기록지)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18. 7. 20. 철선 긴결 작업 중 중심을 잃고 5층에서 1층으로 추락한 사고로, 상병명 '요추의골절(L4), 요추횡돌기골절(L3,4), 척골몸통골절, 우측 종골골절, 좌측 종경골절, 좌측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등으로 승인 받고,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2018. 7. 20. ~ 2018. 8. 27. 기간 요양한 것으로,

2)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전산자료에 따르면, 2018. 7. 20. 정형외과에서 체외금속고정술-하퇴골(N0986)을 시행하고, 2018. 7. 27.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척추고정술(요추) 전 신경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를 시행하고, 해당 진료수가로 FY682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동시에2종이상의검사를 실시한 경우×2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3) 원처분기관은 2018. 7. 27. 시행한 척추고정술(후방고정-요추)관련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등을 참고하여 의학적 자문결과, 수술 중 신경생리추적감시는 불필요하다는

자문의사 소견 및 공개심의사례 참조하여 검사의 적응증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진료비 금429,420원을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기기고정술 타당, 수술 중 신경 생리 추적점사는 불필요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 4번골절, 요추 3번, 4번 횡돌기 골절 등으로 2018년 7월 27일 척추후방고정술 시행하면서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검사를 시행함.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검사는 척수증이나 측만증 및 후만증 등 수술 중 신경마비의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한해 인정되는 바, 2018. 7. 27. 시행한 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검사는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불인정함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계법령,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척추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검사 인정범위에 대하여(건강보험 공개심의사례 2011. 11. 30.) (~중략) - 따라서, 척추수술 전 시행하는 뇌유발전위검사와 척추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검사는 1) 척수증(myelopathy)이 있는 경우, 2) 측만증, 후만증 등의 기형(deformity)이 있는 경우, 3) 척수 종괴성 병변(척수종양, 척수공동증, 혈관기형 등)이 있는 경우, 4) 두개저 경추 연접 부위, 상부 경추 불안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각 인정」 하는 것으로,

재해자의 경우, 2018. 7. 20. 정형외과에서 N0986 체외금속고정술(하퇴골) 등을 시행하고 2018. 7. 24. 상병명 요추의골절(L4), 요추횡돌기골절(L3,4), 요추극돌기골절(L3,4)에 대한 evaluation과 manage위해 신경외과로 전과되어 수술 전 신경학적 검사 없이 2018. 7. 27. L4 bursting fx.에 대해 L2-3-4-5 posterior fixation을 시행한 것으로, 이는 척추수술 중 신경생리 추적감시검사 인정범위에 미달되는 바, FY682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동시에 2종이상의검사를 실시한 경우×2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금429,420원 부지급 처분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

3 수술전 심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2870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2. 13.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차○○(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8. 11. 17. 수술 전 심초음파를 시행하고, 해당 진료 수가로 EB432 경흉부 심초음파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에게 심장질환이 없는 점, 척추마취 수술에 심초음파 검사를 예방목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하나 적정진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진료비 148,95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술 전 시행한 심장초음파 검사가 불인정되어 관련자료 첨부하여 심사청구 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의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사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진료기록지(입원기록지, 협진기록지, 심장초음파 결과지, 수술기록지)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18. 11. 16. 매장 정리 후 문단속하고 퇴근하던 중 계단을 헛디뎌서 골절을 입었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경골 원위간부 및 하부 관절면 골절'을 승인 받은 자로서,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2018. 11. 16. ~ 2018. 11. 30. 입원 요양하였다.

2) 협진기록지 상 "상기 환자는 특이 과거력이 없는 분으로, Rt. tibia shaft, ankle fracture로 수술 예정인 분으로, 수술 전 시행한 EKG 상 abnormal(RBBB) 소견 보여 귀과적 op risk 여쭙기 위해 협진 의뢰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8. 11. 20. 척추마취 하에 ORIF distal shaft tibia Rt.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2018. 11. 17. 수술 전 심초음파를 시행하고, 해당 진료 수가로 EB432 경흉부 심초음파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4)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에게 심장질환이 없는 점, 척추마취 수술에 심초음파 검사를 예방목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하나 적정진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진료비 148,95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상기 1969년생의 여성 피재자는 2018. 11. 20. 경골 골절로 인한 수술을 앞두고 2018. 11. 17. 심초음파를 시행한 환자로 수술 전 시행한 심전도 상 완전 우각차단 소견이 있어 심초음파 검사 시행은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마.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9조의3(초음파 검사)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계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경우 우측 경골 원위간부 및 하부 관절면 골절로 수술 전 심전도검사 상 완전 우각차단(RBBB) 소견이 있어 심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에 따라 EB432 경흉부 심초음파(일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일부 부지급 처분한 EB432 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진료비 148,950원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 진료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

4 » 기저질환(심부전)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 전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9948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0. 9. 2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EB432 심장-경흉부 심초음파 비용 관련 원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서○○(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내고정물 제거술 전심부전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마취 상태 유지를 위한 사전검사로 심장-경흉부 심초음파 시행하고, EB432 심장-경흉부 심초음파×1회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수술 전 심전도 검사에서 심장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소견이 없어 합당한 수술 전 검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해당 초음파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36,40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0. 8. 3. 수술 implant removal(RT. ankle) 시행하신 분으로, 병력상 항혈전제 복용하고 있어, 환자의 안정적인 마취 상태의 유지를 위해 심장초음파을 시행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심사 요청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진료기록지(경과기록지, 심전도검사결과지 등)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주치의 소견서(2020. 10. 28)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19. 8. 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삼복사의 폐쇄성 골절, 우측 발목의 힘줄 및 근육의 손상”을 승인받은 자로서, 기존 삽입된 내고정물 제거술을 위해 청구인의 의료기관에 2020. 8. 3.부터 입원 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내고정물 제거술 전 병력상 항혈전제 복용하고 있어, 환자의 안정적인 마취 상태의 유지를 위해 심장초음파을 시행하고, EB432 심장-경흉부 심초음파×1회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3) 재해자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진료기록 일부 발췌)

❍ 경과기록지: 2020. 8. 2.

- ankle ORIF OP

- P/Hx: HTN(-), DM(-)

- 심부전: 2017년 ○○대 진단후 MED중(와파린 복용중) 심장병으로 항응고제 복용중. implant removal -〉 op

❍ 수술내역: 2020. 8. 3.

- Operation: Implant removal(RT.ankle)

4) 원처분기관은 수술 전 심전도 검사에서 심장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이상 소견이 없어 해당 검사에 대하서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 서○○에게 2020. 8. 3. Implant removal 수술 시행 전 심장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재해자 서○○의 경우 병력상 심부전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환자의 안정적인 마취 상태 유지를 위해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의거 진료비 지급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병력상 심부전으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보면 환자의 안정적인 마취 상태 유지를 위해 수술 전 심장초음파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EB432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영상진단

1 » 폐렴의 호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흉부 3D CT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5630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권○○(이하 "재해자"라 한다)가 상병명 '진폐증, 속발성 기관지확장증'으로 요양 중 가래, 발열 증상을 보여 폐렴 진단 및 폐렴 호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2020. 4. 7. 및 2020. 4. 24. 각각 흉부 3D CT를 시행한 후 HA474006 흉부 3D CT×2회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의 "호흡곤란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2020. 4. 7. CT 검사는 타당하나, 2020. 4. 24. 시행한 CT의 경우 이미 2020. 4. 20. 흉부 x-ray상 폐렴을 진단하였고, 폐렴 진단 4일 뒤 CT를 촬영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검사로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흉부 3D CT 1회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79,00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0. 4. 24. 흉부CT 삭감: 폐렴진단 4일 뒤 CT 촬영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검사로 조정된 건에 대하여 진료소견 및 흉부 방사선 촬영을 첨부하여 심사 청구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진료소견서(2020. 6. 8.)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4) 진료기록지(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1997. 10. 9. 진단받은 상병명 '진폐증, 기관지확장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자로서 1998. 8. 26.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입원요양 중이다.

2) 재해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부 발췌)

- ❍ 2020. 4. 7. 그 동안 별 호흡기증상 없이 지내다가 최근 가래 심해져 Chest CT 추적: RUL fibrosis, Lt. lung honeycombing and collapse, No change from Jun 2019
- ❍ 2020. 4. 20. 기침, 가래, 37.7도, SpO2 94%,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타조락탐주 5일 주사
- ❍ 2020. 4. 21. 흉부 방사선: RLL mild infiltration
- ❍ 2020. 4. 24. 흉부 방사선에서 폐렴 나온 뒤 계속 가래, SaO2 low하여 CWP에서는 기존 폐 섬유화 때문에 폐렴 크기를 파악하기 어려워 Chest CT 필요: RLL pneumonia 호전 없음, 아미카신 추가

❍ 2020. 4. 27. 가래 호전

❍ 2020. 4. 29. 가래 약간 호전, 흉부 단순방사선 촬영

❍ Chest CT 판독결과

검사일자	판독 결과
2019. 6. 24	Diffuse interstitial lung disease with emphysematous lung and bullaePulmonary tbc, RUL, in active Pulmonary fibrosis, left entire lung with decreased volume, and RLL Otherwise unremarkable.
2020. 4. 7	old fibrotic lesion, with associated atelectatic change in LL, especially in LUL old Tb lesion, inactive, in RUL underlying pneumoconiosis in BLL possible no active lesion F/U, rec
2020. 4. 24	possible pneumonic consolidation in the RUL, suggesting active lesion, compared with previous finding April 07 chest CT in the LUL, no interval change, (atelectasis) compared with previous finding April 07 chest CT underlying pneumoconiosis R/O active lesion, (secondary infection) in RUL with underlying atelectasis in LUL and pneumoconiosis in BL F/U, rec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2020. 6. 8.)

2012. 2. 27. 부터 입원하고 있는 mMRC 4-5단계의 CWP 환자로 거의 침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폐단층 촬영에서 좌 폐가 벌집모양의 폐섬유화로 쪼그라져있음. 진폐환자는 3개월마다 정기 검진으로 단순 흉부사진을 촬영하는데 대부분의 진폐환자가 그렇듯 이 환자도 벌집폐라고 하는 기저 폐병변이 너무 심하여 단순 촬영으로는 폐병변의 변화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 속함.

2020. 4. 24. Chest CT: 2020. 4. 20. 기침, 가래, 발열 발생하여 폐렴 의심하에 항생제 타조락탐을 투여하기 시작 했으며, 2020. 4. 21. 단순 흉부사진에서 후 하엽에 약간의 폐침윤이 보여 폐렴 확신 하에 항생제 치료 계속했으나 2020. 4. 24. 호흡곤란 심해지고

산소분압 감소하여 폐렴의 호전정도를 정확히 알기 위해 chest CT를 찍었으며 폐침윤이 확대된 것을 발견하고 항생제를 바꾸고 추가하여 완치하게 된 경우임.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첫번째 CT(2020.4.7.)는 호흡곤란의 원인과 폐렴발생을 찾기 위해 검사를 시행했으며 기존 폐병변이 단순 흉부 x-ray를 이용하여 충분히 판단가능하지 않아 필요한 검사로 판단됨. 두번째 CT(2020.4.24.)의 경우 폐렴 확인을 위해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미 흉부 x-ray상 새로운 음영의 증가와 발열이 확인되어 폐렴 진단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판단됨. 폐렴에서 CT를 검사하는 경우는 충분기간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을 때 x-ray로 확인이 안 되는 기도 병변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데 본건의 경우는 폐렴 진단 4일 뒤 CT를 촬영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검사로 판단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고시 2018-254호, 2018. 11. 30.)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의 사건관련 재해자 권○○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의 쟁점은 '흉부 3D CT 비용'의 인정 여부임. 재해자 권○○의 의무기록상 단순 방사선상 폐렴이 진단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흉부 3차원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임. 따라서 청구인의 금번 진료비 청구에 대해 일부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2020. 4. 20. 단순 방사선 상 폐렴이 진단된 상태에서 4일 뒤 추가적인 흉부 3차원 CT 촬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 체내금속제거 후 척골 충돌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상지 CT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994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2. 11.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이○○(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9. 11. 1. 우측 원위요골의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시행한 다음 날 요골 부위의 길이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척골 부위 충돌증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측 손목 부위(Wrist) CT를 시행한 후 HA45700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상지, HB031 FULL PACS 이용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금속제거 후 단순 동통에 대해 CT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CT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00,42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치의 소견서 참조하여 재심사 바람.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3) 주치의사 소견서

4)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7. 12. 2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우측 손목 세모뼈의 골절(폐쇄성), 좌측 엉덩이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우측 요골 부위의 외상 후 관절염”을 승인받고, 재해 당일 ○○병원에서 ORIF with plate & screw, radial Rt. 수술을 받은 자로서, 우측 원위 요골의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을 받기 위해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2019. 11. 1. ~ 2019. 11. 4. 입원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11. 1. 우측 원위요골의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을 시행한 다음 날 요골 부위의 길이 단축으로 인해 발생한 척골부위 충돌증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측 손목 부위(Wrist) CT를 시행한 후 HA45700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상지, HB031 FULL PACS 이용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3) 원처분기관은 “금속제거 후 단순 동통에 대해 CT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CT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00,42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요골 원위부 심한 관절내 분쇄골절에 대해 타 병원에서 골절 수술 시행 후 본원에서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수술 이후 단순 통증에 대한 확인을 위해 CT 촬영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외상 후 관절염 소견이 관찰 되었고, 요골 부위의 길이 단축이 심하여 이차적인 척골부위 충돌증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손목부위 CT 촬영이 필요하여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후 외상성 관절염에 대해 추가 상병명 승인 받아 척골단축술 시행받은 환자입니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우측 원위요골 골절 내고정물 제거 후 관절병변 및 이차적 척골 양성 변위 치료를 위한 CT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보건복지부 고시 인정기준에도 미흡하여 검사료를 부지급함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고시 2018-254호, 2018.11.30.)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 이○○에게 우측 원위요골의 체내금속제거술을 시행하였고 해당 수술 후 손목 부위 CT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재해자의 우측 원위요골 골절 내고정물 제거 후 단순 방사선 영상자료에서 요골이 부서져 있어 길이 단축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이차적인 척골 부위 충돌증후군이 발생될 여지가 높아 CT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진료비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방사선 영상자료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우측 원위요골 골절 내고정물 제거 후 단순 방사선 영상자료에서 요골이 부서져 있어 길이 단축이 관찰되고 이로 인한 이차적인 척골부위 충돌증후군이 발생될 여지가 높아 CT 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당 진료비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우측 손목 부위 CT 검사 비용은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 동시에 시행한 완관절 및 수부 3D CT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9125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최○○(이하 "재해자"라 한다)가 우측 손이 기계에 끼였다는 재해 경위로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하자, 골절에 대한 평가를 위해 Wrist 3D CT와 Hand 3D CT를 각각 시행한 후 HA47700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상지 3D CT 2회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상병상태상 손과 손목의 CT는 같은 부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상지 3D CT 1회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86,69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판독결과 wrist 3D CT상 R/O fracture, carpal bone 소견보이며 Hand 3D CT 상 Fracture, 3rd middle phalanx base 소견 보임. 동일 사지부위 일지라도 뼈나 관절의 종류에 따라 처방하는 이유는 한 개의 사지일지라도 여러 개의 관절과 뼈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적의 CT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CT 갠트리의 회전방향과 축삭영상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따라서 구간별로 손목과 손에 각각 CT 시행할 수밖에 없었으나 조정되어 이의 신청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의사 소견서(○○대학교병원)

4) 진료기록지(응급기록, 수술기록, 방사선 영상자료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20. 5.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우측),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개방성(우측 3수지), 손가락의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우측 3수지)'를 승인받은 자로서, 재해 직후 청구인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고 2020. 6. 7.까지 입원요양을 하였다.

2) 재해자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일부발췌)

❍ 2020. 5. 11. 응급실 진료

- 주증상: hand pain
- 현병력: 내원 당일 손을 기계에 끼여 수상
- 근골격계검사: External wound(+), Swelling(+), Tenderness(+)
  Erythema(-), Local heat(-)
  motor, sensory, circulation, range of motion: intact

- Impression: Other specified injuries involving multiple body regions
  Fx. of proximal phalanx of other finger, open
- Rt. Hand 3D CT 시행(판독소견: Fracture, 3rd middle phalanx base/ Foreign body, 3rd fingers/ Diffuse soft tissue swelling)
- Rt. Wrist 3D CT 시행(판독소견: Degloving injury, Rt. wrist/ Foreign body with diffuse soft tissue swelling, Rt. wrist/ R/O fracture, carpal bone)

❍ 2020. 5. 11. 수술

- 수술후 진단명
  Partial rupture, FDS tendon, forearm, Rt.
  total rupture, FCU tendon, forearm, Rt.
  total rupture, EDC tendon, 3rd, 4th, 5th finger, hand Rt.
  Fx. dislocation, PIP joint, 3rd finger, hand Rt.
- 수술명
  pinning
  Tenorrhaphy
  Debridement and suture

4 의사소견서(○○대학교병원)

〈CT를 구간별로 각각 산정해야 하는 사유〉

① 한 개의 사지(팔 혹은 다리) 일지라도 여러 개의 관절과 뼈로 구성되어 있고 최적의 CT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CT 갠트리의 회전방향과 축삭 영상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② CT 영상 단면을 동일 두께의 영상으로 얻는다고 가정할 때, 촬영하는 사지의 부위와 영상의 개수(용량)은 정비례하므로 촬영하는 사지의 부위가 넓으면 데이터양이 증가한다.

③ 제한된 CT의 성능을 보전하기 위해서 영상의 개수를 줄이거나 영상 단면의 두께를 지나치게 두껍게 할 경우 미세골절이나 작은 병변의 진단 민감도가 감소한다.

④ CT 촬영하는 사지부위가 길수록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증가한다.

⑤ 한 개의 사지일지라도 여러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각 뼈를 연결하는 다수의 관절이 존재하여 촬영시 각 뼈의 장축에 수직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환자의 상태나 자세에 따라서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⑥ 또한 3차원 재구성 CT의 경우에도 각 뼈나 관절의 각도에 맞춘 재구성 영상을 만들게 되므로 전체 길이를 동시에 촬영하고 획일적인 3차원 재구성 영상을 만드는 것은 관절 부위의 진단에 불과하다. 또한 시상면 혹은 관상면 재구성 영상의 경우 사지의 길이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한된 해상도 안에서 표현하게 되므로 영상진단 능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 2020. 1. 19.)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 최○○는 우측 장갑이 모터벨트에 끼어서 장갑이 빨려 들어가는 재해로 2020. 5. 11. ○○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며, 청구인은 수술 전 Rt. Hand 3D CT와 Rt. Wrist 3D CT를 각각 시행하고 상지 3D CT 2회 비용을 진료비로 청구하였으나, 수상 부위나 정도 등을 감안해 볼 때, Hand CT로 상병상태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상지 3D CT 1회만 인정한 원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방사선 영상자료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수술 전 Rt. Hand 3D CT와 Rt. Wrist 3D CT를 각각 시행하였으나, 수상 부위나 정도 등을 감안해 볼 때, Hand CT로 상병상태 확인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상지 3D CT 1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하지 다발성 골절로 동시에 시행한 하지 및 발 CT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93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2. 11.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재해자 이○○(이하 "재해자"라 한다)가 우측 발이 기계 벨트에 끼였다는 재해경위로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자, 청구인은 골절부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골절의 고정 유무 등을 판별하기 위해 Rt. Leg CT 및 Rt. Foot 3D CT를 시행한 후 HA458006 하지 CT ×1회, HA478006 하지 3D CT×1회 비용 등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CT의 경우 8부위(두부, 안면 및 두개기저, 경부, 흉부, 복부, 척추, 상지, 하지)로 구분되어 동일 날 양측에 상지 또는 하지 CT를 시행하여도 소정점수(1회)만 인정되므로 하지 CT 1회 인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하지 CT 중 수가가 낮은 HA458006 하지 CT×1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21,88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Crushing injury, lower leg로 skin degloved, soft tissue injury가 심하고, fracture communition이 심해 fixation이 불가능한 상태로 심각한 외상이었던 환자임. 따라서 응급실 도착 직후 바로 정확한 진단 및 골절의 고정 유무 등의 판별이 필요하였고, 빠르고 정확한 진단이 환자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는바, CT 검사가 필요하였다.

하지 CT 전 구간 모두를 한 번에 촬영할 경우 미세골절 및 작은 병변의 민감도가 감소하고 방사선 피폭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나눠서 촬영하는 것이 여러모로 환자 치료방향 결정을 위해 유리하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의사 소견서

4) 진료기록지(응급기록, 입원기록, 퇴원요약, 방사선 영상자료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9. 4. 우측 발이 기계 벨트에 끼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중족골의 골절, 개방성(우측), 발의 쐐기뼈의 골절, 개방성(우측), 종골의 골절, 개방성(우측), 발의 주상골의 골절, 개방성(우측),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개방성(우측), 안쪽복사의 골절, 개방성(우측),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기타 혈관손상, 외상성 파열(우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우측), 근육 및 힘줄의 외상성 파열 NOS(우측-하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명시된 손상,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깸 손상(우측)" 등을 승인받은 자로서, 재해 직후 청구인의 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골절부위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골절의 고정 유무 등을 판별하기 위해 Rt. Leg CT 및 Rt. Foot 3D CT를 시행한 후 HA458006 하지 CT ×1회, HA478006 하지 3D CT×1회 비용 등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3) 원처분기관은 CT의 경우 8부위(두부, 안면 및 두개기저, 경부, 흉부, 복부, 척추, 상지, 하지)로 구분되어 동일 날 양측에 상지 또는 하지 CT를 시행하여도 소정점수(1회)만 인정되므로 하지 CT 1회 인정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하지 CT 중 수가가 낮은 HA458006 하지 CT×1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21,88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CT를 구간별로 각각 산정해야 하는 사유〉

① 한 개의 사지(팔 혹은 다리) 일지라도 여러 개의 관절과 뼈로 구성되어 있고 최적의 CT 영상을 얻기 위해서는 CT 갠트리의 회전방향과 축삭 영상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

② CT 영상 단면을 동일 두께의 영상으로 얻는다고 가정할 때, 촬영하는 사지의 부위와 영상의 개수(용량)은 정비례하므로 촬영하는 사지의 부위가 넓으면 데이터양이 증가한다.

③ 제한된 CT의 성능을 보전하기 위해서 영상의 개수를 줄이거나 영상 단면의 두께를 지나치게 두껍게 할 경우 미세골절이나 작은 병변의 진단 민감도가 감소한다.

④ CT 촬영하는 사지부위가 길수록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은 증가한다.

⑤ 한 개의 사지일지라도 여러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 각 뼈를 연결하는 다수의 관절이 존재하여 촬영시 각 뼈의 장축에 수직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환자의 상태나 자세에 따라서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⑥ 또한 3차원 재구성 CT의 경우에도 각 뼈나 관절의 각도에 맞춘 재구성 영상을 만들게 되므로 전체 길이를 동시에 촬영하고 획일적인 3차원 재구성 영상을 만드는 것은 관절부위의 진단에 불과하다. 또한 시상면 혹은 관상면 재구성 영상의 경우 사지의 길이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한된 해상도 안에서 표현하게 되므로 영상진단 능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경골부위와 족부는 다른 병변이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각각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마.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고시 2018-254호, 2018. 11. 30.)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 이○○는 2019. 9. 4. 응급의료센터 내원 당시 우측 발이 기계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우측 다리 및 발의 심한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정확한 상병상태 확인 및 진단, 수술 결정 등을 위해서는 동측 하지라 하더라도 각각의 Leg CT, Foot CT 촬영이 필요하였던 상태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한 진료비를 모두 인정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방사선 영상자료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우측 다리 및 발의 심한 골절상을 입은 상태로, 정확한 상병상태 확인 및 진단, 수술 결정 등을 위해서는 동측 하지라 하더라도 각각의 Leg CT, Foot CT 촬영이 필요하였던 상태로 판단됨에 따라 CT 비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우측 Leg CT 및 Foot 3D CT 비용은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5 신경학적증세가 악화되어 추가 시행한 요추MRI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2622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3. 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박○○(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천추S1 골절, 천골(薦骨)의 골절, 요추5번 횡돌기골절(우측),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요천골부 경막하 혈종, 골반의 골절 (sup. & inf. ramus)'에 대하여 2019. 12. 19.과 2019. 12. 22. 각각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한 후 HE111006 MRI-척추(요천추)×2회, HB021 FULL PACS 이용료×2회 등을 포함한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횡돌기골절 외 척주 및 척추관의 이상 소견이 없음이 1차 MRI에서 확인되었고, 척수 또는 요천수 신경총 손상을 의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2차 MRI를 3일 후 촬영한 것은 과잉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추 MRI 1회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79,19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응급 수술 필요성 확인 위해 MRI 추적 시행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사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4) 진료기록지(응급센터 기록지, 경과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12. 19. 설비 조정 작업 중 사출박스와 설비 사이에 몸체가 끼였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천추(S1) 골절, 천골(薦骨)의 골절, 폐쇄성, 요추5번 횡돌기골절(우측),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요천골부 경막하 혈종), 골반의 골절 (sup. & inf. ramus)'을 승인받은 자로서, 재해 직후 청구인의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 중이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12. 19. 요추 MRI를 시행하였으나 재해자가 하지 위약감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응급 수술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9. 12. 22. 요추 MRI 추적검사를 시행하였다. 이후 HE111006 MRI-척추(요천추)×2회, HB021 FULL PACS 이용료×2회 등을 포함한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9. 12. 19. 응급실 기록지〉

C/C) back pain lumbar

P/E) Alert mental state
Chest & Abdomen: no ext. wound, no T
Lumbar back pain(+) c both leg tingling sense(++)
T-L spine CT: Scrum, Rt. side fx., L5 Rt. transverse process fx., Coccyx fx.

- 요추 MRI 시행

〈경과기록지〉

- 2019. 12. 19 motor weakness 잘 관찰할 것
- 2019. 12. 21 진행 없으나, 환자가 느끼기에 힘이 50% 이상 떨어진 것 같다고 표현함. MRI f/u 고려
- 2019. 12. 22 motor gr III~IV, 자발적으로 들어지나 힘들어 함
  MRI f/u, interval change는 심하지 않은 상태이며, MRI f/u 상 S1 Rt. 로 indentation 약간 증가
- 2019. 12. 24: motor 더 악화는 없음

4)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횡돌기골절 외 척주 및 척추관의 이상 소견이 없음이 1차 MRI에서 확인되었고, 척수 또는 요천수 신경총 손상을 의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2차 MRI를 3일 후 촬영한 것은 과잉으로 사료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추 MRI 1회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79,19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상기인은 요추5~천추1번간 경막상 출혈로 인해 증세 정밀 관찰하던 중 2019년 12월 22일 오전, 12월 19일 입원 시에 비해 하지 위약상태가 심해지는 상태로 판단되어 응급 수술 필요성을 확인 위해 MRI 추적 시행하였다.

기존에 진단된 질환상태가 신경을 압박하는 출혈이었으며, 신경학적인 증세가 악화되는 상태(하지위약의 악화)로 판단되어 응급 수술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했던 상황으로, 이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다른 검사 방법은 없는바, 추적 MRI 진단비용은 산재 인정되어야 한다.

〈추가소견: 2020. 4. 3.〉

응급실 내방 후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우측 pelvis motor grade 1 및 knee flexion grade 2, knee extension IV 및 좌측 pelvis motor grade III, knee F/E III/IV 소견 보였으나 양측 ankle의 motor는 괜찮았으나 3일간 스테로이드 치료 등의 대증치료 중에 ankle motor까지 grade III~IV 정도로 떨어지는 양상으로 확인되어 MRI 추적 관찰이 요하는 상황으로 판단하였으며, thecal sac으로의 압박이 증가하면 수술적 치료 고려해야 되는 상태로 판단함. 이 과정에서 환자의 신경학적 증세가 악화되었던 과정을 상세히 관찰 후 MRI 시행을 판단하였으므로 진료비 삭감은 부당하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1차 시행한 MRI 상 제1천추골절 및 제5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이 관찰되는 상태이며, 이와 동반되어 저명한 신경 압박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임. 환자가 관련 증상을 호소하더라도 3일만에 추시하는 MRI를 인정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 박○○의 경우 2019. 12. 19. 설비 조정 작업 중 사출 박스와 설비 사이에 몸체가 끼이는 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요추 MRI 시행하였으나, 골절 및 경막하 혈종이 관찰되는 상태였고 임상적으로 3일 전에 비해 하지 위약이 심해지는 양상을 호소한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신경학적인 증세가 악화되는 상태에서 응급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MRI 검사를 시행한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19. 12. 22. 시행한 요추 MRI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12. 19. 응급실에서 요추 MRI를 시행하였으나, 다발성 척추골절, 골반골절, 요천골부의 경막하 혈종이 관찰되는 상태였고, 임상적으로 3일 전에 비해 하지 위약이 심해지는 양상을 호소한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신경학적인 증세가 악화되는 상태에서 응급 수술의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추 MRI 추적검사를 시행한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2019. 12. 22. 시행한 요추 MRI 비용(279,190원)은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6 상지 압궤손상에 시행한 주관절 MRI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2716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M○○○(이하 “재해자”라 한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팔이 끼였다는 재해경위로 좌측 주관절에 압궤손상을 입고 내원하자, 수술 전에 손상의 깊이 및 혈관, 신경, 힘줄 손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수술을 계획하기 위해 주관절 MRI를 시행한 후 HE116006 주관절 MRI, HB031 Full PACS 이용료 등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수상 부위의 개방창을 통해 근육 및 건 등 조직의 손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관절 MRI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60,30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는 2019. 6. 24.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수상 후 본원 내원한 환자로, 수상 당시 왼쪽 주관절 전방의 심각한 압궤 손상이 관찰되어 수술 전 손상의 깊이 및 혈관, 신경, 힘줄 손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수술 계획 및 주관절 인대파열 의심되어 MRI 검사가 불가피하여 시행하였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의학사진, 방사선 영상자료 등)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6.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주관절 압궤손상, 좌측 주관절 다발성 근육 파열(brachialis, biceps brachii, Pronator teres), 좌측 주관절 다발성 건 파열(biceps, brachialis), 좌측 주관절 근피신경 및 외측전완신경 파열, 좌측 주관절 요측피정맥 파열, 좌측 제2, 3, 4수지 열상, 좌측 제5수지 중위지부 열상,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승인받은 자로서, 재해 직후 청구인의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다음과 같은 수술을 받고 2019. 8. 5.까지 입원 요양하였다.

❍ 2019. 6. 24. 수술

briceps tenorrhaphy

brachialis tendon tenorrhaphy

brachialis m, briceps brachii m, pronator teres m. myorrhaphy

lat. antebrachial cut, nerve neurectomy

cephalic vein ligation(×4)

debridement & suture

Lt. 5th finger debridement & suture

2) 청구인은 손상의 깊이 및 혈관, 신경, 힘줄 손상의 범위를 확인하고 수술을 계획하기 위해 수술 전에 주관절 MRI를 시행한 후 HE116006 주관절 MRI, HB031 Full PACS 이용료 등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3) 원처분기관은 수상 부위의 개방창을 통해 근육 및 건 등 조직의 손상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관절 MRI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60,30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주관절 부위의 심부 근육이나 인대 손상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 M○○○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 청소 중 동료 직원이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벨트에 끼이는 사고로 좌측 주관절 부위에 심한 압궤손상을 입고 병원에 내원한 상태로, 환부 사진을 보면 개방창이며 창상의 근육, 힘줄, 혈관, 신경 등의 손상이 모두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 바, 수술 시행 전 Lt. Elbow MRI 검사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환부 사진을 보면 개방창이며 창상의 근육, 힘줄, 혈관, 신경 등의 손상이 모두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바, 수술 시행 전 Lt. Elbow MRI 검사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7 전완부 폐쇄성 골절 등에 시행한 상지 MRI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6839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고○○(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좌측 전박부 요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전박부 척골 간부 골절, 좌측 전박부 장무지 굴곡건 및 근 파열"에 대하여 전완에 심각한 부종과 전완 근위 및 원위 전방에 눌리면서 발생한 압궤상이 동반되어 내부 골격 뿐만 아니라 근육, 힘줄, 신경 손상이 의심이 되어, 골절 내고정 수술 이외에 힘줄이나 신경, 혈관 등의 손상 여부를 파악하여 수술 전 계획을 위하여 MRI를 촬영하고, HE122006 관절외 상지 MRI×1를 산정하여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수상부위 진단을 위해 X-ray 및 Upper extremity CT(3D) 등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학적 검사 등으로 인대 및 혈관, 신경의 손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HE122006 관절외 상지 MRI×1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60,16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 무거운 쇠붙이에 깔려 다친 후 본원 내원하여 시행한 신체 검진 상 전완에 심각한 부종과 전완 근위 및 원위 전방에 눌리면서 발생한 압궤상이 동반되어 내부 골격 뿐만 아니라 근육, 힘줄, 신경 손상이 의심이 되어, 골절 내고정 수술 이외에 힘줄이나 신경,

혈관 등의 손상 여부를 술전에 파악하여 수술 계획을 위해 MRI 촬영이 불가피하여 시행하였으나, 조정되어 심사청구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6)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12. 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전박부 요골 간부 분쇄골절, 좌측 전박부 척골 간부 골절, 좌측 전박부 장무지 굴곡건 및 근 파열'을 승인받은 자로서, ○○병원에서 2019. 12. 4. ~ 2019. 12. 24.까지 입원 요양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전 전완부 압궤상에 대하여 힘줄이나 신경, 혈관 등의 손상 여부를 파악을 위해 2019. 12. 5. 관절외 상지 MRI 검사를 시행한 후 HE122006 관절외 상지 MRI 및 HB031 Full PACS 이용료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2019. 12. 4. 초진소견서

- C/C: 왼쪽 손목 전완 통증, 오늘 일하다 무거누 쇠붙이가 떨어지며 다침

- P/E: 무지 요측부 4,5 수지 감각저하, 순환양호, 아직 부종 심하지 않음

- Impression: 왼쪽 전완부 척굴보 간부골절

❍ 2019. 12. 6. 수술내역

- Operation: 1. radial shaft ORIF & plate, FPL tenorraphy, myorraphy
2. ulnar shaft ORIF & IM nail 및 s-pin

3) 원처분기관은 수상부위 진단을 위해 시행한 X-ray 및 Upper extremity CT(3D) 및 이학적 검사 등으로 인대 및 혈관, 신경의 손상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HE122006 관절외 상지 MRI 검사에 대하여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12. 6. 수술 치료를 시행하였고 해당 수술 치료를 위해 관절외 상지 MRI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재해자의 경우 수상 부위는 전완부로서 폐쇄성골절 및 edema, 4. 5 수지의 감각저하 등의 신경손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바, 수술 전 면밀한 상태 확인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해당 검사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진료기록부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수상 부위는 전완부로서 폐쇄성골절 및 edema, 4. 5 수지의 감각저하 등의 신경손상의 소견이 관찰되는 바, 수술 전 면밀한 상태 확인을 위해 MRI 검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여 해당 검사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HE122006 관절외 상지 MRI×1는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8 수지 인대파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 수부 MRI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11153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9. 17.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조○○(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좌측 제5수지 근위지절 요측부 인대 파열"에 대하여 수술 전 인대 파열부위, 파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지 MRI를 시행한 후 HE122006 MRI-근골격계(관절외 상지), HB031 FULL PACS 이용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초음파 및 이학적 검사 등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부 MRI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60,16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는 타병원에서 부목치료, 보존치료 시행 후에도 severe swelling (+) tenderness on PIPJ finger joint 5th finger left, instability (+) 심한 상태였음. 수상 후 5일이 지난 후에도 좌측 제5수지 근위지절 부종, RCL 부위 압통, 이학적 검사상 laxity 소견 관찰, 불안정성이 보여 Ligament injury, rupture 여부 확인 후 수술적 치료방법 위해 MRI 정밀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인대의 심한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MRI 검사를 통해 파열부위와 파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진료의사가 치료를 하는 원칙이며, 상기 조○○

환자는 MRI 검사 결과 좌측 제5수지 PIPJ 요측부 인대 파열되어 2019. 5. 9. 좌측 제5수지 PIPJ 요측부 인대 repair using suture anchor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지(초진기록지, 수술기록지, 의학사진, 방사선 영상자료 등)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5. 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제5수지 근위지절 요측부 인대 파열”을 승인받은 자로서, 수상 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손가락이 붓고, 통증이 계속되자 2019. 5. 6. 청구인의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여 요측측부인대 재건수술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5. 8. 좌측 수지 MRI를 시행한 후 HE122006 MRI-근골격계(관절외 상지), HB031 FULL PACS 이용료 등을 포함한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9. 5. 7. 초진

C/C) 좌측 5수지가 붓고 아프다고 함

P/E) severe swelling(+)
tenderness on PIPJ finger joint 5th finger Lt.
instability(+)

진단) 좌측 제5수지 PIPJ 요측부 인대 파열(grade 3 or 4)

검사) MSK sono

• 판독 결과: Lt. 5 finger, PIPJ

① Dorsal aspect(Ext. T. central slip, lateral bands): N/S

② Rad. coll. ligament
pRCL: High grade partial tear, upper portion
Proximal은 부었고 distal에서 끊어짐
관절을 꺽었을 때 벌어지고 있었음
aRCL: sprain with swelling

③ Ulnar coll. ligament: N/S

④ Volar aspect- Volar plate: N/S
Hemarthrosis

⑤ Volar aspect-flexor tendon and sheath: N/S

- 2019. 5. 8. Lt. Finger MR 촬영

• 판독 결과: Lt. 5 finger, PIPJ

① Dorsal aspect(Ext. T. central slip, lateral bands)
Moderate effusion

② Rad. coll. ligament
pRCL: High grade partial tear, upper portion
Proximal은 부었고 distal에서 끊어짐
aRCL: sprain with swelling

③ Ulnar coll. ligament: N/S

④ Volar aspect- Volar plate: N/S
Hemarthrosis

⑤ Volar aspect-flexor tendon and sheath: N/S

⑥ Surrounding subcutaneous layer swelling and extended to the distally

- 2019. 5. 9. 수술: 좌측 제5수지 PIPJ 요측부 인대 repair using suture anchor

4) 원처분기관은 초음파 및 이학적 검사 등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로 수부 MRI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60,16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좌측 5수지의 근위지관절 불안정성이 있어 진단 및 수술 전 검사로 MRI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인대파열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적절한 검사라고 판단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제9조(자기공명영상진단)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측 제5수지 근위지절 상병상태에 대해 초음파 및 이학적 검사 등으로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재해자 조○○의 경우 좌측 제5수지 요측부 인대파열로서 정확한 상병상태 확인 및 인대파열에 대한 수술 여부의 결정을 위한 MRI 검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2019. 5. 8. 시행한 좌측 수지부 MRI 검사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좌측 제5수지 요측부 인대파열로서 정확한 상병상태 확인 및 인대파열에 대한 수술 여부의 결정을 위한 MRI 검사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2019. 5. 8. 시행한 좌측 수지부 MRI 검사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9 가관절수술 후 이상 소견에 근전도검사와 같이 시행한 하지 MRI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011260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2. 12.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김○○(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9. 10. 29. 상병명 좌측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관련 가관절수술 후 좌측 비골신경 마비 증상이 있어 하지 MRI를 시행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HE123006 자기공명영상진단-관절외하지-일반 및 HB031 FULL PACS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비골신경마비 증상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로 충분하며 MRI는 과잉으로 사료됨"이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자기공명영상진단-관절외하지-일반 및 FULL PACS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60,16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에게 좌측 비골신경 마비 증상이 있어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한 하지 MRI를 불인정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청구 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사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영상의학사진, 근전도검사 결과지)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18. 6. 21. 계단이동 중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좌측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폐쇄성)'을 승인받은 자로서,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2019. 10. 1. ~ 2019. 10. 29. 통원 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6. 29. 좌측 경골몸통의 불유합 상태로 가관절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 후 재해자가 좌측 발등을 들어 올리기 힘들다고 호소하여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3) 청구인은 재해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2019. 10. 29. 하지 MRI를 시행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HE123006 자기공명영상진단-관절외하지 및 HB031 FULL PACS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4) 원처분기관은 "비골신경마비 증상에 대하여 근전도 검사로 충분하며 MRI는 과잉으로 사료됨"이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자기공명영상진단-관절외하지-일반 및 FULL PACS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60,16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좌측 하퇴부 결골 가관절 수술 후 발생한 비골신경 마비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병변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라. 산업보험법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2019. 10. 29. 업무상 재해 당시 영상자료에서 골절 수상 부위가 무릎에 가까운 곳에 있었고 골절 상태가 심하였던 점, 청구인이 지속적인 통증 및 마비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향후 치료계획 수립 및 증상 원인을 찾기 위해 MRI 촬영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HE123006 자기공명영상진단-관절외 하지 및 HB031 FULL PACS'에 대한 진료비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단,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2019. 10. 29. 업무상 재해 당시 영상자료에서 골절 수상 부위가 무릎에 가까운 곳에 있었고 골절 상태가 심하였던 점, 청구인이 지속적인 통증 및 마비 증상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향후 치료계획 수립 및 증상 원인을 찾기 위해 MRI 촬영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HE123006 자기공명영상진단-관절외하지 및 HB031 FULL PACS에 대한 진료비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시행한 MRI 및 FULL PACS는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 진료비 금 260,160원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

3

이학요법

1 » 골절에 대하여 수술 후 시행한 단순 운동치료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10105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10. 16.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X○○○(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20. 3. 2. ~ 2020. 3. 31. 기간에 심층열치료, 파라핀욕, 간섭파전류치료, 단순운동치료를 각각 26회를 시행한 후 그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물리치료 기간을 고려할 때, 운동치료는 교육을 통해 환자 스스로 실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순운동치료를 주 3회, 총15회만 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55,22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X○○○ 물리치료 시작한지 1달 반부터(3월 01일)부터 단순운동치료를 주 3회만 인정하는 것은 가혹한 것 같다. 깁스치료를 7주 실시하면 관절이 많이 굳습니다. 이시기 운동치료를 잘해야 회복이 빠른데 환자 스스로 혼자 하게 되면 무섭기도 하고 잘 안하게 된다.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한달반만에 운동치료를 주 3회만 인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서 심사청구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진료기록지(경과기록지 등)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주치의 소견서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19. 11.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원위 요골부 골절, 좌측 제4수지 기저부 근위지골부 골절"을 승인받은 자로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위해 청구인의 의료기관에 2019. 11. 28.부터 통원 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심층열치료, 파라핀욕, 간섭파전류치료, 단순운동치료 등을 시행한 후 해당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청구하였다.

3) 재해자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진료기록 일부 발췌)

❍ 진료내역

- 2019. 11. 28. 사지골절도수정복술(요골 및 수지골), 장상지 부목 및 손가락 캐스트 적용

- 2019. 12. 2. 장상지 캐스트 적용

- 2020. 1. 7. 단상지 부목으로 변경
- 2020. 1. 13. 부목 제거, 물리치료 시작(심층열치료, 파라핀욕, 간섭파전류치료, 단순운동치료)
- 2020. 2. 11. LROM improved state, VAS level: 7, ROM Lt. wirst: d.f 20°p.f 30° r.d 10° u.d 20, Lt. 4th finger MP 30° PIP 30° DIP 30°
- 2020. 3. 7. VAS leve1: 6, ROM Lt. wirst: d.f 30°p.f 40° r.d 20° u.d 20, Lt. 4th finger MP 50° PIP 50° DIP 50°
- 2020. 4. 10. VAS level: 6, ROM Lt. wirst: d.f 50°p.f 60° r.d 20°u.d 20°, Lt. 4th finger MP 60° PIP 60° DIP 60°

4) 원처분기관은 수술 후 4개월 경과한 상태로 운동치료는 교육을 통해 환자 스스로 실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순운동치료에 대해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구 분	2020. 3. 2. ~ 3. 31.	부지급내역
MM020 심층열치료	1 × 26일	
MM042 파라핀욕	1 × 26일	
MM080 간섭파전류치료	1 × 26일	
MM101 단순운동치료	**1 × 26일**	**11회 삭감(15회 인정)**

※ 단순운동 실시 이력: ① 2020.1월 -〉 15회(인정), ② 2020.2월 -〉 20회(인정)

4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 X○○○의 경우 상병명 '좌측 원위 요골부 골절, 좌측 제4수지 기저부 근위지골부 골절'로 2019. 11. 28. 도수정복술 후 cast, splint 고정하였다가 2020. 1. 13.부터 물리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수술 및 cast, splint 고정으로 인한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동반되었고, 물리치료 시행으로 운동범위 제한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운동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2020. 3. 2. ~ 2020. 3. 31. 기간 시행한 단순운동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수술 및 cast, splint 고정으로 인한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동반되었고, 물리치료 시행으로 운동범위 제한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운동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단순운동치료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김○○(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20. 3. 2. ~ 2020. 3. 31. 기간에 표층열, 간섭파전류치료, 단순운동치료를 각각 24회를 시행한 후 그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물리치료 기간을 고려할 때, 운동치료는 교육을 통해 환자 스스로 실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순운동치료를 주 3회, 총15회만 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45,18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는 깁스 풀고(7주 CAST실시) 2020. 1. 6.부터 물리치료를 했는데 3월 1일부터 운동치료를 주 3회만 인정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이시기에 혼자 운동치료를 하게 되면 환자스스로는 잘못해 회복이 더디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에서 한 달 반만에 운동치료를 주 3회만 인정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해서 심사청구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진료기록지(경과기록지 등)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주치의 소견서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19. 10. 3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종골 골절”을 승인받은 자로서, 2019. 11. 18. ORIF 수술받은 후 재활치료 위해 2020. 1. 2. 청구인의 의료기관으로 전원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20. 1. 6.부터 물리치료를 시행하였고, 2020. 3. 2. ~ 2020. 3. 31. 기간에 표층열, 간섭파전류치료, 단순운동치료를 각각 24회 시행한 후 그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3) 재해자의 진료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진료기록 일부 발췌)

❍ 진료내역

- 2020. 1. 2. swelling & tenderness heel Rt., LROM of Ankle(++)
- 2020. 1. 6. post op 7Wks → 디디지 말 것, 물리치료 시작(표층열치료, 적외선, 간섭파전류치료, 단순운동치료)
- 2020. 1. 18. ROM exe 효과 있다, 조심해서 디딜 것, VAS level: 8
  ROM: d.f 15˚p.f 30˚ inversion 20˚eversion 10˚
- 2020. 1. 31. ○○성모병원에서 splint off(1/30)
- 2020. 2. 15. VAS leve1: 7, ROM: d.f 15˚p.f 30˚ inversion 20˚ eversion 10˚
- 2020. 3. 10. walking exercise
- 2020. 3. 31. VAS leve1: 6, ROM: d.f 15˚p.f 35˚ inversion 25˚ eversion 15˚
- 2020. 4. 29. VAS level: 6 , ROM: d.f 15˚p.f 35˚ inversion 25˚ eversion 15˚

4) 원처분기관은 단순운동치료의 경우 교육을 통해 환자 스스로 실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단순운동치료에 대해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구 분	2020. 3. 2. ~ 3. 24.	부지급내역
MM015 표층열치료	1 × 24일	
MM300 적외선치료	1 × 18일	18회 삭감
MM020 심층열치료	1 × 6일	
MM080 간섭파전류치료	1 × 24일	
MM101 단순운동치료	**1 × 24일**	**9회 삭감(15회 인정)**

※ 단순운동 실시 이력: ① 2020.1월 -〉 13회(인정), ② 2020.2월 -〉 19회(인정)

4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 김○○의 경우 상병명 '우측 종골 골절'로 2019. 11. 18. ORIF 수술 후 cast, splint 고정하였다가 2020. 1. 6.부터 물리치료를 시행한 상태로, 수술 및 cast, splint 고정으로 인한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동반되었고, 물리치료 시행으로 운동범위 제한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운동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해자에게 2020. 3. 2. ~ 2020. 3. 31. 기간 시행한 단순운동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수술 및 cast, splint 고정으로 인한 관절 운동범위의 제한이 동반되었고, 물리치료 시행으로 운동범위 제한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단순운동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단순운동치료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폐기능검사 결과, 정상소견에 시행한 폐질환운동재활치료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5400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이○○(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8. 12. 6. ~ 2019. 1. 2. 입원 요양 중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등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재활치료 비용을 포함한 진료비를 원처분기관에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승인상병 및 진료내역을 참조하여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실시횟수 전체(11회)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674,24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부지급에 대하여 이의신청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 소견서

3) 진료기록지(입원기록지, 폐기능검사지 등)

4) 원처분기관 의견서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18. 8.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둔부 및 성기를 제외한 전신의 체표면적 50% 2-3도 화염화상"을 승인 받은 자로서, 수상 후 화상치료 및 두 차례 식피술을 받은 후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8. 12. 6. ~ 2019. 1. 2. 입원요양 중 LOM of bilateral hand, both knee에 대한 재활치료를 적외선치료, 전기자극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복합운동치료, 복합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폐질환 운동재활치료 등을 아래와 같이 실시한 후, 재활치료 비용을 포함한 진료비를 원처분기관에 청구하였다.

구 분	2018.12.6.~2019.1.2
적외선치료(MM010)	2×14일, 1×7일
전기자극치료(MM060)	2×1일, 1×1일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MM085)	1×21일
복합운동치료(MM102)	1×20일
복합작업치료(MM112)	2×14일, 1×4일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MM114)	1×17일
폐질환운동재활치료(MM440)	1×11일

- 2018. 12. 7. 시행한 폐기능검사에 대한 해석은 The subject has a FEV_1/FVC % ratio of 83.1% and a FVC value of 5.15L which are within the normal

limits. No evidence of a diffusion defect is indicated by a diffusing capacity value of 27.12mL/min/mmHg which is within the normal limits. Test results indicate a Normal Pulmonary Function.으로 확인된다.

3) 원처분기관은 재활치료 중 폐질환 운동재활치료에 대하여 실시횟수 전체(11회)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674,24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서

환자는 화염화상 40%으로 재활치료 중인 환자로 현재 양측 안면, 경부 및 양측 상·하지의 피부 병변 구축장애 남아 있어 지속적인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흡입화상 이후 호흡기능에 심각한 제한 남아 있어 폐질환 운동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화상으로 인한 호흡기계 기능에 심각한 제한이 있다고 하였으나 폐기능검사 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폐질환 운동재활치료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폐질환 운동재활치료는 화상으로 인한 호흡부전 및 폐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시행할 수 있으나, 재해자의 경우 2018. 12. 7. 시행한 폐기능검사 상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폐질환 운동재활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폐질환 재활치료 비용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4

처치료

1 » 수술부위 단순처치와 같은 날 실시한 M0134 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배액감시 및 처치료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7090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7. 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박○○(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9. 1. 21. 요추 제 3-4번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고 2019. 1. 22. ~ 2019. 1. 23. 같은 날 동일 수술 부위에 대하여 단순처치와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를 실시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M0111 단순처치 2일×1회/일(1일당) 및 M0134 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 배액감시 및 처치(1일당) 2일×1회를 각각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진료기록 확인 결과, 수술 후 동일 부위에 대하여 단순처치와 자연배액감시를 각각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의 경우 1일당 수가로서 같은 날에 다른 처치 등과 실시하더라도 주된 처치의 소정수가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소정수가가 높은 단순처치 2회(2회 실시)에 대하여 인정하고, 수술 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 1회(2회 실시)에 대하여는 불인정한 결과 진료비 4,70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에게 같은 날 수술 부위에 시행한 자연배액 감시 및 단순처치 중 자연배액 감시가 불인정되어 관련 자료 첨부하여 심사청구 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의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사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4) 진료기록지(경과기록지, 간호처치기록지)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19. 1. 4. 건축 현장에서 작업 중 허리를 다치게 되었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요추간판탈출증 3-4번요추'를 승인 받은 자로서,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2019. 1. 21. ~ 2019. 2. 1. 입원 요양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간호기록지 상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재해자는 2019. 1. 21. 수술방에서 요추 제 3-4번간 추간판제거술 및 수술 부위에 hemovac keep 상태로 일반 병실로 came back 되었다.
- 1. 22. 06:00 H/V milking done. function well., 10:00 op site dressing was done., 13:05 H/V drainage 13cc out., 20:00 H/V drainage 9cc out됨.
- 1. 23. 06:00 H/V milking done. function well., 10:00 op site dressing was done, H-vac removed.

3)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1. 21. 요추 제 3-4번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고 2019. 1. 22. ~ 2019. 1. 23. 같은 날 동일 수술 부위에 대하여 단순처치와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를 실시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M0111 단순처치 2일×1회/일(1일당) 및 M0134 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 배액감시 및 처치(1일당) 2일×1회를 각각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4)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진료기록 확인 결과, 수술 후 동일 부위에 대하여 단순처치와 자연배액감시를 각각 시행하였으나, 수술 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의 경우 1일당 수가로서 같은 날에 다른 처치 등과 실시하더라도 주된 처치의 소정수가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소정수가가 높은 단순처치 2회(2회 실시)에 대하여 인정하고, 수술 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 1회(2회 실시)에 대하여는 불인정한 결과 진료비 4,70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에 dressing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동일 날 시행할 경우 자연배액 감시만 인정하여 소정 단가 높은 단순처치로 인정한 것으로, dressing은 환자의 수술 상처의 소독 및 2차 감염을 막고자 시행하며, 자연배액 감시 및 처치료는 bloody color, milking, out put 등을 확인하고 간호기록 역시 따로 시행 기재하고 있으며, 자연배액 감시와 dressing의 관리 및 형태가 다르기에 각각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자연배액감시 및 처치료는 hemovac 삽관부위의 dressing으로 별개의 처치료는 불인정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수술 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 배액감시 및 처치와 단순처치는 각각의 행위이므로 각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 등 (자-2-1)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계법령, 간호기록지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상대가치점수 행위정의에 따르면 「M0134 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 배액감시 및 처치」의 적응증은 수술부위(복부, 흉부, 경부 등)에 배액관을 삽입한 경우로서, 배액관에서 나오는 물질의 양 및 특성(혈액, 고름 등)을 감시 및 관찰하는 것이다. 또한 「M0111 단순처치」의 적응증은 일반처치 또는 수술 후 처치인 경우로서, 환자의 창상부위를 개방하고 항균성 용제(알코올, 포비돈)로 무균 소독을 하고 멸균된 거즈로 창상부위를 감싸고 처치를 마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간호기록지에 따르면 2019. 1. 21. 요추 제3-4번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의 삼출물 배출을 위해 2019. 1. 22. ~ 2019. 1. 23(2일)간 hemovac을 유지하면서 삼출액 배출 및 hemovac 기능 등을 관찰한 것으로 확인

되고, 하루에 한번 “Op site dressing was done”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hemovac 관리에 대한 행위 및 수술 부위의 단순처치는 각각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시행한 M0134 수술후 튜브삽입에 의한 자연 배액감시 및 처치료 관련 비용(4,700원)은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 진료비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원처분을 취소한다.

2 객담배출이 어려운 환자에게 시행한 M0045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1일 2회 산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6899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권○○(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9. 6. 1. ~ 2019. 6. 30. 상병명 뇌실내출혈 등으로 가래 양이 매우 많아 하기도 증기 흡입 처치를 시행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M0045 하기도증기흡입치료〔1일당〕25일×2회/일을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하기도증기흡입치료는 1일당 수가로서, 재해자의 상병상태 상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급여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25일×1회/일(25일×2회/일 실시)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19,19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는 가래 양이 매우 많아 하기도 증기 흡입 처치를 1일 2회 시행하였으나, 1일 1회로 인정되어 관련 자료 첨부하여 심사청구 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의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사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진료기록지(경과기록지, 간호처치기록지)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경비원으로서 매일 06:00에 출근 익일 06:00에 퇴근(주 72시간)하는 등 업무과다로 쓰러졌다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뇌실내출혈, 뇌내출혈, 천골부위 욕창, 수두증, 패혈성 쇼크, 요로감염'을 승인 받았다. 이후 타 의료기관에서 혈종제거를 위한 개두술 및 관혈적 기관절개술(2015. 7. 5.), 두개골성형술(2015. 12. 29.) 등을 시행 받았고, 2019. 5. 13. 재활치료를 위해 청구인 의료기관에 전원되어 2019. 6. 1. ~ 6. 30. 입원 요양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Progress note에 따르면 재해자의 상병상태는 "우측 편마비, 인지저하, 연하 곤란, 기관절개 등 합병증 발생하여 재활치료 중이며, aspiration 위험 높고 영양 결핍 가능성 높아서 일단 L-tube 통해 영양섭취 중임. 매트에서 간병인 보조하에 chair sitting 유지 가능하고 모든 질문에 yes라 대답하나 반응 속도 빠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6. 1. ~ 2019. 6. 30. 가래 양이 매우 많아 하기도 증기 흡입 처치를 시행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M0045 하기도증기흡입치료〔1일당〕25일×2회/일을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4) 원처분기관은 하기도증기흡입치료는 1일당 수가로서, 재해자의 상병상태 상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급여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25일×1회/일(25일×2회/일 실시)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19,19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2015. 7. 5. 뇌내출혈로 우측 편마비되어 현재 인지저하. 연하곤란, 기관지 절개상태 등 합병증에 대해 타원 거쳐 본원 2018. 5. 13. 입원하여 재활치료 중임. 가래 양이 많아 하기도 증기흡입 1일 2회 시행 중이며, 비록 천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스스로 가래를 뱉을 수 없어 간병자가 기계를 이용해 적용하여 가래를 뽑아내고 있으며, 그 횟수가 매우 많고, 좀 더 원활히 뽑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하기도 증기흡입 처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가래를 원활히 제거하지 못하면 기도로 흡입되어 흡입성 폐렴이 되고 폐렴으로 발전하지 않더라도 호흡기능에 막대한 악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횟수의 하기도 증기흡입이 하는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고 판단함.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상기자는 2015. 7. 5. 발병한 뇌실내 출혈, 뇌내 출혈 승인 받고 치료 받았음. 우측 편마비 심하고 기관절개술 관급식 상태로 재활치료 받기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하루 2차례 하기도 증기 흡입치료를 25일 받았는데 환자 상태는 폐렴이 없고 상기도 감염이 없는 안정된 상태여서 급여기준인 1일 1회 하기도 증기 흡입치료 인정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2호)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M0045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마.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52호(행위) 「자4-1 하기도증기흡입치료 급여기준」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계법령, Progress Note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하기도 증기흡입치료(M0045) 급여기준은 "천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객담배출이 곤란하여 전신 투여(경구 또는 주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직접 하기도에 국소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별로 인정" 하는 것으로서, 재해자의 경우 경과기록지 상 현재 뇌내 출혈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인지저하, 연하곤란 등으로 가래가 많은 상태이지만 폐렴이 없고 상기도 감염이 없는 안정된 상태로 확인된다. 따라서 M0045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1일당 수가로서 2019. 6. 1. ~ 2019. 6. 25. 25일×1회/일 인정한 원처분 결정은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금 119,190원)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3 » 족지절단술 후 시행한 M0583 고압산소요법(2시간 초과)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6080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도○○(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개방성 좌측 엄지발가락 분쇄골절, 개방성 좌측 2번째 발가락 골절, 좌측 1, 2번 발가락 으깸손상, 피부괴사,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양측 경골 염좌'에 대하여 좌측 1족지 및 2족지 절단 수술 후 절단부위 최소화 및 경계 명확화와 피부괴사 진행을 막기 위하여 고압산소요법을 시행한 후 M0583 고압산소요법×8회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고압산소요법의 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국소피판술이 아닌 절단술의 일부분으로 고압산소요법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M0583(공휴일 및 야간가산 포함) 고압산소요법×8회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754,28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압산소요법은 절단 수술 당시 시행한 국소피판술 봉합 부위의 괴사 가능성과 골수염으로의 진행 우려로 붓기의 호전과 혈관 재생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괴사의 진행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청구하였으나 조정하였기에 심사청구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지(의사소견서,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등)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5)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20. 1.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개방성 좌측 엄지발가락 분쇄골절, 개방성 좌측 2번째 발가락 골절, 좌측 1, 2번 발가락 으깸손상, 피부괴사,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양측 경골 염좌'을 승인받은 자로서, 피부 괴사로 인한 수술 치료를 위해 2020. 4. 1. ~ 2020. 4. 10. 입원 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20. 4. 2. 다음과 같이 수술 등을 시행하고, 절단부위 최소화 및 경계 명확화와 피부괴사 진행을 막기 위하여 고압산소요법을 시행한 후 M0583 고압산소요법×8회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수술내역: 20202. 4. 2.

- 수술전 진단명: crushing injury with necrosis 1st and 2nd toes foot LT
- 수술명: Transphalangeal amputation proximal phalanx G. toe foot LT
  Transphalangeal amputation middle phalanx 2nd toe foot LT
- Operative findings: the 1st and 2nd toes have been in state of necrosis

❍ 협의진료 의뢰서: 2020. 4. 3.(정형외과에서 응급의학과 협의진료)

- 의뢰사유: for HBOT & T/O, 본 환자 2020. 4. 2. Amputation 수술 시행하신 분으로 귀과 f/u 하던 분으로 HBOT 원하시어 협진의뢰함. 본과에서 dessing외 치료 남아있지 않아 T/O 의뢰드리며 전과시 드레싱 본과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음

❍ 전입기록(응급의학과)

- 치료계획: HBOT / Post-operative wound management / senal lab f/u
- 회신내용: 본과로 전과하여 HBOT 진행하겠음. Post-operative dressing 유지 부탁함

❍ 혈액검사

구분	2020.4.3.	2020.4.5	2020.4.8
ESR	6mm/h		3mm/h
CRP	0,49mg/dl	0.4mg/dl	0.4mg/dl

3) 원처분기관은 고압산소요법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4호(행위)〕 및 자문의의 “절단술의 일부분으로 국소피판술로 보이지 않아 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M0583(*010, *050) 고압산소요법(공휴일·야간가산 포함)×8회에 대하서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 도○○의 경우 상병명 '개방성 좌측 엄지발가락 분쇄골절, 개방성 좌측 2번째 발가락 골절, 좌측 1,2번 발가락 으깸손상 등'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피부괴사 진행하여 2020. 4. 2. Amputation 수술 시행한 상태로, 수술 내역이나 상병상태 등을 감안해 볼 때, 고압산소요법 급여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수술 이후 피부괴사 진행하여 2020. 4. 2. Amputation 수술을 시행한 상태로, 수술 내역이나 상병상태 등을 감안해 볼 때, 고압산소요법 급여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5

수술료

1 » 동일 마취하에 진료과를 달리하여 골수염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식피술을 N0175 부분층피부이식술-기타(25㎠)×100% 산정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62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임○○(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9. 10. 24. "Debridement, AB loaded cement spacer change, STSG from Rt. thigh"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를 N0024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하퇴골)-복잡×100%와 N0175 식피술(부분층피부이식: 기타 25㎠ 미만)×100%로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동일 피부 절개 하에 해당과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병변을 수술한 경우, 진료 전문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70%(상급종합병원)를 산정한다는 심사기준에 따라 N0175 식피술을 제2의 수술로 보아 N0175004 식피술(부분층피부이식: 기타 25㎠ 미만)/제2수술×1로 변경 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87,21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는 Chronic osteomyelitis, lower leg(fibula, tibia, knee joint) 진단하 STSG from Rt thigh 시행(수혜부와 공여부 각각 부위, 각각 절개) 하였으나 조정되어 이에 대한 자료(의무기록) 첨부하여 이의신청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지(입퇴원요약기록지, 수술기록지, 의학사진 등)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2. 4.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경·비골골절, 우측 경골의 만성 골수염"을 승인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Anti cement change, I & D, 유리피판술 등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10. 24. 정형외과에서 골수염에 대한 수술과 성형외과에서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를 N0024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하퇴골)-복잡×100%와 N0175 식피술(부분층피부이식: 기타 25㎠ 미만)×100%로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정형외과〉

- 수술 전 진단명: other chronic osteomyelitis, lower leg (fibula, tibia, knee joint)
- 수술 전 수술명: Debridement

- 수술 후 수술명: Massive irrigation and debridement
  AB loaded cement spacer exchange

〈성형외과〉

- 수술 전 진단명: other chronic osteomyelitis, lower leg (fibula, tibia, knee joint)
- 수술 후 진단명: Skin defect on Rt. lower leg
- 수술 후 수술명: STSG from Rt. thigh
- 수술방법: 정형외과 수술을 끝마친 상태로 PS에 인계되었다.
  - Rt. lower leg의 skin defect는 약 1×2cm의 마름모 모양임
  - debridement 후 Rt. anterior thigh에서 skin harvest 함
  - defect site에 suture 후 vaseline gauze 덮고 tie over compression
  - skin donor site는 foam을 얹어 dressing 함

3) 원처분기관은 동일 피부 절개 하에 해당과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병변을 수술한 경우, 진료 전문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70%(상급종합병원)를 산정한다는 심사기준에 따라 N0175 식피술을 제2의 수술로 보아 N0175004 식피술(부분층피부이식: 기타 25㎠ 미만)/제2수술×1로 변경 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87,21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의거, 식피술은 제2의 수술로 인정함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마. 2가지 이상의 수술시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11.1. 시행)

1. 동일 절개하에서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이란 2가지 이상 수술 중 소정금액이 높은 수술을 기준으로 함. 이 경우 '소정금액'이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각 분류항목에 기재된 금액을 말함.
2. 동일 피부 절개하에 해당과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병변을 수술한 경우, 진료전문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산정지침] (5)항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고시 제2016-204호, '16.11.1. 시행)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 임○○에게 2019. 10. 24. 실시한 식피술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관련 고시에 따라 동일 피부 절개하에 해당과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병변을 수술한 경우, 진료전문과목이 다르더라도 동일 마취하에 연속하여 수술을 하는 것이므로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는 바, 청구한 '식피술'은 동일 마취하에 실시된 제2의 수술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처분기관의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동일 피부 절개하에 해당과를 달리하여 각각 다른 병변을 수술한 경우에도 주된 수술 100%, 그 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식피술'은 동일 마취 하에 실시된 제2의 수술로 봄이 타당하므로 N0024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을 주된 수술로 100% 인정하고, N0175 식피술[부분층피부이식]에 대하여는 70%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2 » 욕창 조직 제거 및 근피부피판술 후 산정한 S0166 근피부피판술 및 N0234004 연부조직종양적출술(제2수술)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906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9. 10. 2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근막피부피판술(S0168)의 국소피판술(S0161)의 변경 인정 관련 진료비 차액 597,9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천○○(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9. 9. 5. pressure sore ischial area, Lt. & pressure sore sacrum에 대하여 debridement, fasciocutaneous flap & debridement, local advancement flap을 시행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S0168 근막피부피판술×1, N0234004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육내양성종양×1, & S0161 국소피판술×1, N0234004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육내양성종양×1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를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근막을 피판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S0168 근막피부피판술을 국소피판술(S0161)로, 좌측 둔부 하단부의 욕창을 큐렛으로 긁거나 노출된 부위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서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육내양성종양을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M0031)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근막피부피판술(S0168)을 국소피판술(S0161)로 변경 인정을,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육내양성종양(N0234004)을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M0031004)로 변경 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774,14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좌골부 욕창의 완전 절제 후 대둔근 절단부의 큰 공간과 넓은 피부 결손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대둔근 근막을 포함하여 양쪽에서 각각 6×5㎝의 근막피부피판을 각각 거상함. 먼저 대둔근을 당겨 봉합하였고 이후 근막피부피판을 전진하여 결손 부위를 재건함. 이에 본 수술은 근막피부피판술에 합당한 소견임. 환자의 병소인 좌골부 욕창은 대둔근 일부와 주변 조직이 괴사되었고 내측으로는 좌골에 인접하였고, 천추부 욕창 또한 대둔근 일부와 주변 조직이 괴사되었고 내측으로는 천골에 인접하여 있어 욕창 조직을 완전절제(En Bloc)한 것임. 이는 연부조직의 염증성 창상에 대한 변연절제술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욕창에 대한 En Bloc 절제술은 연부조직종양적출술(S0234) 또는 근농양배농술(N0842)로 준용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사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

4)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의학사진, 입원경과가록지)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08. 2. 22. 지반 천공기 보수를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졌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급성파열) 등'을 승인 받은 자로서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2019. 8. 14. ~ 2019. 9. 20. 입원 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9. 5. pressure sore ischial area, Lt. & pressure sore sacrum에 대하여 debridemen, fasciocutaneous flap, & debridement, local advancement flap을 시행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S0168 근막피부피판술×1, N0234004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육내양성종양×1, & S0161 국소피판술×1, N0234004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육내양성종양×1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를 하였다.

3) 원처분기관은 "근막을 피판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S0168 근막피부피판술을 국소피판술(S0161)로, 좌측 둔부 하단부의 욕창을 큐렛으로 긁거나 노출된 부위의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것으로서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육내양성종양을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M0031)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근막피부피판술(S0168)을 국소피판술(S0161)로 변경 인정을,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육내양성종양(N0234004)을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M0031004)로 변경 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774,14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한 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진료비청구 내역	조정내역
(Lt. ischial) S0168 근막피부피판술×1 (주된 수술)	S0161 국소피판술×1
N0234004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육내양성종양 ×1 (제2의 수술)	M0031004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1
(sacrum) S0161 국소피판술×1 (주된 수술)	인정
N0234004 연부조직종양적출술-근육내양성종양 ×1 (제2의 수술)	M0031004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1

4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자 천○○에게 2019. 9. 5. 수술을 실시하고 청구한 진료비 내역 중 근막피부피판술은 수술기록지에도 근막피부 피판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해당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진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연부조직종양적출술(N0234)은 좌측 둔부 하단부의 욕창을 큐렛으로 긁거나 노출된 부위를 변연절제술을 의미하여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M0031)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주분과 같이 결정함.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단,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수술기록지, 의학사진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근막피부피판술은 수술기록지에도 근막피부 피판을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해당 수술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진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연부조직종양적출술(N0234)은 좌측 둔부 하단부의 욕창을 큐렛으로 긁거나 노출된 부위를 변연절제술을 의미하여 근막절개하 이물제거술(M0031)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라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해자의 좌골부 욕창 부위에 시행한 근막피부피판술(S0168) 비용은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수가차액 597,900(종별가산금액 포함)].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근막피부피판술(S0168)의 국소피판술(S0161)의 변경 인정 관련 진료비 차액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3 T12 골절에 시행한 N0468 척추후방고정술(T11-T12-L1)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5439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5. 22.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정○○에게 승인된 상병명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천추골절"에 대하여 2020. 3. 3. 척추후방고정술(T11-T12-L1)을 시행한 후, 수술료 N0468 척추후방고정술-흉추×100% 및 척추고정용 치료재료대, 전신마취료 등을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의 후방기기 고정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N0468 척추고정술-후방고정-흉추×100% 및 척추고정용 치료재료대, 전신마취료 등 후방고정술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3,988,46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는 2020년 1월31일 비닐하우스 작업 중 떨어진(1.5m Falling down) 재해로 후두부 외상 및 의식소실, 허리 및 엉덩이 통증으로 본원 입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T12 압박골절 압박률 30% 소견 보여 보존적 치료 중 통증 악화 및 시행한 마지막 검사상 압박률 50%이상 및 후만각 변형 40도 이상 보이며,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후에도 통증 지속되어

척추후방고정술 시행하였습니다. 시술 이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 후 통원진료 가능한 상태로 참고하시어 최선의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소견서(2020. 6. 8)

4)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서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20. 1. 3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천추골절'을 승인받은 자로서, 입원 요양(2020. 3. 1. ~ 2020. 3. 30.)중에 척추후방고정술을 시행받았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20. 3. 3. 다음과 같이 수술 등을 시행한 후 수술료N0468 척추고정술-후방고정-흉추×100% 및 척추고정용 치료재료대, 전신마취료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입원 경과 기록지

- 2020. 2. 17: 금요일 x-ray f/u: no IC
- 2020. 2. 20 / 2020. 2. 24: 조금 나아요.
- 2020. 2. 28: x-ray에서 압박율 50% 이상, 후만각 변형 40도 이상 보임. 미장일 하심. 추후 일 고려하였을 때 척추체 안정 필요함. 통증 심한 상태로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요함.
- 2020. 3. 2. 통증 지속됨. 허리 빠지는 느낌. 내일 수술적 치료
- 2020. 3. 3. 수술명: PL fusion T11-T12-L1 c MIS system, 수술: finding c-arm에서 T12 압박골절 소견 보이고 있음.

❍ 수술내역: 2020. 3. 3.

- Operation: 척추고정술-후방고정-흉추
- Procedure: PL fusion T11-T12-L1 c MIS system

3) 원처분기관은 척추경 나사를 이용한 척추고정술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행위)〕및 자문의(2인)의 "후방지주 손상 없고 압박율 38%, 후만각 변형 23도로 기구 고정술은 과도한 수술이며, 수술기록지에서 특별한 소견 없고 MRI 상 후방 구조물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기기 고정술의 적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으로 척추후방고정술-흉추 및 관련 마취료, 치료재료대 등에 대해서는 부지급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 정○○의 경우 2020. 1. 31. 발생한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을 진단받아 1개월 가량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상 직후 압박률은 29% 정도였으나 1개월 뒤 압박률은 44%로 수상 당시에 비해 압박 변형이 더 진행되어 불안정성이 증가된 양상으로 확인되는 바, 상병상태상 척추 기기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척추 기기고정술 관련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진료기록부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2020. 1. 31. 발생한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을 진단받아 1개월 가량 안정 가료 및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수상 직후 압박률은 29% 정도였으나 1개월 뒤 압박률은 44%로 수상 당시에 비해 압박 변형이 더 진행되어 불안정성이 증가된 양상으로 확인되는 바, 상병상태상 척추 기기고정술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척추 기기고정술 관련 비용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행한 N0468 척추고정술-후방고정-흉추 ×100% 및 척추고정용 치료재료대, 전신마취료 등 척추고정술 관련 비용은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4 요추후방고정술(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 시 시행한 N1493004 추간판제거술(요추, 제2수술)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540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신○○(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감염성 척추병증, 척수손상의 후유증"에 대하여 2019. 9. 18. "interbody fusion, thracic spine, posterior(L2-S1)"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를 「N2470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 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1 및 「N1493004 추간판제거술-요추/제2수술」×1로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추간판제거술은 척추 고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N1493004 추간판제거술-요추/제2수술×1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562,14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의학적 사유에 따라 시행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3) 주치의사 소견서

4) 진료기록지(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05. 7. 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흉추골절, 하지마비, 감염성 척추병증, 척수손상의 후유증, 신경성 배변, 신경인성 방광, 다발성 늑골골절(좌4-8번, 우6번), 성기능 장애, 뇌진탕후 증후군, 중증도 우울증 에피소드, 불용성 골다공증, 욕창성 궤양(천골부위),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승인받은 자로서, ○○병원, □□병원 등에서 척추후방고정술(T6-7-9-10-11-L1-2), L4-5 fusion, 척추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 등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9. 18.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를 「N2470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1 및 「N1493004 추간판제거술-요추/제2수술」×1로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수술 전 진단명: Pyogenic spondylitis lumbar region

- 수술명: interbody fusion, thracic spine, posterior(L2-S1)
- 수술 소견: Fusion extension to pelvis using dominos, PLIF at L4/5 using Synmesh cages, posterolateral and posterior onlay fusion at L2 to S1 using local bone, Allobone chip 60cc Bonegener 5cc, Novosis BMP2 1mg

3) 원처분기관은 추간판제거술의 경우 척추 고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참조하여 N1493004 추간판제거술-요추/제2수술×1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562,14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척추염 후유증 및 골 괴사로 요추5번 골 파괴가 매우 심하여 요추5번을 제거하고, 요추4-5간 추간판을 모두 제거하고, corpectomy에 상응하는 골 절제 후 mesh cage 삽입하였던 경우인데 사실 척추체제거술로 수술료 산정하려다 요추5번 일부 뼈가 남은 부위가 있어 추간판제거술만 산정하신 분입니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영상의학 및 수술기록지 검토 결과 2019. 9. 18. 척추후방기기고정술은 타당하며, 요추 4~5번간 일부 과립성 조직(일종의 흉터조직)을 제거하자 괴사성 액체가 있어 제거하였고 그 부분이 비어 있어 케이지 및 뼈이식을 이용한 유합술이 필요한 것으로 소견됨. 따라서 추간판제거술은 척추고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상기 환자의 제4-5요추간 화농성 척추추간판염에 대하여 후방기기 고정술 연장술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제거술 및 감염뼈 조직 제거술 및 cage 삽입술을 시행한 상태로, 감염 조직에 대하여 광범위한 추간판 제거술 및 감염뼈 조직 제거술을 시행한 것은 cage를 포함한 후방기기 고정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추간판 제거술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마.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척추수술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 2019. 1. 1. 시행)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 신○○과 관련하여 "척추염 후유증 및 골괴사"로 2019. 9. 18. L2-S1간 후방고정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 N2470 척추고정술[기기, 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1, N1493004 추간판제거술-요추/제2수술×1를 산정하여 진료비 청구하였으나, 제4-5요추간 화농성 척추추간판염으로 화농성 농양 및 추간판을 제거한 후 cage를 이용한 후방기기 고정술 시행한 것으로, 수술 내역 및 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추간판제거술은 후방기기 고정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방사선 영상자료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수술의 경우 제4-5요추간 화농성 척추추간판염으로 화농성 농양 및 추간판을 제거한 후 cage를 이용한 후방기기 고정술 시행한 것으로, 수술 내역 및 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추간판제거술은 후방기기 고정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5 » 수지 절단에 혈관성형술, 신경봉합술,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후 산정한 N0588 사지접합술(수지)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6941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0. 7. 21.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N0615 사지골절정복술×100%, 02073 혈관결찰술×200%, S4604 신경봉합술×50% 관련 비용'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단, 기지급분 제외)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신○○(이하 "재해자"라고 한다)에게 상병명 "좌 엄지 근위지골 골절 및 완전절단, 연부조직 결손"에 대하여 양측 혈관 및 신경과 수배부의 정맥을 박리 후 골 정복술 및 내고정하고 양측 동맥 및 신경 봉합 후 수배부 2개의 정맥까지 3시간동안 접합술을 시행한 후, N0588 사지접합술×100%을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건봉합술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사진접합술을 골·신경·혈관성형술 각각 인정해야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N0588 사지접합술×100%을 OA633 혈관성형술×100%, S4604 신경봉합술×50%, N0605 사지골절정복술×50%로 변경하여 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894,95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는 좌 엄지 근위지골부 완전 절단으로 수지에서 양측 혈관 및 신경과 수배부의 정맥을 박리 후 골 정복술 및 내 고정하고 양측 동맥 및 신경 봉합 후 수배부 2개의 정맥

까지 3시간에 걸쳐 봉합하여 재 접합 성공하였습니다. 마취 전에 절단된 손가락에서 박리하는 시간도 약 1시간 걸립니다. 이를 마치 원위지골 이하 절단을 봉합하는 수술료로 조정하여 심사청구 합니다. 현재 환자의 엄지는 잘 생존하였고, 엄지의 기능이 수상 전과 같이 완전하지는 않으나 관절 운동도 가능하고 성형적인 측면이나 외관상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등)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 소견서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20. 5. 8.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좌 엄지 근위지골 골절 및 완전절단, 연부조직 결손'을 승인받은 자로서, ○○병원에서 2020. 5. 8. ~ 2020. 6. 17.까지 입원 요양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한 후, N0588 사지접합술×100%을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수술내역: 2020. 5. 9.

- pre op dianogsis: LT. thumb total amputation(prox. phalanx fx 동반)
- Operation: rettach(ORIF c wire×2, both arteriorraphy, both neurorraphy, venorraphy)
- OP finding & PROCEDURES: 동맥 및 정맥탐색술 후 골절부 단축시행 후 정복하여 강선고정, 현미경하 지간동맥 및 신경에 대해 탐색술 시행 양측 지간동맥, 신경에 대해 현미경 하 봉합술 시행, 굴곡건 근위부로 retraction되어 봉합이 어려운 상태로 추후 원위지간 관절 유합술 시행, 배부의 정맥 2개에 대해 현미경하 정맥봉합술 시행 배부 연부 조직 손상으로 인한 괴사 가능성 메디콜로 써지콘 투여

3)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의 "건봉합술이 되지 않았으므로 사지접합술로 청구하지 말고 골·신경·혈관성형에 대하여 각각 청구해야 함"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OA633 혈관성형술×100%, S4604 신경봉합술×50%, N0605 사지골절정복술×50%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N0588 사지접합술×100%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16.11.1.시행)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시 산정방법」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5호('11.1.1.시행)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부위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이하) 손상의 단단문합술 시행시 수가 산정방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의 상병부위에 양측 동맥 및 정맥문합술, 신경봉합술과 골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 후 N0588 사지접합술×100%을 산정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나, 재해자의 경우 좌 엄지 근위지가 완전 절단된 상태로 건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사지접합술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4개의 혈관을 문합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혈관문합술을 인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진료비는 N0615 사지골절정복술 100%×1개, 02073 혈관결찰술 50%×4개, S4604 신경봉합술 50%×1개로 변경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좌 엄지 근위지가 완전 절단된 상태로 건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사지접합술은 인정하기 어려우나, 4개의 혈관을 문합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혈관문합술을 인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진료비는 N0615 사지골절정복술100%×1개, 02073 혈관결찰술 50%×4개, S4604 신경봉합술 50%×1개로 변경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시행한 수술은 사지골절정복술 및 4개의 혈관결찰술, 신경봉합술에 대하여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N0615 사지골절정복술×100%, 02073 혈관결찰술×200%, S4604 신경봉합술×50% 관련 비용에 대한 원처분을 취소하고(단, 기 지급분 제외),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6 제2,3,4 족지 다발골절에 시행한 N0605 사지골절정복술(수족지)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547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박○○에게 상병명 "좌 제2,3,4 족지 골절, 개방성, 좌 제2,3 중족골 경부 분쇄 골절, 좌 제3족지 신전근건 완전파열, 좌 제3,4족지 탈구, 좌 족부 으깸 손상"에 대하여 2020. 3. 25. 좌측 족지 골절부의 정복술 및 2020. 5. 19. 금속핀 제거술 등을 시행한 후, N0605 사지골절정복술×500% 및 N0979 사지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500%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수술기록지 및 방사선 영상자료 등을 참조할 때 2족지 및 3족지를 동일 인접부위에 대한 수술로 판단되어 2족지 및 3족지는 각각 N0605 사지골절정복술 ×150% 및 골절 부위별 산정한 핀 제거술은 족지별로 인정함에 따라 N0605 사지골절 정복술×100% 및 N0979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200%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444,72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환자의 2020. 3. 25. 수술료 조정에 관련하여 Lt. 2nd, 3rd ,4th toe (각각 산정가능)와 Lt 2nd, 3rd MT head(각각 산정가능)과 2020. 5. 19. k-wire removal(각각 산정가능) 수술료 조정에 관련으로 보험급여 산정기준에 준하는 재심사 요청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6)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20. 3.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 제2,3,4 족지 골절, 개방성, 좌 제2,3 중족골 경부 분쇄 골절, 좌 제3족지 신전근건 완전파열, 좌 제3,4족지 탈구, 좌 족부 으깸 손상'을 승인받은 자로서, 수술 치료를 위해 2020. 3. 24. ~ 2020. 5. 31. 입원 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 N0605 사지골절정복술 ×500% 및 N0979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500%으로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수술내역: 2020. 3. 25

- 수술전 진단명: open fx & d/l 4th MT neck / D/L 3rd fx. 2nd toe and 2nd MT HEAD FOOT. LT.

- 수술명: open reduction Lt. 2nd, 3rd, 4th toe, Lt. 2nd, 3rd MT head, tenorraphy 3rd extensor tendon

○ 수술내역: 2020. 5. 19.

- 수술전 진단명: necrotic change LT. foot.

- 수술명: curavac change / pin removal

3) 원처분기관은 1차 수술(2020.3.25.)은 “open reduction Lt. 2nd, 3rd, 4th toe, Lt. 2nd, 3rd MT head,” 부위에 사지골절정복술을 시행하고, N0605 사지골절정복술×500%로 산정하였으나, 좌측 2족지 및 3족지에 대한 골절 수술은 동일 인접부 수술로 각각 N0605 사지골절정복술×150% 인정하고, 2차 수술(2020.5.19.)은 해당 골절부 핀제거술로 N0979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500%를 산정하였으나, 수술의 난이도 등 고려하여 족지별로 인정함에 따라 그 외 수술료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 박*봉에게 상병명 ‘좌 제2,3,4 족지 골절, 개방성, 좌 제2,3 중족골 경부 분쇄 골절, 좌 제3족지 신전근건 완전파열 등’에 대하여 2020. 3. 25. open reduction Lt. 2nd, 3rd, 4th toe, Lt. 2nd, 3rd MT head, tenorraphy 3rd extensor tendon 시행하였고, 2020. 5. 19. pin removal 수술 시행한 것으로, 수상부위, 승인상병 및 그에 따른 수술 내역 등을 감안해 볼 때, 2020. 3. 25. 시행한 골절

수술 중 좌측 2족지와 3족지의 경우 중족골과 족지 골절에 대한 정복술은 동일 인접부 수술로 각각 N0605 사지골절정복술×150%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2020. 5. 19. 시행한 골절부 핀제거술의 경우 각 족지별 핀 제거술로 인정하여 N0979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30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진료기록부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수상 부위, 승인상병 및 그에 따른 수술 내역 등을 감안해 볼 때, 2020. 3. 25. 시행한 골절 수술 중 좌측 2족지와 3족지의 경우 중족골과 족지 골절에 대한 정복술은 동일 인접부 수술로 각각 N0605 사지골절정복술×150%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2020. 5. 19. 시행한 골절부 핀제거술의 경우 각 족지별 핀 제거술로 인정하여 N0979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300%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7 » 기왕병력(당뇨)이 있는 환자에게 요골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후 산정한 N1611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요골-복잡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869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 3.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유○○(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상병으로 2018. 11. 26.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하고 수술료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복잡-요골(N1611)과 재료대 등을 포함하여 진료비 청구하였으며

나. 원처분기관은 관절외 골절로서 사지골절정복술의 복잡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요골(N1601)로 조정·인정하여 수술료 차액 188,930원을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기왕병력 상 조절되지 않는 당뇨(당화혈색소 10.6) 및 골다공증(T점수 -3.5)이 있어 골유합 지연이 예상되는 환자임.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4) 진료기록(수술기록지, 검사결과지, 골밀도검사 판독 소견서)

5) 방사선 영상 자료

6)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7)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8)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8. 11.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상병으로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2018. 11. 26. ~ 2018. 11. 30. 입원요양 중

2) 청구인은 2018. 11. 26. OR & IF 수술 시행하였으며, 입원 시 시행한 당화혈색소(HbA1c) 검사 결과 10.6%(정상범위 4.0-6.4%)로 확인되고, 2018. 11. 28. 수술 후 당 조절이 되지 않아 내과 협의 진료 의뢰하였다.

3) 내과 진료기록을 보면 재해자는 2018. 4월부터 당뇨, 고혈압 진단 받고 ○○의원 추적 중이며, 혈압 170/90, glucose 361, HbA1c 14.0(2018. 4월), 10.6(2018. 11월) 소견이 확인되어 당뇨 및 혈압약을 재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상기 수술에 대하여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복잡-요골(N1611)과 재료대 등을 포함하여 진료비 청구하였으며

5) 원처분기관은 수술료 산정에 대하여 유선 확인시 청구인이 “관절내 골절”로 복잡기준에 해당하여 수술료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관절외 골절로 판단되어 단순 관혈적 정복술이 타당하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사지골절정복술의 복잡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요골(N1601)로 조정·인정하여 수술료 차액 188,930원을 부지급 처분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요골 원위부 골절로 수술하였으며, 기왕병력 상 조절되지 않는 당뇨(당화혈색소 10.6) 및 골다공증(T점수 -3.5)이 있어 골유합 지연이 예상되는 환자이며, 수술 소견 상에도 골절이 안 좋은 것이 보였던 환자임.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우측 원위요골 골절 환자의 내과 검진 상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확인되므로 복잡골절로 인정함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9호)

마. 자60가 사지골절정복술, 자62 가관절수술 복잡기준(행정해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02, 2014. 7. 22.)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으며, 제시한 기준 중 하나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음

- 아 래 -

(1) 해당 전문의(내과는 세부전문분야) 협진으로 아래의 질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1-1) 만성 신부전증 환자

(1-2) 장기 이식을 받았거나 필요한 환자

(1-3) 심혈관 스텐트를 가지고 있어 혈전제를 복용 중인 자

(1-4) 고도의 심근 경색/협심증이 있는 자 - Goldman cardiac risk III 이상

(1-5)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 환자

(1-6) 간경화가 있는 환자

(1-7) 혈액암 환자

(1-8) 혈우병 환자 또는 혈액 응고이상이 있는 환자

(1-9) 고도의 폐쇄성 폐질환 환자

(1-10) 정맥혈전색전증으로 치료 과거력이 있는 자

(1-11) 뇌경색 등으로 aspirin보다 상위의 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

(2) 치료 중인 상태의 류마티스 질환자로 DAS 28이 5.1 초과일 때

(3) 말초동맥 폐색성 질환을 가진 자

(4) 진행성 척수마비 또는 마미 증후군 환자

(5) 병적 골절이 동반된 환자: 원발성 골암, 전이성 골암 및 골다공증이 동반된 환자

(6) ISS(Injury Severity Score) 〉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 혹은 3곳 이상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다발성 골절환자

(7) 인공삽입물 주위 골절

(8) 관절 내 골절

(9) 사지골절정복술 또는 가관절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합병증 등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동일 부위가 재발되어 재수술한 경우

(10) 장축 1 inch 이상의 심한 골결손이 동반된 경우

(11) G-A type Ⅲ 이상의 개방성 골절, 탈장갑 손상이 있는 개방성 골절

(12) 혈관 손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골절

(13) 구획 증후군이 동반된 골절

(14) 신경손상이 동반된 골절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청구인은 재해자가 기왕병력 상 조절되지 않는 당뇨(당화혈색소 10.6) 및 골다공증(T점수 -3.5)이 있어 골유합 지연이 예상되는 환자라고 주장한다.

다. 관련법령, 진료기록,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재해자의 경우 2018. 4월 당뇨, 고혈압을 진단 받고 약물치료 중이나 입원 시 검사한 당화혈색소(HbA1c) 검사 결과 10.6%로 당뇨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였고, 내과 진료기록 참조할 때, 「자60가 사지골절정복술, 자62 가관절수술 복잡기준(행정해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02, 2014. 7. 22.)」에서 정한 조절되지 않는 당뇨(HbA1c 〉 7.0)가 내과전문의의 진료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지골절정복술-관혈적-복잡-요골(N1611) 수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라.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부지급 처분한 수술료 차액 188,930원은 산재보험 진료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8 경골 가관절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N0977004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947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7. 10.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김○○(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우측 경비골 근위부골절"에 대하여 가관절 수술 및 체내금속고정제거술 등을 시행한 후, N0633 가관절수술×100% 및 N0977004 체내금속고정제거술(경·비골중 하나)×100%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가관절수술-복잡 행위수가로 적용하여 핀제거술의 경우 가관절 수술의 일련 과정으로 보아 N0633 가관절수술×100% 인정하고, N0977004 체내금속고정제거술(경·비골중 하나)×100%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76,57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단순한 핀이나 나사 등의 제거가 아니라 금속판의 제거를 하였고, 금속판의 제거 없이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수술을 내측에서 시행하여 별도의 절개를 하여 제거한 금속제거술을 일련의 과정으로 보는 것은 아쉽게 생각되어 심사청구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6)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7. 8.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경비골근위부골절, 좌측 족관절삼과골절, 좌측 족부주상골골절, 좌측 족부거골의골절, 뇌진탕증'을 승인받은 자로서, 가관절 등 수술 치료를 위해 2020. 4. 16. 입원 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한 후 N0633 가관절수술×100% 및 N0977004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하퇴골-경골과 비골중 하나)×100%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수술내역: 2020. 4. 17.

- 수술전 진단명: Follow examination after treatment of fracture (malunion & nonunion tibial plateau Fx Rt. MM radial tear Rt)

- 수술명: Other division of tibia and fibula (partial mensectomy, metal removal, corrective ostectomy(tibial med & lat condyle), auto B/G

3) 원처분기관은 동일 부위가 재발되어 재수술한 경우로 가관절수술 복잡행위 수가로 적용하는 점 등을 참고할 때 핀제거술은 가관절 수술의 일련 과정으로 보아 체내금속제거술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자 김○○에게 우측 경비골 근위부 골절의 불유합으로 인해 수술 시행 후 청구한 진료비는 N0977004 체내금속고정제거술(경·비골중 하나)은 양측의 절개를 통해 핀고정술이 이루어진 점과 기존의 고정된 나사의 조정이 없는 경우 반대편의 수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별도 진료 수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진료기록부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N0977004 체내금속고정제거술(경·비골중 하나)은 양측의 절개를 통해 핀고정술이 이루어진 점과 기존의 고정된 나사의 조정이 없는 경우 반대편의 수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별도 진료 수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술료 N0977004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하퇴골-경골과 비골중 하나)×100%는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9 » 경골 가관절수술과 동시에 시행한 N0977004 비골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9127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9. 8.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L○○ ○○(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좌측 발목 부위 원위부 경골 및 비골 골절(개방성)"에 대하여 2019년 수술을 받은 후 경골 불유합 진단하에 가관절 및 체내금속고정제거술 등을 시행한 후, N0633 가관절수술×100% 및 N0977004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하퇴골-경골과 비골중 하나)×100%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수술기록지 및 가관절 수술이 하퇴골 한 부위로 수가가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 핀제거술의 경우 가관절 수술의 일련 과정으로 보아 N0633 가관절수술×100% 인정하고, N0977004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하퇴골-경골과 비골중 하나)×100%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76,57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비골 금속판 파손 및 불유합에 대해서 1) 비골금속판 제거술 시행함. 경골 불유합을 수술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수술은 아니었으나, 환자분께서 금속판 파손이 있고 유합이 되지 않아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로 금속판 제거를 희망하여 추가적으로 시행함. 또한 원위부 경골 불유합 부위에서는 금속판 파손과 나사못 마모 및 파손 모두 동반되어 있어서

2) 경골의 금속판 및 나사못을 2시간 가량 소요되어 제거하였으며, 불유합 및 부정 정렬에 대해 교정술 및 골 이식술, 금속판 재 고정술 시행하였음. 이를 모두 시행하는데 많은 수술시간이 소용되었지만, 심평원 기준에 따라 2) 경골 금속판 나사못 및 나사못을 제거하는 2시간 가량이 소요된 수술 행위료는 청구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 가관절에 대한 수술비만 청구함.

1) 비골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한 것과 관련된 수술비 삭감이 발생하였는데, 비골 금속판 제거는 별개의 수술이며, 경골 불유합 치료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없음. 이를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같은 논리를 적용시킨다면, 비골 금속판이 있는 모든 경골 불유합 환자에서 비골 금속판을 제거하는 행위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경골에 대한 금속나사와 금속판 제거술은 경골 불유합 치료의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골에 대한 금속판 제거 수술비는 청구하지 않았음. 상기 내용을 헤아려 수술료 삭감에 대한 검토 바람.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6)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10. 13.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발목 부위 원위부 경골 및 비골 골절(개방성), 우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발목 내과의 개방성 골절, 다발성 타박상(흉부, 요추, 골반), 좌측 비골두 골절'을 승인받은 자로서, 가관절 등 수술 치료를 위해 2020. 6. 18. 입원 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한 후 N0633 가관절수술×100% 및 N0977004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하퇴골-경골과 비골중 하나)×100%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수술내역: 2020. 6. 26.

- 수술전 진단명: s/p Fx. shaft of tibiofibula, lower leg, Lt.
  nonunion. disital tibiofibula, ankle. Lt.

- 수술명: Implant removal, Allo & auto bone graft(both knee), Plate fixation(disital tibia)

3) 원처분기관은 1차 수술시 경골 및 비골 동시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고 핀 제거술도 동일 절개상으로 동시에 시행한 점, 가관절 수술이 하퇴골 한 부위로 수가가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골핀 제거와 동시에 시행한 비골 핀 제거술은 가관절 수술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체내금속제거술에 대하여 부지급한 처분을 하였다.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 L○○ ○○에게 2020. 6. 26. 다리 부위 수술적 치료를 실시하고 관련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며 청구한 N0977004 체내금속고정제거술은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경골 및 비골 동시에 수술 치료를 하였는데 가관절 수술이 하퇴골 기준으로 정해진 진료수가이나, 비골 금속판 제거는 가관절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별개의 수술로 보아 해당 수술에 대한 진료비는 인정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진료기록부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경골 및 비골 동시에 수술 치료를 하였는데 가관절 수술이 하퇴골 기준으로 정해진 진료수가이나, 비골 금속판 제거는 가관절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별개의 수술로 보아 해당 수술에 대한 진료비는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수술료 N0977004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하퇴골-경골과 비골중 하나)×100%는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0 산재보험 요양승인전 원위요골골절 체외금속고정술을 시행한 재해자에게 산재보험 요양승인 후 시행한 체외금속기기제거술(N0983*50%)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7321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8. 1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조○○(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우측 요골 원위부(관절강내 침범)분쇄골절"에 대하여 체외고정기기 제거술을 시행한 후 체외금속고정술-전완골(N0983)×50%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영상자료를 참조할 때, 관절내골절이나 분쇄골절이 심하지 않아서 체외금속 고정술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외고정기기 제거술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14,69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재해자는 최초 신청 당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강내 침범한 분쇄골절 병명을 승인받았으며, 본원 X-ray 및 CT 상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Fx., comminuted, distal radius with intra-articular extension Fx., ulna styloid로 체외금속 고정술을 시행함. 보건복지부 고시 상 관절강내 침범한 골절에 인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분쇄 정도의 심함은 고시되어 있지 않으나 체외금속제거술 조정되어 재심사 요청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3) 수술기록지

4) CT 등 방사선 영상 자료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5. 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요골 원위부(관절강내 침범) 분쇄골절,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승인 받은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최초요양 승인 전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2019. 5. 9. ~ 2019. 6. 3. 입원요양 중 2019. 5. 10. CRIF & K-wire×4 & EF 수술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았다.

2) 이후 산재보험 최초요양 승인을 받은 재해자가 2019. 6. 7. 외래진료부터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던 중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6. 28. 체외고정기기 제거술 시행한 후 수술료를 체외금속고정술-전완골(N0983)×50%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통원진료비(진료기간 2019. 6. 7. ~ 2019. 6. 28.)로 청구하였다.

3) 원처분기관은 재해자의 영상자료를 참조할 때, 관절내골절이나 분쇄골절이 심하지 않아서 체외금속 고정술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 자문소견에 따라 체외고정기기 제거술[체외금속고정술-전완골(N0983)×50%]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14,69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가. 자문의사 1: 일반적인 골절에서의 체외고정술 인정기준은 내고정이 불가한 관절내의 심한 분쇄골절 혹은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해자의 영상의학 검사 상 원위 요골 골간부에 분쇄골절이 있고, 관절의 함몰과 골절 분류 상 AO C2에 해당되는 골절로서 일반적인 외고정기 사용기준에 부합한다.

나. 자문의사 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CT 상 우측 요골 원위부에 관절면 분쇄골절이 관찰되므로 외고정 수술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고정 기기의 제거술에 대한 수술료는 지급함이 타당하다.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체외금속 고정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 2016. 11. 1. 시행)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체외금속 고정술의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04호)」에 따르면 일반적인 골절에서 체외금속 고정술은 무릎, 발목, 손목, 팔꿈치 관절내 분쇄골절 또는 간부의 분쇄골절, 개방성 골절에 선별적으로 시행한 경우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재해자의 경우 단순 방사선 및 CT 참조할 때, 우측 원위 요골 골간부의 분쇄골절 및 관절의 함몰골절이 확인되므로 체외금속 고정술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체외금속 고정술 후 시행한 체외고정기기 제거술은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료비의 일부를 부지급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1 양측 요골골절에 각각 시행한 N2073 인공관절전환술(주관절)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1280호
- **사 건 명** 진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윤○○(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우측 요골 머리의 골절, 좌측 요골 머리의 골절"에 대하여 양측 요골두 치환술 시행하고, 수술료 인공관절 전치환술(N2073) 및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 비용 등을 포함하여 진료비 청구하였으며

나. 원처분기관은 분쇄골절이 심하지 않아 요골두 치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골두 치환술을 불인정하여 수술료, 재료대, 마취료 등 진료비 5,540,630원을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Mason 분류상에 제3형 분쇄골절(Comminuted Fracture)에 해당하고, 환자가 골절 수상 후 2주안에 본원 외래 방문하였다면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수상 후 2달 경과한 상태로 부정유합 진행 상태였으며, 관절운동 제한 상태로 이후 주관절의 관절운동 제한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요골두 치환술 시행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3) 수술기록지

4) 방사선 영상 자료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8. 8.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요골 머리의 골절, 좌측 요골 머리의 골절” 승인된 환자로, 재해 당일 local에서 방사선 검사 및 두피열상에 대한 처치 등 진료 받은 이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 2018. 10. 12. 청구인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외래진료하고, 2018. 10. 16. ~ 2018. 11. 26. 입원 요양하였다.

2) 청구인은 “양측 요골 머리의 골절, 분쇄, 전위” 진단 하에 2018. 10. 17. 우측 요골두 치환술 및 2018. 11. 9. 좌측 요골두 치환술 시행하고, 수술료 N2073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술[주관절]×2, 단순처치,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 EVOLVE MODULAR RADIAL HEAD(E4022024)×2, 봉합사 등 수술관련 재료대, 마취료 및 PCA 등 산정하여 진료비 청구하였으나

3) 원처분기관은 “양측 요골두 골절이 있으나 분쇄가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 혹은 내고정술 적응이 되리라 판단됨. 요골두 치환술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의사 소견에 따라 수술료 및 재료대, 마취료, PCA 등 수술 관련 진료비를 전체 불인정하여 5,540,630원을 부지급 처분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상기환자는 2018. 10. 12. 양측 주관절의 통증, ROM 제한 상태로 본원 정형외과 외래로 방문함. 환자는 본원 내원 약 2개월 전에 넘어지며 수상하였다고 함.

- X-ray 상에는 골절 및 전위, 부정유합
- 환자는 ROM 제한 및 통증 호소
- CT상에 Both Radial Head 의 Comminuted Fracture with Displacement
- 요골두 골절 분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Mason 분류상에 제3형 분쇄골절(Comminuted Fracture)에 해당

환자가 골절 수상 후 2주안에 본원 외래 방문하였다면 3형 골절이라도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수상 후 2달 경과한 상태로 부정유합 진행 상태였으며, 관절 운동제한 상태로 이후 주관절의 관절운동제한 후유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았음. 현재 요골두 치환술 후 통증 없으며 관절 운동제한 없는 상태임.

* 근거자료: 골절학 제3판 245p(Mason 골절 제2형부터 요골두 치환술 시행할 수 있음.)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사1: 영상 자료를 검토한 바, 요골두 골절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요골두 치환술의 상대적 적응증을 고려하였을 때, 환자의 나이, 골절된 형태(3분절 이상 골절이라도 전위된 골편은 크기가 작으며, 상대적으로 큰 골편은 전위가 되지 않음) 등 충분히 내고정으로 치료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요골두 치환술의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인정이 타당함.

2) 자문의사2: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양측 주관절 CT 상 요골두 분쇄골절 소견이 확인되나 분쇄가 심하지 않고, 골절편이 내고정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며, 동반된 탈구나 인대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요골두 치환술의 인정기준에 미흡하다고 판단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금속 재질의 요골두치환용 치료재료(Bipolar Radial Head Prosthesis 등)의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35호, 2009. 8. 1. 시행)

1. 급성 요골두 골절중 분쇄가 심하여 내고정이 어려운 제3형 골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요골두골절을 동반한 주관절탈구(제4형)

나. 내측 측부인대 동반손상

다. 동반되거나 지연된 외측 측부인대 기능부전

라. 주두와 요골두 골절이 동반된 Monteggia 변형(variant)

마. 구상돌기 골절동반

바. 동반원위 요척관절 손상

2. 과거 요골두를 제거한 후 속발한 합병증(주관절의 만성불안정, 특히 외반 불안정, 후외반 회전 불안정, 요골의 근위 이동으로 인한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과 통증,회전 제한 등)으로 인한 재건술

※ 참고사항: 수기료는 자71나(2) 인공관절부분치환술 (주관절)에 해당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방사선 영상자료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와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35호에 의하면 금속 재질의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는 급성 요골두 골절 중 분쇄가 심하여 내고정이 어려운 제3형 골절로서 요골두 골절을 동반한 주관절탈구(제4형), 내측 측부인대 동반 손상, 동반되거나 지연된 외측 측부인대 기능부전이 있는 경우, 주두와 요골두 골절이 동반된 Monteggia 변형(variant), 구상돌기 골절이 동반된 경우, 원위 요척관절 손상이 동반된 경우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해자의 경우 CT에서 양측 요골두 분쇄골절이 확인되나, 분쇄가 심하지 않고, 골절편이 내고정술이 가능할 정도로 크며, 탈구나 인대 손상 등 동반손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기 요골두 치환용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측 요골두 치환술 및 치료재료 등 수술 관련 진료비는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이 타당하다.

12 손목 수근관이완술 및 활액막절제술 후 산정한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 및 N0708 사지관절절제술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507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0.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N0708 사지관절절제술×100% 비용 관련 원처분을 취소하고, NO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100%을 N0931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100%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김○○(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우측 키엔벡(kienbock)병 손목, 좌·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등"에 대하여 우측 손목 수근관이완술, 원위요골 교정절골술을 시행한 후,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100% 및 N0708 사지관절절제술×100%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수술기록지 참조하여 산재 승인되지 않은 상병(삼각섬유연골복합체)에 대한 수술 및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100%만 인정하고, N0708 사지관절절제술×100%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394,14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우측 손목의 TFCC tear 및 Kienbock diseas진단으로 arthroscopic하에 debridement and synovectomy를 시행하고 수술료 N0708 사지관절절제술을 산정하였고, 우측 손목의

Carpal tunnel syndrome 진단으로 피부절개하에 Transverse carpal ligament release and neurolysis를 시행하고 수술료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을 산정함. 같은 우측 손목이라 하지만 다른 진단에 다른 부위에 있어 각각의 방법으로 시행한 수술에 있어 일련이 과정이라 하여 삭감함은 부당하다 사료되어 심사청구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 소견서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 소견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10. 18.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좌·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우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키엔벡(kienbock)병 손목, 좌·우측 손목터널증후군, 방아쇠수지 좌측 제3수지, 좌측 무릎 내측 반월연골판 후각부 방사형 파열, 좌·우측 무릎 연골 손상, 좌·우측 무릎 관절증'을 승인받은 자로서, 인제대서울백병원에서 2020. 6. 9. ~ 2020. 6. 18.까지 입원 요양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100% 및 N0708 사지관절절제술×100%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수술내역: 2020. 6. 10.

- 수술전 진단명: R/O TFCC tear, kienback diseas and carpal tunnel syndrome wrist, RT.

- 수술명: 1. arthroscopic massive debridement and synovectomy wrist RT.
2. Transvers carpal ligament release and neurolysis wrist, RT.

3) 원처분기관은 손목 수근관절이완술의 경우 횡수근 인대를 절제하여 수근관을 넓혀주는 수술로 심사기준에 따라 N0931 건 및 인대 성형술 - 간단한 것으로 적용하고 있어, kienbock disease에 대한 debridement도 함께 시행한 점을 고려하여 N0932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으로 인정함. 또한 손목의 TFCC(삼각섬유연골복합체) tear에 대해 시행한 debridement and synovectomy로 미승인 상병 수술에 해당되어 사지 관절절제술 비용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마. capal tunnel release의 수기료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1호(행위), 2018. 12. 24.시행〕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에 김○○에게 상병명 '우측 키엔벡(kienbock)병 손목, 우측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하여 2020. 6. 10. 수술 시행한 것으로, 승인 상병 및 그에 따른 수술 내역 등을 감안해 볼 때, 손목터널증후군 관련 수술은 정중신경감압술에 해당하는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키엔벡병으로 시행한 관절경적 활막절제술에 대해서는 '사지관절절제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승인상병 및 그에 따른 수술 내역 등을 감안해 볼 때, 손목터널증후군 관련 수술은 정중신경감압술에 해당하는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며, 키엔벡병으로 시행한 관절경적 활막절제술에 대해서는 '사지관절절제술'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시행한 수술은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 및 사지관절절제술에 대하여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N0708 사지관절절제술×100% 비용 관련 원처분을 취소하고, NO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100%을 N0931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100%으로 변경하여 인정함에 따라 나머지 비용(기지급분 제외)에 대해서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13 원위 대퇴골골절에 관절경하 brisment, screw removal 수술 후 산정한 N0710 사지관절절제술 및 관절경 치료재료대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341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0. 8. 14.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N0710 사지관절절제술(슬관절)비용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단, 기 지급분 제외).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이○○(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좌측 슬부 원위 대퇴골 골절'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 후 골유합되었으나 연부조직 유착 및 관절 강직이 있어 2020. 6. 29. 'A/S brisement, Screw removal' 수술을 시행한 후 N0710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슬관절×100%,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슬관절)×1회 등을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수술기록 및 승인상병 고려시 N0972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로 변경 지급 타당"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수술료를 N0972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대퇴골)×100%로 변경 인정하고,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342,23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는 관절경하 유착된 관절내 섬유조직을 박리하고 관절가동술을 해야 함에 따라 2020. 6. 29. 전신마취하 관절경하 연부조직의 광범위한 유착박리술 및 관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어 관절 가동술을 시행하였으나 대퇴 핀제거술로 심사 조정되어 소견서 첨부하여 이의신청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 소견서

3)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관절경 사진 등)

4)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 소견서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12. 11.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상악골 골절, 비골 골절, 안와 골절, 내측안와바닥 골절, 우측 슬부 원위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슬부 원위 대퇴골 골절, 우측 수근골(삼각골) 골절, 치아의 완전탈구(#22,41), 치아의 아탈구(#11,31,42), 치아의 파절(#14,13,12,11,21,23)'을 승인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좌측 슬부 원위 대퇴골 골절에 대한 관혈적정복술 및 체내금속고정술 받은 상태로 슬관절 강직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20. 6. 28. 재입원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하였다.

❍ 2020. 6. 28. 정형외과 진료기록

C/C: metal removal

P/I: 2019. 12. 23. ORIF c plate & screw, Rt., OREF & Myorrhaphy, Lt.
2020. 1. 2. ORIF c plate(medial & lateral), Lt.
2020. 3. 9. Arthroscopic brisement(양측)
수술 받으신 분으로 A/S brisement 위해 입원함

❍ 2020. 6. 29. 수술기록

- 수술 전 진단명: Fx. of distal femur, part unspecified open (post op stiffness knee Lt)
- 수술명: Removal of implanted devices from bone, unspecified site (A/S brisement, Screw removal)
- 수술 후 진단명: Stiffness of joint lower leg(post op stiffness knee Lt.)
- 수술 소견: Post op stiffness knee Lt.→A/S brisement & Screw removal
- 수술절차
  - scar incision, dissection 후 plate와 screw를 제거하였음
  - AL, AM portal을 만든 후 medial, lateral compartment 및 Suprapatellar와 Quadriceps 사이 area의 fibrotic lesion에 대하여 shaver 이용하여 debridement 시행 및 synovectomy 시행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 소견

상기 환자는 양측 슬관절 원위 대퇴골의 심한 분쇄를 동반한 개방성골절, 좌측 슬관절은 대퇴사두근 개방성 차열을 동반했던 환자로 수술적 치료 후 골유합을 얻었던 환자이다. 심한 분쇄로 인해 연부조직 유착으로 양측 슬관절의 심한 관절 강직을 동반하게 되었으며, 단순 마취하 관절가동술로는 관절 각도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추가적인 근육파열, 골절과 같은 동반 손상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관절경하 유착된 관절내 섬유조직을 박리하고 관절가동술을 해야 함에 2020. 6. 29. 전신마취하 관절경하 연부조직의 광범위한 유착박리술 및 관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이어 관절 가동술을 시행한 후 추가로 기계적 자극을 유발하는 나사제거술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사지관절절제술과 관절경 재료대는 2020. 6. 29. 수술의 주수술로서 인정받아야 한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사지관절절제술은 승인상병과 상관없어 수술료 및 관절경 재료대는 불인정이 타당하며, 수술기록 및 승인상병 고려시 N0972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로 변경 지급이 타당.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마.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7호, 2019. 6. 1.)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 이○○에게 2020. 6. 29. 관절경하 슬관절 연부조직의 유착박리술 및 관절 절제술, 나사못 일부 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재해자의 상병 상태 및 수술내역을 감안하면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 이라기보다 사지관절절제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술료는 N0710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관절경 재료대는 재해자에게 시행한 수술이 광범위한 절제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2020. 6. 29. 관절경하 슬관절 연부조직의 유착박리술 및 관절 절제술, 나사못 일부 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재해자의 상병 상태 및 수술내역을 감안하면 수술료는 N0710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관절경 재료대는 재해자에게 시행한 수술이 광범위한 활액막 절제를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N0710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슬관절 비용은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사지관절절제술 관련 원처분을 취소하고(단, 기 지급분 제외),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14 종골골절에 대하여 족근동 접근법에 의한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한 후 산정한 N0931001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제2의 수술)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5454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2019. 5. 3. 재해자 김○○(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좌측 종골 골절에 대한 ORIF with screw & MIPPO plate Lt.을 시행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N0614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족근골-복잡×1, N0931001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1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상대가치점수 행위정의를 참고하여 족근동 접근법은 관혈적정복술의 하나의 술식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후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N0931001)×1를 불인정한 결과 진료비 142,53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좌측 종골 골절 부위에 족근동 접근법으로 시행한 수술 중 건 및 인대성형술은 관혈적정복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해서 불인정하여 관련 자료 첨부하여 심사청구 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사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19. 4.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종골 골절'을 승인 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2019. 4. 29. ~ 2019. 5. 25. 입원 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5. 3. 수술 전 종골 골절(폐쇄성) 진단 하에, ORIF with screw & MIPPO plate Lt.을 시행 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N0614 사지골절관혈적정복술-족근골-복잡×1, N0931001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1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3) 원처분기관은 상대가치점수 행위정의를 참고하여 족근동 접근법은 관혈적정복술의 하나의 술식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후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N0931001)×1를 불인정한 결과 진료비 142,53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2019. 5. 3. 관혈적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대봉합술을 시행함. 고식적인 외측 광범위 접근법(later extensile approach)을 통한 직접적인 금속판 삽입술은 시야 확보에 용이함. 종비인대(calcaneofibular ligament)를 희생시키고 접근하므로, 대부분 다시 종비인대 봉합술을 하지 않음. 그러나 술자가 시행한 연장된 족근동 접근법(extended sinus tarsi approach)은 비골건을 들어 올린 후 종비인대를 clean하게 절제한 후 다시 봉합이 가능하므로, 골절 수술이 끝난 후 재봉합을 해왔음. 종비인대는 전거비인대와 더불어 발목 외측 인대 불안정에 중요한 인대이므로, 이를 봉합하는 것은 환자의 수술 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함.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인대 절개를 이용한 술법이라도 기본적인 수술의 과정에 따른 술식이므로 불인정함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산정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며, 다만,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청구인은 재해자의 상병명 좌측 종골 골절에 대하여 2019. 5. 3. 족근동 접근법(extended sinus tarsi approach) 술식을 이용하여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였는 바,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종비인대(calcaneofibular ligament)를 절개한 후 재 봉합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지관절관혈적정복술의 과정에 따른 술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N0931001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1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금 142,530원)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15 변형브로스트롬술 시행한 후 산정한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5152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0. 5. 21.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재료대×50%' 비용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문○○(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좌측 전거비인대 파열 및 종비인대 부분파열, 좌측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파열, 좌측 손목 염좌"에 대하여 2020. 3. 9. AS synovectomy 및 MBO, Lt.을 시행한 후, 수술료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100%, N0703001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족관절×100%, N0031003 관절경하 사용된 수술재료대×50%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수술기록지 등 관련자료 및 보건복지부 고시 등 급여기준을 참고하여 N0703001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족관절×100%는 인정하였으나,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100%는 N0931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 것×100%로 변경하여 인정하고,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재료대×50%는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66,05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는 Acute ATFL-CFL complex avulsion on chronic lateral ankle instability, Lt. Synovitis of ankle, Lt./ OLT(<1.5cm2/ICRS II) 상병으로 관절경하 synovectomy & chondroplasty를 시행하였으며, 단순한 synovectomy가 아닌 OLT 1.5 미만의 사이즈라 chondroplasty 시행하였고, 사이즈가 안되어 synovectomy 수가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ATFL avulsion at talus, CFL avulsion Fx at fibula internal brace를 talar obscure tubercle에 삽입 후 내재된 fiber wire로 reattachment IER augmentation로 3개의 건에 수술을 시행하여 internal brace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동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합니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 소견서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6)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20. 3. 5. 발생한 재해로 상병명 '좌측 전거비인대 파열 및 종비인대 부분파열, 좌측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파열 등'을 승인받은 자로서, 대전센텀병원에서 2020. 3. 5. ~ 2020. 4. 3.까지 입원요양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100%, N0703001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 포함〕-족관절×100% 및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재료대×50%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2020. 3. 9. 수술기록지

- Name of op: synovectomy 및 MBO, Lt.
- Findings and procere상의 op name
  - synovectomy & chondroplasty
  - ATFL reattachment using internal brace Fiber wire & CFL reattachment using bone tunnel techinique with absorbable suture material
  - Internal brace augmentation

3) 원처분기관은 수술기록지 등 관련자료 참조할 때, 변형브로스트롬술은 통상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2개의 인대봉합에 하신근지대를 추가봉합하는 수술이므로 수술료 N0932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100%에 대해서는 N0931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한 것×100%로 변경하여 인정하였고, 관절경하 치료재료대는 관절경하 활막제거술만 단순시행한 것으로 부지급 처분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마.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8호, 2017. 7. 1.시행)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급여기준」 및 「자91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의거 산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재해자 문○○에게 행한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 연골성형술, MBO(M0dified BROSTROME'S), Lt.의 경우 관절경 수술재료대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볼 수 없어 지급함이 타당하고, 변형브로스트롬술은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와 같이 하신근지대를 봉합하는 수술로서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으로 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따라서 관절경 수술재료대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관절경 수술재료대는 관절경하 활막절제술 & 연골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간단한 수술이라고 볼 수 없어 지급함이 타당하고, 변형브로스트롬술은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와 같이 하신근지대를 봉합하는 수술로서 건 및 인대성형술(간단)으로 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따라서 관절경 수술재료대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관절경하 수술재료대는(160,000원)은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재료대×50% 비용 관련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16 전방십자인대재건술과 동시에 시행한 전외측인대재건술(N0932004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20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9. 11. 12.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김○○(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각부 완전파열"에 대하여 2019. 7. 12. "Reconstruction ACL, ALL c auto, allo tendon knee Rt., MM repair knee Rt."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 N0881 십자인대성형술(복잡)×1, N0911 건·인대피하단열수술×1.7, N0932004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제2의수술×1, N0828004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제2의수술 ×1 및 치료재료 TIBIALIS TENDON×1 등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전외측인대 재건술의 경우 "최초 수술에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안정 때문에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전외측인대 재건술(수술료 N0932004 건 및 인대성형술/제2수술) 및 TIBIAIS TENDON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514,63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환자 김○○의 수술 관련 진료비 조정 건에 대하여 재심사 요청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3) 주치의사 소견서

4)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7. 9. 4. 진단받은 상병명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파열,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파열”과 추가상병명 “좌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슬부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각부 완전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각부 완전파열,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승인받은 자로서, 추간판제거술 받고 현재 경과 관찰 중이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9. 7. 2.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 N0881 십자인대성형술(복잡)×1, N0911 건·인대피하단열수술×1.7, N0932004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제2의수술×1, N0828004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제2의수술×1 및 치료재료 TIBIALIS TENDON×1 등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수술전 진단명: Rupture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ACL) of knee
  Tear, medial meniscus of knee, old

- 수술명: Reconstruction of anterior cruciate ligament(ACL), Rt. knee
  Arthroscopic meniscal repair of knee

- 수술 관찰 소견

  • pre & post op Dx: chronic ACL rupture c MM tear knee Rt.

  • op name: Reconstruction ACL, ALL c auto, allo tendon knee Rt.
    MM repair knee Rt.

  • op finding:
    MM root tear에 대해 pull out suture 이용하여 repair
    Auto Gracilis & Semi T 이용하여 ACL recon 시행, ALL의 경우 allo tibialis tendon 사용하여 recon 시행
    accessory AM portal 이용하여 recon 시행
    Lachmann test 3+
    pivot shift test 3+
    chronic instability 및 pivot 3+ 나오는 환자분으로 ALL 고려하여 시행함

3) 원처분기관은 전외측인대 재건술의 경우 “최초 수술에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안정 때문에 예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전외측인대 재건술(수술료 N0932004 건 및 인대성형술/제2수술) 및 치료재료 TIBIAIS TENDON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514,63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2019. 4월 MRI에서 전방십자인대 완전 소실 상태, 2019. 7. 12. 마취하 신체검사에서 고도의 전방 불안정성 및 회전 불안정성(Lachmann test 3+, pivot shift test 3+) 보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전외측 인대 재건술, 내측 반월상 연골판봉합술 시행함.

- 전외측 인대 재건술이 꼭 필요한 이유는 다름과 같습니다.

  2019년 arthroscopy 발표된 논문은 전외측 재건술을 간단히 정리하고 있으며, 적응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음.

  The following indications for ALL reconstruction are now well established: ACL revision, high grade pivot shift test, chronic ACL rupture, young patients, pivoting activities and patients undergoing medial meniscus repair

  따라서 상기 환자는 high grade pivot shift test, chronic ACL rupture, patients undergoing medial meniscus repair 적응증에 근거하여 전외측 재건술이 필요함. 논문에 근거하여 전외측 재건술은 추가적인 합병증이 없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실패를 3배 감소시키고 내측 반월산 연골판 파열 실패를 2배나 감소시킴

(추가소견, 2020. 2월)

- 자문의 소견 내용에도 ALL 재건술 적응증으로 만성 불안정성을 제시하고 있음
- 수술 소견 ldx 9~19 사진에 chronic ACL insufficiency 확인됨
- 기 승인 상병으로 ACL rupture를 가지고 있었음
- 따라서 ACL 만성 불안정성에 해당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ALL 재건술은 ACL 재건술이 실패한 경우 또는 만성 불안정인 경우, 수술 후 Revision으로 보강할 경우에는 할 수 있으나, 최초 수술에서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불안정 때문에 예방적으로 시행함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TIBIALIS TENDON ALLO GRAFT도 인정할 수 없음.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내측 반월상연골 봉합술만 인정함이 타당함.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첨부된 의무기록 및 영상소견 등을 종합할 때, 우측 슬관절은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 상태이나, 시행한 전외측 인대 재건술은 객관적인 검사로 고도의 불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나이가 56세로 활동성은 높지 않은 상태로서 generalized ligament laxity 등이 동반되어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마. 동종건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8호, 2017. 11. 30.)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자 김○○에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동시에 전외측인대 재건술을 실시한 것으로, 재해자의 경우 만성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상태인 점, 수술 전 심한 전방 불안정성 및 회전 불안정성(Lachmann test 3+, pivot shaft test 3+)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무릎의 회전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외측인대 재건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외측인대 재건술(수술료 N0932004 건및인대성형술/제2수술) 및 치료재료 TIBIAIS TENDON'을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른 요양급여로 인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방사선 영상자료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만성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상태인 점, 수술 전 심한 전방 불안정성 및 회전 불안정성(Lachmann test 3+, pivot shaft test 3+)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무릎의 회전 불안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동시에 전외측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것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전외측인대 재건술(수술료 N0932004 건 및 인대성형술-복잡한 것/제2수술) 및 치료재료 TIBIAIS TENDON' 비용은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7 회전근개봉합술과 동시에 시행한 이두근 고정술에 대한 수술료 N0941004 건박리술(제2수술)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3780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4. 7.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김○○(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2020. 2. 18. '① SLAP lesion type II with partial biceps tendon tear(50%): tenodesis with RI repair ② Extra articular biceps groove에 osteocartilagenous loose bodies(×3): biopsy 등'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 N093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 동반) ×100%, N0941004 건박리술/제2수술×100%를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biceps tenodesis는 회전근개 봉합술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이두건 파열에 대한 치료로서, 회전근개 봉합술(수술료 N093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에 포함되는 술기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건박리술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197,26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치의 소견 참조하여 이두건 건고정술을 별개의 처치로 인정하여 삭감을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 소견서

3)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퇴원기록지, 관절경 사진 등)

4)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 소견서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8)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6. 17. 진단 받은 상병명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2019. 7. 9. 좌측 회전근개파열 복원수술을 받은 자로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입원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를 N093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 동반)×100%, N0941004 건박리술/제2수술×100%로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2020. 2. 18.

- 수술 전 진단명: Rotator cuff tear, nontraumatic(Rt.)

- 수술 후 진단명:

  • Degenerative arthritis, acromioclavicular joint

  • Rotator cuff tear, nontraumatic

  • Impingement syndrome of shoulder

  • 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SLAP) lesion

- 수술명: Arthroscopic repair of ruptured rotator cuff, simple, shoulder Rt.

- 수술소견

  • SLAP lesion type II with partial biceps tendon tear(50%): tenodesis with RI repair

  • Extra articular biceps groove에 osteocartilagenous loose bodies(×3): biopsy

- 수술절차:

  • SLAP lesion type II with partial biceps tendon tear(50%): tenodesis with RI repair

  • Extra articular biceps groove에 osteocartilagenous loose bodies(×3): biopsy

  • Subacrominal bursitis with spur. Arthroscopic SAD & acromioplasty performed
    GT spur: TP done

  • cuff tear(SSP): 2.5(a), 3.2(b)cm retraction, 2.8cm transverse tear

  • Mobilization of cuff & preparation of greater tubercle was performed

- Arthroscopic SSP & anterior iSP repair with 4 suture anchors by double row & suture bridge technique & RI repair with biceps tenodesis with one matrix suture from HLX was performed
- Partial articular side subscapularis tear, debridement

3)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biceps tenodesis는 회전근개 봉합술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이두건 파열에 대한 치료로서, 회전근개 봉합술(수술료 N093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에 포함되는 술기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biceps tenodesis에 대한 수술료, 건박리술 비용을 부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의 관절경 소견 상 극상건의 전층 파열이 관찰되어 봉합용 나사를 이용한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관절강내 이두건의 50% 이상 부분파열 및 상와순전·후 손상 소견이 관찰되어 건고정술 추가로 시행하였던 환자이다. 이두건에 시행하였던 건고정술이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에 포함되는 술식이라는 이유로 삭감이 되었으나 이두건 고정술이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에 포함이 된다는 논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습니다. 우선 회전근개를 이루는 힘줄들로는 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건, 소원건을 들 수 있고, 이두건은 회전근개와 독립적인 구조물이다. 이러한 이유로 심평원에서 공고한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산정 내용에도 이두건에 대한 처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두건 고정술을 시행한 이유는 발견 당시 이미 파열의 크기가 50% 이상으로 파열의 정도가 크고, 파열의 악화 가능성과 회전근개 봉합과 별도로 통증의 잔존 가능성, 환자의 젊은 나이(**세) 및 근력 보존(보통 이두건 절단술 시 회외근력 20-30% 감소)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이두건 건고정술을 별개의 처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상부 관절와순 병변 및 이두건 부분 파열에 대한 치료방법 중 하나가 biceps tenodesis이며, 상부 관절와순 복원술과는 다른 수술방법이지만 비슷한 병변이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수술방법 중 하나이다.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biceps tenodesis는 따로 수술비 신청이 안 된 것 같고, 회전근개 봉합술에서 흔하게 동반되는 이두건 파열 소견에 대한 치료로서 회전근개 봉합술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수술 술기라고 생각된다.

다.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우측 견관절 MRI 및 수술영상에서 회전근 개 완전 파열 및 이두근 장두 부분파열 소견이 있음. 이에 대한 이두근 고정술을 시행한바, 신청 상병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업무에 의한 병변에 대한 처치로 인정함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마.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 산정방법(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422호, 2019. 12. 27.)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자 김○○에게 행한 “biceps tenodesis”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복원술과 별도로 이두건 파열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각각에 대한 진료비를 인정함이 타당함, 따라서 회전근개 봉합술(수술료 N0937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 및 건박리술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biceps tenodesis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복원술과 별도로 이두건 파열에 대해 실시한 것으로 이에 대한 수술료는 회전근개파열 복원술과 건박리술을 각각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N0941004 건박리술/제2수술×100% 비용은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8 지동맥 혈관성형술 다음날 시행한 혈전제거 및 혈관문합술에 대한 O2056 혈전제거술(동맥-기타)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11074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전○○(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우측 수부 모지 근위지부 절단에 대한 재접합술 다음날인 2019. 4. 11. Arterial insufficiency로 thrombectomy c arteriorrhaphy를 시행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O2056 혈전제거술(동맥-기타)×1.0을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수술기록지 상 우측 제1수지 요골 지동맥의 혈전을 제거하고 문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O2073 혈관결찰술(기타)×1.0으로 변경 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483,07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Arterial insufficiency로 arteriorrhaphy c thrombectomy를 시행한 후 혈전제거술(O2056)로 산정하였으나 혈관결찰술(기타)로 인정되어 관련 자료 첨부하여 심사청구 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사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영상의학사진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19. 4. 10. 톱날에 손이 끼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수부 모지(근위지부 절단, 근위지골 개방성골절, 신경파열, 동맥파열, 정맥파열, 굴곡건 파열, 신전건 파열)'을 승인받은 자로서,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2019. 4. 10. ~ 2019. 5. 5. 입원 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우측 수부 모지 근위지부 절단에 대한 재접합술 다음날인 2019. 4. 11. 수술 전 Arterial insufficiency, 1F., Rt. 진단 하에, "ulnar side digit artery는 arteriosclerosis가 심하여 막혀있음. radial side digit artery의 thrombosis thrombectomy anastomosis"를 시행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O2056 혈전제거술(동맥-기타)×1.0을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3) 원처분기관은 수술기록지 상 우측 제1수지 요골 지동맥의 혈전을 제거하고 문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O2073 혈관결찰술(기타)×1.0으로 변경 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483,07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전문가 의견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2019. 4. 11. 수술은 급성기의 재수술로서 혈관이 막혀 있는 것에 대해 재봉합을 한 것으로서 혈관결찰술로 조정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라. 산업보험법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5호(행위)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의 단단문합술 시행시 수가산정 방법 (2011. 1. 1. 시행)」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에 있는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으로 동일 절개 하 단단문합술(end-to-end anastomosis)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207다 혈관결찰술(기타)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동시에 여러 개의 혈관을 봉합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혈관은 소정점수의 100%를, 두 번째 혈관부터는 소정점수의 50%씩 산정함.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수술기록지를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재해자 전○○에게 2019. 4. 11. 시행한 수술은 우측 제1수지 근위지부 절단 등으로 재해 당일 재접합술을 시행 후 다음날 동맥혈관이 막혀 요골 지동맥의 혈전을 제거하고 문합을 시행한 것으로 혈관결찰술로 조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 일치 소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단,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2019. 4. 11. 시행한 수술은 우측 제1수지 근위지부 절단 등으로 재해 당일 재접합술을 시행 후 다음날 동맥혈관이 막혀 요골 지동맥의 혈전을 제거하고 문합을 시행한 것으로 혈관결찰술로 조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함이 타당함.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라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금 483,070원)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19 수지 접합수술 후 발생한 신경종에 대한 절제술 후 산정한 S4615 신경종양절제술(양성)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9429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19. 10. 18.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신경종양절제술, 척추고정술 (총 356,06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박○○(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우측 제4수지 접합수술 부위에 신경종이 발생하여 신경종절제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를 S4615 신경종양절제술(양성)로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외상성 신경종(traumatic neuroma)은 실제 진성 신경종양이 아니고 신경 절단부가 부풀어 오른 것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고려할 때, N0233 연부조직종양적출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S4615 신경종양절제술(양성)을 불인정한 대신 N0233 연부조직종양적출술로 변경 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95,53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의 경우 수부 내에 명확한 신경종이 관찰되었고, 이를 제거한 후 인접 충양근에 신경 근위 말단을 심는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양성 종양 제거와 동일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수술이었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조직병리검사보고서, 의학사진)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8. 11. 5.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제4, 5수지 절단"을 승인받은 자로서, 상병에 대하여 접합수술을 받았으나 우측 제4수지에 신경종이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2019. 7. 8. ~ 2019. 7. 22. 입원 요양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다음과 같이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료를 S4615 신경종양절제술(양성)로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2019. 7. 9. 수술〉

- 수술명: Neuroma Excision, hand. Rt.

- Op finding
  common palmar digital nerve가 4th proximal phalanx의 base에 insertion 되어 있음. Adhesion 되어 있고, 커져 있어서 neuroma로 판단되었고, distal amputee에서 sural nerve graft는 환자가 동의치 않아 그냥 neuroma excision 시행함. 이후 lumbrical에 insertion함.

- 조직병리검사보고서: Traumatic neuroma

3) 원처분기관은 외상성 신경종(traumatic neuroma)은 실제 진성 신경종양이 아니고 신경 절단부가 부풀어 오른 것으로 상대가치점수를 고려할 때, N0233 연부조직종양적출술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S4615 신경종양절제술(양성)을 불인정한 대신 N0233 연부조직종양적출술로 변경 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95,53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의 경우 수부 내에 명확한 신경종이 관찰되었고, 이를 제거한 후 단순하게 수술을 끝낸 것이 아니라 재발 및 촉진에 의한 통증을 감소하기 위하여 인접 층양근에 신경 근위 말단을 심는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양성 종양 제거와 동일한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수술이었다고 생각한다.

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

1) 자문의사1: 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우측 4수지에 발생한 신경종은 손상된 감각신경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경종양절제술로 인정함이 타당함.

2) 자문의사2: 수술기록지 등 참조할 때, S4615 신경종양절제술(양성)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우측 제4수지 접합수술 부위에 발생한 신경종을 절제한 후 신경단을 충양근에 심는 수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S4615 신경종양절제술(Excision of neuroma, 양성)에 해당하므로 신경종양절제술(양성)에 대하여 진료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재해자 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0 고막성형술과 동시에 산정한 S5635004 고실개방술(제2수술)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3359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김○○(이하 '재해자'라 한다)의 상병명 '우측 안면마비, 우측 측두골 골절'에 대하여 2020. 2. 7. facial never decompression, ossiculoplasty, 고막성형술을 시행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S5671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S5651004 고막성형술, S5791004 이소골재건술, S5635004 고실개방술을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를 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S5635 고실개방술은 S5651 고막성형술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S5671 공동폐쇄유양돌기절제술×1, S5791 이소골재건술×0.5, S5651 고막성형술×0.5만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비인후과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S5635004 고실개방술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61,30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 환자는 측두골골절을 주소로 안면마비 및 전음성난청이 발생함. 수술 당시 intact canal wall up mastoideectomy로 접근하여 facial never decompression,

ossiculoplasty, 고막성형술을 시행함. 이에 facial never decompression으로 처방하지 않고, 이에 준하는 고실개방술을 부 수술로 처방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주치의사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4)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재해자는 2019. 10. 28. 계단을 내려가는 중, 발을 헛디뎌 낙상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우측 안면마비,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혼합성 난청'을 승인받은 자로서,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2020. 2. 6. ~ 2020. 2. 11. 입원 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20. 2. 7. 수술 전 우측 안면마비, 우측 측두골 골절 진단하에, facial never decompression, ossiculoplasty, 고막성형술을 시행한 후, 해당 진료 수가로 해당 진료 수가로 S5671 공동폐쇄유양동절제술, S5651004 고막성형술, S5791004 이소골재건술, S5635004 고실개방술을 산정하여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를 하였다.

3) 원처분기관은 "S5635 고실개방술은 S5651 고막성형술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S5671 공동폐쇄유양돌기절제술×1, S5791 이소골재건술×0.5, S5651 고막성형술

×0.5만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이비인후과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S5635004 고실개방술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261,30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라. 산업보험법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마.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 김○○에 대하여 '우측 안면마비,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혼합성 난청'으로 2019. 2. 7. facial never decompression, ossiculoplasty, 고막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수상 정도 및 수술 내역 등을 감안해 볼 때, 고실개방술은 고막성형술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함.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단,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서 정한 사항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자료를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우측 안면마비, 우측 측두골 골절, 우측 혼합성 난청으로 2019. 2. 7. facial never decompression, ossiculoplasty, 고막성형술을 시행한 것으로, 수상 정도 및 수술 내역 등을 감안해 볼 때, 고실개방술은 고막성형술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261,300원)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6

재료대

1 화상전문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처방한 압박옷 2개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1945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8. 12. 7.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황○○(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2018. 10. 23. 압박옷 JOBST (NANO), ANKLE SUPPORT〈116-148〉 2개를 처방하고,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진료비 청구하였으나

나. 원처분기관은 산재 승인상병을 참조하여 1개만 인정하여 나머지 1개 비용 68,100원을 부지급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상 후 비후성 반흔의 구축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처방한 JOBST (NANO), ANKLE SUPPORT 재료대에 대하여 산재화상전문인증의료기관 시범수가로 치료기간 중 화상부위별 2회까지 인정되는 재료대로 조정된 1개에 대하여 심사 청구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기록지(입원기록지, 의사지시서 등)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

6)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8. 7. 16.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상병 “우측 족부 3도~2도 화상 1%” 승인 받고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화상처치 받았다.

2) 2018. 10. 1. ~ 10. 29. 우측 발목 운동제한 보행시 통증에 대한 포괄적 재활치료 위해 재활의학과에 입원요양 중 우측 발목 비후성 반흔의 구축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압박옷 JOBST (NANO), ANKLE SUPPORT 2개 처방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비용을 포함하여 진료비 청구하였으며

3) 원처분기관은 승인 상병 참조하여 1개는 인정하고, 나머지 1개는 불인정하여 진료비 68,100원을 부지급 처분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산재보험 화상전문인증의료기관 선정 및 시범운영계획 알림(요양부-1666, 2018. 3. 14.)

5 판단 및 결론

가.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청구인의 의료기관은 산재보험 화상환자 비급여 부담완화를 위한 화상전문인증의료기관 시범운영계획에 따라 선정된 화상전문인증의료기관으로서 〈산재보험 시범수가 인정기준 및 적용원칙〉에 따르면 압박옷은 화상으로 인한 비후성 반흔의 구축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치료기간 중 화상 부위별 2회 인정 가능하므로 JOBST (NANO), ANKLE SUPPORT 2개 처방은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일부 부지급 처분한 압박옷은 산재보험 진료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iliac bone graft, donor site**의 통증 예방을 위해 삽입한** ANTIBIOTIC BONE CEMENT**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520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권○○(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좌측 경골 불유합에 대하여 2020. 5. 21. 'Corrective osteotomy and internal fixation, Bone graft' 수술 중 iliac bone graft donor site의 통증 예방을 위해 ANTIBIOTIC BONE CEMENT를 삽입한 후 E5002002 SIMPLEX ANTIBIOTIC BONE CEMENT×1EA 비용 등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자문의사의 "donor site인 Rt. iliac에 적용한 anticement 삽입은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꼭 필요한 방법은 아니므로 불인정이 타당"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ANTIBIOTIC BONE CEMENT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91,46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기환자의 수술재료 삭감으로 의사소견서와 수술기록지 첨부하여 재심사 요청한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합병증등예방관리 심사청구서

2) 주치의사 소견서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사 소견서

4) 진료기록지(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19. 5. 7.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대퇴골 골절,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 우측 손목 관절 삼각 섬유골 복합체 손상, 좌측 경골 불유합'을 승인받은 자로서, 2019. 5. 8. OR/IF, Lt. tibiofibular distal shaft fx.(안산21세기병원), 2019. 11. 18. autobone graft(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수술 후 상태로 청구인의 의료기관에서 좌측 경골 불유합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해 2020. 5. 19. ~ 2020. 5. 27. 입원요양을 하였다.

2)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수술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20. 5. 21. 수술

- 수술전 진단명: Acute pain

- 수술 후 진단명:
  nonunion & valgus deformity after distal tibiofibular fx.

valgus deformity, lower leg, Lt.
s/p distal tibiofibular fracture, lower leg, Lt.

- 수술 전 수술명:

Correction osteotomy(*synthes distal tibia plate set, compact hand/foot set, 기존 YG 3.5locking*3ea, 3.5cortical*1ea, 3.5locking cannulated*2ea → 3.5 cortical hexa driver 필요)
Bone graft

- 수술 후 수술명:

Corrective osteotomy and internal fixation, distal tibia, Lt.
Auto iliac tricortical bone graft, hip, Rt.
Fibular lengthening, ankle, Lt.
Implant removal, lower leg, Lt.

- 수술소견:

Fracture nonunion site를 medial side에서 exposure, fibrous tissue, dead bone formation 관찰되어 Debridement 및 osteotomy 시행
C-arm guidance 하에 valgus deformity 교정 위해 이전 fibular fx. site osteotomy 시행
contralateral side에서 auto iliac bone graft 시행
nonunion site의 defect 부위에 tricortical bone graft 시행
distal tibia medial 및 fibular lateral로 plate 이용한 fixation 시행
cancellous bone graft 추가 시행
Auto iliac bone graft site의 defect에는 cement insertion 시행

4 전문가 의견

가. 주치의사 소견

상기 환자는 불유합 및 부정 정렬을 교정하기 위해 경골 원위부 골결손 부위에 tricortical iliac bone block graft가 필요했으며, bone block size는 3.5cm으로 큰 사이즈에 해당됨. 이처럼 큰 사이즈의 tricortical iliac bone block graft 후에 donor에 큰 골결손이 남아 통증이 유발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cement를 골결손 부위에 삽입하기도 함. 이러한 cement 삽입이 donor site 통증을 감소시켜주는데 효과적이라는 국내 의료진의 논문도 보고됨.

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2020. 5. 21. donor site인 Rt. iliac에 적용한 anticement 삽입은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꼭 필요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불인정이 타당함.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마. 항생제가 혼합된 Bone Cement인 "CMW 3G"의 급여여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 12. 30.)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 권○○에게 'Corrective osteotomy and internal fixation, Bone graft' 수술을 실시하고 진료비를 청구하였으며, 청구한 재료대 ANTIBIOTIC BONE CEMENT는 장골 골편절제술 후 자가골 이식을 하고, 공여부에 시멘트를 삽입한 것으로, 이 술식은 반드시 필요한 술식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함이 타당함.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Corrective osteotomy and internal fixation, Bone graft' 수술을 실시하고 청구한 재료대 ANTIBIOTIC BONE CEMENT는 장골 골편절제술 후 자가골 이식을 하고, 공여부에 시멘트를 삽입한 것으로, 시멘트 삽입은 반드시 필요한 술식으로 볼 수 없어 치료재료를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7

기타

1 » 임플란트 시술 전 완전 무치악상태에서 장착한 임시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603호
- **사 건 명** 진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9. 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강○○(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병명 '치아 파절(하악 좌측 견치), 치아 아탈구(하악 우측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틀니 파절(상악 완전틀니, 하악 부분틀니)'에 대하여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후 상악 및 하악에 임시 완전 틀니를 장착한 후 UA205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2개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잇몸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치아보철이 파절된 경우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시 완전틀니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552,18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20. 1. 12. 작업도중 수상하여 골절로 2020. 1. 29일 ○○대 성형외과에서 op한 자로 상악틀니 완전틀니 골절로 틀니 안 맞았고 하악 치식 변형 및 파절 있어 안 맞은 환자로 틀니 및 치아파절 및 변형으로 본원 치과 내원하여 산재승인 후 완전틀니(상악) & 임플란트 청구하였으나 완전틀니(상악) & 임플란트(#42번치식)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상악치아 완전틀니 상태였으며 사고로 인해 틀니 파절 및 안 맞는 상태이므로 완전틀니의 재제작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의사 소견서(○○병원)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진료기록지(치과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5)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7)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20. 1.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추가 상병으로 '치아파절(하악 좌측 견치), 치아아탈구(하악 우측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틀니 파절(상악 완전틀니, 하악 부분틀니)'을 승인받은 자로서, ○○병원에서 치아손상 관련 치료를 위해 통원 요양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상악 완전틀니 재제작 및 하악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계획하고, 이에 대해 #43, 44, 45 치아 발치 후 #46, 44, 42 임플란트 식립 후 상악 및 하악에 임시 완전틀니를 장착하였다.

❍ 2020. 4. 1. 초진

P/I • 5 4 3 | no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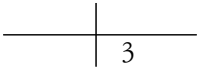 Fx. root rest 상태
- 상악 틀니 완전틀니 Fx. 안 맞음
- 하악 RPD 변형 및 파절 안 맞음

Tx. plan: ext. & implant + T-D, 완전 Dentur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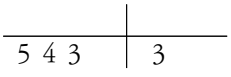 ex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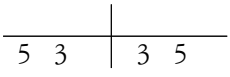 implant 식립

❍ 2020.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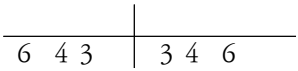 implant로 계획 변경

#33, 34, 36 임플란트 식립

❍ 2020. 4. 8.: #45, 44, 43 발치, #46, 44, 42 임플란트 식립

❍ 2020. 4. 24.: 상, 하악 T/D

4 의사 소견서 (○○병원)

기존 상악치아 완전틀니 상태였으며, 사고로 인해 틀니 파절 및 안 맞는 상태이므로 완전 틀니의 재제작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5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재해자 강석상은 2020. 1. 12. 재해로 치아파절(하악 좌측 견치), 치아아탈구(하악 우측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틀니 파절(상악 완전틀니, 하악 부분틀니) 등의 상병에 대해 승인받은 자로, 청구인은 재해자 강석상에게 상악 완전틀니 재제작 및 하악 임플란트 식립과 보철치료를 계획하여 #33, 43, 44, 45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후 상악 및 하악 임시 완전틀니를 장착하였고, 이후 UA205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2개 비용을 진료비로 청구하였음. 상악의 경우 완전틀니가 파절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악의 보철치료로 인해 완전틀니 재제작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였고, 하악의 경우 파절된 치아 발치로 인해 완전 무치악 상태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상악 및 하악의 임시 완전틀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시 완전틀니 비용은 지급함이 타당하다.

7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재해자의 경우 상악 완전틀니가 파절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악의 보철치료로 인해 완전틀니 재제작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였고, 하악의 파절된 치아 발치로 인해 완전 무치악 상태가 된 점을 고려할 때, 상악 및 하악의 임시 완전틀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해자의 상악 및 하악의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은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 하악의 보철 재제작에 따른 상악 완전틀니 재제작 비용 및 산재 승인상병이 아닌 부위에 시술한 임플란트에 대하여 “일부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8601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1. 원처분기관이 2020. 9. 9.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중 상악 완전틀니 제작비용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재해자 강○○(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상악 완전틀니 재 제작 및 하악 임플란트 식립 계획 및 단계별 시행한 이후 UA505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1개, UA515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인상 채득(2단계)×1개, UB115 치과임플란트(1치당)-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3개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산재승인 상병에 해당하지 않은 임플란트(#42) 시술 및 상악완전틀니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비용을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진료비 중 631,830원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본원 치과 내원하여 산재승인 후 완전틀니(상악) & 임플란트 청구하였으나 완전틀니(상악) & 임플란트(#42번치식)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상악치아 완전틀니 상태였으며 사고로 인해 틀니 파절 및 안 맞는 상태이므로 완전틀니의 재제작 필요하고, #43. #44. #45 아탈구로

인해 발치 후 임플란트 예정하였으나, #43은 발치 후 bone condition이 안좋아 예후 불량하여 부득이하게 #42번 식립하게 되었음. 이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심사청구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진료기록지(치과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3) 원처분기관 의견서 및 자문의 소견서

4)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진료비 명세서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6)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재해자는 2020. 1. 12. 발생한 재해로 추가 상병으로 '치아파절(하악 좌측 견치), 치아아탈구(하악 우측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틀니 파절(상악 완전틀니, 하악 부분틀니)' 승인 받은 자로서, 창원파티마병원에서 치아손상 관련 치료를 위해 통원 요양하였다.

2)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상악 완전틀니 재 제작 및 하악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계획하고, 이에 대해 상악 부위에 완전틀니의 제작 및 #33, 42, 44 해당 치아의 임플란트을 시행한 이후, UA505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1개, UA515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인상 채득(2단계)×1개, UB115 치과임플란트(1치당)-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3개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다.

❍ 재해자의 진료내역은 다음과 같다.(진료기록 일부 발췌)

- (2020. 4. 8.) #45, 44, 43 발치 및 #46, 44, 42 임플란트 식립
- (2020. 4. 24.) 상, 하악 T/D
- (2020. 5. 28.)
  - 5 4 3 산재 승인치아 이나, bone 안 좋아서 2 에 식립함
  - 6 | 4 6 implant, 5 1 | 1 2 5 pontic

3) 원처분기관은 치과 보철만 파손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상악 완전틀니 제작은 불인정 및 미승인 치아(#42)에 시행한 임플란트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다. 산재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 제9조의5(치과임플란트)

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강○○은 2020. 1. 12. 재해로 치아파절(하악 좌측 견치), 치아 아탈구(하악 우측 견치, 제1소구치, 제2소구치), 틀니 파절(상악 완전틀니, 하악 부분틀니) 등의 상병에 대해 승인받고, #33, 43, 44, 45 치아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후 상악 완전틀니

제작 및 임플란트를 장착한 후 청구인이 UA505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1개, UA515 금속상 완전틀니(1악당)-인상 채득(2단계)×1개, UB115 치과임플란트(1치당)-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3개에 해당하는 비용을 원처분기관에 진료비로 청구하였음. #42 임플란트는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나, 상악 완전틀니는 하악의 보철치료로 인해 재 제작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상악 완전틀니 제작비용은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임. 따라서 금번 원처분기관에서 부지급한 진료비 중 상악 완전틀니 진료비는 지급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 진료비의 요양급여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내역 및 기준에 따르며, 다만, 보건복지부령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지 않았거나 이와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나. 관련법령, 진료기록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42 임플란트의 경우 승인 상병과 관련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나, 상악 완전 틀니는 하악의 보철치료로 인해 재 제작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여 상악 완전틀니 제작 비용은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금번 원처분기관에서 부지급한 진료비 중 상악 완전틀니 진료비는 지급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재해자에게 시행한 상악 완전틀니 제작비용(521,140원)는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상악 완전틀니 제작비용 비용 관련 원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하다.

3 » 진료비 부당이득 결정(위탁업체 소속의 언어재활사가 시행한 언어치료 비용)에 대하여 "기각"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19 제7575호
- **사 건 명** 진료비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

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는 2019. 6. 18. ~ 2019. 6. 21.(3일)간 ○○의료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해 진료기간 2016. 4. 20. ~ 2019. 4. 30. (3년) 지급된 진료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1. 전문재활치료료〔산정지침〕1. 에 따르면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의 근무형태를 확인한 결과, ○○의료원(갑)과 ㈜○○(을)간에 언어 인지 교육 중재 컨텐츠 공급계약을 위탁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위탁업체인 ㈜○○가 급여, 4대 보험료 및 근태 관리 등을 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상근하는 언어재활사 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비상근 언어재활사가 실시한 언어치료(51010)를 진료비로 착오 청구하여 13,594,9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그 결과를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인 □□지사(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현지조사 결과 통보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발생된 부당이득금을 향후 청구될 진료비에서 충당처리 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1. 1.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인증기간 2012. 1. 1. ~ 2014. 12. 31.), 인증평가 시 인력부문 조사표에서 언어치료사(상근 인원 수)란에 "언어치료사(1명: 외주 인력이나 상근함)"으로 기재하였으나 재활인증의료기관으로 승인된 것은 외주용역에 의한 언어재활사를 상근 언어치료사로 인정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하여 언어치료를 시행함.(별첨 4: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서, 별첨 5: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자료) 2019년도 진료비 현지조사팀에서는 상근의 의미를 정규직 직원으로 해석하여 언어치료를 부당청구로 지적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부당이득)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원처분기관 의견서

4) 진료비 현지조사 결과 보고(통보)서

5) 확인서(2019. 6. 21.)

6) 2019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현지조사 결과 알림(○○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1600, 2019. 6. 25.)

7) 2019년 산재보험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과 회신 (□□지사 재활보상부-5990, 2019. 7. 18.)

8) 청구인이 제출한 별첨 자료

- 별첨 3: 언어 인지 교육 중재 컨텐츠 공급계약서, 근로계약서(언어재활사 조○○외 4명)

- 별첨 4: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서

- 별첨 5: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자료

9) 언어재활사의 4대보험 납부확인서

10) 청구인에 대한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처리 결과(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 시스템; 화면번호 2. 3. 1. 3)

11)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12) 기타 참고자료

나. 사실관계

1) ○○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는 청구인을 2019년도 정기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 한 후 2019. 6. 18. ~ 2019. 6. 21.(3일)간 청구인에 대해 진료기간 2016. 4. 20. ~ 2019. 4. 30.(지급기간 2016. 6. 18. ~ 2019. 6. 17.) 지급된 진료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처분기관은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부당청구 항목 중 비상근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언어치료료(51010)를 착오 청구하여 지급한 진료비 13,594,9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함.

2) 청구인이 제출한 「언어 인지 교육 중재 컨텐츠 공급계약서, 근로계약서(언어재활사 조○○외 4명)」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언어재활사의 고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 언어 인지 교육 중재 컨텐츠 공급 계약(협약서) 상 ○○의료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이 언어 인지 교육 중재 서비스를 목적으로 2016. 5. 1. ~ 2018. 4. 30. 재계약을 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 2조[조건]: 매월 발생되는 총금액을 "갑" 3, "을" 7의 비율로 배분하는 것으로 함.

- 제 3조[홍보 및 편의제공]: "을"은 "갑"의 언어인지 중재 서비스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언어인지 중재 컨텐츠 및 컨텐츠 활용에 필요한 기자재와 소모품을 "갑"에게 제공함. "갑"은 을이 제공한 언어인지 중재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과 그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전화 등의 집기류를 갖추어 준다.

- 제 4조[검사료의 청구 및 지불]: "을"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초에 "갑"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익월 10일에 월별 대금을 "을"이 지정한 은행 계좌를 통해 통화로 지급한다.

❍ ○○ 연구원 계약서 상 ㈜○○(이하 "갑"이라 한다)와 조○○(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함.

- 제 1조 (계약기간): 갑과 을은 계약체결일 2017년 1월 2일부터 어느 일방의 계약 해지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를 체결함.

- 제 2조 (근무조건): 주 5일 일일 8시간에 준하여 근무함. 연구소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는 변경 될 수 있음. 그 외의 모든 연구소 내의 근무 규정은 갑이 지정한 슈퍼바이저에게 위임함.

- 제 3조 (급여): 을의 급여는 연봉 **원(퇴직연금, 상여금 포함)으로 함. 을의 급여는 매달 15일 지정계좌로 입금함. 그 외의 상세한 조전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실행함.

- 제 4조 (휴가): 근속 년수 1년 이후에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며, 2년 경과시마다 1개씩 추가하되 총 25개를 넘지 아니함 등.

- 제 7조 (기타 사항) ;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갑이 정하는 취업 규칙 등 제반 규정에 따른다.

❍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에 대한 급여 및 4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장은 주식회사 ○○로 확인된다.

3)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청한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신청에 대한 결과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2012. 1.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고(인증기간: 2012. 1. 1. ~ 2014. 12. 31.) 이후 재인증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인증평가 당시 재활인증 현장평가 조사표의 인력부문 조사표에서 언어치료사(상근 인원 수)란에 "언어치료사(1명: 외주 인력이나 상근함)"으로 기재하였다.

❍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평가 결과를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처리(화면번호 2.3.1.3) 조사자 확인란에 재활전문인력 중 언어치료사(0)명, 평가조사표 개괄(뇌혈관)-평가기준 세부항목-기타-언어치료사 여부(4점)란에 "0점"으로 입력하였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2011년도 산재보험 재활전문의료기관 인증·재인증 계획(안) 시달(근로복지공단 요양부-9884, 2011.10.24.)에 따르면 재활인증 현장평가 조사표에 따른 인력부문에서 "언어치료사(상근 인원 수)"란에 대하여 「재활인증 인력부문 조사표 작성요령(재활전문인력 충족성)」 3. 측정방법 ② "상근 인원 수는 작성 당일 기준으로 현재 인원을 기재한다.(※ 상근직으로서 정규직 또는 이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받는 정규계약직만을 산정)"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지역본부 산재의학센터는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에서 파견되어 청구인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언어재활사의 근무형태를 비상근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비상근 언어재활사가 실시한 언어치료(51010)를 진료비로 착오 청구하여 13,594,95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의료기관 관할 소속기관인 □□지사(이하 "원처분기관"이라 한다)에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5) 원처분기관은 현지조사 결과 통보서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및 발생된 부당이득금을 향후 청구될 진료비에서 충당처리 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제3항제2호

>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 ①~②생략
>
> ③ 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진료비나 약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진료비나 약제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제4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5.20.〉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 2. 제40조제5항 및 제91조의9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경우
> 3. 그 밖에 진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신설 2011. 12. 30.〉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 1. 해당 항목의 재활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인증평가시 인력부분 조사표에서 언어치료사를 상근으로 인정하여 재활의료기관으로 승인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평가시 언어치료사 점수를 0점으로 산정한 것이 확인되고, 원처분기관 조사자료 등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언어재활사는 파견업체 직원으로서 상근 인원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의료기관과

㈜○○간 체결한 공급계약서에서 매월 총금액을 3:7로 배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파견업체 인력공급계약과는 다른 형태로 이 또한 상근 인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 의료기관에 언어재활사가 실시한 언어치료비를 착오 지급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 일치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84조제3항제2호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평가시 언어치료사 점수를 0점으로 산정한 것이 확인되고, 원처분기관 조사자료 등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언어재활사는 파견업체 직원으로서 상근 인원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 의료기관과 ㈜○○간 체결한 공급계약서에서 매월 총금액을 3:7로 배분하는 것은 일반적인 파견업체 인력공급계약과는 다른 형태로 이 또한 상근 인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임.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 의료기관에 언어재활사가 실시한 언어치료비를 착오 지급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타당하다"라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언어치료료(51010) 금13,594,950원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

4 청구 시효가 도과된 진료비가 일부 포함되어 반려된 진료비에 대하여 재청구 시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 **사건번호** 2020 제9174호
- **사 건 명**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20. 9. 21.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내용

가. 청구인은 이○○(이하 "재해자"라 한다)에게 산재보험 적용으로 진료한 이후, 2017. 9. 11. ~ 2017. 9. 30. 기간의 진료비를 2020. 9. 18. 원처분기관에 청구하였다.

나. 원처분기관은 접수일 기준하여 소멸시효 도과한 것으로 일부 기간 진료비를 불인정한 결과, 청구한 비용 중 581,670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소멸 시효 도과로 2020. 9. 11.부터 2020. 9. 17. 입원 진료분에 대해 조정되었으나 원청구 2020. 9. 11. 일자 청구하였으나, 소멸시효 도과 진료분이 포함됨에 따라 당시 결정받지 못하고, 이후 다시 산정하여 청구된 진료비용이므로 원청구(2020.9.11.)일자 기준으로 소멸시효는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다시 심사하여 해당 진료비용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함.

3 쟁점 및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진료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

1) 진료비·약제비 심사청구서

2) 원처분기관 의견서

3) 진료비 지급결정통지서 및 약제비 명세서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

5) 기타 참고 자료

나. 사실 관계

1) 청구인은 재해자의 진료비용(2017. 7. 1. ~ 2017. 9. 30.)에 대해서 2020. 9. 11. 원처분기관에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은 진료분 소멸시효 도과분 진료비 포함으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불능 처리하였다.

2) 이후 청구인은 1차 신청일자(2020. 9. 11.) 기준으로 소멸시효 도과한 진료분을 제외하고, 재 산정하여 2017. 9. 11. ~ 2017. 9. 30. 동안의 진료비용에 대하여 2020. 9. 18. 원처분기관에 청구하였다.

3) 원처분기관은 2020. 9. 18. 기준으로 2017. 9. 18 이후 기간의 진료비용을 인정하고, 그 외 기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도과한 것으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 진료비 청구 및 부지급 내역

연번	접수일자*	진료비 청구기간	비고
1	2020. 9. 11.	2017.7.1.-2017.9.30	불능-소멸시효 도과 진료분 포함으로 심사 불가함.
2	2020. 9. 18.	2017.9.11.-2017.9.30	소멸시효 도과로 '17.9.11.-'17.9.17. 기간 진료비용 부지급

* (접수 일자) 요양기관의 청구일자로 소멸시효 기산일로 적용

4 관계법령

가. 산재보험법 제45조 (진료비의 청구 등)

나. 산재보험법 제112조(시효)

다.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라.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비용 산정기준)

마.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재해자에게 2017. 7. 1. ~ 2017. 9. 30. 기간 시행한 입원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를 2020. 9. 11. 1차 청구하고,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인 2017. 9. 11. ~ 2017. 9. 30.에 대해 2차로 2020. 9. 18. 진료비 청구를 하였고 원처분기관은 2017. 9. 18. ~ 2017. 9. 30. 기간에 대한 진료비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의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효가 진행되며 이에 청구인이 최초 청구날짜인 2020. 9. 11. 당시 2017. 7. 1. ~ 2020. 9. 10.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는 그 청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진료비 세부 내역상 일일 단위의 진료비 산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1차 청구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시효 미완성 기간에 대한 진료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능 처리하여 청구인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진료비 세부 내역을 보완한 후 다시 청구를 한 사정을 감안하면 2017. 9. 11. ~ 2017. 9. 17. 기간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7. 9. 11. ~ 2017. 9. 17. 기간 청구한 진료비도 지급함이 타당하다.

6 판단 및 결론

가. 산재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산재근로자에 대해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112조에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보험급여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진료비 청구 등 제반 심사청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진료비의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시효가 진행되며 이에 청구인이 최초 청구날짜인 2020. 9. 11. 당시 2017. 7. 1. ~ 2020. 9. 10. 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는 그 청구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진료비 세부 내역상 일일 단위의 진료비 산정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1차 청구에 대해 원처분기관이 시효미완성 기간에 대한 진료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능 처리하여 청구인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진료비 세부 내역을 보완한 후 다시 청구를 한 사정을 감안하면 2017. 9. 11. ~ 2017. 9. 17. 기간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7. 9. 11. ~ 2017. 9. 17. 기간 청구한 진료비도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2017. 9. 11. ~ 2017. 9. 17. 기간에 대한 진료비는 산재보험 진료비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산재보험심사결정사례집(2020)

발행일 : 2021년 10월

발행처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길2길 8, 5층
TEL : 02) 2109-3609, FAX : 0502-282-7777

인쇄처 : 한국장애인상생복지회
TEL : 031) 360-5670~2

※ 이 책은 무단복사, 복제를 불허합니다.

〈비매품〉